

발 간 등 록 번 호

11-1660000-000007-10

2008. 1. 1 현재

2008년도 주요통계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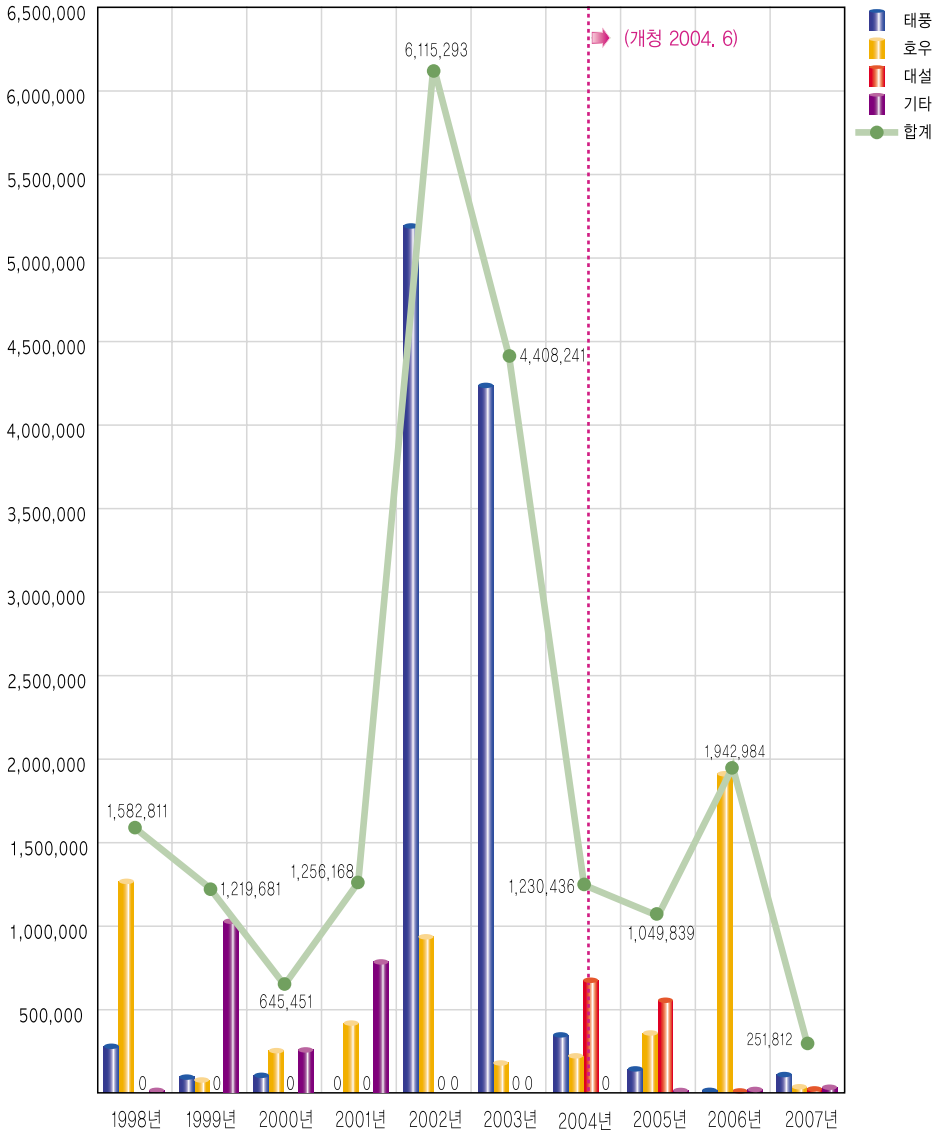


자연재해



최근 10년간 원인별-연도별 자연재해 총괄(1998~2007)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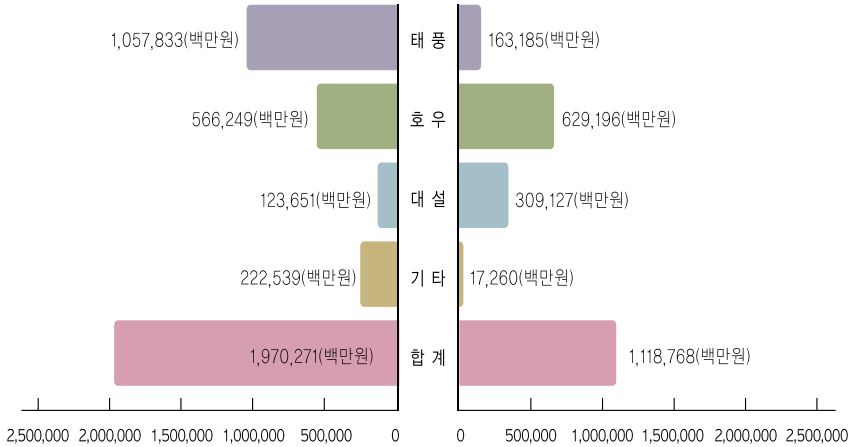




- 재산 피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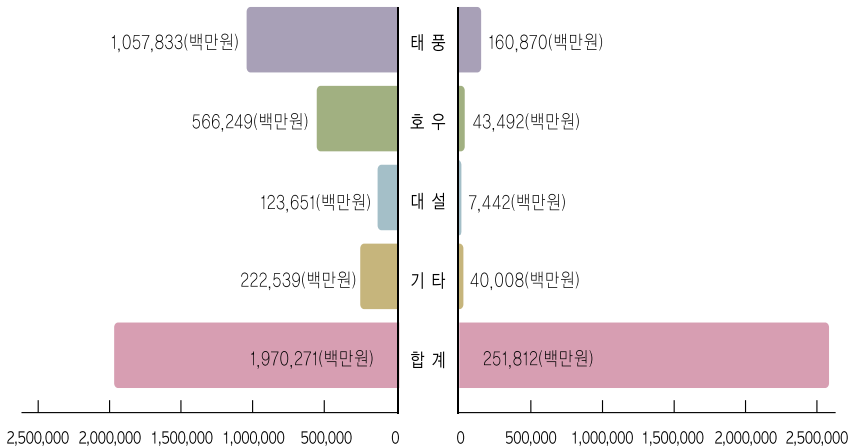
10년 평균

개청이후(2004~)



10년 평균

200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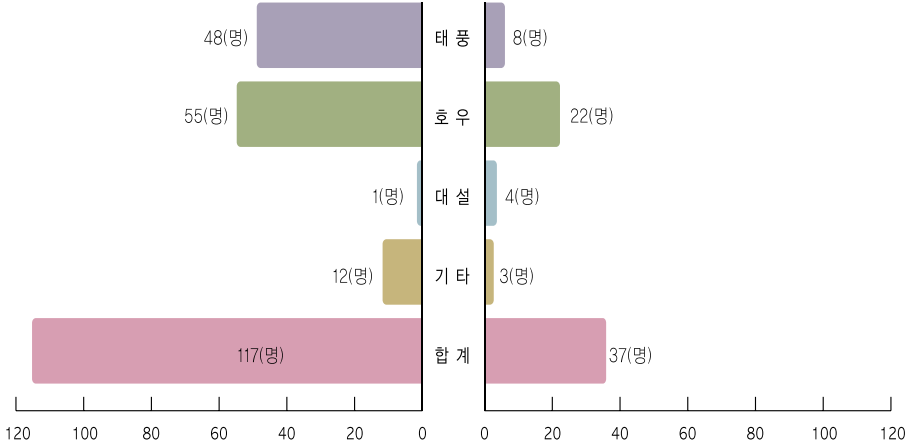




- 인명피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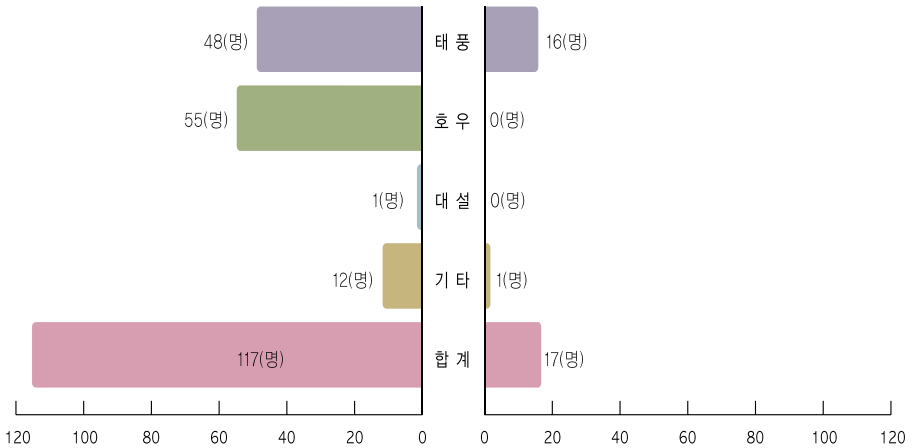
10년 평균

개청이후(2004~)



10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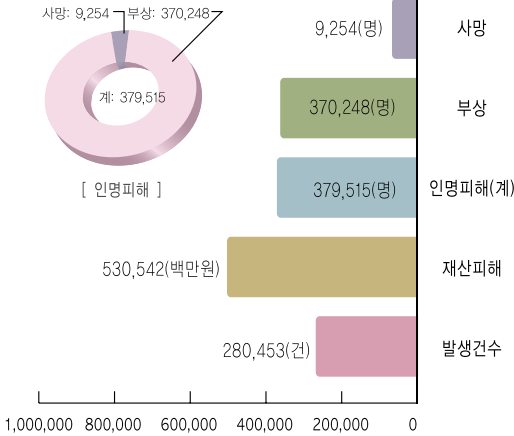
200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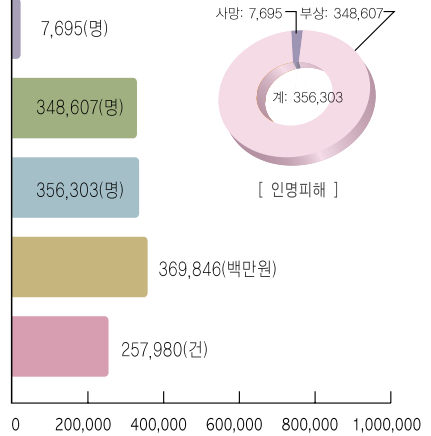
인적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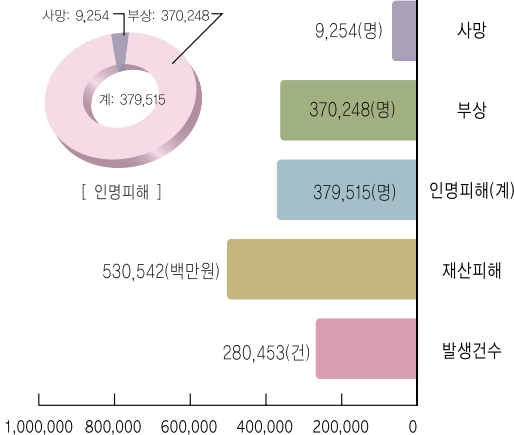
10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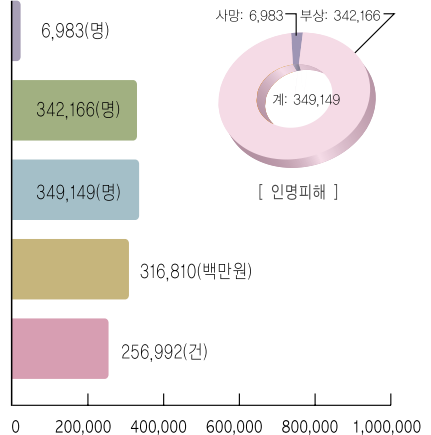
개청이후(2004~)



10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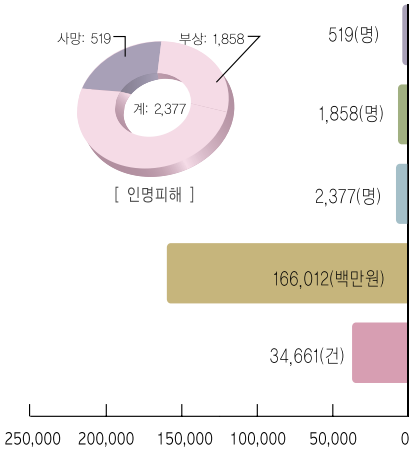
200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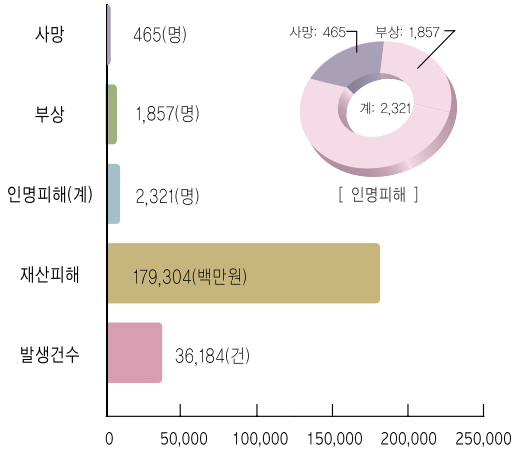
화재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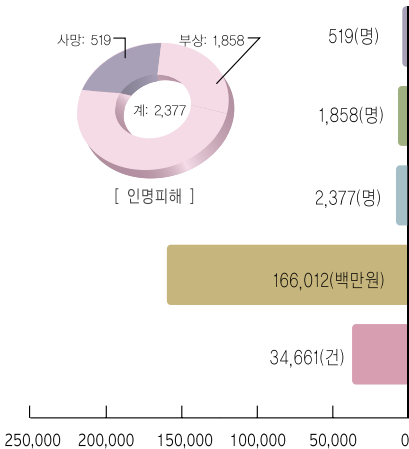
10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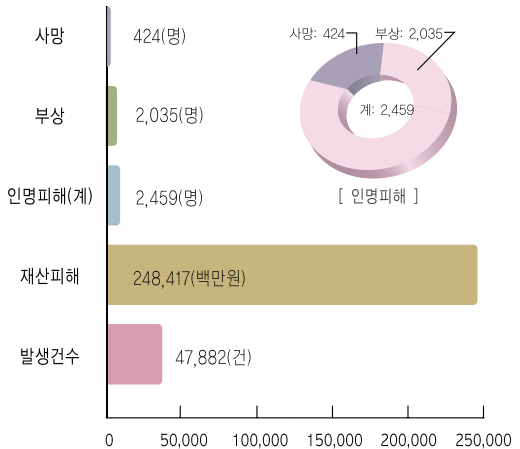
개청이후(2004~)



10년 평균



200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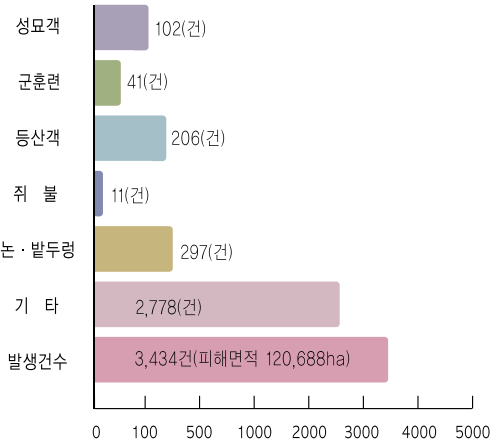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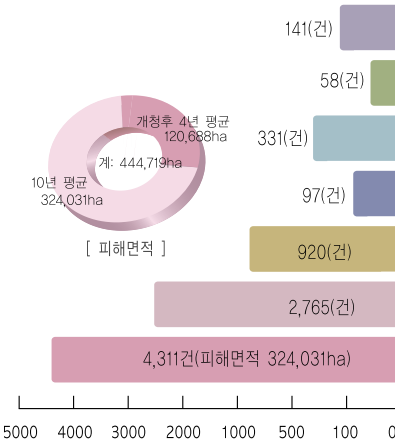


산불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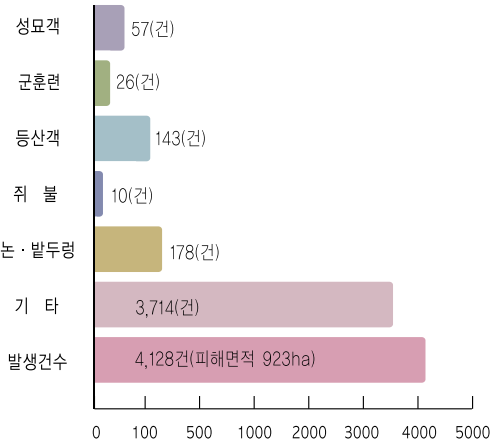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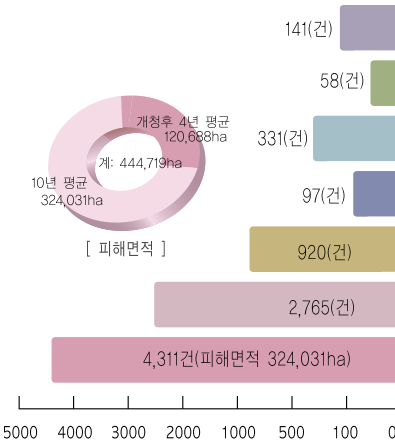
10년 평균

개청이후(2004~)



10년 평균

200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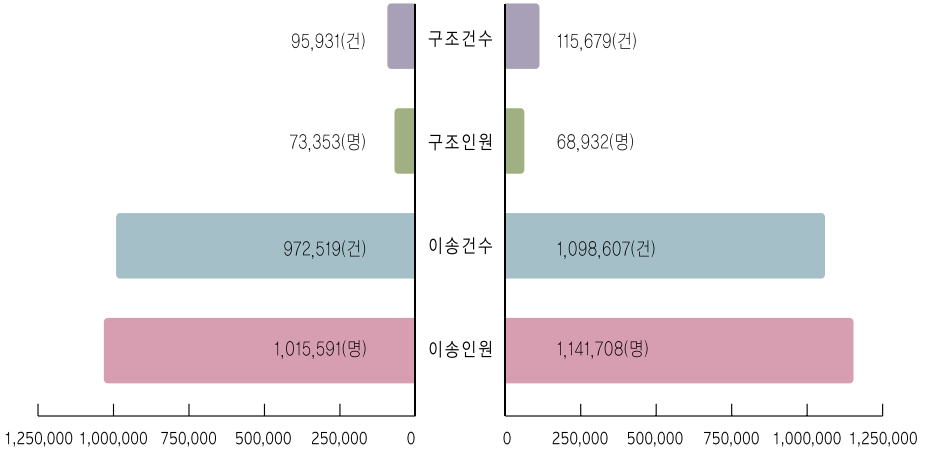


구조·구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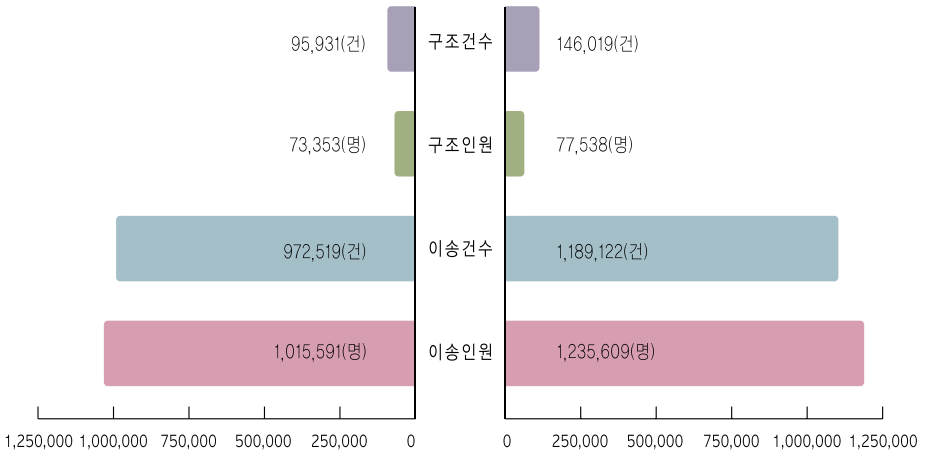
10년 평균

개청이후(2004~)



10년 평균

2007년도



목 차

통계로 보는 재난 관리

기본현황

1. 연 혁	3
2. 기구 및 정원	5
3. 기 능	6
4. '08년 예산	8
5. 법령 및 행정규칙	11

예방안전 분야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1-1. 훈련 개요	15
1-2. 중점 훈련 내용	15
1-3. 주요 도상훈련 메시지 처리 현황	16

2. 민방위제도	16
2-1. 민방위의 의의	16
2-2. 민방위제도 도입 배경	17
2-3. 민방위대 창설당시와 현행제도 비교	18
3. 민방위 운영 조직체계	18
3-1. 중앙민방위협의회	18
3-2. 민방위협의회	20
3-3. 민방위와 유사한 북한의 조직 현황	21
3-4. 외국의 민방위업무 추진조직 현황	22
4. 민방위대 편성·운영	23
4-1. 민방위대 임무	23
4-2. '07년 민방위대 편성 현황	23
4-3. 민방위대 동원현황	27
5. 민방위 교육·훈련	29
5-1. 민방위 교육운영 개요	29
5-2. 민방위 교육 현황	30
5-3. 민방위교육장 현황	32
5-4.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및 편의증진 시책	36
5-5. '08년 중앙민방위교육계획	38

5-6. 민방위훈련 운영개요	40
5-7.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42
5-8. 월별 민방위 훈련계획	43
5-9. '07년 민방위훈련 실시 현황	44
6. 화생방 방호	45
6-1. 화생방 개요	45
6-2. 화생방분대 편성·운영	46
6-3. 화생방 전담조직 및 공무원 배치 현황	47
6-4. 화생방 방호장비·물자 보급 현황	48
7. 민방위 경보	50
7-1. 민방위 경보 연혁	50
7-2. 민방위 경보의 발령근거 및 종류	51
7-3. 민방위 경보의 전달체계	51
7-4. 민방위 경보망의 구성 및 체계도	53
7-5.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54
7-6. 민방위 경보 현황	56
8. 민방위 시설·장비	61
8-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1
8-2. 민방위 대피시설	63
8-3. 민방위 장비	66

9. 재난상황 종합관리	70
9-1. 재난관리행정 연혁	70
9-2. 재난관리 체계	72
9-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76
9-4. 재난관리책임기관	80
9-5.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82
9-6. 재난상황보고·전파 체계도	83
9-7. 재난발생시 수습체계	85
9-8. 안전관리 주요 법령	86
10. 주요 재난 현황	88
10-1. 주요 재난사고 발생 현황	88
10-2.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103
11.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경보제	106
12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108
12-1.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태평가 기준	108
12-2.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및 안전관리	109
12-3. 특정관리대상시설 단계별 관리체계	113
12-4.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115
12-5. 월별 중점안전점검 대상	118
12-6. 안전점검실시 현황	119

13. 유·도선 관리	125
13-1. 유·도선 안전관리 개요	125
13-2. 전국 유·도선 현황	126
13-3. 유·도선 사고발생 현황	127
14. 안전문화운동 추진	128
14-1. 안전문화운동	128
14-2. 안전관리현장	129
14-3. 안전점검의 날	131
14-4.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 지정	133
14-5.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139
15.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140
16. 위험물 안전관리	143
16-1.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143
16-2. 위험물 검사	144
16-3.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145
16-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145
16-5. 위험물제조소 등의 현황	146
16-6.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146
16-7. 위험물별 현황	146

소방정책 분야

1. 소방일반현황	149
1-1. 소방연혁	149
1-2. 소방조직체계	150
1-3. 소방관서 설치 현황	152
1-4. 소방인력 배치 현황	152
1-5. 순직, 공·사상자 현황	153
1-6.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154
1-7. 소방력 보강계획	156
1-8. 소방장비 현황	163
1-9. 의무소방원 관리현황	175
2. 방호업무	176
2-1. 의용소방대	176
2-2. 소방용수시설	180
2-3. 소방응원협정 체결현황	182
2-4. 119접수대 시설현황	183
2-5. 지령시스템 운용실적	184
2-6. 119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86
2-7. 화재발생현황	187

3. 예방업무	196
3-1. 소방검사	196
3-2. 일반소방검사대상 현황	200
3-3. 다중이용업소	202
3-4. 대형화재 취약대상	208
3-5. 방화관리제도	211
3-6. 화재경계지구	215
3-7. 건축허가 동의	217
3-8. 소방공사업등 현황	218
3-9.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23
3-10. 소방법위반자 처리 현황	224
3-11. '08년도 소방교육·홍보 블루오션 전략	225
4. 구조·구급업무	255
4-1. 119 구조·구급대 운영 현황	255
4-2. 2007년도 구조·구급활동 현황	262
4-3. 119 국제구조대	273
4-4. 소방기술경연대회	274
5. 긴급구조통제단업무	276
5-1. 긴급구조대응계획	276
5-2. 현장지휘체계	277
5-3.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284

방재관리 분야

1. 재난대책기구	289
1-1. 방재조직 체계도	289
1-2. 자연재난관리 체계	290
2. 자연재난 예방대책	292
2-1.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추진 흐름도	292
2-2. 수방자재 비축 현황	294
2-3.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현황	295
2-4. 구호물자 비축 현황	296
2-5. 방역물자 비축 현황	298
2-6.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	299
2-7.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현황	300
2-8. 소하천 정비 현황	301
3. 자연재난 복구지원	302
3-1.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302
3-2. 특별재난지역	303
3-3. 훈련 개요	306

4. 풍·수해 피해 및 복구	307
4-1. 대규모 자연재난 현황	307
4-2.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309
4-3. 시설별·시·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311
4-4. 시설별·기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315
4-5. 기간별·시·도별 피해내역	318
5.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	320
5-1. 세계의 주요지진	320
5-2. 우리나라 주요지진	322
5-3. 규모별 지진발생 빈도	324
5-4.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	326
5-5. 시·도별 지진발생 현황	327
5-6.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329

부 록

1. 소방방재청 공무원 정원표	333
2. 소방방재청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339
3. 소방방재청 위원회 현황	347
4. 소방방재청 비영리법인 현황	348



자료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자료모으미



기 본 현 황

1. 연 혁	3
2. 기구 및 정원	5
3. 기 능	6
4. '08년 예산	8
5. 법령 및 행정규칙	11

- 1948.11. 4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설치('50. 3. 31 폐지)
- 1961.10. 2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신설
- 1975. 7.25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5. 8.22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
- 1975. 8.26 내무부 민방위본부 및 지방민방위기구 설치
- 1975. 8.26 소방업무 인수(치안본부), 소방국 설치
- 1975. 8.26 ~ 9.15 민방위대 편성
- 1975. 9.22 민방위대 발대
- 1976. 3.31 전시인력동원업무 인수(보사부)
- 1976. 5.17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정
- 1976.10.31 민방공 경보망 인수(치안본부)
- 1978. 7.27 내무부 소방학교 신설
(1995.5.16 중앙소방학교로 명칭변경)
- 1985. 7.13 내무부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정
- 1986.12.26 중앙민방위학교 신설
('94. 4. 21 지방행정연수원장하의 민방위교육
담당관으로 이관)
- 1991. 4.23 재해대책업무 인수(건설부)
- 1994.12.23 방재계획관실을 방재국으로 확대 개편
- 1995. 7.18 재난관리법 제정
- 1995.10.19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재난관리국 신설),
중앙119구조대 신설(중앙소방학교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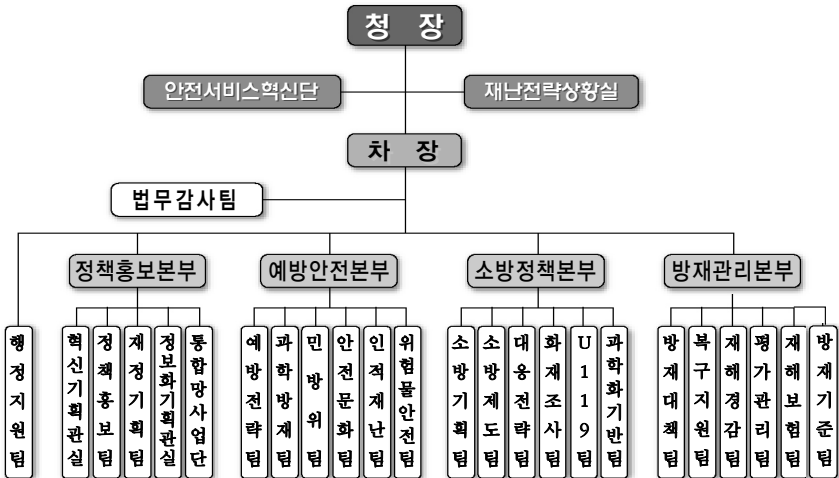
- 1997. 5.27 국립방재연구소 신설
- 1998. 2.28 행정자치부 발족, 민방위국과 재난관리국을 통합
(민방위재난관리국)
- 1999. 5.24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통합
(민방위방재국)
- 2000. 1.12 민방위기본법 제9차 개정
- 2000. 6. 7 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관실로 분리
- 2004. 6. 1 소방방재청 개청(3국1관 1실18과, 4소속기관)
- 2005. 9. 1 본부/팀제로 개편
(4본부 1실2관22팀, 4소속기관)
- 2006. 3. 6 국립방재연구소와 민방위교육관을 통합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개원)
- 2006. 7. 1 본부/팀 명칭 변경 및 재해보험팀, 법무감사팀,
과학방재팀 신설
(4본부 1실2관2단21팀, 3소속기관)
- 2006. 9.14 방재관리본부에 방재기준팀, 중앙소방학교에
응급구조교육센터, 소방시험센터 신설
(4본부 27팀<1실2관2단22팀>, 3소속기관)

2 기구 및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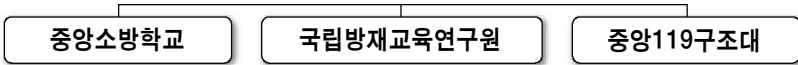
가. 기 구

중 앙

○ 본 청



○ 소속기관



지 방

○ 시·도

- 민 방 위 : 자치행정국, 행정관리국, 소방(방재)본부 등
- 재난·방재 : 건설·도시국, 소방방재본부 등
- 소 방 : 소방(방재)본부

○ 시·군·구

- 민 방 위 : 총무·자치행정·재난관리과·민원봉사과 등
- 재난·방재 : 건설·도시계획·하수과 등
- 소 방 : 소방서(119안전센터)

나. 정 원

['07.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소방직	기능직	연구직	
계	551	1	17	247	212	44	30	
본 청	348	1	8	222	80	34	3	
소속기관	소 계	203	-	9	25	132	10	27
	중앙소방학교	64	-	-	4	53	2	5
	국립방재교육연구원	60	-	9	21	-	8	22
	중앙119구조대	79	-	-	-	79	-	-

3 기 능

가. 업무범위

- 민 방 위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방공, 응급방재, 구조, 복구, 군사작전지원 등)
-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환경, 방사능사고 등 인위적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수습, 복구 등 단계별 대응활동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수습, 복구 등 단계별 대응활동
- **소 방** :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활동, 각종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구급 활동

나. 본부별 기능

국 별	기 능	근 거 법
예방안전본부	○ 민방위, 자원관리, 교육·훈련	민방위기본법
	○ 인적재난의 예방·수습·복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정책본부	○ 각종 재난 및 재해시 인명구조·구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소방기본법
방재관리본부	○ 자연재난의 예방·수습·복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 ※ 재난시 협조·조정 기구
- 인적·자연재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소방·구조·구급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통제단장 : 소방방재청장, 부단장 : 소방정책본부장)

4

'08년 예산

가. 예산총괄

○ 세 입

['07.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예산 (B)	증 감 (B-A)	%
〈일반회계〉	6,357	8,120	1,763	27.7
•경상이전수입	6,357	8,120	1,763	27.7
- 변상금 및 위약금	20	-	-20	순감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6,337	8,120	1,783	28.1

○ 세 출

['07.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 (A)	'08예산 (B)	증 감 (B-A)	%	
총 계	324,761	372,955	48,194	14.8	
일 반 회 계	계	132,027	147,189	15,162	11.5
•기본적경비	40,676	43,718	3,042	7.5	
- 인 건 비	29,657	32,273	2,616	8.8	
- 기 본 경 비	11,019	11,445	426	3.9	
•주요사업비	91,351	103,471	12,120	13.3	
- 계 속 사 업	80,480	94,036	13,556	16.8	
- 신 규 사 업	10,871	9,435	-1,436	-13.2	
특 별 회 계	계	192,734	225,766	33,032	17.1
•농어촌구조개선	58,983	66,842	7,859	13.3	
•국가균형발전	133,751	158,924	25,173	18.8	

나.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합 계		87,615	130,896	124,062	188,077
기획조정관	소 계	4,027	7,306	5,794	7,540
	•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	-	-	-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4,027	7,306	5,794	7,540
예방안전국	소 계	1,457	1,291	1,300	6,376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	-	-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540	370	406	406
	• 민방위교육훈련	917	921	894	970
	•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	-	-	-
	• 재난피해자사후관리시스템구축	-	-	-	-
	•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	-	-	-
소방정책국	소 계	22,131	37,299	21,618	21,696
	• 119구조장비 확충	16,635	30,033	10,110	9,452
	•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5,496	7,266	11,508	10,832
	•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	-	-	1,412
	•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	-	-	5,000
	•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	-	-	-
	• 사회복지무요원운영	-	-	-	-
방재관리국	소 계	60,000	85,000	95,350	152,465
	• 재해위험지구 정비	60,000	85,000	95,000	101,528
	• 재해흔적 조사용역	-	-	350	-
	• 소하천정비	-	-	-	48,096
	• 지자체재난관리 업무평가	-	-	-	900
	•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	-	-	1,941
	• 풍수해보험	-	-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A)	2008 (B)	증감 (B-A)
합 계		201,890	225,942	258,490	32,548
기획조정관	소 계	7,440	4,900	4,700	-200
	•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1,800	-	-	-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5,640	4,900	4,700	-200
예방안전국	소 계	3,836	6,042	3,453	-2,589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	232	232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406	477	807	330
	• 민방위교육훈련	1,210	1,065	1,065	-
	•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	1,000	1,000	-
	• 재난피해자사후관리시스템구축	-	-	349	349
	•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2,220	3,500	-	-
소방정책국	소 계	20,047	19,852	16,565	-3,287
	• 119구조장비 확충	8,480	8,504	8,585	81
	•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8,788	6,698	4,345	-2,353
	•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1,779	1,420	1,420	-
	•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000	3,000	1,000	-2,000
	•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	230	251	21
	• 사회복지무요원운영	-	-	964	964
방재관리국	소 계	170,567	195,148	233,772	38,624
	• 재해위험지구 정비	116,500	133,225	158,253	25,028
	• 재해흔적 조사용역	-	-	-	-
	• 소화천정비	49,686	59,263	67,169	7,906
	• 재난관리업무평가	770	1,000	2,000	1,000
	•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1,941	-	-	-
	• 풍수해보험	1,670	1,660	6,350	4,690

5

법령 및 행정규칙

가. 법령현황

[07. 12. 31 현재]

부 서 명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		68	18	26	24
안전서비스혁신단		-	-	-	-
재난전략상황실		-	-	-	-
법무감사팀		-	-	-	-
행정지원팀		-	-	-	-
정책 홍보 본부	혁신기획관실	2	-	1	1
	정책홍보팀	-	-	-	-
	재정기획팀	-	-	-	-
	정보화기획관실	-	-	-	-
	통합망사업단	-	-	-	-
예방 안전 본부	예방전략팀	-	1	1	1
	과학방재팀	-	-	-	-
	민방위팀	3	1	1	1
	안전문화팀	-	-	-	-
	인적재난팀	3	1	1	1
	위험물안전팀	3	1	1	1
소방 정책 본부	소방기획팀	20	4	10	6
	소방제도팀	7	2	3	2
	대응전략팀	-	-	-	-
	화재조사팀	-	-	-	-
	U119팀	2	-	-	2
	과학화기반팀	5	1	1	3
방재 관리 본부	방재대책팀	3	1	1	1
	복구지원팀	5	1	2	2
	재해경감팀	-	2	1	1
	평가관리팀	5	2	2	1
	재해보험팀	3	1	1	1
소속 기관	중앙소방학교	-	-	-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	-	-
	중앙119구조대	-	-	-	-

나. 행정규칙현황

[07. 12. 31 현재]

부 서 명		계	훈령	예규
계		103	74	29
안전서비스혁신단		-	-	-
재난전략상황실		2	2	-
법무감사팀		5	4	1
행정지원팀		8	6	2
정책 홍보 본부	혁신기획관실	8	7	1
	정책홍보팀	3	3	-
	재정기획팀	1	1	-
	정보화기획관실	4	3	1
	통합망사업단	1	-	1
예방 안전 본부	예방전략팀	-	-	-
	과학방재팀	2	2	-
	민방위팀	4	3	1
	안전문화팀	-	-	-
	인적재난팀	4	3	1
	위험물안전팀	2	2	-
소방 정책 본부	소방기획팀	26	13	13
	소방제도팀	2	2	-
	대응전략팀	7	5	2
	화재조사팀	2	2	-
	U119팀	2	1	1
	과학화기반팀	2	2	-
방재 관리 본부	방재대책팀	2	1	1
	복구지원팀	8	7	1
	재해경감팀	-	-	-
	평가관리팀	4	1	3
	재해보험팀	-	-	-
소속 기관	중앙소방학교	2	2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	-
	중앙119구조대	2	2	-



예방안전 분야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2. 민방위제도	16
3. 민방위 운영 조직체계	18
4. 민방위대 편성·운영	23
5. 민방위 교육·훈련	29
6. 화생방 방호	45
7. 민방위 경보	50
8. 민방위 시설·장비	61
9. 재난상황 종합관리	70
10. 주요 재난 현황	88
11.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경보제	106
12.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108
13. 유·도선 관리	125
14. 안전문화운동 추진	128
15.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140
16. 위험물 안전관리	143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1 훈련 개요

- **훈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 **훈련목적** :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국가위기대응매뉴얼 실효성 검증
- **훈련일시** : '07. 5. 14 ~ 5. 16(2박 3일)
- **훈련참여** : 370기관
 - 참여기관 : 중앙 26, 지자체 246, 공공기관·단체 98
 - 참여규모 : 인원(73,778명), 장비(8,719점)
- **훈련방법**
 - 도상훈련 : 전국단위훈련(중앙, 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 현장훈련 : 지역단위훈련(16개 시·도, 유관기관·단체)
- **훈련범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9개 분야 검증
 - 유형별 재난대책 : 11분야(풍수해, 방사능,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 주 요 재난대책 : 6분야(문화·레저시설, 산불재난 등)
 - 해 외 재난대책 : 2분야(북한방문 국민, 해외관광객 등)

1-2 중점 훈련 내용

- 지역특성화 훈련과 국가차원의 훈련 연계
- 국민 참여 훈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

- 민방위 재난경보(5. 15 민방위훈련)와 연계 실시
- 유관기관, 민간단체·기업의 자율적인 훈련 참여 확대

1-3 주요 도상훈련 메시지 처리 현황

- 훈련메시지 처리 : 101건(태풍 「에위니아」 사례 훈련모형 수립)
 - 자연재난 : 76건(75%)
 - 인적재난 : 16건(16%)
 - 국가기반 : 9건(9%)

2 민방위제도

2-1 민방위의 의의

가. 정 의

민방위라 함은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나. 본 질

○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기구 사용

2-2 민방위제도 도입 배경

○ 안보적 측면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 재해·재난 대응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2-3 민방위대 창설당시와 현행제도 비교

○ 민방위조직의 지속적 확대

- 민방위대 : 84,662대 ⇨ 85,242대(-0.7%)
- 민방위대원 : 3,970천명 ⇨ 4,091대(3%)

○ 민방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발전

- 민방위편성 연령조정 : 17 ~ 50세 ⇨ 20 ~ 40세('07.1.1 시행)
※ 민방위대 편성 방법 : 신고편성 ⇨ 직권 편성
- 민방위 교육시간 단축 : 년 18~30시간
⇨ 편성후 4년간 년 4시간
- 비상소집훈련 축소 : 년 3회 ⇨ 년 1회
- 민방공대피훈련 축소 : 년 12회 ⇨ 3회(불시훈련 1회)
- 민방공경보사이렌
 - 공습경보 : 3분(파상음) ⇨ 3분(파상음)
 - 경계경보 : 3분(평탄음) ⇨ 1분(평탄음)

3 민방위 운영 조직체계

3-1 중앙민방위협의회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기능
 - 민방위기본계획의 심의

- 민방위에 관한 중앙관서간의 업무조정
- 민방위대 조직 대상연령 연장의 심의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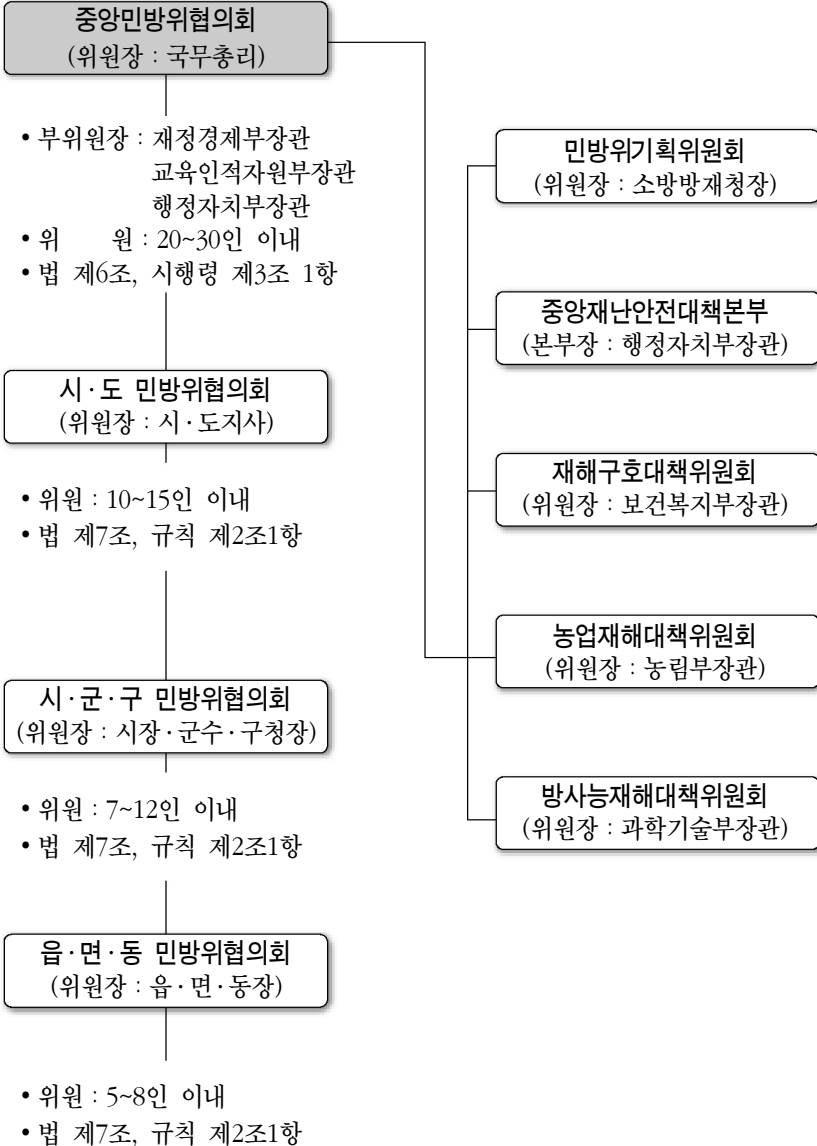
○ 구 성 : 20인 이상 30인 이내(현원 27명)

구 분	위 원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장관
당연직위원 (17명)	외교통상부·국방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장관·국가보훈처장· 국정홍보처장·국가정보원제2차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위촉위원 (6명)	서울대학교총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한국신문협회회장· 한국방송협회회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

※ 간사 : 소방방재청 차장

○ 회 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3-2 민방위협의회



3-3 민방위와 유사한 북한의 조직 현황

조직명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창설연도	1959년(1.14)	1963년	1970년(9.12)
편성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60세의 남자 ○ 17~45세의 남자 중 교도대 미편성자 ○ 17~30세의 미혼녀 중 교도대 미편성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45세의 남자 ○ 17~30세의 미혼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6세 남녀학생 (고등중학교 4~6학년)
인원	572만명	62만명	94만명
연간교육시간	2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직장 교도대 : 320시간 ○ 대학생 교도대 : 160시간 ○ 해상 교도대 : 120시간 	450시간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공방어 ○ 주요시설경계등 후방방어와 재난 복구, 인명구조 등 민방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방군단 통제하에 지역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방지역 방어 ○ 유사시 정규군 보충자원으로 관리

※ 지휘체계

- 교도대 : 전·평시 모두 인민무력성 예하 후방군단이 통제
- 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 평시 : 당 민방위부 관할, 전시 : 인민무력성이 지휘

※ 참고사항

- 민간반항공기구
 - 별도 기구없이 노농적위대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편성, 반항공업무 수행
 - 도단위에 반항공여단, 지역 및 공장지역 소단위에 상설고사총중대·반항공기구대 등을 편성
- 인민경비대 : 사회안전성의 공병부대로 정규군과 유사한 준군사 조직임(민간군사조직이 아님)

3-4 외국의 민방위업무 추진조직 현황

국가명	민방위법 제정	전담기구	민방위대 편성	훈련기관
한 국	1975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20~40세남자	지방 민방위교육장 및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스 웨 덴	1944	국방성 민방위청	16~70세남녀	비상관리처(SEMA)
영 국	1948	내무성 민방위국	지원제	중앙민방위학교 및 기술훈련학교
덴 마 크	1949	내무성 국가비상 기획위원회	16~65세남자	민방위참모대학 및 민방위기술학교
미 국	1951	연방비상 관리청	유·무급요원 (지원제)	재난관리교육원 국립소방학교
이스라엘	1951	국방성 민방위사령부	16~62세남자 17~50세여자	중앙 및 지방훈련소 구조학교
싱가포르	1951	내무성 민방위청	지원제	민방위중앙학교 민방위캠프
스 위 스	1962	연방 민방위청	20~52세남자	연방민방위청 및 지방민방위교육센터
독 일	1965	내무성 민방위청	18~65세남자 (지원제)	연방재난통제학교 및 민방위대학
대 만	미제정	내정부 상정부	16~65세남자 16~35세여자	경정서순교조 및 민방위단

4 민방위대 편성·운영

4-1 민방위대 임무

○ 평상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정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4-2 '07년 민방위대 편성 현황

가. 자원현황

편성 4,091,606 (46.9%)	총자원 : 8,741,522명	제외자 4,649,916 (53.1%)
----------------------------	------------------	-----------------------------

※ 편성대상 : 의무자 20~40세 남자, 지원자 17세 이상 남·여

나. 편성현황

대 별	대 수	대원수	대 원 구 성			
			의무자	41세 이상 대장 등	지원자	여자 대장
계	85,242	4,091,606	3,955,524	47,737	53,979	34,366
통·리 대	75,273	3,554,247	3,474,417	38,678	7,150	34,002
기 술 대	248	21,280	20,252	198	824	6
직 장 대	9,721	516,079	460,855	8,861	46,005	358

다. 제외자 현황

계	군인·군무원	예비군	입 영 대상자	학 생
4,649,916	476,398	2,400,525	1,350,143	122,182
	경찰·소방· 교정직 공무원 등	등록장애인 및 병역6급	심 사 제외자	기 타
	46,598	243,089	428	10,553

※ 기타 : 장기외향선원, 의용소방대원, 공공직업훈련원생, 지방의회 의원 등

라. 규모별 현황

계	30명 이하	31~ 50명	51~ 100명	101~ 300명	301~ 500명	501명 이상
85,242 (100%)	36,021 (42.4%)	19,430 (22.7%)	23,359 (27.4%)	6,029 (7%)	267 (0.3%)	136 (0.2%)

마. 연령별 현황

계	20세 이하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세 이상
4,091,606 (100%)	22,100 (0.5%)	72,713 (1.7%)	172,883 (4.2%)	1,646,896 (40.2%)	2,059,452 (50.6%)	117,562 (2.8%)

※ 20세 미만(지원자 3명), 41세 이상(통·리대장 및 지원자 등 38,103명)

바. 직장민방위대

계	중앙부처 · 지자체 · 학교 등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방위 산업체	공공 조합	사기업
9,721대 (100%)	6,465 (66.5%)	923 (9.5%)	87 (0.9%)	622 (6.4%)	1,624 (16.7%)

사. 민방위지원대

○ 편성개요

- 대 수 : 248대(시·군·구당 1개대 편성)
- 대원수 : 21,280명('07 : 22,836명, 1,556명 감소)

○ 규모별 현황 : 대당 평균 85명('07년 92명)

계	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
248대 (100%)	60대 (24%)	121대 (49%)	67대 (27%)

○ 기술자격 소지자 현황

(단위 : 명)

계	의·약사	간호사	전기·통신	토목·건축	화생방	수송	인명구조	기타기술
21,280	6	-	128	80	27	134	9	20,896

※ 기타 : 위험물, 가스, 중장비운전 등

아. 연도별 민방위대 자원 증·감 현황 ('96 ~ '07)

(단위 : 명)

연도별	대 수		대 원 수		지 원 자
	대 수	증 감	인 원	증 감	
'08	85,242	-2,322	4,091,606	-230,618	53,979
'07	87,564	-1,945	4,322,224	-2,017,521	54,139
'06	89,509	1,471	6,339,745	-111,278	40,573
'05	88,038	-975	6,451,023	14,604	50,923
'04	89,013	-836	6,436,419	197,727	49,731
'03	89,849	221	6,238,692	-42,011	50,880
'02	89,628	-551	6,280,703	-27,428	51,248
'01	90,179	-7,913	6,308,131	-1,197,473	49,218
'00	98,092	-4,214	7,505,604	93,924	47,687
'99	102,306	-4,180	7,411,680	108,424	53,033
'98	106,486	-729	7,303,256	72,310	56,831
'97	107,408	192	7,226,671	179,761	58,044
'96	107,216	1,958	7,046,910	239,041	58,422

4-3 민방위대 동원현황 (자율참여)

가. 연도별 동원현황

(단위 : 대, 천명)

구 분	'96	'97	'98	'99	'00	계
대 수	2,695	18,661	25,829	20,936	20,188	대 수
대원수	120	323	550	388	371	165,332
구 분	'01	'02	'03	'04	'06	'07
대 수	26,610	23,145	10,652	15,429	974	213
대원수	320	572	264	332	14	30
						대원수
						3,284

나. 주요 재난발생시 동원활동

○ '95년도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복구 : 4대 280명(6.29)
- 봄철 가뭄 복구활동 : 4,897대 51천명(2.10~3.27)
-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제거활동 : 336대 3.5천명(7.28~7.30)
- 태풍 제니스 수해 복구 : 6,271대 120천명(8.26~8.31)

○ '96년도

- 강원도 고성군 산불진화 및 복구활동 : 142대 6.2천명(4.24~4.25)
- 경기·강원지역 수해피해 복구 : 2,823대 114천명(7.29~8.14)

○ '97년도

- 전남 신안군 해일피해 복구 : 271대 5.3천명(8.19~8.21)

○ '98년도

- 수해피해복구 : 25,829대 550천명('98.8~10)

○ '99년도

- 집중호우 피해 복구 : 9,821대 146천명('99.7.31~8.12)

○ '00년도

- 강원 동해안 산불진화(울진 포함) : 1,421대 41천명('00.4.1~4.14)
- 태풍 피해복구(사오마이 등 2회) : 2,339대 75천명('00.7~8)

○ '01년도

- 수도권지역 등 제설활동 : 16,388대 158천명(1~2월)
- 집중호우 등 피해복구 : 5,909대 81천명(6~7월)

○ '02년도

- 태풍 “루사”시 수해복구 참여 : 19,598대 498천명(8~9월)
- 수해지역 응급복구 활동 : 3,547대 74천명(7~8월)

○ '03년도

- 태풍 “매미”시 수해복구 참여 : 10,652대 264천명(9~10월)

○ '04년도

- 태풍 “디엔무”, “메기”, 산불 등 : 845대 30천명(3~8월)
- 중부지방 폭설시 응급복구 : 4,584대 302천명(3.5~3.27)

○ '06년도

- 태풍 에위니아 복구 : 672대 9천명(7월)
- 설해 복구참여 : 267대 4,052명
진안 1.1-25, 6(284), 부안 1.1-20, 260(3,480), 남원 2.6-10, 1(288)
- 산불 진화 : 34대 1,071명
순창 3.25-26, 24(600), 군산 4.17 8(421), 순창 5.2, 2(50)
- 강풍 피해복구 : 1대 275명
김제 6.16, 1(275)

○ '07년도

- 태안 기름유출 자원봉사 등 : 213대 30천명

5

민방위 교육·훈련

5-1 민방위 교육운영 개요

가.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소방방재청장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나. 민방위대원 교육

- 1~4년차 대원 : 연간 4시간
 - 안보 및 재난대비,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 교육
- 5년차 이상 대원 : 연 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

민방위교육의 변천

- 교육대상
 - '75~'82 : 20~50세
 - '83~'88 : 20~45세
 - '89~'93 : 20~40세
 - '94~'98 : 편성 5년차까지
 - '99년이후 : 편성 4년차까지
- 교육시간
 - '75창설당시 : 4시간
 - '76 : 29시간
 - '77(최고) : 30시간
 - '78 : 20시간
 - '82~'87 : 연 10시간
 - '88~'03 : 연 8시간
 - '04 : 1~2년차 연 8시간(상반기 각 4시간)
 - 3~4년차 상반기 비상소집훈련1회, 하반기 4시간 교육
 - '06 : 1~4년차 연4시간

5-2 민방위 교육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대상별	계	지역대	직장대	전문요원
'98	상반기	대상 실적 %	2,795,820 2,727,643 (97.6)	2,282,968 2,237,694 (98.1)	398,762 387,368 (97.1)	114,090 102,581 (90.0)
	하반기	대상 실적 %	2,543,346 2,534,056 (99.6)	2,123,004 2,113,863 (99.6)	353,521 353,507 (99.9)	66,821 66,686 (99.8)
'99	상반기	대상 실적 %	1,498,040 1,492,312 (99.6)	1,202,633 1,196,978 (99.5)	212,446 212,416 (99.8)	82,961 82,918 (99.9)
	하반기	대상 실적 %	1,353,099 1,347,650 (99.5)	1,092,164 1,086,799 (99.5)	208,643 208,602 (99.9)	52,292 52,249 (99.9)
'00	상반기	대상 실적 %	1,433,840 1,427,966 (99.6)	1,150,253 1,144,453 (99.5)	201,226 201,202 (99.9)	82,361 82,311 (99.9)
	하반기	대상 실적 %	1,311,413 1,306,638 (99.6)	1,067,177 1,062,442 (99.5)	188,170 188,164 (99.9)	56,066 56,032 (99.9)
'01	상반기	대상 실적 %	1,427,600 1,421,686 (99.6)	1,153,159 1,147,333 (99.5)	195,497 195,464 (99.9)	78,944 78,889 (99.9)
	하반기	대상 실적 %	1,307,625 1,301,877 (99.6)	1,070,213 1,064,515 (99.5)	179,341 179,323 (99.9)	58,071 58,039 (99.9)

연도별 구분		대상별	계	지역대	직장대	전문요원
'02	상반기	대상 실적 %	1,409,426 1,403,824 (99.6)	1,160,350 1,155,013 (99.5)	174,241 174,199 (99.9)	74,655 74,612 (99.9)
		하반기	대상 실적 %	1,290,229 1,284,586 (99.6)	1,063,773 1,058,195 (99.5)	173,118 173,080 (99.9)
'03	상반기	대상 실적 %	1,420,034 1,413,146 (99.6)	1,160,651 1,153,881 (99.4)	187,537 187,476 (99.9)	71,846 71,789 (99.9)
		하반기	대상 실적 %	1,299,661 1,293,760 (99.5)	1,080,999 1,075,176 (99.5)	162,682 162,653 (99.9)
'04	상반기	대상 실적 %	1,459,870 1,453,118 (99.6)	1,220,319 1,213,831 (99.5)	178,918 178,688 (99.9)	60,633 60,599 (99.9)
		하반기	대상 실적 %	1,371,524 1,365,030 (99.5)	1,149,810 1,143,373 (99.5)	169,273 169,244 (99.9)
'05	상반기	대상 실적 %	1,487,205 1,476,236 (99.3)	1,227,247 1,216,780 (99.2)	177,465 177,317 (99.9)	82,493 82,139 (99.6)
		하반기	대상 실적 %	1,377,148 1,365,423 (99.2)	1,147,856 1,136,736 (99.0)	173,847 173,635 (99.9)
'06	상· 하반기	대상 실적 %	1,458,762 1,454,962 (99.7)	1,237,396 1,133,714 (99.7)	164,384 164,328 (99.9)	56,982 56,920 (99.8)
		상· 하반기	대상 실적 %	1,369,651 1,356,313 (99.0)	1,184,685 1,172,130 (98.9)	136,692 136,202 (99.6)

5-3 민방위교육장 현황

- 총 442개소(전용 38, 지정 404)

○ 전용교육장 : 38개소

시·도	교육장명	위 치
서울(1)	태릉교육장	성북구 석관동 1
부산(1)	동래구	동래구 안락2동 159-5
인천(1)	계양구	계양구 효성1동 293-7
광주(2)	동구 서구	동구 서석동 31 서구 금호동 789
대전(5)	동구교육장 중구교육장 서구교육장 유성구교육장 대덕구교육장	동구 신흥동 168 중구 산성동 36-2 서구 갈마2동 343-28 유성구 어은동 109 대덕구 오정동 500
울산(3)	동구교육장 남구교육장 북구교육장	동구 화정동 222 남구 신정2동 689-1 북구 연암동 1004-1

면적(m ²)	수용인원	연간사용일	건립비 (백만원)	건립연도
9,111	1,500	250	510	1986
662	600	120	173	1987
394	280	90	1,220	2000
694	400	212	-	1996
600	464	60	9,152	2000
661	540	180	83	1979
627	550	110	856	1992
1,034	400	200	406	1987
381	500	107	305	1990
779	300	102	450	1991
187	200	110	84	1995
609.4	350	150	299	1987
341.7	350	107	1,000	2001

시·도	교육장명	위치
경기(8)	수원시교육장 성남시교육장 의정부시교육장 안양시교육장 부천시교육장 고양시교육장 안산시교육장 파주시교육장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2 의정부시 의정부2동 525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64-5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2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2 안산시 월피동 445-13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19-2
강원(4)	춘천시교육장 원주시교육장 동해시교육장 태백시교육장	춘천시 옥천동 111 원주시 명륜동 205 동해시 부곡동 388 태백시 황지동 244
충북(1)	청주시교육장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589
충남(2)	논산시교육장 천안시교육장	논산시 지산동 459 천안시 오룡동 179
전북(1)	완주군교육장	완주군 봉동면 은하리1030-1
전남(2)	목포시교육장 나주시교육장	목포시 용당동 1188-2 나주시 송월동 1100
경북(1)	구미시민방위교육장	구미시 사곡동 434-1
경남(6)	창원시민방위교육장 진주시민방위교육장 진해시민방위교육장 양산시민방위교육장 마산시민방위교육장 김해시민방위교육장	창원시 중앙동 103 진주시 신안동 1-1 진해시 풍호동 30-1 양산시 북부동 470-3 마산시 양덕동 477 김해시 구산동 660

면적(㎡)	수용인원	연간사용일	건립비 (백만원)	건립연도
306	460	160	394	1987
268	500	180	1,966	1989
999	300	100	603	1995
495	540	210	1,119	1986
495	418	240	580	1986
1,098	578	218	4,140	1997
574	476	150	5,415	2000
1,207	310	150	1,500	2000
331	350	100	130	1986
331	350	120	35	1985
170	300	100	503	2002
664	2,656	52	144	1988
764	414	100	1,850	1999
287	552	152	1,410	2000
129	300	172	30	1979
778	346	100	1,750	2001
783	300	110	584	1995
165	150	15	-	1980
700	513	109	3,846	2001
335	400	200	418	1985
462	300	100	80	1992. 9
300	250	100	100	2001. 4
244	200	180	1,132	2002.12
438	300	130	50	1985.11
286	500	30	100	2004

5-4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및 편의증진 시책

가. 대원 부담경감

- **교육면제** : 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등

- **교육유예** : 법 제2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4항
 - 신체장애·관혼상제·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자체교육인정** : 동법시행규칙 제34조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국가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중인 자
 - 철도종사·우편집배원, 시내·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 등

나. 교육 편의증진

-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낙도, 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도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단위 : 개소/횟수/명)

현지역	순회 교육								통신(서면) 교육					
	계		도서·낙도		산간·오지		기타		계		도서·낙도		산간·오지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지역	운영실적
	100,955	109	14,468	16	996	10	141	83	13,331	22	935	5	150	17

○ **야간교실, 일요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주말교실 운영

(단위 : 개소/일/명)

합 계			주말교실			야간교실		
지역	운영일수	교육인원	지역	운영일수	교육인원	지역	운영일수	교육인원
114	238	30,680	59	124	17,441	55	114	13,239

5-5 '08년 중앙민방위교육계획

□ 민방위·생활안전 분야

(단위 : 횟수/명)

구분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기간	교육일정	강의실	교육팀	합숙여부
기 본 과 정	총계 19개과정 61기		3,880					
	소계 9개과정 29기		1,130					
	민방위 관리자과정	지자체 4·5급	70	5일	4. 21 ~ 4.25	302	민방위 교육팀	합숙
					10. 6 ~ 10.10	201		
	민방위중견 관리과정	지자체 6급	140	5일	3. 3 ~ 3. 7	303	비합숙	
					5.19 ~ 5.23	201		
					9. 1 ~ 9. 5	201		
					10.13 ~ 10.17	201		
	민방위 실무과정	지자체 7급 이하	240	5일	2.25 ~ 2.29	201	합숙	
					4.28 ~ 5. 2	302		
					5.26 ~ 5.30	201		
					6.30 ~ 7. 4	201		
	민방위대원 교육실무과정	지자체 6급 이하	120	5일	11.24 ~ 11.28	303	민방위 교육팀	비합숙
					3.10 ~ 3.14	201		
					3.17 ~ 3.21	201		
	민방위경보 요원과정	중앙, 시·도경보통제소	80	5일	7. 7 ~ 7.11	201	합숙	
					3.17 ~ 3.21	303		
화생방실무 과정	지자체 6급 이하	80	5일	11.17 ~ 11.21	303	비합숙		
				7.14 ~ 7.18	201			
경보단말운영 과정	시·군·구 담당자	80	3일	10.20 ~ 10.24	201	합숙		
				6. 3 ~ 6. 5	201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과정	지자체 6급 이하	240	3일	9.30 ~ 10. 2	201	비합숙		
				3.26 ~ 3.28	전산교육장			
				4. 2 ~ 4. 4	전산교육장			
				10.29 ~ 10.31	전산교육장			
				11. 5 ~ 11. 7	전산교육장			
민방위의날 훈련실무과정	지자체 6급 이하	80	3일	11.12 ~ 11.14	전산교육장	합숙		
				11.19 ~ 11.21	전산교육장			
				5. 7 ~ 5. 9	302			
				9. 8 ~ 9.10	201			

구분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기간	교육일정	강의실	교육팀	합속여부
민 간 인 과 정	소계 7개과정 19기		750					
	민방위실기장사과정	실기교육강사	80	3일	2.20 ~ 2.22 3. 5 ~ 3. 7	201 302	민방위 교육팀	합 속
	지역민방위 대장과정(Ⅰ)	통·리대장 (태풍·호우지역)	160	2일	4.28 ~ 4.29	303		
					5. 1 ~ 5. 2	303		
					5. 8 ~ 5. 9	303		
					5.15 ~ 5.16	303		
	지역민방위 대장과정(Ⅱ)	통·리대장 (인위재난지역)	120	2일	6. 9 ~ 6.10	201		
					6.12 ~ 6.13	201		
					6.19 ~ 6.20	201		
	지역민방위 대장과정(Ⅲ)	통·리대장 (자연재난지역)	80	2일	6.23 ~ 6.24	201		
6.26 ~ 6.27					201			
여성민방위 대장과정	통·리대장	120	2일	4.10 ~ 4.11	201			
				4.14 ~ 4.15	201			
				4.17 ~ 4.18	201			
직장민방위대과정	직장대간부 및 담당자	160	3일	10.29 ~ 10.31	201			
				11. 5 ~ 11. 7	201			
				11.12 ~ 11.14	201			
				11.26 ~ 11.28	201			
학교안전지도교사과정	교사(초·중등)	30	10일	7.28 ~ 8. 8	201			
생 활 안 전 과 정	소계 3개과정 13기		2,000					
	생활현장안전교육과정	각종 단체, 직장	400	1일	연중수시(4회)			
	생활안전체험과정	각종 단체, 직장	200	1일	연중수시(2회)			
	학교생활안전과정	초, 중, 고 학생	1,400	1일	연중수시(7회)			

5-6 민방위훈련 운영개요

가. 기본방침

○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원칙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4조)

-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실시

나. 민방위훈련 개요 : 연 8회 실시

○ 민방공훈련 : 연 3회(정기 3월, 8월, 11월)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 방재훈련 : 연 5회(4월, 5월, 6월, 9월, 10월)

- 테러,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변천 과정

- '72. 1.15 제1차 “방공소방의 날” 훈련실시(치안본부)
- '75. 7.15 제42차부터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명칭 변경
- '75.12.15 내무부 민방위본부로 이관
- '89. 1.15 민방공훈련 회수 1차 조정(연12회 → 연9회)
※ 민방공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3, 6, 9월(3회)은 비상소집훈련 실시
- '92. 1.15 민방공훈련 회수 대폭 축소(연9회 → 연3회)
- 방재훈련(연6회) 실시, 비상소집훈련 1차 조정(연3회 → 연2회)
- '94. 1.24 비상소집훈련 2차 조정 : 연2회 → 연1회(1회 감축)

- '96. 8.21 불시민방공훈련 도입(을지연습기간중 연1회)
- '97년 전국단위시범훈련 실시(7개 지역)
- '99년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실시(232개소, 연3회)
- '00년 전국단위시범훈련 축소(7회 → 3회),
광역방재훈련 실시(연4회),
지역마을단위민방위훈련 확대(232개소 → 464개소)
- '02. 1.19 시·군·구단위훈련축소(4회 → 2회)
「광역방재훈련」을 「연합방재훈련」으로 명칭 변경
- '03년 지역마을단위훈련(시·군·구, 424개소)
→ 마을단위훈련(시·군, 489개소)
→ 시범지역마을단위훈련(시·군, 495개소)
연합방재훈련(연3회) → 시·도단위시범훈련(연2회) 대체,
전국단위시범훈련(연4회)
- '04년 「재난위험경보발령에 의한 주민대피훈련」 도입(5월, 시·
군·구)
마을단위훈련(시범마을 495개소)
- '05년 방재훈련 횟수 조정(연6회 → 연5회)
- 전국단위훈련(연4회 → 3회), 시·도단위훈련(연2회 → 연1회)
- 시·군·구단위훈련(구단위 4회 → 3회),
마을단위훈련(연3회 495개소 → 연2회 165개소)
- '07년 민방공대피훈련 시기조정(4월→3월/10월→11월)
전국단위민방위시범훈련(연3회)을
민방위사태대응종합훈련(연1회)으로 시·도 윤번제 실시
시·도단위시범훈련(연1회)과 시·군(2회)·구(3회)단위
훈련을 시·도, 시·군·구 훈련을 통합 실시(연2회)

5-7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분 야	세 부 훈련내용	회수	시기	주요 훈련 중심
민방공 훈련	정기대피훈련	2	3월, 11월	○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훈련
	불시대피훈련 (을지연습 연계)	1	8월	○ 전시 국민행동요령 습득
방재 훈련	민방위사태 대응종합훈련	1	9월	○ 민방위대피 훈련 - 비상차량운행, 시범가로 지정 - 지역별·직장별 대피소 교육 실시 -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화생방시 국민행동요령 ○ 방재훈련 - 가스·공업방재훈련, 항만·공단방재훈련 등 ○ 민방위시설·장비전시 등
	시·도, 시·군·구 통합훈련	연2회	4월	○ 방재 및 재난관련부서와 연계실시 - 네트워크 훈련 및 생활안전훈련강화
	마을 단위훈련	2	방재 훈련 월중	○ 지역별 자율훈련으로 전환 (연1회) - 재난취약지역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연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지도 ○ 대피 및 이재민구호에 중점
	직 장 단위훈련	1	자율 선정	○ 직장단위별 위해요소 선정 ○ 직장자체 방호훈련 실시

5-8 월별 민방위 훈련계획

월별	일자	훈련분야	중점훈련 내용
3월	15일 (목)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 방사능대비 대피훈련
4월	16일 (월)	시·도, 시·군·구단위 재난대비훈련	○ 방재 및 재난관리부서와 연계 -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안전훈련
5월	15일 (화)	전국단위 재난대비훈련	○ '0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6월	15일 (금)	시·군·구단위 재난대비훈련 (또는마을단위)	○ 방재 및 재난관리부서와 연계, 풍수해대비 훈련
8월	불시	불시 대피훈련	○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9월	14일 (금)	민방위사태 대응종합훈련	○ 민방위대피 훈련 - 비상차량운행, 시범가로 지정 - 지역별·직장별 대피소 교육 실시 -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화생방시 국민행동요령 ○ 방재훈련 - 가스·공업방재훈련, 항만·공단 방재훈련 등 ○ 민방위시설·장비전시 등
10월	15일 (월)	시·군·구단위 재난대비훈련 (또는마을단위)	○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연계, 재난대응 능력 배양훈련
11월	15일 (목)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 화학전대비 대피훈련

※ 방재훈련의 경우 월별중점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시·군·구, 마을단위 지역여건에 맞게 훈련
종목을 자율조정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CPX)시 실제훈련에 참여한 시·도 및 시·군·구는 연간 방재훈련계획에 의거
민방위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5-9 '07 민방위훈련 실시 현황

가. 훈련 총괄

☞ 훈련기간 : 3월 ~ 11월

훈련종목		참여 시·군·구	훈련횟수	비고
계		479	1,009	-
민방위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 전국 공통 2회(4월, 10월) • 불시 - 서울지역 1회(8월) 		
방재 훈련	소 계	476	1,006	-
	전국 단위 시범훈련	3	3	-
	시·도 단위 시범훈련	15	24	-
	시·군·구 단위 훈련	229	599	-
	마을 단위 훈련	229	380	-

나. 민방공대피훈련 통제요원

(단위 : 명)

구분	계	민방위 대원	공무원	소방	경찰	유도요원	주민 등
계	371,355	85,214	71,926	6,354	13,494	92,581	101,786

6

화생방 방호

6-1 화생방 개요

가. 목 표

- 화생방전 및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국민 방호역량 강화
- 방사능, 유독성가스 누출사고로부터 주민안전 보호

나. 업무분야

- 화생방 방호계획의 수립·시행
 - 화생방 장비보급 및 관리지도
 - 화생방교육·훈련·홍보계획 수립 지도
 - 화생방 방호 관련제도 연구·발전
 - 기타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
- ※ 총무2종 사태시 「화생방과」로 개편하기 위한 태세유지

다. 유관부처별 업무

- 보건복지부 : 생물학전, 전염병 예방 및 구호대책
- 과학기술부 : 방사능방호대책, 원전시설 내부 안전대책
- 산업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
- 환 경 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
- 국 방 부 : 화생방 사태수습 지원

※ 소방방재청 : 주민보호대책, 유관부처 협조·조정(행정자치부)

6-2 화생방분대 편성·운영

가. 화생방분대 편성

○ 화생방재난 취약지역(수도권·접적지역, 원전·화학공단, 주요군사지역, 대도시지역 등)은 확대편성, 농어촌·산간지역은 규모축소

○ 민방위대별 편성기준

- 기술지원대
 - 시·군·구단위로 1개분대 이상 편성
 - 재난취약지역은 2개분대 이상 편성
- 지역민방위대
 - 시·구단위 및 접적지·수도권지역 군단위로 읍·면·동별 20개 통당 1개분대 편성
 - ※ 일반 군단위 지역은 편성 제외
 - 재난취약지역은 10개 통·리당 1개분대 이상 편성
- 직장민방위대
 - 대원수의 10%를 화생방분대로 편성
 - 재난취약시설은 대원수의 20% 이상을 화생방분대로 편성

○ 편성현황

구 분	계	기술지원대	지 역 대	직 장 대
분 대 수	18,271대	221	12,783	5,267
대 원 수	81,486명	2,804	28,824	49,858

6-3 화생방 전담조직 및 공무원 배치 현황

가. 화생방전담조직 운영

- 행정자치부('95. 10. 19), 서울시('83. 1월)
- 원전지역 : 부산 기장, 전남 영광, 경북 경주·울진
- 화학공단지역 : 울산 남구·울주군, 전남 여수, 충남 서산

나. 시·도별 배치현황

시·도별	인원	인 가 지 역
계	118명	소방방재청(2), 16개 시·도(27), 64개 시·군·구(89)
소방방재청	2	민방위과2
서울	55	시 본청 10, 구 25(구청당 1~3명씩 45명)
부산	3	시 본청 1, 원전지역(기장 2)
대구	1	시 본청 1
인천	4	시 본청 1, 접적지역(중구 1, 강화 1, 용진 1)
광주	1	시 본청 1
대전	1	시 본청 1
울산	4	시 본청 2, 화학공단(남구 1, 울주 1)
경기	17	도 본청 2, 수도권(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남양주, 평택), 접적지역(동두천, 파주, 김포, 양주, 연천, 포천)
강원	8	도 본청 1, 속초, 동해, 접적지(화천, 양구, 인제, 고성, 철원)
충북	1	도 본청 1
충남	2	도 본청 1, 화학공단(서산 1)
전북	2	도 본청 1, 익산 1
전남	5	도 본청 1, 화학공단(여수 2), 원전(영광 2)
경북	6	도 본청 1, 구미 1, 원전(경주 2, 울진 2)
경남	5	도 본청 1, 마산 1, 창원1, 진주 1, 양산 1
제주	1	도 본청 1

6-4 화재방 방호장비·물자 보급 현황

가. 보급개요

○ 보급장비 및 기준

- 방독면 : 전 민방위대원당 1개, 화재방취약지역주민당 1개, 행정기관정원 1인당 1개
- 분대장비
 - 보호의(대원당 1개), 해독제(대원당 3개), 피부해독제(대원당 1개), 탐지지(분대당 1개), 오염표지판 6

○ 보급기간(대상)

- 1차 보급계획 : '86 ~ '90(직장대, 기술지원대)
- 2차 보급계획 : '92 ~ '96(취약지 지역민방위대)
- 방독면보급10개년계획 : '98 ~ 2007(민방위대, 취약지)

○ 향후 보급계획(자율확보)

-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 자체예산
- 원전·화학공단 주변지역 : 원전기금 및 사업주 책임하 보급
- 일 반 국 민 : 자비부담

○ 화재방 장비·물자별 수명년한

장 비 명	방 독 면		탐지장비	해 독 제	피 부 제독제
	안면부	정화통			
수명년한	10년	5년	5년	5년	5년

나. 보급현황

방독면

○ 총괄

보급대상	보급현황	보급율
523만명	343만개	65%

※ 보급대상 523만명은 민방위대원 409만명 + 취약지역(원전, 화학공단) 114만명임

○ 민방위대별

구분	계획	실적	%
계	409만개	343만개	84
지역민방위대	355	271	76
기술지원대	2	2	100
직장민방위대	51	70	135

분대장비

구분	계획	실적	%
계	759,415점	321,419	42
지역민방위대	272,874	109,529	40
기술지원대	26,558	19,116	72
직장민방위대	459,983	192,774	42

7

민방위 경보

7-1 민방위 경보 연혁

- 1951. 1. : 계엄사령부에 민방공총본부 창설
- 1951. 1. 26 : 내무부 치안국에서 업무인수
- 1975. 8. 26 : 내무부 직제개정으로 민방위본부에서
경보업무 관장
 - ※ 공·민영 방송망을 이용한 경보방송망 구성('75. 11. 15)
- 1987~1992 : 민방공경보 자동화사업(161억원)
- 1996~1997 : 민방위경보 확충사업 추진
 - 총 667대(신설 108, 교체 559)
- 1997. 10~ 2001. 12 :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468억원)
 - 용역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97. 10 ~ '99. 11)
 - 전국확장 1사업 추진('99. 12 ~ '00. 11)
 - 전국확장 2사업 추진('00. 10 ~ '01. 8)
 - 전국확장 3사업 추진('01. 5 ~ '01. 12)
- 2002. 5 ~ 2006. 12 :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173개소)
- 2006. 1 ~ 2006. 12 :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사업비 : 44.4억원(국비 22.2, 지방비 22.2)
 - 사업량 : 경보장비 96식(통계 15, 단말 81)

7-2 민방위 경보의 발령근거 및 종류

가. 경보발령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19개 부처 공동예규)

나. 민방위경보의 종류

- **민방공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재난경보** : 홍수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대피 등이 필요할 때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로 구분

7-3 민방위 경보의 전달체계

가. 민방공경보

-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경보발령
 - 공군 구성군사령관이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경보의 종류, 발령 시각, 발령지역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비디오폰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
 - 중앙통제소장(상황실장)은 시·도통제소, 중앙방송사 및 정부주요기관에 설치된 경보장비를 이용하여 경보전달

- 시·도 민방위부서(경보통제소)에서는 시·군·구(경보단말기)와 지방경찰청, 관내 방송국 등 관계기관에 경보전달
 - 중앙방송사에서는 소속 지방방송국 및 계열방송사에 경보전달
 - 주요기관에서는 청내 각부서 및 산하기관에 경보전파
- 일부지역에 적의 화생방공격이나 오염예상시 화생방경보 발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화생방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은 경우 화생방경보 발령

나. 재난경보

-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령하는 경우
- 당해 시·군·구에 한정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
- 시·도지사(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발령하는 경우
-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
-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 및 원자력본부장이 발령하는 경우
-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는 국토관리청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가,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는 원자력본부장이 발령

7-5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경보종류 전달장비	민방공 경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라디오	경계경보 발령	공습경보 발령	화생방 경보 발령	경계·공습· 화생방 경보해제
텔레비전	경계경보 문자방송	공습경보 문자방송	화생방 경보 문자방송	경계·공습· 화생방 경보해제 문자방송
사이렌 (민방위 경보단말)	평탄음 ————— (1분간 취명)	파상음 ~~~~ (3분간 취명)	화생방 경보방송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경보종류 전달장비	재난 경보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라 디 오	재난 경계경보 발령	재난 위험경보 발령	재난경계· 재난위험 경보해제
텔레비전	재난경계 경보 문자방송	재난위험 경보 문자방송	재난경보 해제 문자방송
사이렌 (민방위 경보단말)	재난경계 경보방송	평탄음 ----- (5초간격 15초씩 10회취명)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반복방송	반복방송	

7-6 민방위 경보 현황 (정원, 장비 등)

가. 민방위경보시설 장비 현황

구 분	계	통 장 제 비	위 장 성 비	주 기 요 관	방 송 장 비	분 배 장 비	지 진 해 일 통 제 장 비	사 이 렌
총 계	1,632	34	2	32	52	6	24	1,482
중 앙	31	2	1	21	7	-	-	-
서 울	159	2	-	-	-	-	-	157
부 산	125	2	-	1	3	-	1	118
대 구	59	2	1	-	3	-	-	53
인 천	59	2	-	2	1	-	-	54
광 주	46	2	-	1	3	-	-	40
대 전	45	2	-	1	3	-	-	39
울 산	56	2	-	-	2	-	1	51
경 기	182	2	-	6	1	1	-	172
강 원	228	2	-	-	7	1	7	211
충 북	84	2	-	-	4	-	-	78
충 남	57	2	-	-	-	1	-	54
전 북	58	2	-	-	2	-	-	54
전 남	98	2	-	-	4	1	4	87
경 북	182	2	-	-	6	1	6	167
경 남	122	2	-	-	4	1	4	111
제 주	41	2	-	-	2	-	1	36

나. 경보사이렌 설치장소별 현황

구 분	계	읍	면	동
계	1,482	278	288	916
서울	157	-	-	157
부산	118	6	8	104
대구	53	3	4	46
인천	54	1	4	49
광주	40	-	-	40
대전	39	-	-	39
울산	51	7	9	35
경기	172	25	4	143
강원	211	40	110	61
충북	78	27	25	26
충남	54	28	5	21
전북	54	14	-	40
전남	87	37	18	32
경북	167	55	62	50
경남	111	25	33	53
제주	36	10	6	20

다. 민방위경보통제소 정원현황 (분배소 포함)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9급	기능직
계	342	1	21	66	86	64	104
중 앙	19	1	3	7	1	-	7
서 울	26	-	1	5	9	5	6
부 산	15	-	3	5	4	1	2
대 구	11	-	1	3	5	2	-
인 천	12	-	1	4	6	-	1
광 주	11	-	1	3	3	2	2
대 전	10	-	1	4	3	-	2
울 산	12	-	1	2	3	3	3
경 기	28	-	1	3	2	4	18
강 원	30	-	1	5	8	7	9
충 북	24	-	1	4	4	10	5
충 남	24	-	1	3	7	5	8
전 북	15	-	1	5	1	3	5
전 남	22	-	1	4	10	2	5
경 북	42	-	1	3	9	13	16
경 남	32	-	1	3	9	6	13
제 주	9	-	1	3	2	1	2

라. 민방공경보 운영사례

일 시	경보발령사유	발령지역 (발령시각)	경보 종류	착 록 지
'83. 2.25	북한 MIG-19 전투기 귀순 (조종사 : 이용평)	서울, 인천, 경기 (10 : 55 ~ 11 : 45)	경계경보	성남비행장
'83. 5. 5	중국 민항기 불시착 (조종사 : 탁장인)	서울, 인천, 경기 (14 : 00 ~ 14 : 07)	경계경보	춘천비행장
'83. 8. 7	중국 MIG-21 전투기 귀순 (조종사 : 손천근)	서울, 인천, 경기 인천, 경기 (15 : 19 ~ 15 : 36)	경계경보 공습경보	성남비행장
'86. 2.21	중국 MIG-19 전투기 귀순 (조종사 : 진보충)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4 : 26 ~ 14 : 40)	경계경보	수원비행장
'96. 5.23	북한 MIG-19 전투기 귀순 (조종사 : 이철수)	서울, 인천, 경기 (10 : 55 ~ 11 : 12)	경계경보	수원비행장

마. 재난정보 및 사전안내 방송 운영사례

년도	발령지역	재난정보			사전안내방송	
		취명	방송	가청인원	재난방송	기타홍보
총계	80시·군 782대 898회	267	261	2,117,857	58	312
'90	경기 고양군	3	-	45,000	-	-
'91	경북 영일군	1	-	18,000	-	-
'96	경기도 연천 등 3개 시·군	7	-	85,000	-	-
'98	경기도 파주 등 9개 시·군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밀양	57	-	699,000	-	-
'99	경기도 의정부 등 5개 시·군	36	-	231,000	-	-
'00	강원도 고성 등 4개 시·군 (고성 산불)	55	-	142,000	-	-
'02	강원도 태백 등 7개 시·군 경북 청송 등 4개 시·군 충북 영동, 전북 무주, 전남 고흥(태풍 루사)	25	63	455,000	-	-
'03	강원도 춘천 등 5개 시·군 경기 연천, 경남 사천, 경북 김천 등 2개 시· 군(태풍 매미)	50	65	126,398	-	-
'04	강원도 속초 등 4개 시·군 경북 상주, 김천, 충북 단양, 영동, 충남 서천, 대구시	8	69	176,198	-	-
'05	강원 양양(양양 산불)	1	3	1,410	-	-
'06	경기 파주, 여주군, 강원 정선 원주, 영월, 충북 단양 (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	24	61	138,851	-	-
'07	호우(30), 태풍'우사기'(4회), 해일관련(4회), 기타홍보방송 등	-	-	-	58	312

※ 재난정보는 '90년부터, 사전안내방송은 '07년부터 통계관리

8

민방위 시설·장비

8-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가. 시설개요

□ 정부지원 시설

○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제15조(민방위 준비명령), 민방위 기본계획

○ 대상지역 :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의 인구 밀집지역

○ 단위시설 규모 변화

- '76~'79년까지는 소규모 시설(10톤/일)
- '80년 이후 시설의 기계화 및 대형화(200톤 이상/일)
'94년 이후부터는 100톤/일 수준으로 조정

○ 재 원 : 국비 30%, 지방비 70%

□ 민간시설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1항),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35조)

나. 확보현황 및 계획

□ 총소요 : 1,112천톤

(읍 이상 도시지역거주 44,478천명 대상)

○ **확 보** : 5,750개소, 1,117천톤(100,5%)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용지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개 소	5,750	1,314	458	880	3,098
규 모	1,117	292	93	184	548

○ **용도별**

(단위 : 천톤)

구 분	소 요 량	확보량	
		개 소	확보량
계	1,112	5,750	1,117
음 용 수	400	2,945	570
생활용수	712	2,805	547

□ **소요량 산정 기준**

○ **1인 1일 25 l**

- 식수 9 l, 생활용수 16 l (세탁, 청소 등)

□ **2008 정부지원 사업계획**

○ **비상급수시설 확충**

- 대 상 : 6개 시·도(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 사업비 : 390백만원(국비 117, 지방비 273)

○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 대 상 : 8개 시·도(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 사업비 : 240백만원(국비 72, 지방비 168)

8-2 민방위 대피시설

가. 시설개요

□ 정부지원 시설

○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조치), 제15조(민방위준비명령), 민방위 기본계획

○ 대상지역 : 인구 밀집지역 및 대공취약지역

○ 단위시설 규모 변화

- '76 ~ '79년까지는 소규모로 건설(10평 내외)
- '80년 이후 시설의 대형화(100평 이상)
- '82년 이후 200평 이상 구축
- '98년 이후 신규설치사업 지원중단

○ 재 원 : 국비 30%, 지방비 70%

□ 민간시설

○ 대 상 : 건축법 제53조에 의거 설치된 시설 중 대피 기능을 갖춘 지하층(바닥면적 60㎡ 이상)

나. 확보현황

□ **총소요** : 36,694천㎡

(읍 이상 도시지역거주 44,478천명 대상, 4인 3.3㎡ 기준)

○ **확 보** : 28,489개소 56,579천㎡(확보율 154.2%)

구 분	계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용 지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개 소	28,489	284	765	3,406	24,034
규 모 (천㎡)	56,579	155	462	6,260	49,702

○ 공공용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인소유 60㎡ 이상의 지하층을 공공용 대피시설로 지정 가능(개인소유주택 제외)

○ 방호 능력별(등급) 현황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하
개 소	28,489	11	1,663	19,142	7,673
규 모 (천㎡)	56,579	12	9,807	39,827	6,933

다. 1등급 비상대피시설 현황

시·도	규모 (㎡)	준공 년도	시 설 위 치	비 고
계(11)	12,218			
부산(2)	600 683	2000 2000	강서구 대저동(강서구청) 기장군 기장읍(기장군청)	방폭문, 기밀문, 가스여과장치, 제독실구비
광주(1)	1,155	2003	동구 서석동(동구청)	
대전(1)	1,980	2001	서구 둔산동(대전시청)	
울산(1)	1,108	2000	북구 연암동(북구청)	
경기(2)	990 765	2000 2000	양주시 남방동(양주시청) 화성시 남양동(화성시청)	
충남(1)	660	2001	논산시 지산동(종합복지센터)	
전북(1)	2,257	2005	전주시 완산구(전북도청)	
전남(1)	1,155	2005	무안군 삼향면(전남도청)	
경남(1)	805	2000	양산시(공설운동장)	

라. 등급별 지정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화생방방호시설을 완비한 지하시설 (지휘용시설)	고층건물의 지하2층 이하, 지하철, 터널 (다중집합장소)	자하상가 등 양호한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차·보도, 다층건축물의 지하층 (다중집합 장소)	단독주택 등 소규모건물 지하층

8-3 민방위 장비

가. 장비확보 상황

□ 장비개요

○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
- 민방위기본계획

□ 장비확보 방향

- 재난 발생시 기본적인 초동수습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로서 일반민 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
- 민방위대원수와 읍·면·동의 민방위대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물량의 장비 확보

민방위장비 : 13종

- | | | |
|-----------|---------|----------------|
| ○ 전자메가폰 | ○ 지휘용앰프 | ○ 응급처치세트(의료기구) |
| ○ 환자용 들 것 | ○ 로프 | ○ 이동식발전기 |
| ○ 휴대용조명등 | ○ 교통신호봉 | ○ 교통차단표시판 |
| ○ 기계톱 | ○ 구명환 | ○ 구명조끼 |
| ○ 로프총세트 | | |

※ 구명환·구명의·로프총 세트는 침수, 산사태, 고립위험지구만 확보

※ 기계톱은 읍면 지역만 확보

나. 장비 비축물량 산정기준

민방위대원수별 비축물량 산정표

장 비 명	민방위대원수별 기준						
	100명 미만	100 ~ 300	300 ~ 500	500 ~ 1,000	1,000 ~ 3,000	3,000 ~ 5,000	5,000명 초과
전자메가폰	2	4	6	8	10	13	15
지휘용앰프	1	1	1	1	1	2	2
응급처치세트	2	3	4	5	6	8	10
환자용 들것	2	3	4	5	6	8	10
로프	1	1	2	2	3	3	5
이동식발전기	1	1	2	2	2	2	3
휴대용조명등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2	4	6	8	10	12	14
교통차단표시판	2	3	4	5	6	8	10
기계톱	1	1	2	2	3	3	3
구명환	6	8	10	12	14	17	20
구명조끼	6	8	10	12	14	17	20
로프총세트	1	1	1	1	1	2	2

민방위단위대별 비축물량 산정표

장 비 명	읍·면·동 민방위대수별 기준
전자메가폰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지휘용앰프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
응급처치세트	민방위 단위대 4개당 1개
환자용 들것	민방위 단위대 7개당 1개
로프	민방위 단위대 15개당 1개
이동식발전기	민방위 단위대 40개당 1개
휴대용조명등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교통신호봉	민방위 단위대 5개당 1개
교통차단표시판	민방위 단위대 10개당 1개
기계톱	민방위 단위대 20개당 1개
구명환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구명조끼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로프총세트	민방위 단위대 70개당 1개

다. 장비별 확보 현황

장비명	확보량			
	계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합계	317,168	154,718	147,154	15,296
전자메가폰	47,761	29,405	16,481	1,875
지휘용앰프	13,240	6,844	5,913	483
응급처치세트	35,064	20,225	13,513	1,326
환자용 들것	26,042	13,664	11,149	1,229
로프	21,897	9,602	10,206	2,089
이동식발전기	6,694	2,765	3,288	641
휴대용조명등	84,713	29,115	53,521	2,077
교통신호봉	27,351	15,081	10,806	1,464
교통차단표시판	10,354	2,774	7,228	352
기계톱	16,359	9,755	4,999	1,605
구명환	22,501	13,245	7,476	1,780
구명조끼	2,465	1,017	1,144	304
로프총세트	2,727	1,226	1,430	71

9

재난상황 종합관리

9-1 재난관리행정 연혁

재난관리기구 발족배경

- 각종 재난의 대형화, 빈발화로 국민생활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와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 증폭
 - ※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가 직접적인 계기
- 재난을 사전적·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민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 관련 투자증대 등 각종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 '93. 7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총리 훈령

○ '95. 7 「재난관리법」 제정

○ '95. 10 재난관리기구 신설·보강

- 국무총리실 : 행정조정실내에 「안전관리심의관실」 신설
- 내 무 부 : 재난관리국 신설 및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
- 통상산업부 : 「가스안전과」 신설
- 건설교통부 : 「건설안전심의관실(2개과)」 신설
 - ※ 시·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시·군·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설치('9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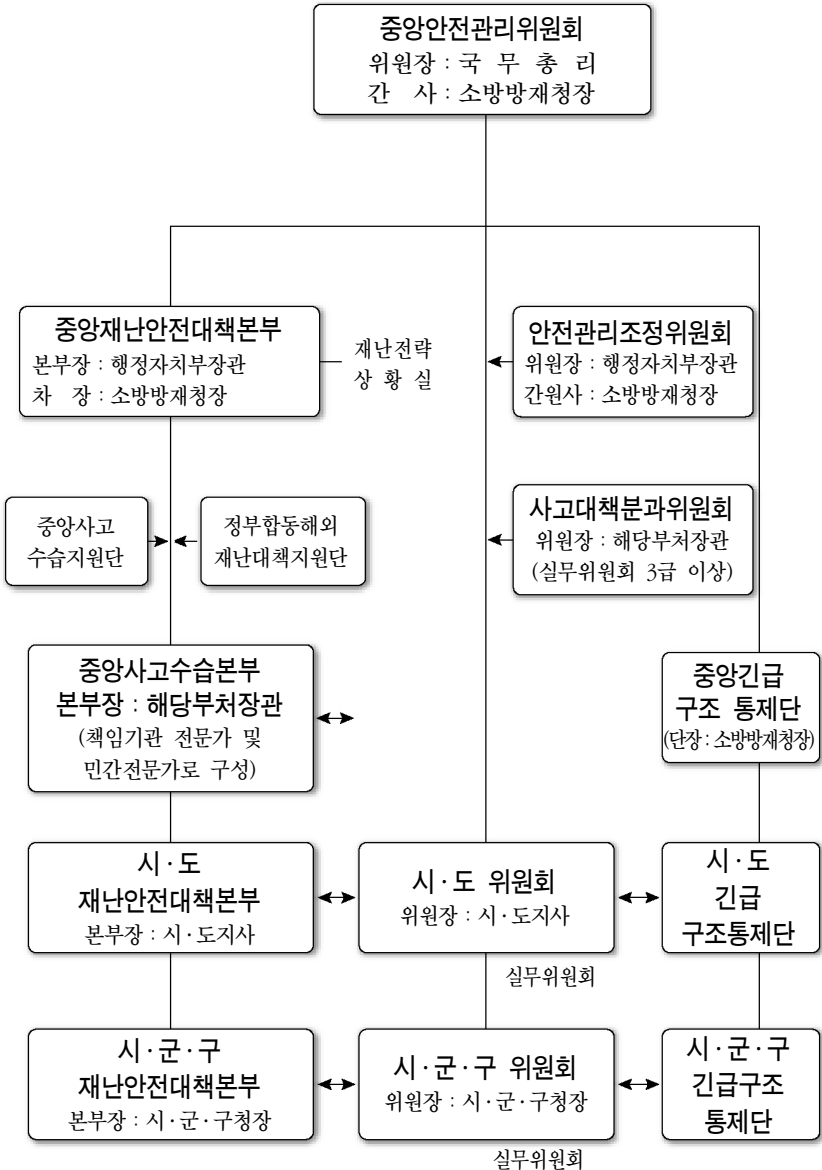
○ '97. 8 재난관리법 1차 개정(전문)

○ '98. 2 재난관리기구 축소·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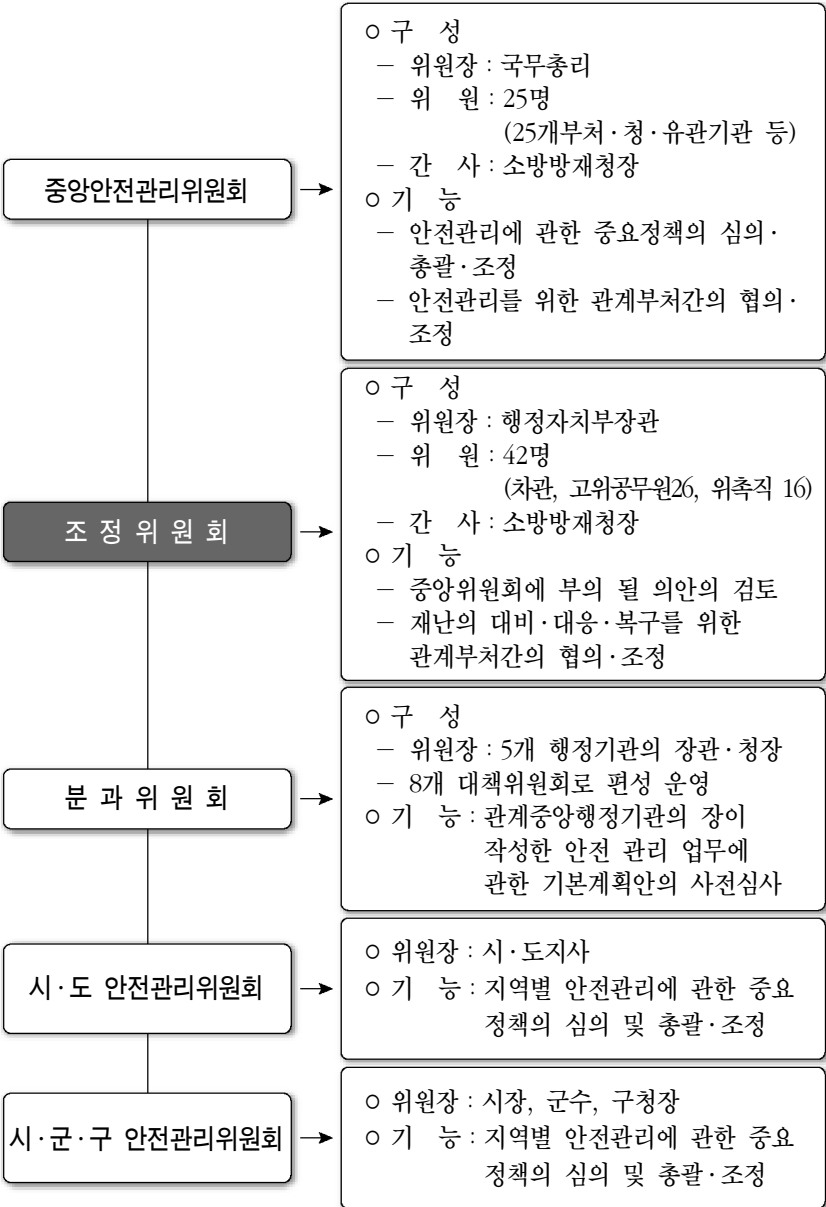
- 국무조정실 「안전관리심의관실」 기능 「자치행정심의관실」로 이관
-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조정
 - ※ 시·도 재난관리과(재난관리담당 등), 시·군·구 재난관리담당(담당자) 축소·조정('98. 9~11)

- '99. 1. 29 재난관리법 2차 개정
- '99. 5. 24 재난관리기구 축소·조정
 - －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 통합 「민방위방재국」
 - －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과와 안전지도과 통합 「재난관리과」
- '00. 6. 7 재난관리기구 조정
 - －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조정
- '04. 6. 1 소방방재청 개칭
- '05. 9. 1 재난관리기구 조정
 - －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을 「재난예방본부」로 조정
- '06. 6. 30 3개 본부 명칭조정
 - －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를 「예방안전본부」로 조정

9-2 재난관리 체계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
 차 장 : 소방방재청장

재난전략상황실

- 구 성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 25개 부처
 ·청의 장이 추천한 3급 공무원 및
 본부장의 위촉을 받는 자
- 기 능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
 ·단장은 중앙본부장이 지명

※ 해외재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

중앙수습지원단

※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

※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하에 설치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군·구청장

종합상황실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도지사

종합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

가.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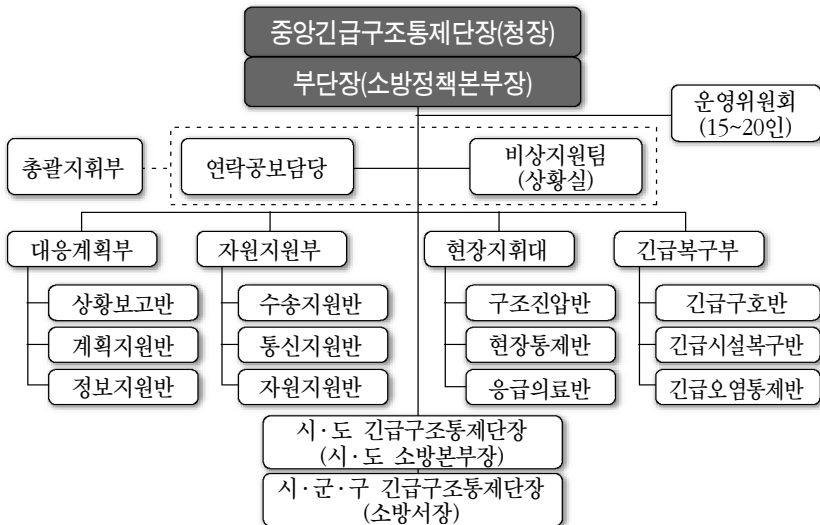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 내지 제52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62조
- ※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정중)

나. 구성 및 기능 (법 제49조, 령 제54조~55조)

□ 구 성

- 단 장 : 청장
- 부단장 : 소방정책본부장
- 부 서 : 4부 1대

□ 조 직 (規則)



9-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운영 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제1차	'95. 7.18	○ 특별재해지역(삼풍백화점) 선포 건의(안) 심의
제2차	'95. 7.28	○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69억49백만원) ○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대책(서울시) ○ 씨프린스호 현장확인 결과보고(내무부)
제3차	'95. 8.17	○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마무리 대책(건설교통부) ○ 씨프린스호 사고수습 상황 및 마무리 대책(내무부) ○ 내무부 안전관리체계 보강 방안(내무부) ○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행정조정실) ○ 해양오염방지체계 개선방안(환경부)
제4차	'96. 2.13	○ '96 재난관리계획 심의(내무·통산·노동·건교부) ○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정책 개선방안(행정조정실) ○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건교부)
제5차	'96. 2.22 (서면)	○ 재난관리법시행령 개정(안)(내무부) ○ 특별재해지역 재난수습관련 경비지원(안)(건교부)
제6차	'96. 6.26 (서면)	○ 고성산불 피해수습을 위한 경비지원(농림수산부)
제7차	'96. 7. 2	○ 산불방지 종합대책(안)(농림수산부) ○ 상반기 재난관리업무 평가와 하반기 대책 (내무·건교·통산·노동·정통·교육부)

차 수	일 자	안 건
제8차	'97.12.26	○ 해외재난관리에 관한 규정(내무부)
제9차	'98.10. 2 (서면)	○ '99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0차	'99.11. 4 (서면)	○ '00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1차	'00. 4.14	○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 (농림부)
제12차	'00. 5. 6	○ 동해안 특별재난지역피해복구 지원(농림부)
제13차	'00.12. 2	○ '01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4차	'01.10.31 (서면)	○ '02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5차	'02. 9.30 (서면)	○ '03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6차	'03. 2.19	○ 대구지하철사고 수습상황(건교부) ○ 대구지하철 사고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 심의
제17차	'03. 8.19	○ 대구지하철 사고수습을 위한 중앙예산 지원계획 심의(건교부)
제18차	'03.12. 5	○ '04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를 통합 ⇒ 중앙안전관리위원회('04.6.1)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제1차	'04. 9. 2 (서면)	○ 「중앙안전관리운영규정 및 안전관리현장」 심의
제2차	'04.10.28 (서면)	○ 국회 「특별재난지역지정 건의(안)」 심의
제3차	'04.11.24 (서면)	○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제4차	'05. 4. 4	○ '05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제5차	'05. 4. 5	○ 강원도 양양·고성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6차	'05. 4. 7 (서면)	○ 강원도 양양군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7차	'05. 7.22	○ '05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보고
제8차	'05.12.29 (서면)	○ 폭설·강풍·풍랑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9차	'06. 3.21 (서면)	○ '06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 '0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결과 보고
제10차	'06. 7.18	○ 강원도 인제군, 경남 진주시 등 18개 시·군 태풍·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차 수	일 자	안 건
제11차	'06. 8. 8 (서면)	○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영월군 등 21개 시·군 태풍·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2차	'06.11. 8 (서면)	○ '06.10.22~10.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 피해가 심한 강원도 6개 시·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3차	'07.5.7 5. 7 (서면)	○ '06년도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결과 보고
제14차	'07.5.14 5.14 (대면)	○ 200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재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제15차	'07.9.6 (9.11) (서면)	○ '07.8.4~8.15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6차	'07.9.17 9.17 (서면)	○ 국가기반시설 지정(안) 심의(가결)
제17차	'07.9.18 (9.20) (서면)	○ '07.9.14~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가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8차	'07.10.2 (10.8) (서면)	○ '07.9.14~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가 극심한 전남 고흥군·보성군·화순군·완도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제19차	'07.12.10 (12.11) (서면)	○ '07.12.7 충남 태안군 해상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안)」 사후승인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 재난사태 선포 : 1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9-4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

나. 기 관

- 중앙행정기관 :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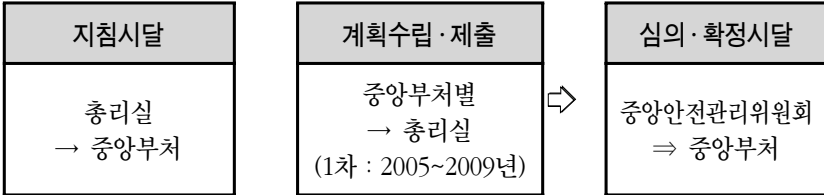
재난관리책임기관

- | | |
|--------------|-------------------|
| 1. 재외공관 |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3. 국립식물검역소 | 4. 지방체신청 |
| 5. 국립검역소 | 6.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 7. 지방노동청 | 8. 지방항공청 |
| 9. 지방국토관리청 | 10. 홍수통제소 |
| 11. 지방해양수산청 | 12. 지방산림청 |
| 13. 시·도의 교육청 | 14. 한국철도공사 |
| 15. 지하철공사 | 16. 도시철도공사 |
| 17. 한국농촌공사 | 18. 농수산물유통공사 |
| 19. 한국가스공사 | 20. 한국가스안전공사 |
| 21. 한국전기안전공사 | 22. 한국전력공사 |
| 23. 한국환경자원공사 |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25. 대한주택공사 | 26. 한국수자원공사 |
| 27. 한국도로공사 | 28. 한국토지공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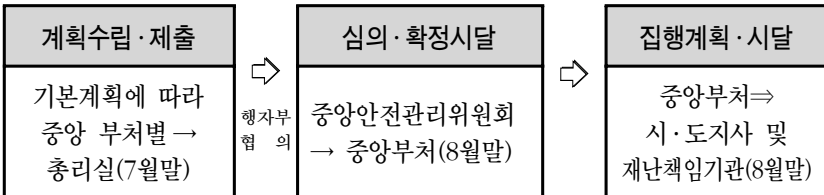
- | | |
|---------------|----------------|
| 29. 인천국제공항공사 | 30. 한국공항공사 |
| 31. 항만공사 | 32. 한국방송공사 |
| 33. 국립공원관리공단 | 34. 한국산업안전공단 |
| 35. 한국산업단지공단 | 36. 부산교통공단 |
| 37. 한국철도시설공단 |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 39. 한국원자력연구소 |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43. 산림조합중앙회 | 44. 대한적십자사 |
45.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
47.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48.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 | | |
|----------------|-------------------|
| 48의2. 국립수산과학원 | 48의3. 국립해양조사원 |
| 48의4. 한국석유공사 | 48의5. 대한송유관공사 |
| 48의6. 한국전력거래소 | 48의7. 국민체육진흥공단 |
| 48의8. 한국지역난방공사 | 48의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 48의10. 한국관광공사 | 48의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 48의12. 한국마사회 | |
- 48의13.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 48의14.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 48의15. 화력발전소
49.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9-5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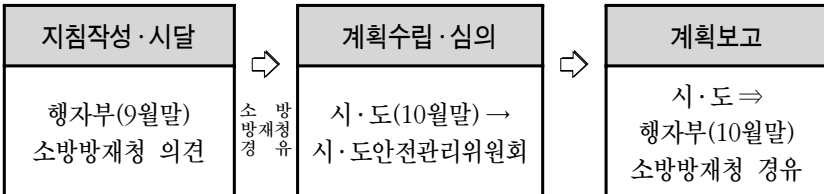
기본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매5년마다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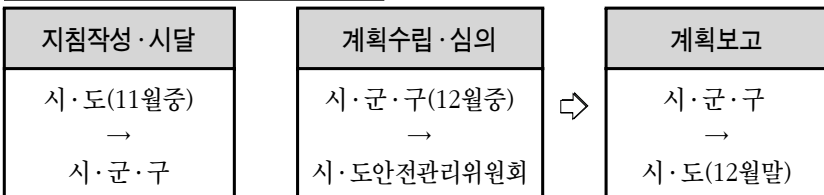
집행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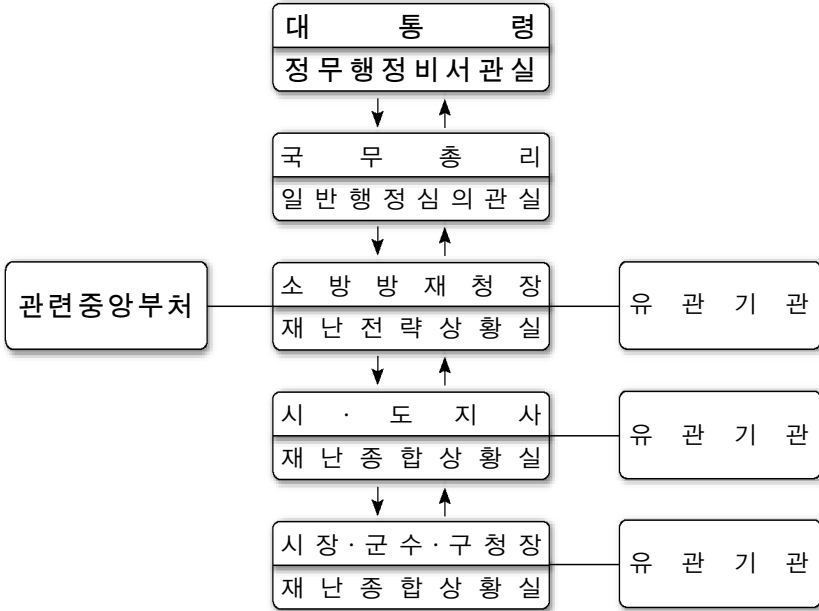
시·도 안전관리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



시·도·구 안전관리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9-6 재난상황보고·전파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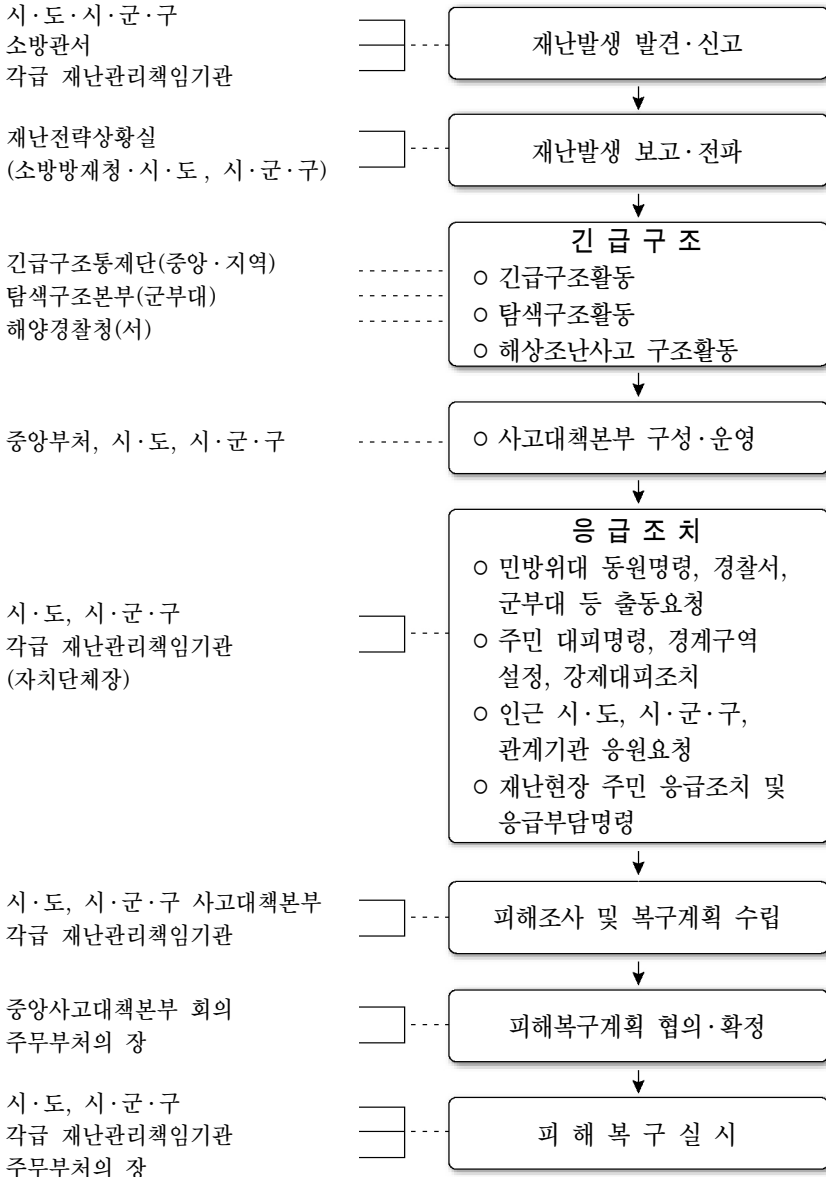


◇ 주요 재난관련 유관기관 현황

유 관 기 관	관 련 사 항
기획예산처(건설교통예산과)	○ 재난관련 예산·재정지원
산업자원부(안전대책반 등)	○ 가스·전기·광산안전
노동부(산업안전과)	○ 산업안전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 등)	○ 체육시설·유원 시설안전 ○ 극장·호텔 등 시설안전
국방부(재난관리지원과)	○ 군관련안전대책 ○ 장비·인력지원
산림청(치산과)	○ 사방, 임도 등 대책

유 관 기 관	관 련 사 항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안전
지하철·도시철도공사	○ 지하철안전
농림부(농산경영과)	○ 농업시설 및 농작물대책
보건복지부(비상계획담당관실)	○ 방역, 의료대책
문화재청(문화재정책과)	○ 문화재보호대책
국립공원관리공단(재난관리팀)	○ 국립공원 통제 등관리
건설교통부 (건설안전심의관실, 하천관리과 등)	○ 교량·건축물안전 ○ 하천, 댐 안전
해양수산부(안전조업상황실)	○ 해양선박·오염사고
환경부(수질보전국등)	○ 대기·수질오염사고 ○ 유해물질사고
과학기술부(원자력검사과)	○ 원자력안전
교육인적자원부(교육재정지원과)	○ 교육시설안전
한국철도공사(안전계획처)	○ 철도안전
한국전기전공사	○ 전기안전
대한적십자사(구호과)	○ 이재민구호, 자원봉사
정보통신부(비상기획관실)	○ 통신시설 관리 및 대책
경찰청(치안상황실)	○ 차량 인력 등 출입통제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 해양사고 처리 ○ 선박안전대책
한국도로공사(방재총괄팀)	○ 고속도로 피해 대책

9-7 재난발생시 수습체계



9-8 안전관리 주요 법령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계부처
시설 안전	교 량	○ 도로법 ○ 철도안전법 ○ 도시철도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댐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 하천법	건설교통부
	수리시설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항 만	○ 항만법	해양수산부
	공공청사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유재산관리법 ○ 지방재정법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아파트, 대형건물	○ 건축법 ○ 주택법	건설교통부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 건축법 ○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교통부
	호 텔	○ 건축법 ○ 관광진흥법 ○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극 장	○ 공연법 ○ 건축법	문화관광부
	리프트 등	○ 석도·케도법	건설교통부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문화관광부
	골프장· 스키장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계부처
산업 안전	석유화학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가 스	○ 도시가스사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제조사업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업표준화법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사업장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축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설교통부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교통 안전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지 하 철	○ 도시철도법	건설교통부
	철 도	○ 철도안전법	건설교통부
	해상안전	○ 해양교통안전법 ○ 선박안전법 ○ 어선법 ○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수산부
	수상안전	○ 수상레저안전법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항공안전	○ 항공법	건설교통부
화재 등 안전 분야	화재·폭발	○ 소방기본법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화재로인한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산 불	○ 산지관리법	농림부
	전 기	○ 전기사업법 ○ 기공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자원부
	원 자 력	○ 원자력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과학기술부
	광 산	○ 광산보안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자원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긴급구조 등 수습관련	○ 소방기본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수난구조법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10 주요 재난 현황

10-1 주요 재난사고 발생 현황 ('94 - '07년)

가. 지역별

시·도	건수	내 용
계	98	
서울	14	성수대교('94),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94), 삼풍백화점 붕괴('95), 용산 중산APT 화재('97),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97), 여의도 공동구 화재('00), 중곡동 신경외과 화재('00), 홍제동 주택 화재 및 건물 붕괴('01), 세곡동 비닐단지 화재('01), 미아동 LP가스 폭발('01), 금호미술관 가스 누출('01), 불광시장 상가건물 붕괴('01), 삼선동 주택붕괴('04),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붕괴('05), 종각역 지하철상가 일산화탄소 누출('06)
부산	10	구포열차 전복('93), 구포대교 버스 추락('97), 장림동 화학약품공장 폭발('98), 부산골드프라자 화재('98), 바지선 폭발('99), 부일외교 수학여행 교통사고('00), 대우조선 헬기 추락('01), 시내버스 교통사고('01), 금정구 교통사고('03), 다대포항 앞선박좌초('06), 부산영도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07)
대구	7	대구도시가스 폭발('95), 골든프라자 오피스텔 지하 붕괴('97), 지하철공사장 붕괴('00), 88고속도로 교통사고('00), 대구지하철 방화사건('03), 대구수성구 열차 충돌사고('03), 수성동 목욕탕 폭발·화재('05)
인천	3	인천 미사일 폭발('98), 인천호프집 화재('99), 부평구 가스폭발('02)
대전	1	동구 주택가 LP가스 폭발('01)

시·도	건수	내 용
경기	17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95), 광명시장 화재('95), 남한강버스 추락사고('96), 동두천 산불('96), 과천경마장 사고('96), 안양 연립주택 붕괴('96), 부천 LP가스 폭발('97), 청북상수도가압장 붕괴('98), 부천 LP가스충전소 폭발('98), 화성 씨랜드 화재('99), 성남시 단란주점화재('00), 안산시 공장 폭발화재('00), 광주예지학원 화재('01), 평택 화영아파트 LPG 폭발('03), 안양 제일여인숙 붕괴('04), 철산역 전동차 화재('05),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05)
강원	9	태백탄광 매몰('96), 고성 산불('96), 북한강 준설선 침몰('96), 장성 광업소 탄광사고('97), 강릉 산불('98), 동해 산불('98),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98), 동해안 산불('00), 양양산불('05), 속초시 모텔하우스 화재사고('06)
충북	3	우암상가 APT 붕괴('93), 충주호 유람선 화재('94), 경부고속도로(옥천) 교통사고('02)
충남	9	논산 정신병원 화재('93), 천안여관 화재('01), 「임마뉴엘복음관」 화재사고('02), 경부고속도로(천안) 교통사고('02), 서천군 금매복지원 화재('02), 천안초등학교 화재('03), 서해대교 교통사고('06), 당진동부제강 부두공사장 붕괴('0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07)
전북	5	서해훼리호 침몰('93), 남원 철도건널목 충돌('97), 익산 LP가스충전소 폭발('98), 순창 용수로터널공사 안전사고('01),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 화재('02)
전남	9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93), 제5금동호 충돌('93), 화순 철도건널목 충돌('95),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95), 목포 주상복합건물 붕괴 위험('97), 여천공단 폭발화재('00), 순천 단란주점 가스폭발('01),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07년), 고흥 연도교 건설공사장 붕괴('07)
경북	4	포항 세라프할인매장 화재('01),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03), 청도군 대흥농산 화재('03),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05)
경남	4	거창산불('97), 진주 관광버스 추락('01),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02), 마산 마도장여관 화재('02)
제주	1	북제주군 관광버스 교통사고('00), 다세대주택 가스폭발화재('06)
기타	2	KAL여객기 추락('97), 베트남기 추락('97)

나. 연도별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3년	6건	860	501	359		
1. 7	우암상가 APT 붕괴 (충북 청주시)	76	28	48	상가 52개, APT 59세대 붕괴	우암상가 APT화재로 가스 폭발 붕괴
3.28	구포 열차 전복 (부산 북구)	274	78	196	기관차, 객차, 선로 시설 파손	한전의 지중선사업을 위하여 철도횡단 지하 터널식 굴착작업중 철도노선 붕괴로 열차전복
4.19	논산 정신병원 화재 (충남 논산시)	36	35	1	조립식건물 1동 소실	담배불에 의한 인화
7.26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전남 해남군)	110	66	44	비행기 1대 파손	아시아나항공 733편이 질은 안개와 강풍으로 목포공항 착륙 실패 (3회)후 광주공항으로 향하던 중 추락
9.27	제5금동호 충돌 (전남 여천시)	2	2	-	선박 1척 파손 인근해역 유류 오염	가해선의 안전사항 위반, 피해선의 통행로 위반 및 선박간 정보 교환 미이행으로 충돌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4년	3건	227	73	154		
10.10	서해 훼리호 침몰 (전북 부안군)	362	292	70	선박 1척 침몰	초속 10~14m의 강풍과 4~5m의 높은 파도를 무시한 출항과 승선 정원 221명에 141명 초과한 362명 승선과 수화물 등의 배 상부 적재에 따른 복원력 상실
10.21	성수대교 붕괴 (서울 성동구)	49	32	17	교량상판 1구간 차량 6대 파손	용접시공의 결함, 제작 오차 등 부실 시공된 교량으로 중차량 통행에 따른 하중초과 및 피로하중이 급진전되어 상판 48M 붕괴
10.25	충주호유람선 화재 (충북 단양군)	65	29	36	유람선 1척 소실	충주호 단양선착장에서 충주간 운항중 구단양 철교부근에서 기관실에 원인불명으로 화재발생
12. 7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서울 마포구)	113	12	101	건물145동, 차량92대 파손, 물품 431건 파손	계량기 점검시 전동 밸브 틈새로 다량 방출된 가스가 환기통 주변모닥불 불씨에 점화 폭발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5년	6건	1,836	659	1,177		
4.11	화순철도 건널목 충돌 (전남 화순군)	33	15	18	버스 1대 전과 (25백만원)	시내버스가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건너는 도중 부산행 열차(비둘기호 902호)와 충돌
4.28	대구도시 가스 폭발 (대구 달서구)	303	101	202	건물 34동, 차량 150대 파손 (4,718백만원)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공사장의 그라우팅공사도중 도시가스관 파손으로 약77m 떨어진 지하철공사장에 가스유입, 원인불명의 화인에 의해 폭발
6.29	삼풍백화점 붕괴 (서울 서초구)	1,440	502	938	건물1동, 차량310대, 869개입주 업체물품 파손	설계 및 시공이 부실한 건축물에 설계 하중 초과 사용으로 A동북쪽 콘크리트내력벽을 제외한 A동 건물전체가 지하까지 각층 스텔라브가 차곡차곡 붕괴
7.23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전남 여천군)	1	1	-	선박 1척, 인근해역 유류오염 (52,113백만원)	태풍 피항차 출항, 선미(기관실부위) 충돌로 기관실내 화재로 표류 중 압초에 좌초, 방카 C-유약 700여톤 유출
8.21	경기 여자기술 학원 화재 (경기 용인시)	53	40	13	건물1동, 의류, 집기류 100여점소실	방화에 의한 화재발생
12.31	광명시장 화재 (경기 광명시)	6	-	6	점포 186개 소실 (147백만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추정)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6년	7건	423	44	379		
2.11	과천 경마장 사고 (경기 과천시)	341	-	341	물품93건 분실·파손	분말소화기 안전핀이 빠져 분사된 분말을 가스폭발로 오인, 대피과정에 사고발생
4.3	남한강 버스 추락 (경기 양평군)	59	22	37	버스1대 전파	운전사 부주의 (방심 또는 졸음추정)로 시내버스가 남한강에 추락
4.23	동두천 산불 (경기 동두천시)	8	7	1	산림 4.9ha 소실	미2사단에서 소총사격 훈련중 연막탄에 의해 발화
4.23	강원도 고성 산불 (강원 고성군)	-	-	-	산림3,762ha, 건물227동, 가축718두, 유실수 21,052본, 집기류 12,133점등 소실 (22,717백만원)	사격장내에서 폐기 TNT를 처리중 파편이 튀어 발화
8.18	북한강 준설선 침몰 (강원 춘천시)	-	-	-	골재준설선 1척 침몰, 호수오염, 치어 202만미 폐사	기관실 엔진 냉각수파이프드레인밸브 탈거로 인한 하천수 유입으로 부력상실· 침몰
8.28	안양 연립주택 붕괴 (경기 안양시)	-	-	-	연립주택1동완 파, 연립주택 2동반파 (2,490백만원)	공사장 지하 10m정도 터파기공사중 토류벽이 토압에 밀려 인근지반 및 건축물 붕괴
12.11	태백 탄광 매몰 (강원 태백시)	15	15	-	갱도 40m 붕괴	갱내 작업장 상부 침투 수가 기존갱내 공동에 집수하여 있다가 채탄 작업중 분출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7년	11건	363	285	78		
1.18	대구 골든프라자 오피스텔 붕괴 (대구 북구)	-	-	-	골든프라자 지하5-7층 옹벽 및 바닥 침하 이재민 16세대 65명	설계부적정 및 시공불량으로 오피스텔 지하 5~7층 옹벽의 파손 및 정덕궁전빌라 주차장 일부 침하
2.28	목포주상복합 건물붕괴위험 (전남 목포시)	-	-	-	건물1동(4층) 철거 이재민 1세대 5명	기초지반이 매립지로 불안정하여 압밀되면서 발생된 공동이 무너지 면서 기초 침하됨
3. 4	부천 LPG가스 폭발 (경기 부천시)	14	3	11	주택파손 16동 이재민 28세대 70명	지상 1층 세입자의 부부 싸움끝에 LPG가스를 폭발시켜 건물1동붕괴
3.24	남원 철도 건널목충돌 (전북 남원시)	32	16	16	버스1대 전파 (43백만원)	시내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서울행 열차 (무궁화호 282호)와 충돌
3.27	구포대교 버스 추락 (부산 북구)	6	5	1	버스1대 전파	운전부주의에 의한 버스 추락
3.30	용산 중산APT 화재 (서울 용산구)	17	2	15	APT 8가구 소실, 이재민 26세대 85명	미상
4.13	경남 거창산불 (경남 거창군)	2	2	-	산림 3ha 소실	입산자 실화
5.14	한진APT 축대 붕괴 (서울 성북구)	7	1	6	승용차 7대, 인근상가일부 파손	침수로 인한 축대붕괴로 토사유출
8. 6	KAL기 추락 사고 (괘 - 미국령)	254	229	25	비행기 1대 파손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 안내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 착륙실패 추정
9. 3	베트남기 추락사고 (캄보디아)	21	21	-	외국비행기 1대 파손	악천후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인근 눈에 추락
10.21	장성광업소 탄광사고 (강원 태백시)	10	6	4	-	전기 스위치를 조작 하다 스파크로 인해 갱안에 고여 있던 메탄가스폭발 화재발생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8년	9건	239	47	192		
2. 3	청북 상수도 가압장 붕괴 (경기 평택시)	11	5	6	건축물스라브 및 기둥(18 개소) 파손	높이 11m의 배수지동 바리 부설과 콘크리트 타설순서 무시 등으로 비틀림 변위 발생
3. 3	장림동화학약품 공장 폭발 (부산 사하구)	41	1	40	공장건물1동 붕괴차량 37대 파손	비누연료제조중 가마과열 폭발
3.29	강릉 산불 (강원 강릉시)	-	-	-	산림350ha, 건물74동 이재민 29세대101명 (2,344백만원)	농산폐기물 소각 부주의(추정)
3.29	동해 산불 (강원 동해시)	-	-	-	산림 250ha소실 (685백만원)	담배불 실화 (학생실화)
9.11	부천LPG가스 충전소 폭발 (경기 부천시)	84	1	83	공장건물 등 12동 소실 LPG충전소 소실 차량 122대 소실 등 (9,591백만원)	탱크로리에서 지하 저장 탱크에 가스 충전작업 중 부주의로 노후된 이음새가 이탈되면서 누출된 가스에 미상의 화인에 의해 인화된 것으로 추정
10. 6	익산LPG가스 충전소 폭발 (전북 익산시)	14	1	13	충전소소실 건물160동 일부파손 차량24파손 (3,146백만원)	영업용택시에 가스를 주입하던중 중간안전 밸브가 파손 되어 누출된 가스가 원인 미상의 화인에 의해 폭발
10.23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 (강원 평창군)	34	12	22	버스2대 파손	강릉방면으로 운행중이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고속버스와 정면충돌
10.29	부산 월드프라자 화재 (부산 서구)	43	27	16	신축중인 냉동창고 (지하2층, 지상8층)소실	전기합선으로 발화(추정)
12. 4	인천 미사일 폭발 (인천 연수구)	12	-	12	차량176대, 인근상가, 주택75동	미사일(나이키허큘리스) 시험점검중 오발(추정)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99년	3건	174	83	91		
5.31	바지선 폭발 (부산 사하구)	9	3	6	선체보수용 접중 폭발 (198백만원)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인화 폭발한 것으로 추정
6.30	'씨랜드' 화재 (경기 화성군)	28	23	5	건물1동 전소, 기타집기 파손 (72백만원)	모기향불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추정
10.30	호프집 화재사고 (인천 중구)	137	57	80	건물1동(지하1 층,지상4층)전소 (6,480만원)	노래방 종업원들의 실화에 의한 화재발생
'00년	10건	320	80	240		
1.22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대구 중구)	4	3	1	지하철공사장 지반붕괴 및 버스1대 파손	터파기 공사중 가시설이 토압에 밀리면서 지반붕괴
2.18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 (서울 영등포구)	-	-	-	통신선 및 전화선약 33,000 회선 소실	공동구내 전력 과부하 또는 누전으로 추정
4. 7	동해안 산불 (강원, 강릉, 동해, 삼척, 고성)	17	2	15	산림피해 23,138ha 등 피해발생 (100,100백만원)	고성산불 : 군소각장의 불씨에 의한 발화 강릉, 동해, 삼척 : 미상
7.14	부일외고 수학여행교통사고 (부산)	115	18	97	버스2대 전소, 기타차량 전소	급경사 커브길에서 빗길 과속과 안전 운전 소홀
8.24	여천공단 폭발화재사고 (전남 여수시)	25	6	19	건물 4개동 및 승용차 20대 파손 (540백만원)	냉동기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여 제품포장과정에서 폭발된 것으로 추정
10.18	성남 단란주점 화재사고 (경기 성남시)	7	7	-	건물내부 소실 (20백만원)	룸내 환풍기 모터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으로 추정
10.27	88고속도로 교통사고 (대구 동구)	27	21	6	버스, 무쏘, 트럭 각 1대 전파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던 카고트럭과 정면충돌
11. 2	안산 공장폭발 화재사고 (경기 안산시)	53	6	47	2층 철골조 3동 파손 (260백만원)	위험물 혼합과정중 탱크폭발에 의한 화재발생 추정
11. 8	복제주군 관광버스 교통사고 (제주 북제주군)	39	9	30	관광버스 1대 전파	성산포방향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후 전복됨
11.11	중곡동 신경정신과 의원 화재 (서울 광진구)	33	8	25	병원내부 일부 소실	신원미상의 정신질환자가 지하1·3층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1년	14건	369	80	289		
1. 10	포항시 세라프합인 매장 화재 (경북 포항시)	53	5	48	양식 철골조 칼라시트 2층 2동 1,423평	용접중 불티에 의한 착화
1. 19	순창군 용수로 터널 공사사고 (전북 순창군)	5	5	-	용수로터널 일부 붕괴	암반발과 중 안전 부주의
3. 4	홍제동 주택화재 및 붕괴 매몰사고 (서울 서대문구)	9	6	3	주택 80평 1,2층 붕괴	화재진화 및 인명 검색 중 건물붕괴
3. 4	강남구 세곡동 비닐단지 화재사고 (서울 강남구)	10	10	-	화훼용비닐 하우스 111 개동 전소 약(11백만원)	전기누전으로 추정
4. 8	미아동LP가스폭발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24	-	24	건물 1, 2층 22평 붕괴	LP가스폭발
5.16	경기광주 예지학원 화재사고 (경기 광주시)	33	10	23	양식조림식 판넬 5층 및 집기류 소실	담뱃불에 의한 발화(추정)
5.28	금호미술관 가스누출사고 (서울 종로구)	59	1	58	전시관 2층 일부 유리파손	소화설비 임의조작
7. 5	대우조선 헬기추락사고 (부산지방항공청)	12	8	4	헬기(S76B) 1대 전파	기상악화에 의한 추락(추정)
7.19	부산 시내버스 교통사고 (부산 동래구)	30	2	28	버스 1대 전파	추돌에 의한 브레이크 파열
7.24	진주 관광버스 추락사고 (경남 진주시)	40	23	17	버스 1대 전파	과속운행 및 안전 벨트 미착용
8. 3	천안시 여관 화재사고 (충남 천안시)	16	6	10	객실 32개 380평 전소 (45백만원)	지하 기계실 발화에의한 화재
8. 6	대조시장 인근 상가건물 붕괴 (서울 은평구)	11	1	10	건물 1, 2층 전파	건물노후로 인한붕괴
9.15	순천 단란주점 가스 폭발사고 (전남 순천시)	38	3	35	건물 1층 바다, 1층 스키브 균열	지하실 누출된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
12.29	대전 동구 주택가LP가스 폭발사고 (대전 동구)	29	-	29	주택붕괴1, 차량피해 24, 이재민 2세대 5명	2층 건물 1층에서 가스누출 폭발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2년	8건	301	203	98		
1.29	군산 개북동 대가주점 화재 (전북 군산시)	15	15	-	1,765만원 (부동산 1,265, 동산 500)	1층에서 난방용 전기히터 과열로 주위 가연물질 착화
2.10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 (충남 천안)	33	15	18	버스1대전파	운전부주의 (중앙분리대 침범)
3.20	인천 부평구 LP가스 폭발 (인천 부평구)	27	6	21	건물전파1, 반파1, 자동차파손 5, 판유리 413 등	가스관매입자 부주의
4.15	김해에어차이나 추락사고 (중앙사고대책 본부 : 건교부, 경남도, 김해시 사고대책본부)	166	129 (사망 123 실종 6)	37	중국민항기 보잉 767-CA 129편 전파 (북경↔김해 정기운항)	비와 안개로 관제탑 선회 명령받고 선회 중 김해시 지내동 동원APT뒤산 8부 능선에 추락폭발
5. 1	마산 마도장여관 화재사고 (경남 마산시)	15	9	6	3층 384㎡ 전소, 4~6층 그을림 재산 31.5백만원 (동산 10.5백만원, 부동산 21백만원)	전기원인 또는 노숙자 실화 추정
5. 9	임마뉴엘복음 수양관화재사고 (충남 부여군)	4	4	-	철골스라브 일부소실 (12백만원)	보일러연통과열
6.15	경부고속도로 (옥천)교통사고 (충북 옥천군)	32	16	16	고속버스 1대 전파	운전부주의
12.10	금매복지원 화재사고 (충남 서천군)	9	9	-	부속건물 108㎡ 소실	천정부 전기합선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3년	7건	577	245	332		
2.18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중앙사고대책본부 : 진교부, 대구시 사고사고대책)	340	192	148	615억원 (지하철 324, 중앙로역 246, 인근상가 피해 45억원)	방화
3.26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충남 천안시)	25	9	16	단층 슬라브 건물 33평 전소 (1,600만원)	축구부 합숙소 주방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발생
6.20	부산 금정구 교통사고 (부산 금정구)	50	9	41	버스(34인승) 전과 1대, 승용차 반과 1대	브레이크 파열
8. 8	대구 수성구 열차 추돌사고 (철도청, 대구 수성구)	97	2	95	기관차 1량, 객차 2량, 발전차 1량 반과	신호대기 중 추돌
10.21	경북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 (경북도, 봉화군, 대구 달서구)	31	19	12	버스(47인승) 1대 전과	브레이크 결함
11.17	평택 화영아파트 LPG폭발사고 (경기 평택시)	16	2	14	재산 657백만원 (동산 207, 부동산 450)	LPG가수 누출로 실내 폭발
12.17	경북 청도군 대홍농산 화재사고 (경북 청도군)	18	12	6	재산 87백만원 (버섯재배공장 2,984㎡ 소실)	1층 냉각장을 배양장으로 바꾸기 위해 철구조물 해체작업 중 용접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떨어져 발화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4년	2건	7	-	7		
9. 6	안양 제일연인숙 붕괴사고 (경기 안양시)	6	-	6	3층건물 전파	건물(1976년 준공) 노후화로 인한 붕괴
9.17	서울 삼선동 주택 붕괴사고 (서울 성북구)	1	-	1	주택 1개동완파, 3개동 일부 파손 ※ 이재민 7세대 13명	건축물 노후화 (1968년)로 인한 붕괴
'05년	6건	249	26	223		
1. 3	경기 철산역 진동차 화재사고 (경기 광명시)	1	-	1	237백만원 (진동차 3량 소실, 터널유치선 소손)	방화
4. 4	양양 산불 (강원 양양군)	-	-	-	산림 973ha건물 544동등 230억 ※ 이재민 165세대 420명	입산자 실화추정
6.24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8	1	7	2층 건물 전파	리모델링 공사중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붕괴
9. 2	대구 수성동 목욕탕 건물 폭발· 화재사고 (대구 수성구)	54	5	49	피해건물 전소, 주변건물 28동 유리창 파손, 차량 27대, 가로등 1개 파손 등	지하 기름탱크 유증기 폭발
10.3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 (경북 상주시)	172	11	161	-	공연관람을 위해 출입문에 운집해 있던 군중압사
10.6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경기 이천시)	14	9	5	-	시공순서 무시 및, 무리한 시공추진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6년	5건	169	19	150		
9. 8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소 누출	66	-	66	-	중앙집중 냉온수기 가동중 LNG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발생
9.10	강원 속초시 모텔하우스 화재	2	-	2	모텔하우스1동, 식당1동, 모텔부분소실 등 233백만원	전기누전
9.18	제주 다세대 주택 가스폭발 화재사고	21	1	20	은하빌라 301호(79㎡) 진소 및 인접건물 3개동 파손 인접건물 24개동 유리창 파손 및 차량 16대 파손	거주자가 LPG가스를 고의 누출로 원인미상의 불씨에 의해 폭발
9.28	부산 다대포앞 해상선박 좌초사고	12	7	5	가성스피트호 (6.7t)침몰	좌초
10.3	서해대교 교통사고	68	11	57	25t화물차량 등 30여대 파손 및 일부 화재발생	서해대교 짙은 안개, 안전거리 미확보

일 자	재 난 명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사고원인
		계	사망	부상		
'07년	6건	58	41	17	55백만원	
2.11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 사무소 화재사고	17	10	7	5백만원	우출입국 사무소에 수용중인 중국인이 방화 후 혼란한 틈을 타 탈출하기위해 인위적으로 방화
4. 5	전남 고흥군 연도교 건설공사장 붕괴	12	5	7	-	교량 상판 스톱 작업 중 동바리가 붕괴되어 작업중인 인부 사망
5.12	골든 로즈호 충돌·침몰 사고	16	16	-	-	중국 대련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중국선박과 충돌하여 침몰
8.13	부산 영도구 월드카니발 놀이기구 추락사고	5	5	-	-	회전놀이기구인 관람차의 볼트가 출입문에 끼여 고착상태로 운행 중 뒤따르던 관람차와 충돌 투명창으로 승객이 몰리면서 추락
10.19	충남 당진 동부제강 부두 공사현장 붕괴사고	8	5	3	50백만원	철재거푸집 설치후 레미콘 타설시 철재거푸집 붕괴로 작업중인 인부 사망
12.7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	-	-	어장 29,454ha 해안70km 오염	우암상가 APT화재로 가스 폭발 붕괴

10-2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구 분	삼풍백화점붕괴 (주관 : 건교부장관)	동해안 산불 (주관 : 농림부장관)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일시 : '95. 6. 29 ○ 인명피해 : 사망502명, 부상937명 ○ 재산피해 : 건물2동 (지상5, 지하4) ○ 선포일시 : '95.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일시 : '00.4.7 ~ 4.13 ○ 인명피해 : 사망2, 부상17명 ○ 산림피해 : 23,448ha ○ 재산피해 : 277억 (주택321동 등) ○ 선포일시 : '00. 4. 17
지 원	<p style="text-align: center;">- 총 : 72,43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수습 경비 : 6,949 ○ 피해업체금융지원 : 8,616 ○ 세 제 지 원 : 6,868 ○ 피해보상유자재원 : 50,000 ※ 장례비·조의금 : 3~5백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 총 : 67,85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로금 (복지부) : 3,244 ○ 농업시설복구지원 (농림부) : 17,547 ○ 어망및양식시설 (해수부) : 1,185 ○ 주택복구지원 (건교부) : 8,343 ○ 특별교부세 (행자부) : 12,035 ○ 산림복구지원 (산림청) : 19,228 ○ 공장복구지원 (중기청) : 1,165 ○ 지방자치단체 : 5,110 ※ 사망자(2명) 위로금 : 15백만원

구분	대구지하철 화재 (주관 : 건교부장관)	양양 산불 (주관 : 소방방재청장)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일시 : '03. 2.18 ○ 인명피해 : 사망192명, 부상148명 ○ 재산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중앙로역사 570억 - 인근상가 45억(166건) ○ 선포일시 : '03.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일시 : '05. 4. 4 ○ 인명피해 : 없음 ○ 산림피해 : 973ha ○ 재산피해 : 230억(주택163동 등) ○ 선포일시 : '05. 4. 7
지 원	<p style="text-align: center;">- 총 : 1,605억원</p> <p style="text-align: center;">【 중앙지원 1,147억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보상비 : 441억 ○ 긴급구조경비 : 5억 ○ 부상자치료비 : 45억 ○ 이재민구호비 : 38억 ○ 피해시설복구비 : 252억 ○ 전동차 구입 및 내연재 교체 : 366억 <p style="text-align: center;">【 대구시 458억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비용 및 치료비 : 213억 ○ 피해시설복구 : 45억 ○ 지하철 운송수익 결손금 : 136억 ○ 전동차 구입 및 내연재 교체 : 64억 	<p style="text-align: center;">- 총 : 24,335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시설복구지원 (농림부) : 1,312 ○ 주택복구지원 (건교부) : 5,868 ○ 산림복구지원 (산림청) : 3,512 ○ 이재민구호 등 (소방방재청) : 503 ○ 군사시설 (국방부) : 2,263 ○ 문화재복구 (문화재청) : 8,885 ○ 공장시설복구 (산업자원부) : 200 ○ 공원시설 등 (환경부) : 1,792

구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일시 : '07. 12. 7.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 29,454ha 및 해안 70.1km 오염 ○ 선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태안 등 6개 시·군 재난사태 선포 → '07.12.8 - 특별재난지역 선포 → '07.12.11 - 전남 신안 등 3개 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08.1.18.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843억원 ○ 긴급생계안정자금 : 768억(충남 600, 전남 168) ○ 긴급방제 특별 교부세 : 75억(충남 60, 전남 10, 전북 5) ○ 세제 감면·유예, 금융지원(장기저리 융자) 등

11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경보제

- 매년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 특정시기에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의 최소화

□ 개요

- 도입시기 : 2006년 4월 5일
- 발령근거
 -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2006. 4. 5 소방방재청 훈령 제 88호
 - 개정 2008. 4.29 소방방재청 훈령 제144호

□ 지향점

- 각종 안전사고의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 안전사고 예·경보 발령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

□ '07 발령현황

발령유형	주의보 / 경보	발령일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4.24~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	5.22~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보	6.21~
낙석사고	주의보	7.18~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7.26~
물놀이 안전사고	경 보	8.3~
추석절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	9.4~
단풍철 산악안전사고	주의보	10.16~
단풍철 산악안전사고	경 보	11.2~

□ 주간 안전사고 경보

□ 개요

○ 도입시기 : 2007년 3월 5일

○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간을 1주로 하여, 주간단위로 시·도별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안전사고를 캐릭터와 위험지수로 표출, 재난사와 안전요령도 함께 제공

□ 발표방법 : 우리청 홈페이지(www.nema.go.kr)게재,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전파(Safe On), 신문(중앙선데이, 조선일보) 등에 자료제공

□ 안전사고 유형 : 화재, 농기계, 물놀이, 폭발, 붕괴, 어린이놀이기구,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주간안전사고 경보 (07.01-07.07)
인쇄 | 저장 | 닫기

지역별 안전사고 위험지수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관선 주의 경계 위험

본격적인 장마철, 승강기 안전점검하세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무덥고 습기가 많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기적 오작동 등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와 기계실 등이 누전이나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파제나 바닷가에서 낚시등을 하다가 실족, 추락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음주를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계단 바르게 이용하기

자동계단, 바르게 이용하기!

승강기 안전점검과 추락사고 예방요령

- 승강기 인터폰, 문개방장치 장치 등 안전장치 점검
- 승강로 바닥 및 벽에 누수와 결로 현상이 있는지 확인
- 해빙기, 발파제 위험지역에서의 낚시와 음주 자제

금주의 재난사

- '06.7.2 부산 부산진 학원빌딩 승강기 오동작사고(부상1명)
- '06.7.3 전남 완도 갯바위에서 낚시 중 바다로 추락사고(사망1명)
- '06.7.5 부산 강서 대우 조선 헬기 추락사고(사상12명)

※ 집계내용은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간 안전사고 경보는 2007-07-15-14:00 에 발표됩니다.

www.nema.go.kr
 ☎ 02-2100-4119

12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12-1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태평가 기준

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E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제거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제거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시설분야별 구성요소별 세부 상태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 발행 『유지관리매뉴얼』 참조

12-2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및 안전관리

근거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849호, '06. 2. 21)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206호, '05. 12. 28)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85호, '05. 6. 20)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비고	
도로시설	교량	○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터널	○ 전수관리	
	육교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예외함
	지하도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지하상가내의 지하도 제외
	축대·옹벽	○ 축조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높이 5m·연장 20m이상의 시설	건축물 부대 시설 제외
	기타도로 부대시설	○ 기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등	
스키장	○ 전수관리	리프트 포함	
삭도·궤도	○ 전수관리 - 관광시설 :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리프트 제외	삭도·궤도법 적용 대상	
유원시설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는 유기기구 제외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목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제외
	중단된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수상안전시설	유·도선	○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 해수면 제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 대상
	수상레저기구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기타	○ 중점관리가 필요한 토목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제외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지방공공청사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 이상의 청사 및 업무용건축물	중앙행정 기관 제외
고급주택	아 파 트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다세대 주택 제외
	연립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판매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대형숙박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종합여객시설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공연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전시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등	
	의료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장례식장 등	
	종교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휴게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청소년수련시설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비디오·게임 제공업	○ 연면적 300㎡이상의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 전수관리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고 시 원	○ 전수관리	
	기타 다중이용업	○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기 타 건 축 물	일반건축물	○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옹벽·석축	○ 높이 5m, 연장 20m 이상	
	기 타	○ 중점관리가 필요한 부대건축물	
대형광고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의 것	
건 축 공 사 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바닥 면적 10,000㎡ 이상	중앙행정기관 에서시행하는 공사장 제외
	중단된 공사장		
위 험 물 시 설	가스취급시설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 준공업지역내 시설
	유독물 취급시설	○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 취급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 단	지방공단		국가공단 제외
	농공단지		
신 종	번지점프장	○ 전수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방제시설

나. 중점관리시설(A·B·C급) 안전관리

□ **개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관리지침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지정·해제** : 시장·군수·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통보

○ **안전점검** : 매반기 1회(년2회)

다. 재난위험시설(D·E급) 지정·관리

□ **개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관리지침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 **지정·해제** : 시장·군수·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공보·고시(14일 이상)

○ **안전관리 강화** : 유지관리 담당 국·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 정기(월1회 이상)·수시점검 및 안전조치 등 추진

○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 추진**

12-3 특정관리대상시설 단계별 관리체계

- **1단계**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체조사(법 제26조, 영33조)
 - 조사결과에 따라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시설로 구분

- **2단계**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법 26조, 영33조)
 -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월1회 이상), 중점관리시설(반기1회 이상)
 - 수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단계** : 안전조치(법 31조, 영39조)
 - 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민간시설 등에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재난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 등
 - ※ 안전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위급판단시 사용제한·금지조치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 판단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안전조치

- **4단계** : 응급조치(법 37조 ~ 43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습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시
 - 동원명령, 긴급대피, 경계구역의 설정(출입 등의 금지·제한, 퇴거 또는 대피), 강제대피·퇴거조치, 응급부담 등의 조치를 취함

지방자치단체소관 전체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 지방공공청사·시설 및 관할구역내 민간시설 등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소관시설 제외)

특정관리 대상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정기·수시
안전점검

- 시설물 :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육교 등 시설물, 스키장, 유원시설 등
-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등

중점관리시설(반기 1회 점검)

재난위험시설(월 1회 점검)

- 시설규모·이용면에서 재난 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있는 시설(A·B·C급)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관리카드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D·E급)
 -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시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서면으로 통보
 - 공보 또는 게시(14일 이상)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
 - 위험요인해소를 위한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추진

12-4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 합 계

[07. 12. 31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계	D급	E급
합 계	89,296	88,523	38,000	43,184	7,339	773	712	61
시설물	9,383	9,211	2,650	4,970	1,591	172	164	8
건축물	79,913	79,312	35,350	38,214	5,748	601	548	53

○ 시설물 현황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계	D급	E급	
합 계	9,383	9,211	2,650	4,970	1,591	172	164	8	
도로 시설	소 계	7,973	7,808	1,705	4,613	1,490	165	157	8
	교 량	6,575	6,422	1,351	3,705	1,366	153	146	7
	터 널	101	101	60	33	8	-	-	-
	육 교	598	593	157	384	52	5	5	-
	지하도	383	383	75	286	22	-	-	-
	축대·옹벽	194	191	43	112	36	3	2	1
	도로기타	122	118	19	93	6	4	4	-
스키장	17	17	12	5	-	-	-	-	
삭도·케도	36	36	30	5	1	-	-	-	
유원시설	150	150	97	52	1	-	-	-	
지 하 상 가	6	6	-	5	1	-	-	-	
토목 공사장	소 계	423	423	388	31	4	-	-	-
	대형공사장	417	417	386	30	1	-	-	-
	중단공사장	6	6	2	1	3	-	-	-
수상 안전 시설	소 계	237	237	184	53	-	-	-	-
	유·도선	88	88	43	45	-	-	-	-
	수상레저기구	149	149	141	8	-	-	-	-
물놀이시설	44	44	21	10	13	-	-	-	
기타 토목시설	497	490	213	196	81	7	7	-	

○ 건축물 현황

구 분	관리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 계	79,913	79,312	35,350	38,214	5,748	601	548	53	
지방공공청사	4,903	4,892	2,943	1,774	175	11	11	-	
공공주택	소 계	31,819	31,483	4,761	23,289	3,433	336	321	15
	아파트	22,009	21,762	3,263	16,638	1,861	247	238	9
	연립주택	9,810	9,721	1,498	6,651	1,572	89	83	6
다중이용건축물	소 계	20,588	20,556	13,270	6,720	566	32	26	6
	판매시설	4,040	4,040	3,041	959	40	-	-	-
	숙박시설	1,387	1,387	1,037	340	10	-	-	-
	대형목욕장	278	278	120	147	11	-	-	-
	여객시설	525	525	398	119	8	-	-	-
	공연시설	1,081	1,079	747	324	8	2	1	1
	집회시설	467	466	300	147	19	1	1	-
	관람시설	1,544	1,543	1,068	445	30	1	1	-
	의료시설	6,597	6,597	4,110	2,355	132	-	-	-
	종교시설	2,175	2,174	1,177	909	88	1	1	-
	위락시설	361	361	246	98	17	-	-	-
	청소년수련시설	598	598	429	169	-	-	-	-
비디오게임장	4,101	4,101	2,868	1,174	59	-	-	-	
대형건축물	4,068	3,847	1,291	1,313	1,243	221	189	32	
기타건축물	소 계	2,578	2,415	866	749	800	163	139	24
	일반건축물	772	751	150	379	222	21	19	2
	옹벽·석축	718	681	275	185	221	37	31	6
	기 타	2,630	2,630	2,176	405	49	-	-	-
대형광고물	718	681	275	185	221	37	31	6	

구 분		관리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건축공사장	소 계	1,807	1,806	1,423	340	43	1	1	-
	대형공사장	1,528	1,528	1,291	234	3	-	-	-
	중단공사장	279	278	132	106	40	1	1	-
위험물 시설	소 계	5,165	5,165	4,083	1,071	11	-	-	-
	가스취급시설	4,902	4,902	3,881	1,015	6	-	-	-
	유독물취급시설	178	178	139	36	3	-	-	-
	화합물취급시설	85	85	63	20	2	-	-	-
공장	소 계	351	351	254	92	5	-	-	-
	지방공단	89	89	65	21	3	-	-	-
	농공단지	262	262	189	71	2	-	-	-
신종업종	소 계	4,481	4,481	2,281	2,036	164	-	-	-
	콜라텍	260	260	107	147	6	-	-	-
	번지점프장	13	13	12	1	-	-	-	-
	휴게텔	234	234	107	121	6	-	-	-
	찜질방	314	314	227	87	-	-	-	-
	산후조리원	3,498	3,498	1,752	1,604	142	-	-	-
	고시원	162	162	76	76	10	-	-	-
	화상대화방	162	162	76	76	10	-	-	-

12-5 월별 중점안전점검 대상

- 재난발생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하여 연중 시의성(월별·계절별)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계절별	중점점검 대상시설
해빙기 (2~3월)	○ 절개지,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등
행락철 (4~5, 9~10)	○ 유·도선, 유원시설, 신종업종, 종교시설 ○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등(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하계휴가철 (6~8월)	○ 도로시설, 관람·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등
동절기 (11~익년2월)	○ 주점 등 위락·휴게시설, 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시설 ○ 스키장, 비디오품·게임제공업 등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등(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체 상황에 따라 점검 대상의 추가 또는 변경 시행가능

※ 연말연시, 설날, 추석절 등은 계절별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별도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행

12-6 안전점검실시 현황

점검명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현지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2회 ■ 중앙점검 27회 (점검단 21회) ■ 지자체 5회 	총 30,499개소 • 570개소 (392개소) • 29,929개소	◆ 6,213개소 11,616건 (5,437)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 계	1,392개반 6,811명	17,276개소	3,043개소 4,429건 (1,943)
	3.5 ~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합동점검 4개반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취약시설 5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개소 129건(18)
	2.12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점검 1,388개반 6,79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취약시설 17,22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개소 4,300건 (1,925)
봄철 유원시설 안전점검	소 계	19개반 44명	• 73개소	• 63개소 322건(186)
	3.21 ~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합동점검 2개반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소 74기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소 89건
	3.19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점검 17개반 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개소 443기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개소 233건(186)
봄철 성수기 유도선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 계	31개반 127명	• 154개소	• 64개소 158건(21)
	4.10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합동점검 2개반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시·도 16개소 70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소 73건 (3)
	3월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점검 29개반 10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시·도 138개소 2,193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개소 85건(18)

점검명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현지시정)
대구지하철 2호선 안전점검	소 계	2개반 14명	26개소	26개소 54건
	5.21 ~5.23	■ 중앙합동점검 2개반 14명	• 26개역, 26km	◦ 26개소 54건
		■ 지자체점검 없음		
건설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소계	2개반 9명	19개소	16개소 59건
	6.20 ~6.22	■ 중앙점검단 2개반 9명	• 6개 시·도 19개소	• 16개소 59건
		■ 지자체점검 없음		
건설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소계	2개반 5명	12개소	11개소 45건
	7.3 ~7.5	■ 중앙점검단 2개반 5명	• 4개 시·도 12개소	• 11개소 45건
		■ 지자체점검 없음		
여름 휴가철 물놀이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소 계	704개반 3,790명	8,710개소	1,370개소 2,496건 (1,400)
	7.3 ~7.6 8.1 ~8.3	■ 중앙합동점검 (1,2차) 4개반 26명	• 16개시·도, 49개소	◦ 39개소 202건(20)
	6.1 ~6.25	■ 지자체점검 700개반 3,764명	• 8,661개소	◦ 1,331개소 2,294건 (1,380)
우기철 전기감전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소계	1개반 2명	19개소	6개소 12건
	7.12 ~7.13	■ 중앙점검 (점검단) 1개반 2명	• 3개 시·도 19개소	• 6개소 12건
		■ 지자체점검 없음		

점검명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현지시정)
다중이용 시설 안전점검	소계	1개반 7명	6개소	6개소 42건
	7.18 ~7.20	■ 중앙점검 (점검단) 1개반 7명	• 2개 시·도 6개소	• 6개소 42건
		■ 지자체점검 없음		
재해위험 지구 및배수 펌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계	2개반 9명	14개소	8개소 17건
	7.18 ~7.20	■ 중앙점검단 2개반 9명	• 6개 시·도 14개소	• 8개소 17건
		■ 지자체점검 없음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시설 안전점검	소계	2개반 8명	56개소	54개소 145건
	8.8 ~8.10	■ 중앙점검 2개반 8명	• 56개	• 54개소 145건
		■ 지자체점검 없음		
추석절대비 복합영상관 안전점검	소계	1개반 5명	9개소	9개소 62건(5)
	8.8 ~8.10	■ 중앙점검단 1개반 5명	• 2개 시·도 9개소	• 9개소 62건(5)
		■ 지자체점검 없음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점검	소계	2개반 12명	18개소	17개소 68건
	8.29 ~8.31	■ 중앙점검단 2개반 12명	• 4개 시·도 18개소	• 17개소 68건
		■ 지자체점검 없음		

점검명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현시시정)
추석절대비 다중이용 시설등 안전점검 1차	소계	2개반 14명	20개소	20개소 119건
	9.4 ~9.7	■ 중앙점검단 2개반 14명	•6개 시·도 20개소	•20개소 119건(37)
		■ 지자체점검 없음		
추석절대비 다중이용 시설등 안전점검 2차	소계	2개반 14명	23개소	23개소 179건(64)
	9.11 ~9.14	■ 중앙점검단 2개반 14명	•6개 시·도 23개소	•23개소 179건(64)
	8.27 ~9.7	■ 지자체점검 416개반 2,169명	•16개 시·도 3,752개소	•1,117개소 2,110건 (1,231)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장 안전점검	소계	3개반 13명	6개소	•6개소 88건(19)
	10.9 ~10.11	■ 중앙점검단 3개반 13명	•6개 공구	•6개소 88건(19)
		■ 지자체점검 없음		
부산지하철 1호선 안전점검	소계	2개반 16명	34개소	•34개소 57건(21)
	10.17 ~10.19	■ 중앙점검단 2개반 16명	•34개역, 32.5km	•34개소 57건(21)
		■ 지자체점검 없음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 계	3개반 17명	28개소	•25개소 117건
	10.23 ~11.2	■ 중앙점검단 3개반 17명	•9개 시·도 28개소	•25개소 117건
		■ 지자체점검 없음		

점검명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현지시정)
가을철 유원시설 안전점검	소 계	18개반 66명	122개소	•101개시설 423건 (261)
	10.29 ~10.31	■ 중앙점검단 1개반 10명	•3개 시·도 4개업체 37개시설	•37개시설 79건(4)
	10.15 ~10.31	■ 지자체점검 17개반 56명	•85개소 588기종	•64개시설 344건(257)
가을 단풍철 유도선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	소계	6개반 12명	24개소	•10개소 30건(5)
	11.2 ~11.4 11.10 ~11.11	■ 중앙점검 6개반 12명	•6개 시·도 24개소	•10개소 30건(5)
		■ 지자체점검 없음		
대형건설 공사장 등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계	1개반 6명	7개소	•7개소 53건(12건)
	11.5 ~11.7	■ 중앙점검단 1개반 6명	•3개 시·도 7개소	•7개소 53건(12건)
		■ 지자체점검 없음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추진 실태점검	소계	1개반 6명	9개소	•6개소 14건
	11.14 ~11.7	■ 중앙점검단 2개반 5명	•3개 시·도 9개소	•6개소 14건
		■ 지자체점검 없음		
대학수학 능력시험 전·후 다중이용 시설 등 안전점검	소 계	3개반 13명	23개소	•23개소 111건(3)
	11.14 ~11.16	■ 중앙점검단 3개반 13명	•7개 시·도 23개소	•23개소 111건(3)
		■ 지자체점검 없음		

점검명	점검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현지시정)
스키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계	1개반 7명	5개소	•5개소 54건(5)
	11.21 ~11.23	■ 중앙점검단 1개반 7명	•2개 시·도 5개소	•5개소 54건(5)
		■ 지자체점검 없음		
대형건축 공사장 등 재난취약 시설점검	소계	3개반 14명	25개소	•24개소 161건
	11.21 ~11.30	■ 중앙점검단 3개반 14명	•9개 시·도 25개소	•24개소 161건
		■ 지자체점검 없음		
겨울철 화재 및 재난취약 시설점검	소계	2개반 12명	10개소	•10개소 109건(12)
	12.6 ~12.7	■ 중앙점검 (점검단) 2개반 12명	•4개 시·도 10개소	•10개소 109건(12)
		■ 지자체점검 없음		
대선대비 투·개표장 및 건설 공사장 점검	소계	2개반 11명	19개소	•19개소 82건(5)
	12.11 ~12.13	■ 중앙점검 (점검단) 2개반 11명	•6개 시·도 19개소	•19개소 82건(5)
		■ 지자체점검 없음		

13

유·도선 관리

13-1 유·도선 안전관리 개요

가. 관계법령

- 유선 및 도선사업법(법률 제7412호 '05.3.24)
-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058호 '05.9.29)
-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98호
해양수산부령 제306호 '05.9.29)

나. 관리체계 (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 내수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해수면 :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다. 추진계획

- 2007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우리청에서 지침 마련, 시·도, 시·군·구 수립)
-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성수기 공휴일 현장지도 공무원 배치
- 행락철 안전운행 지도·점검계획 수립 추진
- 유·도선사업법 위반사항 강력한 단속 실시
- 시·도 단위 사고 가상 실제훈련 실시

13-2 전국 유·도선 현황

가. 선 박 : 2,370척(유선 2,315, 도선 55)

○ 형태별 동 력 선 : 89척(유선 40, 도선 49)

무동력선 : 2,175척(유선 2,175)

모터보트 : 106척(유선 100, 도선 6)

○ 규모별 5톤 미만 : 2,303척(유선 2,282, 도선 21)

5톤 이상 : 67척(유선 33, 도선 34)

나. 선착장 : 141개소(유선장 109, 도선장 32)

시·도	선착장수	선 박 수(척)			무동력	규 모 별(척)					시·군수
		계	유선	도선		동 력 선				모터보트	
						소계	5t 미만	5~100t	101t 이상		
합 계	142 (32)	2,370	2,315	55	2,175	89 (49)	22 (15)	59 (32)	8 (2)	106 (6)	51
서울	19	378	378	-	339	6	-	-	6	33	2
대구	12	250	250	-	248	2	-	2	-	-	2
인천	1	102	102	-	102	-	-	-	-	-	1
광주	1	30	30	-	30	-	-	-	-	-	1
대전	1	30	30	-	30	-	-	-	-	-	1
경기	38 (5)	734	729	5	704	11 (5)	6 (3)	5 (2)	-	19	15
강원	35 (14)	370	337	33	299	32 (27)	8 (5)	24 (22)	-	39 (6)	8
충북	13 (8)	46	35	11	23	19 (11)	6 (6)	11 (3)	2 (2)	4	5
충남	3	36	36	-	24	8	-	8	-	4	4
전북	4	124	124	-	122	-	-	-	-	2	3
전남	2	37	37	-	31	1	-	1	-	5	2
경북	11 (5)	188	182	6	179	9 (6)	1 (1)	8 (5)	-	-	5
경남	2	45	45	-	44	1	1	-	-	-	2

※ () 내서는 도선 숫자임

13-3 유·도선 사고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대 형 사 고		소 형 사 고	
	사고건수	피해내용	사고건수	피해내용	사고건수	피해내용
소 계	39	사망 176 부상 144	6	사망 130 부상 91	33	사망 46 부상 53
1983	7	사망 6 부상 15	-	-	7	사망 6 부상 15
1984	8	사망 29 부상 17	1	사망 10	7	사망 19 부상 17
1985	3	사망 28 부상 1	2	사망 27	1	사망 1 부상 1
1986	2	사망 29 부상 26	1	사망 28 부상 26	1	사망 1
1987	1	사망 36 부상 29	1	사망 36 부상 29	-	-
1988	2	사망 3	-	-	2	사망 3
1989	3	사망 3	-	-	3	사망 3
1990 ~ 1993	없음	-	-	-	-	-
1994	3	사망 34 부상 36	1	사망 29 부상 36	2	사망 5
1995	3	사망 3	-	-	3	사망 3
1996	1	사망 2	-	-	1	사망 2
1997	4	사망 2 부상 13	-	-	4	사망 2 부상 13
1998	2	사망 1 부상 7	-	-	2	사망 1 부상 7
1999 ~ 2006	없음	-	-	-	-	-
2007	-	-	-	-	-	-

※ 대형사고는 10명 상당의 사망자 발생사고

14 안전문화운동 추진

14-1 안전문화운동

가. '안전문화'의 개념

-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 (INSAG)의 보고서에서 '안전문화'¹⁾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 1995년 10월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서 '안전문화'를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 또는 조직 구성원 각자에 충만되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된 상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모든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 태도 등 총체적인 의미'로 정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1995년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일련의 대형사고를 겪게 되면서, 이때부터 안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내지 안전에 대한 가치관의 미성숙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나타난 것이 안전문화운동임.

1)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

나.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

-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경기 화성 씨랜드·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태안 기름유출사고, 승례문·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과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음
- 오늘날 고도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각종시설이 고층화, 지하화, 대형화 되고 복합영상관, 찜질방과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편의기기의 사용 증가 요인 또한 생활주변과 산업현장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재난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14-2 안전관리헌장

○ 제 정 일 : '04. 11. 4

○ 제정배경

- 산업화·지구 온난화 등으로 자연 및 인적재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인 안전관리헌장을 제정

○ 안전관리현장 전문

오늘날 우리는 태풍·지진·화재·교통사고·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 I.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I.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 I.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I. 국가기반체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되어야 한다.
- I.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I.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 I.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14-3 안전점검의 날

근거 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조(법률 제7,188호, '04. 3. 11)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8,407호, '04. 5. 29)

가. 추진배경

-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 '95. 2 : 국무총리께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96. 4. 4 : 제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 '03.11. 4 : 민·관 합동 「비상구 찾기 운동」 병행 추진 시작
- '05. 6. 4 : 민·관 합동 「안전표지 설치하기」 병행 추진 시작

다. 중점점검사항

○ 가정안전 분야

- 소화기·소화전·인화물질·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승강기·베란다·옥상 추락예방시설 등 점검
- 노후담장·건축물 등 주변시설물 균열 상태 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전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시설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 등

○ 학교안전 분야

- 학교 소화시설, 전기·가스시설, 화학물질 보관상태 등 점검
-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시설 현장학습
- VTR·대형사고 사진전시·어린이안전 관련단체 활용한 실기실습 등 시청각 및 참여교육 실시
- 유치원, 초·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등

○ 공공안전 분야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통로 등 비상구 점검
- 백화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과 피난·경보·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지하철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등 집중점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 저장시설 등

○ 교통안전 분야

- 등·하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캠페인
- 교통관련 기관·단체,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시
- 자동차 정비업소 매월 4일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 과속·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등

○ 산업안전 분야

-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
- 사업주 책임 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 안전관리현장 및 안전수칙 게시·숙지, 안전모·보호구 착용 등
- 사내방송, 안전관련 VTR 방영, 외래강사 초청 등을 통한 안전교육
-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선진 무재해 추진기법 시행
- 사업장별로 각종 안전 홍보활동 전개 등

14-4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 지정

가. 지정목적

- 이론 안전교육과 함께 화재,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피난 및 대응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학교를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로 지정·지원함으로써
- 실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장으로 육성

나. 지정계획 : 100개교('05~'09)

- '05(10개교), '06~'08(20개교), '09(30개교)

다. 우수학교 지정현황

- 2005년 — 10개교

학 교 명	학급수	학생수	주 소	전 화 (FAX)
서울 동자 초등학교	56	1,908	우)143-193 서울 광진구 자양3동 518-1	444-1349 (457-8334)
대구 태암 초등학교	29	976	우)702-866 대구 북구 태전동 1076-8	053-311-8073 (311-8076)
대전 문화 초등학교	31	1,043	우)310-132 대전 중구 문화2동 674-1	042-582-4665 (582-9975)
울산 옥서 초등학교	40	1,418	우)680-080 울산 남구 옥동 638	052-266-9663 (266-9665)
강원 고성 거진 초등학교	13	343	우)219-904 강원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74	033-682-2656 (682-2657)
충북 제천 홍광 초등학교	29	1,030	우)390-110 충북 제천시 모산동 390-1	043-646-4761 (646-8107)
전북 익산 춘포 초등학교	6	102	우)570-952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811	063-842-8211 (842-3448)
경북 경산 중앙 초등학교	28	972	우)712-803 경북 경산시 중방동 331	053-811-2472 (815-3394)
경남 김해 월산 초등학교	41	1,364	우)621-830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8-2	055-314-0217 (314-0216)
제주 새서귀 초등학교	18	605	우)697-818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1451	064-739-2157 (739-5628)

○ 2006년 - 20개교

학 교 명	학급수	학생수	주 소	전 화 (FAX)
서울 불광 초등학교	66	2,300	우)122-858 서울 은평구 불광1동 268-2	355-1979
서울 내발산 초등학교	38	1,252	우)157-832 서울 강서구 발산2동 707	3662-7565
부산 구덕 초등학교	21	567	우)602-812 부산 서구 대신동 3가 41-1	051)245-0369
대구 수창 초등학교	17	458	우)700-370 대구 중구 수창동 73	053)252-0305
광주 문산 초등학교	43	1,469	우)500-821 광주 북구 문흥1동 990-1	062)250-210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49	1,533	우)302-800 대전 서구 가수원동 471	042)541-1334
울산 성안 초등학교	41	1,008	우)681-300 울산 중구 성안동 797-1	052)244-2946
경기 양주 가남 초등학교	22	793	우)482-841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 799-2	031)836-3209
경기 광주 분원 초등학교	6	90	우)464-879 경기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6	031)768-8004
강원 화천 초등학교	24	775	우)209-804 강원 화천군 화천읍 아4리 211-2	033)441-2122

학 교 명	학급수	학생수	주 소	전 화 (FAX)
충북 청주 새터 초등학교	27	959	우)360-220 충북 청주시 사천동 200	043)212-0093
충남 아산 오목 초등학교	12	303	우)336-85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310-8	041)542-7263
충남 예산 신양 초등학교	7	145	우)340-821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346-3	041)333-7005
전북 김제 원평 초등학교	13	280	우)576-964 전북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683-2	063)543-0811
전남 광양 중앙 초등학교	30	975	우)545-879 전남 광양시 중동 1347-1	061)791-2317
경북 문경 모전 초등학교	45	1,550	우)745-883 경북 문경시 모전동 670	054)555-0271
경북 포항 포항 초등학교	40	1,390	우)791-809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91-2	054)246-0736
경남 진주 수정 초등학교	10	232	우)660-200 경남 진주시 옥봉동 700-1	055)742-4929
경남 양산 좌삼 초등학교	7	87	우)626-851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493	055)374-6976
제주 서귀서 초등학교	13	368	우)697-815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372-1	064)762-7561

○ 2007년 - 20개교

학 교 명	학급수	학생수	주 소	전 화 (FAX)
서울 개일 초등학교	28	833	우)135-8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4	571-8321
서울 갈산 초등학교	46	1,606	우)158-077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30-10	2649-7232
부산 연천 초등학교	52	1,676	우)611-088 부산 연제구 연산8동 378-11	051)850-1700
대구 동부 초등학교	22	677	우)701-822 대구 동구 해마루길 300	053)959-0762
인천 구월서 초등학교	52	1,806	우)405-223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099	032)431-6821
광주 진만 초등학교	30	1,036	우)506-307 광주 광산구 신가동 1005	062)958-5677
대전 서대전 초등학교	21	646	우)301-831 대전 중구 용두동 27-13	042)255-9937
울산 양정 초등학교	26	729	우)683-380 울산 북구 양정동 476	052)289-3170
경기 수원 울현 초등학교	42	1,623	우)442-152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710	031)227-0922
경기 의정부 동오 초등학교	36	1,358	우)480-070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669-3	031)844-8060

학 교 명	학급수	학생수	주 소	전 화 (FAX)
강원 강릉 성덕 초등학교	34	1,176	우)210-250 강원 강릉시 입암동 625-1	033)641-3822
충북 청주 죽림 초등학교	13	384	우)361-2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	043)237-3467
충남 논산 황화 초등학교	7	91	우)320-835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11-17	041)741-4925
전북 전주 초등학교	14	319	우)560-0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64	063)254-2373
전남 나주 중앙 초등학교	27	782	우)520-050 전남 나주시 성북동 13	061)333-2182
경북 칠곡 왜관 초등학교	45	1,450	우)718-805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0-64	054)975-7453
경북 포항 제철지곡 초등학교	37	1,278	우)790-390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638	054)279-4020
경남 김해 구봉 초등학교	20	614	우)621-060 경남 김해시 구산동 199	055)335-2442
경남 창녕 남지 초등학교	10	232	우)635-900 경남 창녕군 남지읍 대신동 723	055)526-5620
제주 월랑 초등학교	18	671	우)690-180 제주 제주시 노형동 1085	064)746-6503

14-5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 창립일 : '04. 12. 20

○ 창립배경

- 재난구호 현장에서 자원의 불균형 공급, 활동의 중복성, 기관간 활동의 비연계성, 구호활동의 비체계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뉴거버넌스 형태의 민/관/산/학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서 각 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역할분담, 업무협력 등을 통한 효율적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한국(Safe Korea)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참여단체 현황

번호	단체명	대표자	비고
1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정회원
2	대한민국의용소방대연합회	박재만	
3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4	대한적십자사	이세용	
5	새마을운동중앙회	김현백	
6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송자	
7	한국구조연합회	정동남	
8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김준목	
9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일하	
10	해병대전우회중앙회	김명환	
11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한정훈	
12	소방방재청	문원경	협력회원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세중	
14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조원철	
15	한국산업안전공단	박길상	
16	한국시설안전공단	진철훈	
17	위기관리이론과실천	이재은	
18	119매거진	최명신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종합정보시스템

- 풍수해, 지진 등 재난유형별·단계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기상청,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의 재난정보 연계·활용
- 119 등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소방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주요 구축 시스템〉

- 범정부 재난관리네트워크 시스템 : '05~'08년도
 -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05~'08)
 - 상황전파시스템('05~'07)
 - 국가재난정보센터('06~'08)
 - 재난관리정보DB센터('07~'08)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 '05~'08년도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 '06~'07년도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 '06~'08년도
- 소방업무지원시스템 : '06~'08년도
 - 소방민원정보시스템('06~'08)
 - 소방대상물 DB구축('07~'08)
 - 국가화재정보시스템('07~'08)
-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 '06~'08년도
-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 '03~'06년도
- U119시스템 : '07~'08년도

○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련 정보를 범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과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구축현황

- 재난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 ☞ 재난관리 책임 기관 간 재난 정보 연계(34개기관 160종 정보연계)
-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 ☞ 시·도·구·유관기관 재난발생 상황 및 전파체계구축(4,737개)
- 국가재난정보센터
 - ☞ 국민행동요령 플래시(25종 64편), 안전사고 경보서비스, 검색엔진 등 개발
- 재난관리 정보 DB센터 구축
 - ☞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예측 프로그램 개발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05년 3월 일본 후쿠오카 지진을 계기로 지진피해 발생 시 신속한 분석 및 피해지역 범위, 피해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구축현황

- 지진진도분포도 생성 및 자동경보시스템 개발
- 건축물 및 인명 지진피해 손실추정 프로그램 개발
- 전기, 가스, 도로 등 주요 라이프라인 피해예측 개발
- 의료, 수송 피난 등 긴급대응지원체계 기능 개발
- 지진피해 입력시스템 및 고속철도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발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 시행('06. 3. 3)에 따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구축현황
 - 풍수해 보험대상물 현황 및 피해이력 관리하기 위한 DB 개발
 -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현황 등 풍수해보험 실적통계 연계 개발
 - 풍수해보험 대국민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 개발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중앙 및 시·도 보고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체계를 시·군·구 현장 대응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업무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표준행동절차(SOP)기반에 의한 선진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구축현황
 - 시·군·구 재난대응업무 표준화
 - 재난관리업무 표준행동절차(SOP) 수립 및 코드 표준화

○ 소방업무 지원시스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과학적 재난 대응을 위해 수작업 처리중인 소방검사, 건축허가 등 소방민원 업무의 정보화와 재난 발생시 현장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위한 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 구축현황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 건축허가 동의, 소방검사, 예방통계프로그램 개발
 - 소방대상물 DB구축 : 소방활동정보카드 DB(7개시·도 : 367,622건)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화재원인·발생장소등 화재관련 보고서 및 검색 프로그램 개발

○ 시·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각종 재난 및 긴급신고를 119로 일원화 하고 화재·구조·구급 등의 신고접수와 재난 현장지휘를 지원하기 위해 119신고접수, 지령관제, 현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 구축

※ '06년 : 인천·전남, '07 : 강원·전북, '08년 : 경북

— 구축현황

- 119신고 접수 시스템 구축
 - ☞ 119신고자 위치 자동 파악(GIS 활용), 재난지역 출동대 자동 파악
- 현장 지원 시스템 : 재난현장 정보 및 동원 소방력 지원
- 지령관제 시스템 : 출동차량 위치 자동 파악 및 상황관리
-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 ☞ 이동통신사 위치정보센터와 119위치정보 조회시스템 연계

16 위험물 안전관리

16-1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 설치허가권자 :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권한위임)

- 허가대상 :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수량이 지정수량 이상 시설·장소

※ 지정수량 (예)

휘발유	경유·등유	방카C유	알코올류	유 황
200 l	1,000 l	2,000 l	400 l	100kg

○ 안전관리자 선임

- 국가기술자격자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모든 위험물
 - 위험물관리기능사 : 자격증 기재된 류(類)의 위험물
- 안전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 :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 안전관리대행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기관에 의한 안전관리 가능

○ 안전관리자 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 실시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 2년 1회, 8시간 이내
- 위험물운송자 : 3년 1회, 8시간 이내

16-2 위험물 검사

○ 정기점검 : 제조소 등의 관계인 - 연 1회 이상

-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정기검사 : 소방검정공사

- 검사대상 : 특정옥외탱크저장소(액체위험물 100만리터 이상)
 -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안전조치 후 공사에 구조안전 점검시기 연장신청으로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 안전조치

- ①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 조치
- ②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조치(년1회 일반정기점검)

16-3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 1일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설치한 곳(제조시설, 취급시설, 저장시설 포함)

○ 저장소

-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탱크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 ④ 지하탱크저장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⑥ 이동탱크저장소
- ⑦ 옥외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 취급소

- ① 주유취급소 ② 판매취급소 ③ 이송취급소 ④ 일반취급소

16-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 저장취급

- ① 지정수량 이상(위험물안전관리법)
 - 상시적 저장취급 : 제조소등 설치허가
 - 일시적 저장취급 : 임시저장 취급신고 - 90일 이내
- ② 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특수가연물(시·도조례)

○ **운반** : 세부기준(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별표19)에 의함

○ **운송** : 세부기준(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21)에 의함

16-5 위험물제조소 등의 현황

계	제조소	취급소				
		소 계	주 유 취급소	판 매 취급소	이 송 취급소	일 반 취급소
129,980	1,368	26,286	14,720	303	294	10,969

저장소								
소 계	옥 내	옥 외 탱크	옥 내 탱크	지 하 탱크	간 이 탱크	이 동 탱크	옥 외	암 반 탱크
102,326	4,991	25,535	18,569	15,897	87	33,649	3,580	18

16-6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총 계	제 조 소 등 의 수	96,331
	선 임 자	60,915
	소 계	11,873
위험물국가기술자격자	위험물기능장	41
	위험물산업기사	1,631
	위험물기능사	10,201
	소 계	49,042
기타 자격자	강습수료자	46,875
	관련자격겸직	195
	일정요건구비	2,062

16-7 위험물별 현황

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130,641	370	386	611	128,628	353	293



소방정책 분야

1. 소방일반현황	149
2. 방호업무	176
3. 예방업무	196
4. 구조·구급업무	255
5. 긴급구조통제단업무	276

1

소방일반현황

1-1 소방연혁

〈조선시대〉

조선(세종8년)
~ 한말

- 1426 수성금화도감
- 1925 경성소방서 설치(현 종로소방서)

〈과 도 기〉

미군정시대 ('46~'48)

자치소방체제

- 중앙 : 소방위원회(소방청)
- 지방 : 도 소방위원회(지방소방청)
시·읍·면 : 소방부

〈초 창 기〉

정부수립이후('48~'70)

국가소방체제

- 기 구
 - ┌ 중앙 :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 └ 지방 : 경찰국 소방과, 소방서
- 법제 : '58. 3 소방법 제정
- 신분 : 경찰공무원법 적용

〈발 전 기〉

'70~'92

국가+자치소방

- 체제 : 서울·부산 자치소방
- 구조 : '75. 8 내무부 소방국 설치
- 신분 : '78. 3 소방공무원법 제정
- ※ '78. 7. 소방학교 설치

〈현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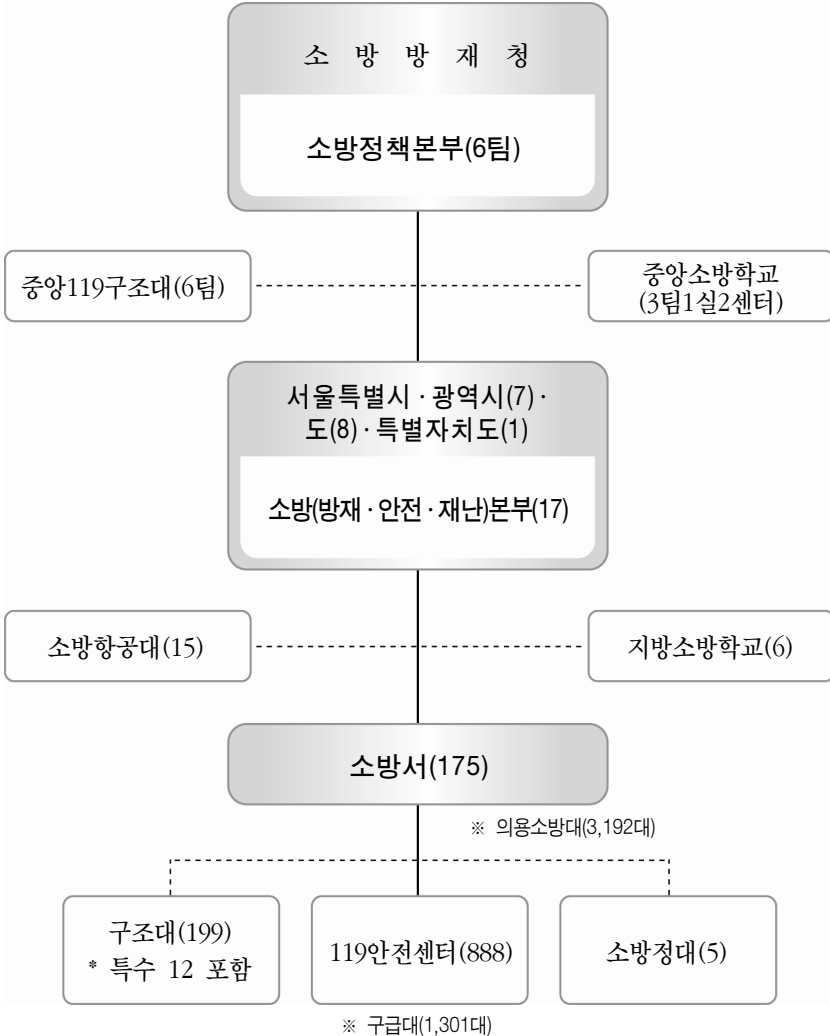
'92이후

시·도(광역시) 자치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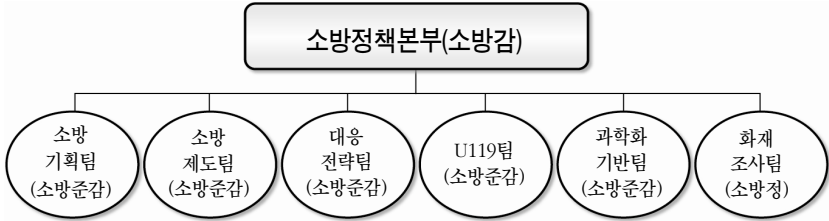
- 체제 : 시·도 책임으로 일원화
- 기구 : '92. 4 도 소방본부 설치
- 신분 : 시·도 지방직으로 전환('95.1)
- ※ '04. 6. 1 소방방재청체제 출범

1-2 소방조직체계

가. 소방정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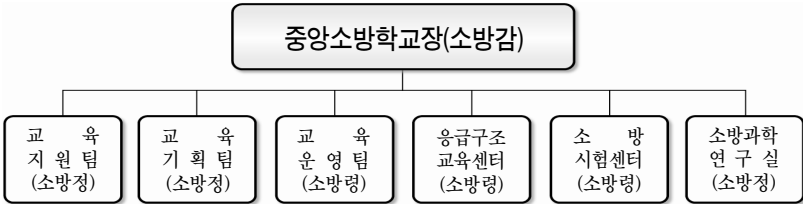


나. 소방정책본부 : 6팀 58명(소방 50, 일반 3, 기능 5)



다. 중앙소방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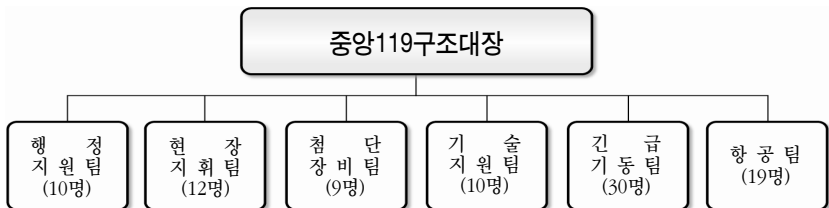
: 3팀 1실 2센터, 64명(소방 53, 일반 4, 연구 5, 기능 2)



※ 지방소방학교(6개교)

- 서울소방학교 : 2과, 6팀, 1연구센터, 1교육센터, 72명(소방 53, 기능 12, 기타 7)
- 부산소방학교 : 2과, 4담당 1교수단 24명(소방)
- 광주소방학교 : 2과, 4담당 1교수부 27명(소방 25, 기능 2)
- 경기소방학교 : 3과, 8담당, 60명(소방 50, 기능 10)
- 충청소방학교 : 2과, 4담당, 1교관단 21명(소방 17, 기능 4)
- 경북소방학교 : 2과, 4담당, 1교관단, 29명(소방 21, 일반 1, 기능 7)

라. 중앙 119 구조대 : 6팀 91명(소방직 79, 계약직 12)



1-3 소방관서 설치 현황 (2007. 12 31)

구분 시·도	소 방 본 부	소 방 학 교	소방서	소 방 파출소	구조대	소 방 항공대	소 방 정 대
계	17	7	175	888	200	15	5
소방방재청	-	1	-	-	1	1	-
시 계	7	3	60	315	67	6	3
도 계	10	3	115	573	132	8	2

※ 참고 :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및 소속 소방항공대

1-4 소방인력 배치 현황 (2007. 12. 31)

가. 소방공무원

1) 계급별 (정원)

구분	계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30,630	-	1	5	33	237	729	1,578	1,994	4,558	9,414	12,081
국 가	235	-	1	5	21	20	24	39	48	39	35	3
지 방	30,395	-	-	-	12	217	705	1,539	1,946	4,519	9,379	12,078

2) 기관별 (정원)

계	본부	학교	본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소방 정대	방재 센터	청와대
30,630	1,288	243	6,966	19,062	2,631	176	75	159	30

※ 소방방재청(81)은 본부, 중앙소방학교(63)는 학교, 중앙구조대(79)는 구조대에 포함

나. 의용소방대

구 분	총 계	시 지역	읍 지역	면 지역
대 수	3,273	896	484	1,893
대 원 수	93,282	24,986	19,543	48,753

다. 의무소방원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전역자('02~'07)
대 원 수	2,000	804	-1,196	4,902

1-5 순직, 공·사상자 현황

가. '07년도 발생현황

구 분	합계	화재	구조	구급	교육훈련	기타	
합계	인원	286명	74명	32명	70명	30명	80명
	비율	100%	26%	11%	24%	10%	29%
순직	7	4	-	-	-	3	
공상	279	70	32	70	30	77	

나. 최근 5년간 발생현황

구분	계	평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1,589	317.8	367	335	297	304	286
순직	34	6.8	7	8	6	6	7
공상	1,555	311	360	327	291	298	279

다. 최근 5년간 발생현황 (업무유형별)

○ 공사상자(전체)

구 분	계	비율	'03	'04	'05	'06	'07
총계	1,589	100.0%	367	335	297	304	286
화재진압	389	24.5%	85	76	62	92	74
구조	177	11.1%	37	34	36	38	32
구급	286	18.0%	62	53	44	57	70
교육훈련	157	9.9%	36	34	34	23	30
기타	580	36.5%	147	138	121	94	80

1-6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 가.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나. 의무소방대 설치·운영 연혁

- '01. 3. 4 :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 6명 순직, 3명 부상(설치·운영계기)
- '01. 3. 12 : 당정협의 의무소방대 설치 합의
- '01. 7. 13 : 제223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원 3,000명 확정
- '01. 8. 14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정·공포(법률제6505호)
- '02. 1. 10 : 의무소방교육대 발대(중앙소방학교)
- '02. 3. 29 : 의무소방원 모집 훈련시작(제1기, 211명 훈련소 입소)
- '06. 5. 19 : 정원 3,000명 → 2,000명으로 감축 조정
- '08. 1. 1 : 의무소방원 804명 근무(제13차 모집, 제27기 까지 임용)

다. 그간 인력충원 현황

구분	총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배정	5,684	1,292	1,292	1,500	800	400	400	320	240	160	80
모집	5,755	1,285	1,312	1,533	805	410	410	327	250	170	85
임용	5,706	1,285	1,312	1,505	797	402	405	321	-	-	-

라. 정원·현원 배치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 원	2,000	154	80	70	78	50	50	52	390	130	120	130	130	130	228	169	39
현 원	804	61	32	28	32	20	20	21	156	53	49	54	52	53	90	67	16
전 역	4,902	390	335	291	256	135	163	111	875	351	188	226	265	330	449	397	140

마.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63,145	9,784	9,639	13,544	12,328	9,734	8,116
본청운영	4,913	897	752	891	857	563	953
시·도보조	50,588	5,495	7,266	11,509	10,832	8,788	6,698
학교훈련	7,644	3,392	1,621	1,144	639	383	465

※ '08년 예산 : 5,348백만원 (본청운영 597, 시·도보조 4,345, 학교훈련 406)

바. '08년 충원/손실 현황

구 분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8.10	'08.11	'08.12
월 초	804	804	804	804	925	826	725	725	725	725	725	725
손 실	-	-	-	-	199	201	-	-	-	-	-	-
총 원	-	-	-	121	100	100	-	-	-	-	-	-
월 말	804	804	804	925	826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사. 2008년도 선발·배치 일정

구 분		제14차(327명)		
선발	인원	28기(123명)	29기(102명)	30기(102명)
	시험	'07. 12월		
군사훈련		'08.03.06	'08.04.03	'08.05.01
소방교육		'08.04.03	'08.05.01	'08.05.29
배 치		'08.05.01	'08.05.29	'08.06.26

1-7 소방력 보강계획

가. 소방력 보강계획

1)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 (2008 ~ 2012)

대상 \ 구분	기 준 (2012년)	보 유	%	보강계획
소 방 서	214서	175	81.8	39
119안전센터	1,049소	888	84.7	161
구 조 대	247대	199	80.6	48
소 방 인 력	42,553명	30,630	72.0	11,923
소 방 장 비	7,710대	7,380	95.7	330
소 방 용 수	141,166개소	128,901	85.5	12,265

※ 주의 : 소방인력은 현원이 아닌 정원임

※ 주의 : 소방용수 5개년 계획은 '07 ~ '11계획임

2) 소방력 보강실적

구 분 \ 년도별	기준년도 ('71년도)	제1차 ('72~'76)	제2차 ('77~'81)	제3차 ('82~'85)	제4차 ('86~'90)	제5차 ('91~'96)	제6차 ('97~'01)	제7차 ('02~'07)
소방서	34서	9	11	21	20	30	19	22
119 안전센터	83소	39	63	95	134	260	73	115
소방관	974명	1,583	3,773	2,122	3,694	10,830	1,224	4,618
장 비	1,092대	164	355	462	1,767	1,506	621	4,119
소방용수	8,074 개소 ('75말)	2,524 ('76)	5,489	8,824	11,837	29,984	25,453	21,439

※ 3차 계획은 당초 '86까지이나 올림픽관련 1년 단축 추진

※ 7차 계획은 당초 '06까지이나 1년 연장되어 '07 포함한 실적임

나. 소방관서

1) 시·도별

[2007. 12. 31 현재]

구분 시·도	소 방 본 부	소 방 학 교	소방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	소 방 항공대	소 방 정 대
계	17	6	175	888	199	14	5
시 계	7	3	60	315	67	6	3
서울	1	1	22	112	25	1	-
부산	1	1	10	52	11	1	2
대구	1	-	7	45	7	1	-
인천	1	-	7	42	8	1	1
광주	1	1	5	20	5	1	-
대전	1	-	5	24	5	-	-
울산	1	-	4	20	6	1	-
도 계	10	3	115	573	132	8	2
경기 1	1	1	23	122	24	1	-
경기 2	1	-	8	45	9	-	-
강원	1	-	11	55	13	1	-
충북	1	-	8	33	13	1	-
충남	1	1	12	53	13	1	-
전북	1	-	10	44	11	1	-
전남	1	-	10	49	12	1	1
경북	1	1	15	74	17	1	-
경남	1	-	15	77	17	1	1
제주	1	-	3	21	3	-	-

다. 소방공무원

1) 총괄

[2007. 12. 31 현재]

직급 시·도	계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30,630	-	1	5	33	237	729	1,578	1,994	4,558	9,414	12,081
국 가	235	-	1	5	21	20	24	39	48	39	35	3
지 방	30,395	-	-	-	12	217	705	1,539	1,946	4,519	9,379	12,078
소방방재청	81	-	1	1	6	12	11	22	20	6	2	-
소방학교	53	-	-	1	-	3	7	10	11	10	8	3
구 조 대	79	-	-	-	-	1	6	7	17	23	25	-
시·도	22	-	-	3	15	4	-	-	-	-	-	-
서 울	5,279	-	-	-	5	25	102	246	305	694	1,586	2,316
부 산	2,142	-	-	-	3	10	46	88	119	321	682	873
대 구	1,531	-	-	-	-	10	34	75	76	212	455	669
인 천	1,688	-	-	-	-	11	33	73	87	252	539	693
광 주	842	-	-	-	-	7	24	52	57	128	238	336
대 전	973	-	-	-	-	8	27	57	61	141	281	398
울 산	657	-	-	-	-	6	18	39	41	95	211	247
경기 1	3,891	-	-	-	3	27	94	219	255	605	1,241	1,447
경기 2	1,452	-	-	-	-	13	38	104	92	220	446	539
강 원	1,615	-	-	-	-	13	38	83	105	250	525	601
충 북	1,058	-	-	-	-	10	29	58	68	145	327	421
충 남	1,487	-	-	-	-	14	44	77	117	370	566	299
전 북	1,420	-	-	-	-	12	34	68	106	174	409	617
전 남	1,563	-	-	-	-	12	38	74	109	209	487	634
경 북	2,108	-	-	-	-	17	47	84	151	285	587	937
경 남	2,095	-	-	-	-	17	44	119	154	342	637	782
제 주	594	-	-	-	1	5	15	23	43	76	162	269

※ 시·도 국가직(22) 내역 : 소방본부장 16명(서울·부산 경기 감3, 시·도 준감13),
 지방소방학교장 6명(서울,경기 준감2, 부산, 광주, 충청, 경북 소방장4)
 별도정원 2명 미포함 : 국방대학원 1(소방감), 세종연구소 1(소방준감)

2)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현황

시·도	계급	계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합 계		235	1	5	21	20	24	39	48	39	35	3
소방방재청		81	1	1	6	12	11	22	20	6	2	-
소방학교		53	-	1	-	3	7	10	11	10	8	3
중앙구조대		79	-	-	-	1	6	7	17	23	25	-
서울		2	-	1	1	-	-	-	-	-	-	-
부산		2	-	1	-	1	-	-	-	-	-	-
대구		1	-	-	1	-	-	-	-	-	-	-
인천		1	-	-	1	-	-	-	-	-	-	-
광주		2	-	-	1	1	-	-	-	-	-	-
대전		1	-	-	1	-	-	-	-	-	-	-
울산		1	-	-	1	-	-	-	-	-	-	-
경기 1		2	-	1	1	-	-	-	-	-	-	-
경기 2		1	-	-	1	-	-	-	-	-	-	-
강원		1	-	-	1	-	-	-	-	-	-	-
충북		1	-	-	1	-	-	-	-	-	-	-
충남		2	-	-	1	1	-	-	-	-	-	-
전북		1	-	-	1	-	-	-	-	-	-	-
전남		1	-	-	1	-	-	-	-	-	-	-
경북		2	-	-	1	1	-	-	-	-	-	-
경남		1	-	-	1	-	-	-	-	-	-	-
제주		-	-	-	-	-	-	-	-	-	-	-

※ 별도정원 2명 미포함 : 국방대학원 1(소방감), 세종연구소 1(소방준감)
 '06. 4. : +2(준감2: 경기2본부장, 경기학교장, 정-준감), +1(부산학교장, 정)

3) 지방소방공무원 정원현황

시·도	계급	계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30,395	-	-	12	217	705	1,539	1,946	4,519	9,379	12,078
서울		5,279	-	-	5	25	102	246	305	694	1,586	2,316
부산		2,142	-	-	3	10	46	88	119	321	682	873
대구		1,531	-	-	-	10	34	75	76	212	455	669
인천		1,688	-	-	-	11	33	73	87	252	539	693
광주		842	-	-	-	7	24	52	57	128	238	336
대전		973	-	-	-	8	27	57	61	141	281	398
울산		657	-	-	-	6	18	39	41	95	211	247
경기 1		3,891	-	-	3	27	94	219	255	605	1,241	1,447
경기 2		1,452	-	-	-	13	38	104	92	220	446	539
강원		1,615	-	-	-	13	38	83	105	250	525	601
충북		1,058	-	-	-	10	29	58	68	145	327	421
충남		1,487	-	-	-	14	44	77	117	370	566	299
전북		1,420	-	-	-	12	34	68	106	174	409	617
전남		1,563	-	-	-	12	38	74	109	209	487	634
경북		2,108	-	-	-	17	47	84	151	285	587	937
경남		2,095	-	-	-	17	44	119	154	342	637	782
제주		594	-	-	1	5	15	23	43	76	162	269

4) 연도별 증원현황

구분	당년 증원	누 계			계 급 별									
		계	국가직	지방직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68	232	944	944	-	-	-	-	33	-	46	86	224	-	555
'69	30	974	974	-	-	-	-	34	9	69	101	227	64	470
'72	33	1,007	976	31	-	-	-	38	9	78	108	242	68	464
'73	963	1,970	976	994	-	-	-	38	9	80	111	279	68	1,385
'74	43	2,013	976	1,037	-	-	-	38	11	85	119	283	68	1,409
'75	235	2,248	991	1,257	-	-	1	51	31	116	176	315	68	1,490
'76	309	2,583	1,017	1,566	-	-	1	51	39	124	218	350	68	1,706
'77	2,343	4,900	1,039	3,833	-	-	1	62	62	140	182	360	386	3,707
'78	265	5,165	1,064	4,136	-	-	6	61	64	143	191	373	425	3,900
'79	705	5,870	-	4,806	-	-	6	63	70	158	217	449	595	4,309
'80	399	6,269	1,064	5,205	-	-	6	67	76	166	236	514	663	4,538
'81	61	6,330	1,070	5,260	-	-	8	70	81	169	246	533	703	4,517
'82	520	6,850	1,070	5,780	-	3	8	71	89	184	302	613	1,070	4,510
'83	349	7,199	1,073	6,126	-	3	8	72	97	199	341	650	1,146	4,683
'84	629	7,828	1,106	6,722	-	4	9	73	103	210	377	718	1,405	4,929
'85	624	8,452	1,133	7,319	-	3	9	76	111	214	421	929	1,539	5,150
'86	511	8,963	1,142	7,821	-	3	10	81	126	236	460	990	1,713	5,344
'87	842	9,805	1,142	8,663	-	3	10	82	136	251	515	1,096	2,525	5,187
'88	685	10,490	1,142	9,348	-	3	11	87	161	278	572	1,193	2,760	5,425

구분	연년	누 계			계 급 별									
		계	국가직	지방직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89	954	11,444	1,142	10,302	-	3	11	90	173	322	656	1,340	3,117	5,732
'90	1,865	13,309	1,142	12,167	-	3	12	93	195	333	790	1,520	3,465	6,898
'91	298	13,607	1,142	12,465	-	3	13	96	207	337	800	1,545	3,749	6,857
'92	1,723	15,330	1,142	14,188	-	3	22	107	239	359	914	1,850	4,737	7,099
'93	1,189	16,519	1,142	15,377	-	4	22	108	244	371	950	1,920	5,181	7,719
'94	2,469	18,988	78	18,910	-	4	2	129	293	444	1,219	2,340	5,852	8,684
'95	1,620	20,608	149	20,459	-	4	25	161	264	627	1,277	2,493	6,338	9,319
'96	2,368	22,976	157	22,819	1	3	25	182	406	745	1,337	2,731	6,925	10,621
'97	603	23,579	158	23,421	1	3	26	188	415	780	1,394	2,734	6,966	11,072
'98	-1,426	22,153	156	21,997	1	3	26	185	406	781	1,348	2,662	6,525	10,216
'99	444	22,597	157	22,440	1	3	26	188	417	829	1,375	2,746	6,668	10,344
2000	556	23,153	157	22,996	1	3	26	191	428	894	1,466	2,902	6,779	10,463
2001	1,070	24,223	179	24,044	1	3	28	195	459	938	1,523	3,176	7,169	10,731
2002	900	25,104	185	24,919	1	3	27	198	482	999	1,587	3,390	7,458	10,959
2003	1,414	26,518	187	26,331	1	3	27	206	521	1,107	1,656	3,641	7,965	11,391
2004	1,086	27,604	207	27,397	1	4	30	213	532	1,136	1,727	3,881	8,355	11,725
2005	1,758	29,362	212	29,150	1	5	31	219	659	1,347	1,940	4,216	8,947	11,997
2006	837	30,199	227	29,972	1	5	33	229	701	1,414	2,024	4,337	9,202	12,253
2007	431	30,630	235	30,395	1	5	33	237	729	1,578	1,994	4,558	9,414	12,081

1-8 소방장비 현황

가. 장비 현황

1) 시·도별

구분	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무인방수탑	고가차(m)			굴절차(m)			구조차			조명차
		대형	중형	소형	소형 (1000kg 이하)	산불진화		고성능	제독차	내폭	분사차	일반		33 이하	46 이하	50 이상	18 이하	27 이하	35 이하	일반	버스	산악	
총계	7,380	357	1,276	569	10	5	688	90	10	10	5	167	9	13	87	79	32	149	35	214	51	30	63
중앙학교	18		2				1					1		1			1	1		2			
중앙구조대	22		1						1					1						3	1		
서울	933	16	82	43			132	4	2	1		22	2	4	5	15	9	19	1	23	24		12
부산	373		66		1	5	61	1	1	1		12	1		7	5		6	5	11	11		10
대구	251	7	56	4	1		38	2				8			3	4	5	3		7			5
인천	300	19	29	15			39	5	1	1	1	13			7			7	1	9	6		6
광주	152	18	23	2	1		7	2		1		5	1		4	1	2	3		6	1		
대전	162	21	15	7			9		1			8			2	4		8		5	5		1
울산	161	2	31	4	1		14	5	1	2	1	5	3		1	5	1	3		5		1	5
경기	1,306	43	260	25	3		156	36	1	1		12			24	13		29	9	34			12
강원	557	27	140	17			25	3		1	6		2	1	7	5	9	2	13				14
충북	397	33	85	43			17	3				9			5	3		13		12	1	5	4
충남	491	25	56	136			32	6		1	8		4		3		10	2	16	2	1		
전북	388	17	69	53			31	4				13		1	5	3	3	3	2	15		5	1
전남	505	41	109	66			20	9	2	2	1	8	2		2	6	2	5	7	12		2	2
경북	607	56	68	135	3		33	4		1		15			7	4		12	5	19			
경남	597	24	151	11			57	4				20			13	3	4	13		15		1	2
제주	160	8	33	8			16	2				2			1	3		5	1	7		1	3

배 연 차	구급차		지 휘 차	위 성 중 계 차	장 비 운 반 차	트레일러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 베 인 전 체 현 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소방헬기원 (탑승인원)				소방정 (ton)			구조정 (ton)		
	A 형(일반)	B 형(특수)				공 기 충 전 기	보 트 운 반											7	10	14	18	5	50	100	20	30	
134	162	1,195	205	4	72	72	97	13	174	29	14		220	229	345	267	159	3	10	8	4	2	1	4	4	4	
1	1	1	1						1						2	2											
	1	1	1		3		2		1	1					1	2				2							
17		117	23		12	4	25	5	24	2	1		23	25	54	27	153	1		2					1	1	
10		60	12				5	1	10		2		12	6	24	22			2			1		2			
3		53	13						7	1	2		7	9	9	2	1			1							
6		46	9		1	3	4	1	7	2	2		16	9	12	16	5		1				1				
4	1	31	5			2			3		1		5	5	14	2	1		1								
4		31	7			2	5		5	2	1		6	5	7	1											
3	24	3	5		1	2			5		1		5	4	12	5				1							
20	78	155	37	3	34	28	19		36	7	3		36	35	49	103		1	1	1					1	1	
9	1	107	14		13	3	15		10	2			11	46	26	25			1	1					1		
7		83	8	1		7	1		8	2			14	8	19	4			1							1	
7		108	12			3	13		12	1	1		12	1	15	3				1							
9	26	52	10			3	5		10	1			11	10	21	4			1								
9		86	10		2	4		3	10	4			20	32	17	7			2					1			
12	26	103	16			4	3		9	2			15	16	34	2				1	1				1		
12		128	16		2	4		3	16				22	15	21	36				1		1	1			1	
1	4	30	6		4	3				2			5	3	8	4											

2) 생산년도별

구분	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무인방수탑	고가차(m)			굴절차(m)			구조차			조명차		
		대형	중형	소형	농기계용	사물전화		고성능	제독차	내폭	분석차	일반		33이하	46이하	50이상	18이하	27이하	35이하	일반	버스	산악			
계	7,380	357	1,276	569	10	5	688	90	10	10	5	167	9	13	87	79	32	149	35	214	51	30	63		
2007	843	19	185	18			76	4	1		3	7		1	4	7		8	5	23	5	11	5		
2006	991	13	149	52			87	7			1	13		1	6	5		10	4	32	5	3	1		
2005	833	28	108	41			88	7				15		1	3	9		8		28	15	1	1		
2004	812	17	61	14	2		48	8				8				9		13	2	28	5	3	4		
2003	734	12	80	47		1	49	8				12		2	2	3		3	1	34	7	6	2		
2002	603	4	124	42	3	4	70	8	1			8			5	11	2	8		35	6	1	7		
2001	414	11	78	54			26	15	1	1		4		1	2	5	1	6		11		1	8		
2000	221	13	43	12			25	2				4			3	3		3	1	4	3	4	3		
1999	223	7	65	21			29	1	2		1	4	1		5	10		10	3	2	2		3		
1998	312	20	96	46			41	6	2			9		1	14	1	1	22	2	3	1				
1997	374	44	105	36			41	12	3	2		10	2		9	2	6	10	7	5	1		6		
1996	243	22	40	29			51	6				14			6	4		9	5	5	1		8		
1995	273	46	86	26			34			1		19			9	3	1	18	5	1			1		
1994	171	45	39	27			17	2		3		14			4	4	4	4						1	
1993	125	29	12	38	1		6	1		1		5		2	6	2	4	7		2					
1992	119	14	4	59	3			1		1		7		2	7		2	7						3	
1991	46	13	1	6	1							8	2	1		1	4	1						4	
1990	15			1				2				3		1			2	2							
1989	7																3			1				3	
1988	6									1		2													2
1987	1																1								
1986	4																								
1985	2											1					1								
1984	2														1										1
1983	1														1										
1982																									
1981	4												4												
1980	1																								
1979																									
1978																									
1977																									
1976																									

나. 2007 보강현황

1) 총괄

구분	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무인방수탑	고가차(m)			굴절차(m)			구조차			조명차
		대형	중형	소형	농촌형	산불진화		고성능	제독차	내분석차	일일		33이하	46이하	50이상	18이하	27이하	35이하	일반	버스	산악	
대수	계	785	21	138	17		62	7	1	1	5			6	6		9	2	25	5	9	5
	신규	223	1	10			6	4		1	2			4	3		6		3		1	4
	대체	562	20	128	17		56	3	1		3			2	3		3	2	22	5	8	1
예산액	계	79,805	3,482	21,056	1,985		8,563	2,178	800	800	764			4,370	2,930	154	3,408	1,400	4,571	447	227	940
	신규	21,159	190	1,600			879	1,628		800	350			2,720	1,420		2,152		600		42	740
	대체	58,646	3,292	19,455	1,985		7,684	550	800		414			1,650	1,510	154	1,256	1,400	3,771	447	185	200
보조금 대수	계	260							1	1									25	2	8	
	신규	82								1									3		1	
	대체	178							1										22	2	7	
보조금 예산	계	12,851		394					400	400						77			2,736	214	168	
	신규	3,317								400									300		42	
	대체	9,514		394					400							77			2,436	214	126	
보조금 지방비 예산	계	8,296							400	400						77			1,635	53	35	
	신규	2,737								400									300			
	대체	5,559							400							77			1,335	53	35	
교부세 대수	계																					
	신규																					
	대체																					
교부세 예산	계																					
	신규																					
	대체																					
교부세 지방비 예산	계																					
	신규																					
	대체																					
순지방 대수	계	525	21	138	17		62	7			5			6	6		9	2		3	1	5
	신규	141	1	10			6	4			2			4	3		6					4
	대체	384	20	128	17		56	3			3			2	3		3	2		3	1	1
순지방 예산	계	58,679	3,482	20,662	1,985		8,563	2,178			764			4,370	2,930		3,408	1,400		180	24	940
	신규	15,106	190	1,600			879	1,628			350			2,720	1,420		2,152					740
	대체	43,573	3,292	19,061	1,985		7,684	550			414			1,650	1,510		1,256	1,400		180	24	200
납품	대수	520	10	101	12		49	5			1			5	1		5	1	6	4	6	
	금액	48,258	1,742	16,206	1,323		6,875	1,878			180			3,370	500		1,982	400	1,150	286	155	
	계약	381	8	89	12		33	4	1		1	4		5	4		8	2	20	3		4
미집행	대수	6		1	1						1						1			2		
	금액	1,494		173	120		41				136						447			312		

2) 시·도별

구분	계	펌프차					물 탱크차	화학차					고가차(m별)			골절차(m별)			구조차			조 명 차
		대 형	중 형	소 형	농 촌 형	산 불 진 화		고 성 능	제 독 차	내 폭	화 학 분 석	일 반	무 인 방 구 탑	3 3 이 하	4 6 이 하	5 0 이 상	1 8 이 하	2 7 이 하	3 5 이 하	일 반	버 스	
계	785	21	138	17		62	7	1		1	5			6	6		9	2	25	5	9	5
학 교	2																					
구조대	1																			1		
서 울	89		12			13					1			1				1	2			
부 산	36		5			2												1	2	3		
대 구	27		4			5																
인 천	30	2	2			5					1			1			1		2			
광 주	21		7																			
대 전	14	2	6					1														
울 산	17		3			1															1	1
경 기	230	4	45	3		17	4			1				4			6		4			4
강 원	52		4			3													2			3
충 북	22		8	1															1			1
충 남	59		4			4	1							1					4	1	1	
전 북	28		4	3							1								1			3
전 남	19	8				4	2							1								
경 북	56	4	8	10		3					1			3					4			
경 남	68	1	23			5					1			1			2		2			
제 주	14		3																1			

(단위 : 대)

배 연 차	구급차		지 휘 차	위 성 중 계 차	장 비 운 반 차	트레일러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 동 안 전 제 함 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소방헬기 (탑승인원)				소방정 (1별)			구조정 (1별)	
	일 반	특 수				공 기 운 반	보 트 운 반											7	10	14	18	5	50	100	20	30
1	2	198	35		12	9		46	2			40	25	43	47	6										
																2										
		29	2					7				3	5	5	2	6										
		11	1			5		1				2	1	2												
1		13	2									1	1													
		4	1					1				3	2	2	3											
		9	2					1				1	1													
		2				2		1																		
		4												2	5											
		35	9		11			18	2			15	9	14	25											
		19	5		1							2	4	8	1											
		9						1					1													
		24	4					6				6	3													
		5	4			2						3	2													
		4																								
		7	2					7				3	2	2												
		19	1					3						4	6											
	2	4	2									1			1											

다. 2008년 보강계획

1) 총괄

구분	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무인방수탑	고가차(m)			글질차(m)			구조차			조명차
		대형	중형	소형	농촌진흥	산불진화		고성능차	제독차	내폭차	분석차	일반		33이하	46이하	50이상	18이하	27이하	35이하	일반	버스	산악	
		대수	계	575	13	117		22		52	9					9		1	6	7		11	
	신규	78		5			5								2			2		1	4		
	대체	497	13	112	22		47	9				9		1	4	7		9	13	23	3	1	2
예산액	계	94,355	2,035	18,701	2,620		7,691	2,670				1,533		300	5,720	3,821		2,821	6,400	5,400	2,430	60	300
	신규	11,450		765			731								1,500			700		800	400		
	대체	82,905	2,035	17,936	2,620		6,960	2,670				1,533		300	4,220	3,821		2,121	6,400	4,600	2,030	60	300
보조금대수	계	183																		24	4	1	
	신규	46																		1	4		
	대체	137																		23		1	
보조금예산	계	18,720																		3,300	200	30	
	신규	4,014																			400	200	
	대체	14,706																		2,900		30	
보조금지방비예산	계	12,010																		2,100	200	30	
	신규	2,254																			400	200	
	대체	9,756																		1,700		30	
교부세대수	계	4		1																			
	신규																						
	대체	4		1																			
교부세예산	계	140		140																			
	신규																						
	대체	140		140																			
교부세지방비예산	계																						
	신규																						
	대체																						
순지방대수	계	388	13	116	22		52	9				9		1	6	7		11	13		3		2
	신규	32		5			5								2			2					
	대체	356	13	111	22		47	9				9		1	4	7		9	13		3		2
순지방예산	계	63,485	2,035	18,561	2,620		7,691	2,670				1,533		300	5,720	3,821		2,821	6,400		2,030		300
	신규	5,182		765			731								1,500			700					
	대체	58,303	2,035	17,796	2,620		6,960	2,670				1,533		300	4,220	3,821		2,121	6,400		2,030		300
예산미확보	대수	13						1										1					
	금액	1,610						250								450							

2) 시·도별

구분	계	펌프차					물 탱크 차	화학차					고가차(m별)				굴절차(m별)			구조차			조 명 차
		대 형	중 형	소 형	농 촌 진 화	산 불 진 화		고 성 능	제 독 차	내 화 분 석	일 반	무인방수탑차	3 3 이하	4 6 이하	5 0 이상	1 8 이하	2 7 이하	3 5 이하	일 반	버 스	산 악		
계	575	13	117	22		52	9			9	1	6	7		11	13	24	7	1	2			
학 교	2																						
구조대	1																						
서울	104		13			13			2		1					3	2	3					
부산	34		9			5			2								2			2			
대구	22		4			2						1		1									
인천	22		4			3					2			3				1					
광주	11		5											1									
대전	14	3							2			2		1									
울산	19		3	1		2																	
경기	104		41			5	2				3				7	3							
강원	26		8						2					1		3							
충북	22	1	2	4		1						1		1				3					
충남	26	3	2	3		3	2					1				2							
전북	12		1												1	3							
전남	37	3	6	7		1									1	2							
경북	34					5	5					1			1	5							
경남	72	3	16	7		12			1		1		3		1								
제주	13		3								1					1		1					

(단위 : 대)

배 연 차	구급차		지 휘 차	위 성 중 계 차	장 비 운 반 차	트레일러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 동 전 제 함 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소방헬기 (탑승인원)				소방정 (1별)		구조정 (1별)		
	일 반	특 수				공 기 운 반	보 트 운 반											7	1 0	1 4	1 8	5	5 0	1 0	2 0	3 0
1	6	168	7		6				12				12	8	30	18	13									
			1						1																	
					1																					
		23	4		1								5	3	13	5	13									
		11	2													1										
		10							1							3										
		9																								
		5																								
		6																								
	4								1							4	4									
		25			4				2				3	3	5	1										
		9							3																	
		9																								
		10																								
		7																								
		11	1										1	1	1	2										
		17																								
1		12							4				2	1	3	5										
	2	3											1		1											

1-9 의무소방원 관리현황

['07. 12. 31 현재]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전역자 누계 ('02 ~ '07)
계	2,000	804	-1,196	4,902
서울	154	61	-93	390
부산	80	32	-48	335
대구	70	28	-42	291
인천	78	32	-46	256
광주	50	20	-30	135
대전	50	20	-30	163
울산	52	21	-31	111
경기	390	156	-234	875
강원	130	53	-77	351
충북	120	49	-71	188
충남	130	54	-76	226
전북	130	52	-78	265
전남	130	53	-77	330
경북	228	90	-138	449
경남	169	67	-102	397
제주	39	16	-23	140

※ '06.5.19 정원 2,000명으로 조정

2

방호업무

2-1 의용소방대

가. 총괄

(단위 : 대, 명)

구 분		대 수				대 원 수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계	3,273	1,548	908	817	93,282	50,901	25,950	16,431
	시	896	159	167	570	24,986	6,997	6,437	11,552
	읍	484	220	202	62	19,543	10,148	8,147	1,248
	면	1,893	1,169	539	185	48,753	33,756	11,366	3,631
시 지 역	계	1,822	708	443	671	52,192	24,336	14,292	13,564
	시	896	159	167	570	24,986	6,997	6,437	11,552
	읍	207	94	87	26	8,491	4,368	3,569	554
	면	719	455	189	75	18,715	12,971	4,286	1,458
군 지 역	계	1,451	840	465	146	41,090	26,565	11,658	2,867
	읍	277	126	115	36	11,052	5,780	4,578	694
	면	1,174	714	350	110	30,038	20,785	7,080	2,173

※ 설치근거 : 소방기본법 제37조,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설치기준>

- 시·읍지역 : 1개대 60명(여성대 50명)
- 면 지역 : 1개대 30명(여성대 30명)
- 지역대 : 시·읍·면지역 1개대 20명

나.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계	20~30	31~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이상
계	계	93,282	1,194	16,983	23,814	27,115	16,671	6,302	1,199	4
	본 대	50,901	707	9,577	12,681	14,685	8,975	3,485	787	4
	여성대	25,940	282	4,653	7,142	7,613	4,434	1,553	263	-
	지역대	16,441	205	2,753	3,991	4,817	3,262	1,264	149	-
시 지역	계	52,192	564	9,297	13,799	15,187	9,492	3,378	471	4
	본 대	24,336	311	4,511	6,400	6,875	4,387	1,551	297	4
	여성대	14,282	103	2,509	4,099	4,296	2,412	778	85	-
	지역대	13,574	150	2,277	3,300	4,016	2,693	1,049	89	-
군 지역	계	41,090	630	7,686	10,015	11,928	7,179	2,924	728	-
	본 대	26,565	396	5,066	6,281	7,810	4,588	1,934	490	-
	여성대	11,658	179	2,144	3,043	3,317	2,022	775	178	-
	지역대	2,867	55	476	691	801	569	215	60	-

다. 근무기간별

(단위 : 명)

구 분		계	1년 미만	1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31년 이상
계	계	93,282	11,044	35,017	22,157	13,521	7,488	2,911	920	224
	본 대	50,901	4,407	17,008	12,554	8,421	5,211	2,295	810	195
	여성대	25,940	4,459	11,042	5,879	3,021	1,272	240	23	4
	지역대	16,441	2,178	6,967	3,724	2,079	1,005	376	87	25
시 지역	계	52,192	6,803	21,029	12,200	6,798	3,588	1,327	335	112
	본 대	24,336	2,445	8,689	5,898	3,727	2,253	940	289	95
	여성대	14,282	2,387	6,192	3,309	1,623	616	139	14	2
	지역대	13,574	1,971	6,148	2,993	1,448	719	248	32	15
군 지역	계	41,090	4,241	13,988	9,957	6,723	3,900	1,584	585	112
	본 대	26,565	1,962	8,319	6,656	4,694	2,958	1,355	521	100
	여성대	11,658	2,072	4,850	2,570	1,398	656	101	9	2
	지역대	2,867	207	819	731	631	286	128	55	10

라. 학력별·신분별

(단위 : 명)

구 분		학 력 별						신 분 별			
		소계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소계	민방위	예비군	기타
계	계	93,282	10,322	24,581	49,467	8,653	259	93,282	18,837	4,770	69,675
	본 대	50,901	6,015	13,228	26,441	5,083	134	50,901	14,657	3,696	32,548
	여성대	25,940	3,056	7,817	13,589	1,452	36	25,940	-	-	25,940
	지역대	16,441	1,251	3,536	9,437	2,118	89	16,441	4,180	1,074	11,187
시 지 역	계	52,192	3,894	11,902	29,976	6,199	221	52,192	9,897	2,943	39,352
	본 대	24,336	2,183	5,587	13,257	3,208	101	24,336	6,587	2,044	15,705
	여성대	14,282	1,003	3,696	8,483	1,077	33	14,282	-	-	14,282
	지역대	13,574	708	2,619	8,236	1,914	87	13,574	3,310	899	9,365
군 지 역	계	41,090	6,428	12,679	19,491	2,454	38	41,090	8,940	1,827	30,323
	본 대	26,565	3,832	7,641	13,184	1,875	33	26,565	8,070	1,652	16,843
	여성대	11,658	2,053	4,121	5,106	375	3	11,658	-	-	11,658
	지역대	2,867	543	917	1,201	204	2	2,867	870	175	1,822

마. 직업별

(단위 : 명)

구 분		계	농업	어업	상업	건축·토목	축산업	주부	기타
계	계	93,282	28,489	1,597	25,606	2,411	1,475	20,179	13,525
	본 대	50,901	21,611	893	16,689	1,968	1,174	368	8,198
	여성대	25,940	3,935	204	3,239	20	142	16,357	2,043
	지역대	16,441	2,943	500	5,678	423	159	3,454	3,284
시 지 역	계	52,192	11,527	708	14,948	1,349	812	13,420	9,428
	본 대	24,336	8,536	356	8,406	990	640	275	5,133
	여성대	14,282	1,566	47	1,471	14	67	9,786	1,331
	지역대	13,574	1,425	305	5,071	345	105	3,359	2,964
군 지 역	계	41,090	16,962	889	10,658	1,062	663	6,759	4,097
	본 대	26,565	13,075	537	8,283	978	534	93	3,065
	여성대	11,658	2,369	157	1,768	6	75	6,571	712
	지역대	2,867	1,518	195	607	78	54	95	320

바.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단위 : 건, 명)

구분	계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 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홍보	기타
횡수	125,501	120,658	11,809	2,105	14,766	38,559	18,121
인원	1,839,004	139,872	15,919	157,704	1,058,270	256,851	210,388

※ 의소대당 연간 평균출동횡수 : 38.3회(1회당 19.7명 참석)

사. 의용소방대 사기양양대책

○ 2007 예산집행현황

(단위 : 명, 천원, 회)

구분	총합계		출동수당 지급		
	연인원	총금액(A)	횡수(b)	연인원	금액
계	906,124	37,662,559	93,016	758,459	22,837,270
시	526,888	21,855,257	49,323	438,423	12,830,608
군	379,236	15,807,302	43,693	320,036	10,006,662

(단위 : 명, 천원)

구분	자녀 장학금 지급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4,368	4,467,383	34	20,400	1,673	1,721,878	2,661	2,725,106
시	2,440	2,626,523	30	18,000	1,098	1,206,946	1,312	1,401,578
군	1,928	1,840,860	4	2,400	575	514,932	1,349	1,323,528

(단위 : 점, 명, 회, 천원)

구분	피복비		재해보상비		체육대회등 지원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회수	인원	금액	회수	금액
계	65,646	4,252,386	4	9,076	371	77,647	1,146,884	6,680	4,949,561
시	40,722	2,720,602	3	5,147	241	45,300	678,761	5,445	2,993,616
군	24,924	1,531,784	1	3,929	130	32,347	468,123	1,235	1,955,945

2-2 소방용수시설

가. 총괄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소 요 량	145,638	65,115	75,996	2,127	2,400
현보유(%)	128,901(89)	57,237(88)	67,585(89)	1,983(93)	2,096(87)
부 족 수	16,737	7,878	8,411	144	304

나. 2007 소방용수시설 증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7. 1. 1	2007 증감내역			2008. 1. 1
		계	신설	폐기	
계	124,525	4,376	5,362	986	128,901
지상식소화전	53,161	4,076	4,157	81	57,237
지하식소화전	67,212	373	1,170	797	67,585
저수조	1,993	(10)	9	19	1,983
급수탑	2,159	(63)	26	89	2,096

다. 연도별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해방전	'45 ~'60	'61 ~'75	'76 ~'90	'91 ~'95	'96 ~'00	'01 ~'05	'06 ~'07
계	128,901	43	420	3,237	32,255	33,277	26,903	22,121	10,645
지상식 소화전	57,237	-	21	797	10,013	11,498	12,441	14,611	7,856
지하식 소화전	67,585	20	339	2,145	20,527	20,662	13,978	7,204	2,710
저수조	1,983	23	60	253	967	438	132	91	19
급수탑	2,096	-	-	42	748	679	352	215	60

라. 5개년 보강계획 (2007~2011)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계		2007실적		2008계획		2009계획		2010계획		2011계획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계	17,627	58,671,805	5,362	16,868,405	3,098	10,428,400	3,116	10,534,400	2,990	10,316,700	3,061	10,523,900
지상식 소화전	11,726	35,123,937	4,157	12,194,537	1,926	5,729,400	1,938	5,821,900	1,813	5,564,200	1,892	5,813,900
지하식 소화전	5,734	21,915,868	1,170	4,288,368	1,142	4,382,500	1,145	4,413,000	1,143	4,423,500	1,134	4,408,500
저수조	72	1,041,000	9	225,000	16	251,000	14	167,000	20	251,000	13	147,000
급수탑	95	591,000	26	160,500	14	65,500	19	132,500	14	78,000	22	154,500

마. 2008 분기별 설치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계	3,098	10,428,400	211	603,800	681	2,094,850	1,014	3,535,350	1,192	4,194,400
지상식 소화전	1,926	5,729,400	192	531,300	466	1,165,900	759	2,429,800	509	1,602,400
지하식 소화전	1,142	4,382,500	18	67,500	207	788,950	246	991,050	671	2,535,000
저수조	16	251,000	1	5,000	7	137,000	6	97,000	2	12,000
급수탑	14	65,500	-	-	1	3,000	3	17,500	10	45,000

2-3 소방응원협정 체결현황

(단위 : 명, 대)

구 분	응원협정기관 단체수			경비부담		보험가입 기관단체
	계	소방본부	소방서	자체부담	요청기관	
총계	4,213	245	3,968	3,853	360	2,977
시·도소방본부	50	50	-	40	10	30
군부대	423	52	371	391	32	257
경찰청	145	14	131	136	9	102
산림청	14	5	9	14	-	13
해양수산청	14	3	11	12	2	9
한국전력공사	130	11	119	120	10	90
한국통신	129	10	119	120	9	92
도시가스공사	89	12	77	80	9	61
해운업체	45	-	45	42	3	34
자위소방대	330	24	306	324	6	283
중장비보유업체	625	8	617	559	66	467
바지선보유업체	32	-	32	30	2	28
민간견인업체	387	-	387	367	20	275
견인사업소	20	-	20	20	-	17
이삿집센터	233	-	233	212	21	157
기타 기업체	1,547	56	1,491	1,386	161	1,062

2-4 119접수대 시설현황

구 분	합계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비 고
	시설수	신고회선	시설수	신고회선	시설수	신고회선	시설수	신고회선	
합 계	347	3,788	140	1,764	186	2,003	21	21	
서 울	77	524	33	480	44	44	-	-	
부 산	11	171	11	171	-	-	-	-	
대 구	10	159	9	129	1	30	-	-	
인 천	10	160	10	160	-	-	-	-	
광 주	12	68	10	64	2	4	-	-	
대 전	9	69	9	69	-	-	-	-	
울 산	5	130	5	130	-	-	-	-	
경 기	96	511	2	15	94	496	-	-	
강 원	21	152	10	130	11	22	-	-	
충 북	7	60	7	60	-	-	-	-	
충 남	7	90	7	90	-	-	-	-	
전 북	10	70	10	70	-	-	-	-	
전 남	31	91	10	70	-	-	21	21	
경 북	16	523	1	32	15	491	-	-	
경 남	16	930	1	22	15	908	-	-	
제 주	9	80	5	72	4	8	-	-	

2-5 지령시스템 운용실적 (119신고 접수현황)

구분	계	출동관련 신고					유관 기관 이첩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응답	오접속	기타	
		소 계	화 재	구 조	구 급	대민 응 및 기타							
합계	총계	10,557,367	2,319,458	273,919	200,852	1,673,398	171,289	112,576	1,042,994	54,532	1,234,185	4,400,867	1,392,755
	유선	5,663,323	1,201,279	139,656	88,495	863,628	109,501	59,466	565,215	30,287	626,436	2,419,163	761,477
	무선	4,894,044	1,118,179	134,263	112,357	809,770	61,788	53,110	477,779	24,245	607,749	1,981,704	631,278
서울	총계	2,291,269	410,103	37,921	29,819	327,285	15,078	17,176	226,310	2,562	52,016	1,472,627	110,475
	유선	1,337,194	195,795	13,870	10,841	162,870	8,214	7,415	114,020	1,666	28,579	950,779	38,940
	무선	954,075	214,308	24,051	18,978	164,415	6,864	9,761	112,290	896	23,437	521,848	71,535
부산	총계	753,376	133,996	3,472	11,586	112,994	5,944	4,704	104,601	5,192	152,004	270,105	82,774
	유선	344,809	76,063	1,653	5,684	65,109	3,617	3,489	51,955	3,227	54,833	112,158	43,084
	무선	408,567	57,933	1,819	5,902	47,885	2,327	1,215	52,646	1,965	97,171	157,947	39,690
대구	총계	427,722	91,455	5,206	6,062	62,562	17,625	82	43,376	2,466	39,883	249,668	792
	유선	171,503	36,583	2,083	2,425	25,025	7,050	80	17,351	987	15,954	99,866	682
	무선	256,219	54,872	3,123	3,637	37,537	10,575	2	26,025	1,479	23,929	149,802	110
인천	총계	517,571	93,355	5,528	6,775	80,966	86	8,768	22,588	12,065	13,905	331,607	35,283
	유선	207,031	37,345	2,215	2,710	32,386	34	3,507	9,035	4,826	5,562	132,643	14,113
	무선	310,540	56,010	3,313	4,065	48,580	52	5,261	13,553	7,239	8,343	198,964	21,170
광주	총계	373,083	59,334	6,441	4,993	46,531	1,369	157	18,260	1,286	221,398	55,046	17,602
	유선	197,352	27,928	3,478	2,696	21,025	729	85	9,860	694	119,554	29,725	9,506
	무선	175,731	31,406	2,963	2,297	25,506	640	72	8,400	592	101,844	25,321	8,096
대전	총계	419,267	75,711	7,643	5,827	53,616	8,625	16,584	64,128	1,822	45,697	69,218	146,107
	유선	286,962	47,611	6,436	3,094	32,882	5,199	11,609	38,494	1,211	23,867	52,943	111,227
	무선	132,305	28,100	1,207	2,733	20,734	3,426	4,975	25,634	611	21,830	16,275	34,880
울산	총계	149,981	38,297	2,101	6,021	29,887	288	300	9,645	4,660	77,830	18,160	1,089
	유선	88,010	13,715	420	1,204	11,955	136	172	5,422	3,310	54,710	10,120	561
	무선	61,971	24,582	1,681	4,817	17,932	152	128	4,223	1,350	23,120	8,040	528

구 분	계	출동관련 신고					유관 기관 이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 응답	오 접 속	기타	
		소 계	화 재	구 조	구 급	대 민 출 동 및 기 타							
경 기	총계	2,033,352	415,110	49,994	41,876	312,931	10,309	32,737	92,751	4,543	-	1,126,676	361,535
	유선	1,025,198	193,987	20,531	17,124	152,506	3,827	14,125	46,743	2,895	-	581,082	186,366
	무선	1,008,154	221,123	29,463	24,752	160,425	6,482	18,612	46,008	1,648	-	545,594	175,169
강 원	총계	360,942	109,463	15,299	9,597	82,668	1,899	1,801	14,068	1,156	129,856	91,358	13,240
	유선	216,813	76,744	11,779	3,841	60,231	893	1,401	6,463	946	68,835	54,338	8,086
	무선	144,129	32,719	3,520	5,756	22,437	1,006	400	7,605	210	61,021	37,020	5,154
충 청 북	총계	355,648	66,833	4,889	6,109	54,190	1,645	2,180	30,367	2,583	58,652	85,635	109,398
	유선	229,989	36,794	2,129	2,719	30,701	1,245	2,117	14,942	1,464	30,834	74,397	69,441
	무선	125,659	30,039	2,760	3,390	23,489	400	63	15,425	1,119	27,818	11,238	39,957
충 청 남	총계	482,407	105,643	8,382	7,880	76,622	12,759	3,332	148,702	1,930	-	116,397	106,403
	유선	303,028	58,134	3,326	3,038	40,933	10,837	2,165	96,656	1,254	-	75,658	69,161
	무선	179,379	47,509	5,056	4,842	35,689	1,922	1,167	52,046	676	-	40,739	37,242
전 북	총계	365,884	61,320	1,899	6,399	50,229	2,793	8,693	16,065	269	28,678	89,619	161,240
	유선	154,528	26,514	779	2,880	21,598	1,257	3,677	6,747	113	12,045	37,640	67,792
	무선	211,356	34,806	1,120	3,519	28,631	1,536	5,016	9,318	156	16,633	51,979	93,448
전 남	총계	509,306	182,119	84,542	11,509	79,847	6,221	2,938	191,368	204	109,462	-	23,215
	유선	310,608	111,094	51,571	7,021	48,707	3,795	1,792	116,734	125	66,702	-	14,161
	무선	198,698	71,025	32,971	4,488	31,140	2,426	1,146	74,634	79	42,760	-	9,054
경 북	총계	646,897	124,823	7,920	13,229	103,027	647	3,046	8,100	4,416	176,410	327,932	2,170
	유선	326,919	68,604	4,013	6,483	57,654	454	1,766	3,889	2,560	84,405	164,797	898
	무선	319,978	56,219	3,907	6,746	45,373	193	1,280	4,211	1,856	92,005	163,135	1,272
경 남	총계	699,087	276,532	25,375	24,309	151,560	75,288	5,789	27,671	8,965	115,507	68,054	196,569
	유선	382,229	156,475	11,884	12,573	74,811	57,207	3,769	16,178	4,764	55,094	31,769	114,180
	무선	316,858	120,057	13,491	11,736	76,749	18,081	2,020	11,493	4,201	60,413	36,285	82,389
제 주	총계	171,575	75,364	7,307	8,861	48,483	10,713	4,289	24,994	413	12,887	28,765	24,863
	유선	81,150	37,893	3,489	4,162	25,235	5,007	2,297	10,726	245	5,462	11,248	13,279
	무선	90,425	37,471	3,818	4,699	23,248	5,706	1,992	14,268	168	7,425	17,517	11,584

2-6 119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신고접수방식	119상황정보시스템 추진상황	GIS 추진상황
서울	본부통합	완료	완료
부산	본부통합	완료	완료
대구	본부통합	완료	완료
인천	본부통합	완료	완료
광주	본부통합	완료	완료
대전	본부통합	완료	완료
울산	본부통합	완료	완료
경기	서별 분산수보	미구축	일부구축
강원	서별 분산수보	완료	완료
충북	본부통합	완료	완료
충남	본부통합	완료	완료
전북	서별 분산수보	완료	완료
전남	본부통합	완료	완료
경북	서별 분산수보	미구축('08년통합예정)	미구축
경남	서별 분산수보	미구축	일부구축
제주	본부통합	완료	완료

2-7 화재발생현황 ('03 ~ '07)

〈총괄〉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07	47,882	2,459	424	2,035	248,417
2006	31,778	2,180	446	1,734	150,792
2005	32,340	2,342	505	1,837	171,374
2004	32,737	2,304	484	1,820	146,634
2003	31,372	2,833	744	2,089	151,590
연평균 증가율(%)	13.0	-2.8	-11.8	-	16.6

〈대형화재〉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07	6	113	32	81	525
2006	2	37	13	24	92
2005	5	79	10	69	25,071
2004	1	5	5	-	5
2003	10	432	230	202	15,163
연평균	4.8	133.2	58.0	75.2	8,171.2

※ 대형화재 :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 20억원 이상

가. 2007 화재발생 현황

1) 총괄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07		47,882	2,459	424	2,035	248,417
2006		31,778	2,180	446	1,734	150,792
증감	수	16,104	279	-22	301	97,625
	%	50.7	12.8	-4.9	17.4	64.7

2) 원인별

구분	계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	가스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방화	방화 의심	
2007년	47,882	10,569	3,391	268	245	682	22,567	1,645	265	441	2,654	5,155
1월	4,878	986	306	22	29	55	2,447	195	4	38	262	534
2월	5,172	897	262	17	17	62	2,858	193	1	43	257	565
3월	4,920	995	299	20	12	54	2,500	185	30	30	247	548
4월	5,103	816	290	23	23	51	2,888	192	4	34	221	561
5월	3,896	828	280	22	14	51	1,870	131	25	18	237	420
6월	3,978	865	261	23	15	59	1,935	147	16	38	200	419
7월	3,007	940	268	25	21	43	1,032	133	62	20	157	306
8월	2,974	1,007	300	30	23	58	938	107	96	20	115	280
9월	2,699	753	238	25	23	56	1,012	105	6	24	138	319
10월	3,330	748	278	16	15	62	1,449	124	8	29	197	404
11월	4,023	815	321	22	25	59	1,943	70	9	68	313	378
12월	3,902	919	288	23	28	72	1,695	63	4	79	310	421

3) 장소별

구분	주거	교육 시설	판매, 업무 시설	집합 시설	의료, 복지 시설	산업 시설	운수 자동차 시설	문화재 시설	생활 서비스	기타 서비스	자동차, 철도 차량	위험물, 가스 제조소	선박, 항공기	임야	기타
2007년	47,882	11,431	478	2,130	495	397	5,457	212	6	4,798	2,616	6,220	44	128	9,342
1월	4,878	1,176	39	197	48	48	648	25	1	404	215	559	4	15	863
2월	5,172	1,085	43	185	38	31	589	29	-	358	299	532	4	12	1,033
3월	4,920	1,008	32	201	59	35	560	30	2	420	287	509	2	13	965
4월	5,103	989	51	180	39	28	530	15	-	402	308	564	5	10	1,134
5월	3,896	940	35	184	51	28	418	16	1	424	235	527	7	9	824
6월	3,978	852	43	167	38	25	386	10	2	414	205	569	2	11	942
7월	3,007	816	33	147	32	28	374	11	-	396	169	487	2	7	495
8월	2,974	777	33	165	36	34	348	11	-	450	135	442	3	13	512
9월	2,699	802	36	146	39	29	268	5	-	344	144	443	2	5	425
10월	3,330	858	38	159	38	33	349	10	-	365	216	517	9	10	687
11월	4,023	1,060	54	201	40	31	477	27	-	387	219	528	2	13	775
12월	3,902	1,068	41	198	37	47	510	23	-	434	184	543	2	10	687

4) 대형화재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07		6	113	32	81	525
2006		2	37	13	24	92
'06년 대비	건수	4	76	19	57	433
	%	200.0	205.4	146.2	237.5	470.7

○ 현황

순서	일시	장소 / 명칭	원인	인명피해(명)			피해액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113	32	81	524,841
1	'07. 2. 11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944번 법무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방화의심	27	9	18	5,000
2	'07. 3. 17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대우미래사랑시티공사장	부주의	60	1	59	230,000
3	'07. 8. 9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53-18 원진산업	화학적 요인	8	6	2	188,283
4	'07. 10. 21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2-12 숲속모텔	방화의심	5	5	-	79,219
5	'07. 10. 28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국도상 자동차화재	교통사고	6	6	-	57,300
6	'07. 12. 26	경기도 안산시 540-12 무허가 성인오락실	부주의	7	5	2	22,282

5) 시·도별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 재 건 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소실 동수	소실면적 (㎡)	
		계	사망	부상				
2007년 계	47,882	2,459	424	2,035	248,417	21,094	4,601,993	
서울	'07	6,698	416	67	349	17,887	2,028	68,626
	'06	4,907	331	56	275	9,023	1,284	107,571
	'05	4,996	336	79	257	12,082	1,392	44,211
부산	'07	2,787	152	28	124	5,152	1,168	118,809
	'06	1,757	153	32	121	3,966	548	111,277
	'05	1,917	172	36	136	3,590	777	97,605
대구	'07	2,371	87	12	75	10,973	752	88,312
	'06	973	97	20	77	2,626	507	29,196
	'05	1,033	158	26	132	21,908	577	55,940
인천	'07	2,157	113	15	98	10,839	1,093	116,129
	'06	1,612	107	24	83	5,703	839	68,216
	'05	1,565	114	31	83	5,272	833	78,525
광주	'07	1,386	34	7	27	3,849	467	129,494
	'06	792	57	10	47	2,438	26	18,998
	'05	766	42	5	37	2,166	35	15,815
대전	'07	1,510	64	5	59	5,271	454	79,019
	'06	880	69	20	49	2,627	292	11,580
	'05	890	53	15	38	2,626	288	15,272
울산	'07	1,469	60	11	49	3,945	440	187,268
	'06	971	70	7	63	2,349	278	18,270
	'05	1,086	51	8	43	2,902	308	32,206
경기	'07	10,784	578	77	501	70,642	5,365	1,166,069
	'06	7,681	496	94	402	54,407	4,795	527,378
	'05	7,755	584	105	479	53,015	4,938	491,097

구 분	화 재 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소실 동수	소실면적 (㎡)	
		계	사망	부상				
강 원	'07	2,457	104	21	83	11,215	960	252,874
	'06	1,534	129	25	104	7,800	916	226,954
	'05	1,554	129	33	96	7,569	925	69,398
충 북	'07	1,474	118	23	95	15,019	907	101,732
	'06	1,226	107	17	90	11,973	680	61,303
	'05	1,167	94	27	67	14,378	618	102,009
충 남	'07	2,698	103	20	83	18,843	1,532	332,832
	'06	1,357	88	23	65	9,248	1,187	208,866
	'05	1,376	86	27	59	7,157	1,135	114,567
전 북	'07	1,855	99	18	81	11,065	1,215	469,559
	'06	1,508	92	18	74	6,693	1,045	96,509
	'05	1,498	108	21	87	5,880	1,199	93,017
전 남	'07	2,337	155	45	110	10,601	1,204	511,816
	'06	1,393	93	33	60	6,844	865	113,988
	'05	1,340	82	13	69	8,191	737	71,796
경 북	'07	2,986	130	22	108	16,691	1,366	500,012
	'06	1,909	124	36	88	9,372	1,195	107,673
	'05	1,901	123	36	87	8,395	1,223	96,093
경 남	'07	4,238	190	43	147	28,936	1,868	311,894
	'06	2,707	136	24	112	13,461	1,509	95,307
	'05	2,918	173	30	143	14,127	1,655	118,577
제 주	'07	675	56	10	46	7,489	275	167,548
	'06	571	31	7	24	2,263	207	17,160
	'05	578	37	13	24	2,116	234	16,960

나. 대형화재

1) 인명피해

순위	발생일시	발생장소	원 인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1	02.02.18.09:53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 『지하철 전동차』	방 화	340	192	148	4,768,845
2	71.12.25.10:17	서울 중구 충무로 (대연각호텔)	LPG취급 부주의	226	163	63	838,200
3	74.11.03.02:4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대왕코너)	전기합선	123	88	35	21,100
4	60.03.02.07:55	부산시 중구 범일동 (국제고무공장)	성 냇	101	62	39	10,000
5	99.10.30.18:57	인천 중구 인현동 (히트노래방)	불장난	137	56	81	64,813
6	72.12.02.20:27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시민회관)	전기합선	131	53	78	350,000
7	55.03.02.18:33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산역 구내 여객차량)	유 류	56	42	14	80
8	73.08.12.04:43	충북 영동 영동역 열차 (유조차)사고	탈선화재	51	40	11	17,903
9	84.01.14.08:00	부산 진구 부전동 (대야호텔)	석유난로	106	38	68	200,000
10	57.06.23.10:50	부산 동구 수정동 (미군용 송유관)	송유관 파 열	78	38	40	64세대 전 소

2) 재산피해

순위	발생일시	발생장소	원 인	재산피해	
				당 시 피 해 액	당시 미화(\$) 환 산 액
1	05.12.29.21:57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전 기	186억8,242만원	18,442,666 \$
2	53.11.27.20:25	부산시 중구 영주동 (부산역)	풍로볼티	176억9,400만원	2,949,000,000 \$
3	74.01.23.15:45	경북 구미시 왕평동 (운성방직)	전 기	156억원	32,231,405 \$
4	96.10.07.20:45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충남방직)	전기합선	122억2,000만원	15,184,274 \$
5	99.05.13.14:11	울산시 남구 고사동 (SK)	배관재질 결함	156억4,170만원	13,780,141 \$
6	88.03.05.10:15	충북 충주 목행동 (새한미디어)	용접 부주의	98억7,357만원	13,515,626 \$
7	05.09.24.13:16	충북 청원 오창면 (일신방직)	원인미상	62억7,100만원	6,190,523 \$
8	60.06.16.12:23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유 류	46억8,779만원	7,211,982 \$
9	90.10.21.05:10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대우전자)	불 티	47억5,400만원	6,714,974 \$
10	79.12.24.04:00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금성사)	전기합선	29억6,000만원	6,115,702 \$

다. 특수화재

1) 대량위험물화재

순서	일 자	장 소	원 인	인명피해(명)			피해액 (천원)
				계	사망	부상	
1	'86.12.17	전남 여천시 월내동 (력키메탄올공장)	무수황산 탱크폭발	25	1	24	30,000
2	'87. 8.14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공항참고)	화학폭발	89	9	80	110,000

2) 고압가스화재 현황

순서	일 자	장 소	원 인	인명피해(명)			피해액 (천원)
				계	사망	부상	
1	'92.02.23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가스탱크로리충돌	21	-	21	1,172,440
2	'94.12.07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6-6 (한국가스 공급기지)	누출가스 폭 발	61	12	49	600,000
3	'95.04.28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누출가스 폭 발	278	102	176	2,130,000
4	'98.09.11	경기 부천시 내동 (대성에너지)	가스충전시설 취급부주의	84	-	84	6,489,433
5	'00.09.27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대흥정공)	LP가스폭발	19	6	13	45,000

3) 차량화재발생 추세

연도별	구 분	화재건수	인 명 피 해(명)		
			계	사망	부상
'07년 중		6,220	154	50	104
'06년 중		5,929	170	46	124
'05년 중		5,884	174	74	100
'04년 중		6,012	204	74	130
'03년 중		6,049	598	274	324
연평균		6,018.8	260.0	103.6	156.4

3

예방업무

3-1 소방검사

가. 소방검사제도

-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소방검사)
- 2) 검사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3) 소방검사대상 : 전체 767,303개소
 - 일반검사대상 : 729,271개소
 - 자체점검대상 : 38,032개소
- 4) 검사내용
 -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 / 관계인에게 질문
- 5) 소방검사의 항목
 -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방화관리 업무수행(공공기관등의 방화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6) 검사자의 자격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건축·전기·기계·가스 등 국가기술자격자
 -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소방학교 전문교육 이수자
 - 기타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검사방법

- 정기검사 :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화재예방전반에 관한 검사
- 특별검사 : 대형화재발생 및 계절적 취약시기에 특별점검

나. 소방검사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구분	총계		소방검사대상		종합정밀점검		
	소방검사	종합정밀	소방검사	종합정밀	소방검사	종합정밀	
계	729,271	38,032	710,491	18,780	19,035	18,997	
1	근린생활시설	381,546	1,117	380,765	781	1,049	68
2	위락시설	6,962	17	6,962	-	17	-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16,878	1,550	16,645	233	677	873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3,444	1,636	3,243	201	952	684
5	숙박시설	27,901	431	27,896	5	428	3
6	노유자시설	18,632	1,007	16,362	2,270	93	914
7	의료시설	1,786	524	1,778	8	443	81
8	아파트	21,724	5,437	21,720	4	5,433	4
	기숙사	829	85	799	30	42	43
9	업무시설	29,715	7,006	18,050	11,665	2,073	4,933
10	통신촬영시설	701	301	660	41	287	14
11	교육연구시설	5,187	10,912	2,449	2,738	318	10,594
12	공장	96,326	1,225	96,324	2	1,209	16
13	창고시설	16,115	326	16,106	9	300	26
14	운수자동차관련시설	9,385	402	9,306	79	175	227
15	관광휴게시설	637	31	598	39	7	24
16	동식물관련시설	16,207	19	16,187	20	8	11
17	위생등관련시설	1,302	191	1,079	223	9	182
18	교정시설	23	66	7	16	-	66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8,802	39	38,794	8	26	13
20	지하가	746	97	569	177	30	67
21	지하구	348	59	256	92	1	58
22	문화재	2,246	9	2,155	91	-	9
23	복합건축물	31,829	5,545	31,781	48	5,458	87

다. 소방검사요원 자격별 현황

[전담반]

구분	총계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			위험물관리				관련자격자	방전과공학자	이계과업	공학출자	소학전교이수자	기타
				소계	기사	산업기사	소계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계	2,208	-	6	263	174	89	149	-	16	133	41	95	124	376	1,154	
서울	182	-	1	35	24	11	4	-	1	3	4	17	11	79	31	
부산	54	-	-	2	2	-	10	-	-	10	1	-	9	20	12	
대구	32	-	-	4	4	-	4	-	-	4	1	4	1	4	14	
인천	49	-	-	6	3	3	-	-	-	-	-	10	6	4	23	
광주	64	-	-	5	4	1	3	-	2	1	3	3	2	24	24	
대전	17	-	-	6	4	2	1	-	-	1	-	5	1	3	1	
울산	14	-	1	4	3	1	2	-	-	2	1	-	-	4	2	
경기	96	-	-	21	12	9	2	-	-	2	1	21	4	23	24	
강원	30	-	-	4	3	1	1	-	-	1	-	-	8	2	15	
충북	16	-	-	4	3	1	1	-	-	1	-	4	-	7	-	
충남	324	-	-	51	24	27	18	-	4	14	1	18	18	52	166	
전북	481	-	1	51	35	16	36	-	7	29	7	1	18	54	313	
전남	36	-	-	9	8	1	2	-	-	2	1	2	1	12	9	
경북	412	-	1	37	28	9	34	-	1	33	12	3	16	25	284	
경남	284	-	2	21	15	6	29	-	1	28	5	7	11	56	153	
제주	117	-	-	3	2	1	2	-	-	2	4	-	18	7	83	

[전직원]

6-21. 소방검사요원 자격별 현황(전직원)

구분	총계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			위험물관리				관련기술자격소지자	소방안전학과전공자	이공계학과졸업자	소방안전전문교육 이수자	기타
				소계	기사	산업기사	소계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계	15,618	2	15	1,293	761	532	976	5	157	814	387	548	1,694	2,367	8,336
서울	642	-	-	88	42	46	30	-	8	22	18	33	34	315	124
부산	849	-	2	100	57	43	231	1	46	184	54	7	307	125	23
대구	638	-	1	52	31	21	71	-	10	61	5	16	62	36	395
인천	1,232	1	2	98	41	57	69	3	14	52	21	32	116	91	802
광주	351	-	-	27	24	3	7	-	1	6	7	5	3	91	211
대전	414	-	-	44	26	18	35	-	-	35	2	18	4	31	280
울산	537	-	1	25	18	7	7	-	2	5	31	10	14	39	410
경기	3,803	-	2	322	172	150	143	1	31	111	103	275	490	932	1,536
강원	617	-	-	98	75	23	46	-	4	42	45	11	243	76	98
충북	771	-	1	47	27	20	24	-	1	23	2	3	10	142	542
충남	1,249	-	1	116	51	65	57	-	16	41	37	60	126	118	734
전북	890	1	1	80	57	23	63	-	7	56	12	8	56	84	585
전남	406	-	-	57	41	16	54	-	4	50	6	15	1	56	217
경북	1,521	-	1	52	40	12	54	-	4	50	24	18	38	85	1,249
경남	1,323	-	3	78	50	28	82	-	9	73	14	37	148	117	844
제주	375	-	-	9	9	-	3	-	-	3	6	-	42	29	286

3-2 일반소방검사대상 현황

관서별	총계	1	2	3	4	5	6	7	8		9	10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기숙사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계	710,491	380,765	6,962	16,645	3,243	27,896	16,362	1,778	21,720	799	18,050	660
서울	104,553	69,336	63	2,249	355	3,217	1,294	170	4,660	63	3,555	13
부산	44,746	25,897	37	996	404	2,624	721	131	2,527	18	563	23
대구	44,752	28,857	115	725	145	1,116	815	91	1,012	15	413	16
인천	39,200	22,910	121	928	115	1,271	752	62	896	7	445	23
광주	20,098	14,027	143	503	73	968	523	81	548	13	335	13
대전	33,740	25,378	86	688	127	970	689	43	424	32	205	15
울산	20,252	7,293	325	266	73	701	360	50	915	24	132	9
경기	107,177	44,266	343	3,263	428	4,093	3,197	295	2,493	146	1,394	92
강원	32,516	19,369	331	887	155	1,685	2,015	53	863	46	591	75
충북	22,048	5,253	329	625	104	979	425	103	768	27	229	22
충남	46,010	24,068	547	1,118	157	1,731	723	102	740	76	1,200	53
전북	38,625	20,121	615	1,088	163	1,396	906	132	793	35	3,982	57
전남	29,620	13,237	1,213	844	215	1,644	795	138	745	104	685	57
경북	61,831	31,053	1,332	1,113	381	2,258	1,342	132	1,627	111	2,941	114
경남	55,506	24,787	1,254	1,158	310	2,604	1,461	185	2,267	60	978	38
제주	9,817	4,913	108	194	38	639	344	10	442	22	402	4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교육연구시설	공 장	창 고 시 설	운 수 자 동 차	관 광 휴 게 시 설	동 신 물 관 련 시 설	위 생 에 관 련 시 설	교 정 시 설	위 험 물 시 설	지 하 가	지 하 구	문 화 재	복 합 건 축 물
2,449	96,324	16,106	9,306	598	16,187	1,079	7	38,794	569	256	2,155	31,781
329	2,075	304	691	3	4	4	2	1,497	10	51	81	14,527
91	6,043	463	607	5	41	45	-	1,300	14	36	15	2,145
46	8,247	723	432	6	39	22		785	13	7	41	1,071
90	8,126	502	674	4	21	89	-	845	9	4	30	1,276
68	1,259	253	387	2	8	13	1	551	5	10	32	282
83	754	401	360	10	26	97	-	2,774	14	80	46	438
57	1,747	118	138	4	26	34	-	7,330	3	1	9	637
468	32,263	3,347	1,427	80	873	182	1	3,833	53	26	118	4,496
154	1,450	623	729	115	361	78	1	1,209	57	4	127	1,538
149	3,347	468	177	55	348	38	1	7,899	19	3	79	601
230	4,880	1,708	622	61	4,232	172	-	1,858	40	5	212	1,475
143	2,562	1,286	479	43	2,773	73	-	1,530	48	1	202	197
109	3,209	1,555	411	40	2,308	45	-	1,804	92	6	271	93
231	9,309	2,240	1,041	91	2,649	79	-	2,388	86	12	593	708
162	10,777	1,575	896	65	1,879	97	-	2,818	106	10	271	1,748
39	276	540	235	14	599	11	1	373	-	-	28	549

3-3 다중이용업소

가.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시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행정안전부령이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나. 다중이용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신중다중이용업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

소 방 시 설	방화시설	그 밖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식, 자동식소화기 - 자동확산소화용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피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 경보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문 • 비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음향차단장치 • 누전차단기 • 피난유도선

라. 다중이용업소 현황

(1) 다중이용업 현황

구 분	총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지하 66㎡ 이상	지상 100㎡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지하 66㎡ 이상	지상 100㎡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지하 66㎡ 이상	지상 100㎡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계	170,804	5,005	1,941	49	68	14,861	33,912	27,750	14,764
서울	40,437	918	447	17	8	7,333	7,827	2,498	3,625
부산	14,120	140	233	-	37	818	2,706	2,483	2,074
대구	7,697	776	81	5	-	660	1,033	1,347	365
인천	8,619	410	83	3	-	502	2,148	932	502
광주	4,834	161	32	-	4	330	813	752	297
대전	5,542	293	81	2	2	603	1,420	479	302
울산	4,347	99	41	-	-	163	769	1,121	510
경기	33,138	870	297	14	6	1,859	8,412	5,096	1,413
강원	6,534	196	65	-	-	635	1,081	1,480	768
충북	4,382	185	45	1	1	239	893	713	346
충남	6,224	254	73	2	4	431	1,233	976	659
전북	5,205	209	67	2	2	264	1,058	985	423
전남	5,075	82	41	-	-	129	686	1,592	589
경북	8,505	197	122	2	-	266	1,147	2,509	718
경남	13,064	157	190	1	4	425	2,311	4,130	1,231
제주	3,081	58	43	-	-	204	375	657	942

영화산업종별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				목적장업		게임제공업	PC방(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팩시밀리 계량제단량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300인이상 수용인원	100인상 300인 미만			00인이상 수용인원 1 점점방업						
				(1)기숙사	(2)학원	(3)다중이용 업소							
349	1,646	45	1,844	15	986	874	915	1,333	4,276	23,581	44	36,145	401
77	549	16	829	-	145	401	209	237	1,394	6,859	15	6,929	104
23	120	-	175	-	52	84	54	83	477	1,692	2	2,835	32
11	87	4	78	-	17	18	27	47	105	784	1	2,234	17
16	69	3	104	-	58	9	60	75	97	1,216	3	2,310	19
19	62	3	22	-	60	33	11	26	110	847	1	1,246	5
8	50	2	38	-	10	14	15	24	112	805	1	1,267	14
4	31	-	26	1	8	-	7	32	29	454	1	1,049	2
74	320	7	376	12	312	249	301	213	727	4,910	7	7,551	112
16	48	3	19	-	59	-	29	62	219	765	-	1,078	11
8	32	-	11	-	19	5	13	48	105	637	2	1,069	10
14	31	-	20	-	32	8	20	77	190	747	1	1,446	6
22	45	-	32	-	12	18	21	73	80	794	5	1,078	15
9	27	-	12	-	2	1	16	57	62	588	1	1,174	7
22	82	4	21	-	31	7	31	108	161	919	1	2,144	13
20	78	3	76	2	168	27	93	153	349	1,239	2	2,378	27
6	15	-	5	-	1	-	8	18	59	325	1	357	7

(2) 신종다중이용업 현황

구 분	총 계	고시원	화상대화방 및 전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계	6,959	5,338	604	262	755
서울	3,801	3,434	138	98	131
부산	242	165	23	27	27
대구	228	130	38	5	55
인천	221	122	48	11	40
광주	164	130	10	2	22
대전	141	80	32	12	17
울산	56	16	12	1	27
경기	1,382	958	223	70	131
강원	35	5	3	3	24
충북	80	45	12	-	23
충남	122	50	13	20	39
전북	144	95	8	5	36
전남	56	8	10	1	37
경북	126	41	10	2	73
경남	149	57	19	5	68
제주	12	2	5	-	5

3-4 대형화재 취약대상

가. 대형화재취약대상이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나. 선정기준

- 유흥주점 - 지하층 또는 지상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 이상으로 인명피해 및 화재의 위험도가 많은 곳(기타 층은 500㎡ 이상)
- 영화상영관 - 상영관 3개 이상으로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층에 설치된 것
- 판매시설 -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 이상
- 숙박시설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이 30실 이상 대상)
- 병 원 -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소로서 병상 100개 이상
- 공 장 - 하나의 건축물 연면적이 15,000㎡ 이상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 복합건물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15,000㎡ 이상(주상복합 건물로서 주택부분 면적 제외하되, 아파트 및 상가가 사용하는 계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면적에 산입)
- 고층건물 -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 기타 소방관서장이 지정한 곳
 - 고시원(독립방이 100실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있는 것)
 - 기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330㎡ 또는 룸 수 30실 이상)
 -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바닥면적 330㎡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지하상가(연면적이 1,000㎡)
 -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곳

다. 대형화재취약대상 용도별 현황

구 분	총계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1,000㎡ 이상)				숙박시설	
		지하층 또는 3층이상 바닥면적 330㎡ 이상	기타층 으로 500㎡ 이상	상영관 3개이 상으로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 층에 설치된 영화 상영관	시장	백화점	대형인 매장	기타	5층이 상으로 객실 50실 이상	다중 이용업 소있고 객실 30실 이상
계	6,590	303	60	143	6	133	75	295	151	509	510
서울	1,397	69	1	29	1	18	27	41	65	99	37
부산	309	11	-	10	-	19	3	23	12	29	10
대구	278	25	-	7	-	8	7	26	1	22	14
인천	588	42	7	8	-	7	4	21	10	23	23
광주	150	2	2	11	-	4	2	14	3	4	10
대전	345	19	5	3	-	2	5	12	14	9	60
울산	206	9	3	1	-	3	3	10	2	10	3
경기	657	21	7	21	1	13	15	68	15	35	19
강원	349	24	8	4	1	17	1	7	8	78	57
충북	187	8	-	3	-	6	-	5	3	13	14
충남	390	15	7	4	2	7	-	11	1	37	72
전북	501	21	10	14	1	4	2	10	2	26	76
전남	244	7	1	8	-	2	-	12	4	25	52
경북	428	14	5	10	-	7	2	15	8	28	32
경남	288	5	1	6	-	16	4	14	2	16	6
제주	273	11	3	4	-	-	-	6	1	55	25

병 원		공장	위험물 저장 취급	복합 건축물	고층 건축물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기타
						고시원	기타다주 이용업소	노유자 시설	장애인 수용시설	지하상가	
5층 이상 병상 100개 이상	정신 보건 시설로 병상 100개 이상	지하층 또는 3층 이상 바닥 면적 330㎡ 이상	기타층 으로 500㎡ 이상	상영관 3개 이상으로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 층에 설치된 영화 상영관	독립 방이 100실 이상 또는 지하층	영업장 면적 330㎡ 이상 또는 30실 이상	바닥면적 330㎡,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바닥면적 330㎡,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373	76	807	200	701	680	33	406	289	39	59	742
64	-	78	1	311	301	16	22	13	1	20	183
32	3	31	7	47	24	-	1	4	-	2	41
28	5	23	3	11	29	-	23	7	4	4	31
21	1	53	17	45	118	1	80	12	7	14	74
20	3	17	4	13	22	-	1	5	-	2	11
13	5	23	5	38	38	1	38	20	1	2	32
5	5	37	68	6	21	1	3	5	2	-	9
37	8	84	19	109	28	11	20	34	3	6	83
15	3	19	10	19	11	1	23	12	1	2	28
16	4	55	1	11	2	-	2	13	2	1	28
14	9	113	12	25	14	1	18	9	6	1	12
19	7	54	13	11	22	-	135	54	-	-	20
18	6	56	11	7	8	-	8	7	1	1	10
30	5	118	11	6	13	1	10	52	1	1	59
35	11	46	13	37	8	-	4	16	2	2	44
6	1	-	5	5	21	-	18	26	8	1	77

3-5 방화관리제도

가. 방화관리제도란

건축물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화재관리책임자로 지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상 선임) 하는 것을 말함

나. 근 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다. 방화관리자 자격 (1급과 2급으로 분류)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자
-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라. 주요업무

-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마. 방화관리대상

- 1급 방화관리대상(5,361개소)
 -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 2급 방화관리대상(169,590개소)
 -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등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공공기관 방화관리

가. 목 적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에 대하여 기관장의 책임하에 방화관리업무수행을 통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근 거 : 설치유지법 제20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령)

다. 적용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라. 기관장의 책임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마. 방화관리자의 선임

- (1) 기관장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
 - 소방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소방시설관리사, 공공기관방화관리 강습자
- (2)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대행 위탁시 감독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 가능

바. 방화관리자의 책무

-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바.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구분	총계	1급대상				2급대상							
		소계	연면적 1만 5천㎡ 이상	11층 이상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소계	스 프 링 클 러	물 분 무 소 화 설 비	옥 소 화 설 대	내 전 치 상	자 동 화 재 탐 지 설 치 대 상	가연성 가스 1천톤 미만	지 하 구
계	201,598	6,996	4,442	2,523	31	194,602	23,789	7,722	45,924	106,668	1,048	127	9,324
서울	37,955	2,356	1,421	935	-	35,599	3581	1570	20	28,693	1	13	1,721
부산	14,113	773	301	472	-	13,340	1,746	452	4,146	5,941	285	21	749
대구	10,442	201	138	63	-	10,241	1,681	538	2,576	5,167	5	7	267
인천	11,332	321	183	132	6	11,011	1,589	460	3,220	5,308	2	4	428
광주	6,111	118	72	46	-	5,993	844	77	1,367	3,261	10	2	432
대전	6,067	250	156	94	-	5,817	756	102	1,751	2,929	-	1	278
울산	5,077	176	84	74	18	4,901	599	51	1,060	2,895	-	1	295
경기	45,068	1,428	1,057	370	1	43,640	6,753	706	11,989	21,549	48	47	2,548
강원	5,788	118	98	20	-	5,670	514	247	1,601	2,882	19	1	406
충북	6,766	121	116	5	-	6,645	607	199	1,796	3,579	64	10	390
충남	9,436	196	171	23	2	9,240	761	48	2,268	5,970	2	3	188
전북	7,487	110	95	15	-	7,377	720	1,779	4,332	9	505	2	30
전남	6,243	94	83	9	2	6,149	658	328	1,667	3,284	26	-	186
경북	12,304	223	190	33	-	12,081	844	786	3,546	6,197	41	6	661
경남	14,573	426	242	183	1	14,147	1,526	366	4,061	7,492	37	9	656
제주	2,836	85	35	49	1	2,751	610	13	524	1,512	3	-	89

공공기관대상																		
소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정부투자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사립학교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683	19,319	17,484	299	6,543	12,397	84	8,068	2,448	41	1,008	729	90	999	292	169	2,701	1,618	
265	2,852	1,310	87	886	1,064	48	983	28	13	112	20	39	374	29	78	497	169	
57	1,103	927	23	294	656	7	496	9	2	36	6	11	101	6	14	176	250	
32	867	461	17	226	392	4	330	14	3	45	15	7	61	2	1	205	38	
48	929	556	24	304	439	10	383	44	4	31	13	6	63	8	4	148	52	
14	546	310	8	148	243	-	217	1	2	26	7	-	33	-	4	122	59	
51	559	409	20	187	254	9	240	37	3	41	10	2	9	19	17	82	89	
9	465	306	8	156	249	-	195	21	-	15	8	0	10	1	1	89	27	
110	3,900	2,036	66	1,237	1,354	3	1,760	205	7	208	75	11	171	78	23	524	324	
13	997	1,448	6	480	932	-	372	321	2	76	87	1	29	28	4	40	80	
8	635	809	3	254	590	-	268	143	-	32	37	2	39	21	3	42	18	
18	1,146	1,096	3	392	685	2	570	183	3	58	76	3	17	12	7	109	140	
15	1,003	1,580	8	408	1,067	1	366	333	-	63	48	2	11	29	4	155	103	
5	1,210	2,269	4	418	1,623	-	586	373	1	78	186	-	7	9	-	121	78	
12	1,357	1,846	6	484	1,361	-	578	354	1	91	87	-	30	33	5	174	11	
21	1,402	1,794	12	493	1,224	-	601	329	-	80	51	5	39	16	4	189	174	
5	348	327	4	176	264	-	123	53	-	16	3	1	5	1	-	28	6	

3-6 화재경계지구

가.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도시의 건물밀집 지역으로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는 제도

나. 지정권자 : 시·도지사

다. 지정대상 구역 (동법시행령 제4조)

- 시장지역
- 공장·창고등이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 없는 지역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라. 소방검사 실시

- 대상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
- 횟수 : 연 1회 이상
- 조치 :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령

마.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

-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명령대상 :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
- 횟 수 : 연 1회 이상
- 통 보 :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통보

바. 화재경제지구 현황

구 분	계	시장 지역	공장 밀집지 역	밀집 지역 목조 건물	위험 물 제조 소 밀집 지역	석유 화학 공 지 역	소방 시 설 소 방 출 동 로 없 는 지 역	소 방 장 지 정
계	116	86	3	13	-	3	1	10
서울	21	9	2	10	-	-	-	-
부산	4	2	-	-	-	-	1	1
대구	5	4	-	-	-	-	-	1
인천	9	7	1	1	-	-	-	-
광주	4	2	-	2	-	-	-	-
대전	4	4	-	-	-	-	-	-
울산	1	-	-	-	-	1	-	-
경기	21	15	-	-	-	-	-	6
강원	17	17	-	-	-	-	-	-
충북	4	4	-	-	-	-	-	-
충남	5	4	-	-	-	1	-	-
전북	8	7	-	-	-	-	-	1
전남	3	2	-	-	-	1	-	-
경북	7	6	-	-	-	-	-	1
경남	1	1	-	-	-	-	-	-
제주	2	2	-	-	-	-	-	-

3-7 건축허가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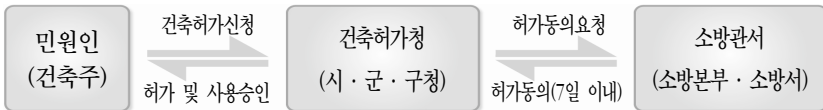
가.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나. 건축허가동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동법시행령 제12조)

- 면적 400㎡ 이상(학교시설 100㎡, 청소년·노유자시설 200㎡)
- 상기 대상의 주차용 건축물 또는 차고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것 또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 비행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 이상
-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다. 허가동의 절차



※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보완 필요시 3일 범위내 1회 연장 가능

라. 2007년도 건축허가동의 현황

허 가 동 의					사용승인(가사용포함)				
계	부 동 의				계	보완통보			
	소계	1회	2회	3회		소계	1회	2회	3회
46,050	1,700	1,447	11	242	28,400	449	446	3	-

3-8 소방공사업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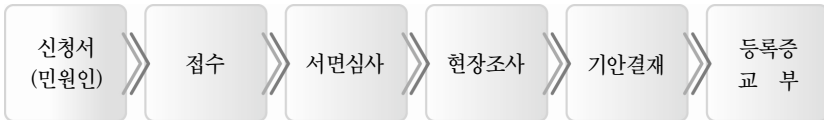
가. 소방시설업

(1)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할 경우 업종별로 일정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소방시설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2) 등록과정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등록절차



(3) 소방시설업의 종류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의 시공업무 수행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전기분야)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완공검사
 - 완공검사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 소방공시감리대상은 감리업자의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완공검사 같음
 - ※ 소방공시감리대상중 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의 설계업무 수행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전기분야)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제연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기계분야(제연 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설계도면 작성 : 소방서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첨부서류임

-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공사의 감리업무 수행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전기분야)
 - 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기계분야(제연 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제연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감리지정 의무자 : 건축주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시설완공필증 교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또는 감리결과보고서 검토후 완공검사필증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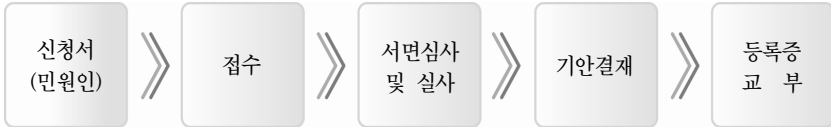
나. 소방시설관리업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2) 등록과정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등록절차



(3)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 소방시설 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
 - 종합정밀점검
 - － 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아파 트인 경우 연면적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 － 횟 수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 횟 수 : 연 1회 이상 실시 · 시 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 횟 수 : 연 1회 이상 실시 · 시 기 : 건축물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방화관리업무대행

다. 방염처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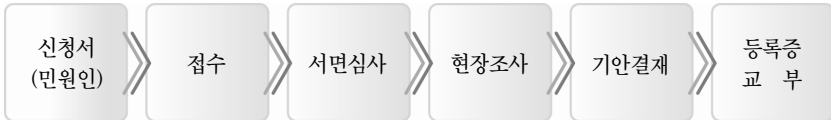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방염처리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 방염처리업 등록·시공의무화 ⇒ 2004. 11. 30일부터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방염처리를 할 수 없음

(2) 등록과정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등록절차



(3) 방염처리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 섬유류방염업
커튼·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 합성수지류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 합판·목재류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라. 소방시설업등 현황

구분	총계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업			소방 시설 관리업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섬유 류	합성 수지류		합판 목재류
계	6,901	734	76	658	4,570	3,759	811	495	161	334	776	61	78	637	326
서울	2,025	336	52	284	1278	974	304	160	78	82	149	-	9	140	102
부산	417	46	5	41	280	254	26	23	13	10	47	1	1	45	21
대구	332	41	2	39	201	162	39	22	11	11	48	14	2	32	20
인천	302	19	-	19	200	174	26	22	6	16	40	-	13	27	21
광주	209	22	2	20	153	140	13	18	4	14	8	-	-	8	8
대전	207	28	2	26	135	117	18	11	5	6	19	1	-	18	14
울산	127	10	-	10	79	67	12	11	3	8	16	0	2	14	11
경기	1,398	96	9	87	942	773	169	98	28	70	199	25	32	142	63
강원	205	18	-	18	138	118	20	18	-	18	24	-	-	24	7
충북	220	22	1	21	137	110	27	17	2	15	37	5	8	24	7
충남	281	13	-	13	201	161	40	20	4	16	38	4	7	27	9
전북	204	19	2	17	138	128	10	12	3	9	26	-	-	26	9
전남	252	13	-	13	193	179	14	16	-	16	22	-	-	22	8
경북	278	21	1	20	201	151	50	14	2	12	33	9	1	23	9
경남	353	18	-	18	234	193	41	24	2	22	63	2	3	58	14
제주	91	12	-	12	60	58	2	9	-	9	7	-	-	7	3

3-9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구 분	계	소방 공무원	학위 소지자	소방 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업무 종사자	소방관련 교육연구 종사자
계	112	15	26	18	9	24	20
서울	9	1	-	4	1	1	2
부산	7	1	2	2	1	1	-
대구	8	1	1	1	2	3	-
인천	7	1	3	1	-	1	1
광주	9	1	-	3	-	4	1
대전	8	1	3	1	-	2	1
울산	7	1	3	2	-	-	1
경기	7	1	5	-	1	-	-
강원	-	-	-	-	-	-	-
충북	9	1	-	1	-	3	4
충남	8	1	-	1	-	2	4
전북	9	1	5	1	1	1	-
전남	7	1	-	1	1	3	1
경북	5	1	-	-	-	1	3
경남	7	1	4	-	1	1	-
제주	5	1	-	-	1	1	2

3-10 소방법위반자 처리 현황

가. 연도별 현황 (사법처리 + 과태료, 최근 5년간)

연도별	합계	년평균	'03	'04	'05	'06	'07
권 수	32,153	6,667	7,714	5,767	6,258	5,891	6,523

나. 사법처리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12	118	94	98	71	5	19	19	294	29	23	36	82	15	40	68	1

다. 과태료 부과 건수

총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56조 1호	56조 2호	56조 3호	56조 4호	56조 5호	57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10호	11호	12호	13호	
5,511	67	20	5	-	7	5	362	13	39	18	7	4	18	-	-	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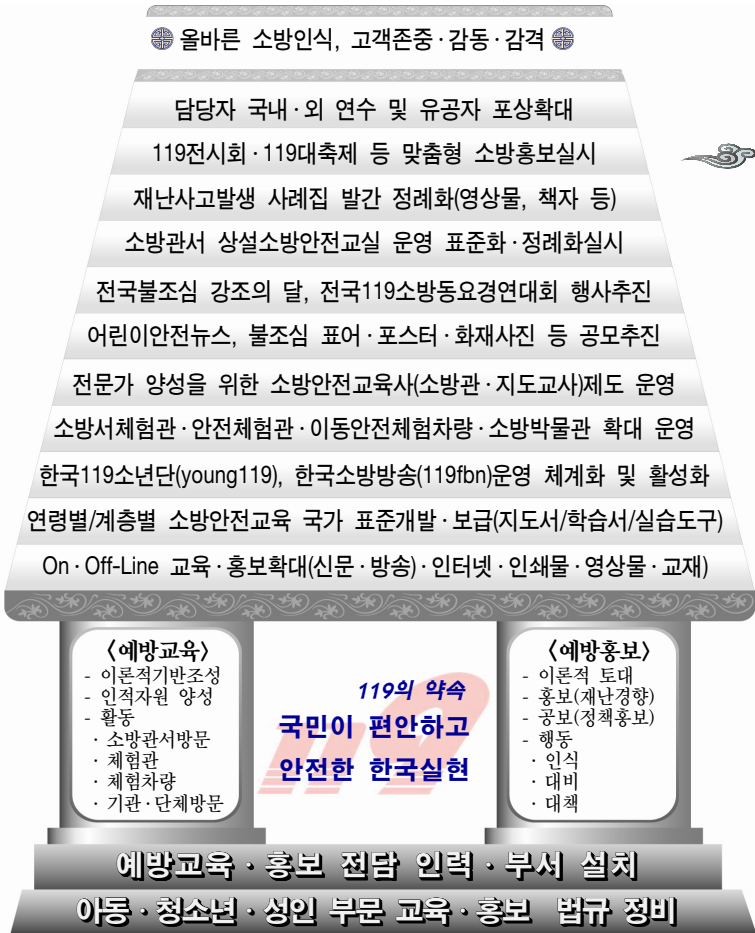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711	476	92	131	863	78	37	30	5	88	-	6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조례 위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43	374	72	556	392	6	34	52	102	358	35	164	102	106	11	1	3

소방! 학술처럼 듣고 예술처럼 보다.



가. 소방안전교육·홍보 추진 현황

1) 근거법령

- 소방기본법 제17조(법률 제6893호)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법률 제7118호)

2) 추진부서 및 인력현황

()는 과건

구분	소방서수	추진부서현황		담당 인력현황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서		
				계	전담	겸임	계	전담	겸임
계	175			50	33	17	222	111	111
서울	22	안전지원과 안전교육팀 안전지원과 홍보기획팀	구조진입과 안전교육팀	11	11	-	66	66	-
부산	10	방호와 안전계 방호와 홍보계	방호와 안전계	6	5	1	10	-	10
대구	7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3	3	-	7	1	6
인천	7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2	-	2	7	-	7
광주	5	대응구조과 예방홍보팀	대응구조과 예방홍보팀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1	1	-	5	5	-
대전	5	예방안전과 소방홍보담당 예방안전과 안전관리담당	예방안전과 안전관리담당	5	3	2	5	5	-
울산	4	대응구조과 예방홍보팀	대응구조과 예방홍보팀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2	1	1	4	-	4
경기1	22	재난대응과 소방홍보팀	방호예방과 소방홍보팀	4	1	3	23	18	5
경기2	8	방호구조과 예방홍보팀	방호예방과 예방팀	1	1	-	11	3	8
강원	11	방호구조과 예방계	예방과 예방계 방호구조과 예방계	1	-	1	11	4	7
충북	8	방호구조과 예방담당	방호와 예방담당	1	-	1	8	-	8
충남	13	방호구조과 예방계	방호예방과 예방계	1	1	-	12	6	6
전북	10	대응구조과 예방지도계	예방안전과 예방계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계	1	-	1	10	-	10
전남	10	방호구조과 예방계	방호와 예방계	1	-	1	10	-	10
경북	15	방호구조과 예방홍보담당	방호구조과 예방홍보담당 방호와 예방홍보담당	2	-	2	15	-	15
경남	15	방호구조과 예방담당 (경남소방교육장)	방호와 예방계 방호구조과 예방계	4	(3)	1	15	-	15
제주	3	소방정책과 예방지도담당 안전도시과 안전도시담당	소방행정과 홍보팀	4	3	1	3	3	-

※ 위성중계차량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인원 제외

겸임자는 방화관리, 원비증명발급, 건축민원, 소방검사, 자체점검, 공사업, 서무 등 예방업무와 겸임

3) 소방안전교육사 운영 현황 <Fire & Life Safety Educator>

소방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풀어서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 진행, 분석,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

- 도입배경

화재 등 재난사고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기 소방안전교육·훈련을 통해 화재시 피난 및 대처 등 행동방법을 학습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초기대처 하기 위함.

- 정 의

화재 등 재난·재해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제거하거나 대처하기위하여 안전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예방과 부상방지프로그램을 시행, 교육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된 자

- 2008년도 국가자격 시행 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시행)

- 1차 : 접수 '08. 8. 18~8. 22 / 시험 '08. 9. 28(일) / 발표 '08. 10. 15(수)
- 2차 : 접수 및 시험 1차와 동시시행 / 발표 '08. 12. 17(수)

- 교육이수자 현황(소방관교육과정)

(단위 : 명)

시·도	합계	2006년까지					2007년도				
		소계	1주	2주	3주	4주	소계	1주	2주	3주	4주
계	58	452	175	189	-	88	302	57	197	48	-
서울	-	176	-	88	-	88	44	-	44	-	-
부산	-	51	51	-	-	-	25	-	25	-	-
대구	-	10	7	3	-	-	15	15	-	-	-
인천	-	-	-	-	-	-	6	-	6	-	-
광주	-	34	-	34	-	-	10	-	10	-	-
대전	-	9	9	-	-	-	10	-	10	-	-
울산	-	4	4	-	-	-	8	3	5	-	-
경기1	-	23	23	-	-	-	27	-	27	-	-
경기2	-	8	8	-	-	-	14	-	14	-	-
강원	21	10	10	-	-	-	11	-	11	-	-
충북	37	22	17	5	-	-	15	-	15	-	-
충남	-	22	18	4	-	-	60	12	-	48	-
전북	-	20	-	20	-	-	10	-	10	-	-
전남	-	20	-	20	-	-	10	-	10	-	-
경북	-	36	21	15	-	-	27	27	-	-	-
경남	-	7	7	-	-	-	10	-	10	-	-
제주	-	-	-	-	-	-	-	-	-	-	-

• 교육이수자 현황(교사과정)

(단위 : 명)

학교명	합계	2006년까지					2007년도				
		소계	1주	2주	3주	4주	소계	1주	2주	3주	4주
계	-	280	231	49	-	-	75	75	-	-	-
서울	-	105	77	28	-	-	21	21	-	-	-
부산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충청	-	74	53	21	-	-	10	10	-	-	-
광주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중구대	-	101	101	-	-	-	44	44	-	-	-

※ 시간산정 : 1주(30시간~40시간), 2주(60시간~70시간), 3주(90시간~100시간), 4주(120시간~130시간)

4) 교육 장비 보유현황

시·도	계	유아활동 자료집 세트	소방시설 입체모형	119신고 전화기 세트	연기체험 텐트세트	자식판 세트	소화기 시뮬레이션		미니연기 시뮬레이션	기 타
							물	연기		
계	1,303	175	172	182	40	190	215	17	141	183
서울	129	23	22	23	1	23	15	-	22	-
부산	62	11	20	11	1	11	8	-	-	-
대구	58	5	3	8	1	7	27	-	7	-
인천	47	9	6	6	1	6	8	1	8	2
광주	30	6	6	6	1	6	4	-	1	-
대전	35	6	5	6	1	6	5	1	5	-
울산	44	5	5	5	4	5	20	-	-	-
경기1	129	18	24	25	2	25	12	-	23	-
경기2	35	7	6	7	-	7	14	-	8	-
강원	104	10	8	10	6	9	32	10	11	8
충북	50	9	7	9	1	9	7	-	8	-
충남	79	11	11	11	1	11	10	-	12	-
전북	64	11	10	11	1	11	7	3	10	-
전남	190	11	9	11	1	11	2	-	10	135 (체험복)
경북	139	15	15	15	1	15	22	2	16	38
경남	85	14	12	14	16	14	15	-	-	-
제주	23	4	3	4	1	4	7	-	-	-

5) 홍보 장비 보유현황

시·도	계	촬영장비	영상편집장비	이동영상장비	기타장비
계	28종 1,681점	17종 1,013점	4종 47점	21종 573점	3종 48점
서울	28종 627점	4종 91점	2종 25점	21종 489점	1종 22점
부산	4종 5점	3종 4점	1종 1점	-	-
대구	16종 27점	11종 16점	1종 1점	2종 2점	2종 8점
인천	2종 10점	2종 10점	-	-	-
광주	2종 10점	2종 10점	-	-	-
대전	3종 4점	2종 3점	1종 1점	-	-
울산	6종 77점	3종 73점	1종 2점	2종2점	-
경기1	13종 542점	4종 470점	4종 11점	5종61점	-
경기2	2종 110점	2종 110점	-	-	-
강원	27종 59점	17종 48점	1종 1점	8종 9점	1종 1점
충북	8종 9점	8종 9점	-	-	-
충남	1종 10점	1종 10점	-	-	-
전북	2종 12점	1종 11점	1종 1점	-	-
전남	2종 55점	2종 55점	-	-	-
경북	15종 105점	2종 76점	2종3점	8종9점	3종17점
경남	1종 6점	1종 6점	-	-	-
제주	4종 13점	2종 11점	1종 1점	1종 1점	-

6) 운영실적

• 안전교육실적

(통계관리프로그램 집계 '08.1.5기준)

구분	총계		이동안전체험차량		체험관		체험장(서내)		출장교육		기타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총계	58,418	8,859,501	2,099	335,129	519	175,487	19,098	1,405,258	30,597	6,322,211	6,105	621,416
서울	5,707	2,087,445	55	34,475	174	154,025	3,188	188,391	2,170	1,699,100	120	11,454
부산	12,161	1,077,968	44	10,602	20	3,058	10,223	723,012	1,310	299,768	564	41,528
대구	2,517	299,214	110	13,259	-	-	270	31,108	1,783	233,333	354	21,514
인천	2,055	237,728	254	41,955	-	-	279	23,699	1,163	156,760	359	15,314
광주	2,505	331,157	552	57,932	-	-	175	14,115	1,057	171,824	721	87,286
대전	1,335	204,797	90	7,403	-	-	262	16,935	859	116,303	124	64,156
울산	1,262	141,960	218	25,092	-	-	147	11,498	368	95,993	529	9,377
경기	4,463	1,232,076	381	87,407	-	-	1,165	105,949	2,781	991,081	136	47,639
강원	9,985	987,129	-	-	-	-	554	29,761	7,984	917,941	1,447	39,427
충북	2,779	467,371	-	-	325	18,404	672	63,241	1,572	346,208	210	39,518
충남	4,145	496,601	395	57,004	-	-	329	23,176	3,059	375,534	362	40,887
전북	2,911	331,814	-	-	-	-	619	49,380	1,988	271,372	304	11,062
전남	1,322	312,190	-	-	-	-	393	33,124	797	189,747	132	89,319
경북	2,325	276,323	-	-	-	-	397	26,988	1,614	228,323	314	21,012
경남	2,699	324,743	-	-	-	-	398	32,378	1,896	212,181	405	80,184
제주	247	50,985	-	-	-	-	27	32,503	196	16,743	24	1,739

• 안전교육 자료제작 실적

구분	총 계		대 상									
			책자		VTR		사진		CD		기타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총계	610	601,897	84	98,583	8	12	17	14,847	112	8,160	387	480,295
서울	12	86,913	2	900	1	1	-	-	4	12	5	86,000
부산	14	3,076	1	42	1	1	-	-	4	518	8	2,515
대구	54	15,399	15	5,581	-	-	-	-	2	2	37	9,816
인천	97	23,468	5	2,770	-	-	2	-	22	87	68	20,611
광주	17	14,547	5	11,200	1	1	-	-	5	200	5	3,146
대전	66	63,914	9	5,730	-	-	-	-	9	1,332	48	56,852
울산	9	729	1	100	-	-	1	2	-	-	7	627
경기	65	135,349	2	1,300	1	1	-	-	-	-	62	134,048
강원	18	54,105	12	53,647	-	-	1	107	4	350	1	1
충북	3	8,500	-	-	-	-	2	4,500	-	-	1	4,000
충남	45	49,455	2	1,000	-	-	3	10,000	21	437	19	38,018
전북	10	2,586	-	-	-	-	5	205	-	-	5	2,381
전남	22	9,120	3	1,245	2	5	2	33	1	6	14	7,831
경북	84	20,764	24	11,828	2	3	1	-	20	2,943	37	5,990
경남	87	113,855	3	3,240	-	-	-	-	20	2,273	63	108,342
제주	7	117	-	-	-	-	-	-	-	-	7	117

• 언론매체 홍보실적

구 분	대 상 건 수										
	소계	TV	CA-TV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관련지	지역신문	반상회보	기타
총계	100,615	7,826	13,788	6,701	1,660	20,515	836	1,720	24,676	1,124	21,735
서울	21,682	1,256	8,658	2,347	121	1,650	211	551	1,923	66	4,895
부산	3,250	903	224	163	614	541	29	66	191	81	438
대구	2,831	77	1,681	123	13	440	106	24	286	4	77
인천	2,477	36	58	415	6	922	32	67	85	460	395
광주	1,965	94	153	259	52	155	14	102	847	-	289
대전	3,572	496	48	213	14	315	19	96	803	6	1,561
울산	868	199	3	-	6	457	20	23	118	-	42
경기	5,747	102	105	94	214	2,434	53	98	2,149	18	477
강원	14,861	3,414	822	335	316	3,608	41	119	3,878	86	2,230
충북	593	63	1	2	1	425	1	5	81	-	14
충남	9,299	153	238	575	6	2,622	55	207	4,056	33	1,349
전북	14,320	41	1,316	1,772	46	2,206	69	62	3,336	273	5,198
전남	8,158	138	200	258	93	1,767	72	152	2,884	35	2,557
경북	6,260	288	123	126	127	1,577	90	101	2,329	44	1,451
경남	2,960	438	124	19	29	1,095	24	34	848	14	334
제주	1,772	128	34	-	2	301	-	13	862	4	428

• 광고물 홍보실적

구 분	총계	대 상				
		전광판(영상)	전광판(문자)	멀티비전	안내판	기타
총계	33,674	32	3,274	-	28,177	-
서울	12,415	-	2,630	-	9,601	-
부산	56	-	1	-	9	-
대구	710	2	3	-	669	-
인천	448	-	3	-	231	-
광주	156	-	7	-	121	-
대전	81	-	-	-	71	-
울산	92	-	1	-	54	-
경기	148	-	2	-	107	-
강원	33	-	-	-	30	-
충북	32	-	1	-	26	-
충남	623	-	13	-	215	-
전북	18,544	-	606	-	16,924	-
전남	18	-	3	-	2	-
경북	93	30	2	-	29	-
경남	224	-	2	-	87	-
제주	1	-	-	-	1	-

• 기획홍보실적(방화환경조성)

구 분	가두캠페인		소방훈련		119대축제 등 홍보활동				
	횟 수	동원인원	횟 수	참석인원	횟 수	참여기관	참여인원	동원인원	동원장비
총계	4,971	266,325	40,038	1,365,689	19,527	42,067	5,959,603	414,561	33,310
서울	465	46,232	2,444	50,990	1,191	9,755	443,816	58,058	6,473
부산	241	15,963	3,740	125,412	2,381	1,663	2,316,590	165,434	2,175
대구	284	7,717	5,083	146,113	1,190	2,366	63,521	9,409	2,112
인천	301	8,218	2,561	82,837	3,484	6,647	223,942	44,357	2,228
광주	233	9,207	899	33,122	238	683	140,733	3,826	1,506
대전	329	4,251	1,315	43,906	100	147	15,688	663	96
울산	76	2,705	978	47,950	718	779	356,312	6,264	1,015
경기	201	13,055	1,055	95,121	238	1,027	59,621	6,052	186
강원	531	16,549	350	6,947	77	187	21,033	1,132	67
충북	137	7,101	1,011	114,703	448	650	332,999	2,985	494
충남	711	32,921	3,274	183,751	1,375	2,653	186,045	10,443	1,976
전북	534	16,394	5,785	126,446	2,527	3,028	329,170	15,173	2,691
전남	64	5,185	542	26,496	378	511	160,917	10,365	878
경북	429	24,063	4,343	100,636	2,786	5,093	221,885	31,484	2,569
경남	402	55,230	6,349	164,495	2,315	6,743	1,084,959	47,294	8,714
제주	33	1,534	309	16,764	81	135	2,372	1,622	130

구 분	총계		대 상													
			표어		포스터		현 판 (육교, 건물)		선전판		플래카드		입간판		기타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총계	16,888	1,032,106	787	119,965	1,331	98,563	26	347	27	83	3,989	60,791	666	2,778	10,055	749,567
서울	573	65,215	6	115	18	237	-	-	-	-	44	99	11	510	494	64,254
부산	192	68,285	8	24,040	22	2,376	7	11	6	27	79	279	5	73	65	41,479
대구	264	7,517	3	1,380	16	1,216	1	1	-	-	186	362	15	32	43	4,526
인천	830	15,722	11	337	10	507	-	-	1	3	27	71	10	284	770	14,516
광주	639	23,377	23	172	64	22,620	5	2	1	1	483	512	58	61	5	9
대전	170	11,015	2	250	3	120	-	-	-	-	101	155	2	6	62	10,484
울산	33	6,197	1	100	3	580	-	-	1	2	7	4,341	1	7	20	1,167
경기	178	266,587	11	6,791	15	12,790	2	15	-	-	35	2,009	9	58	105	244,916
강원	38	36,422	5	2,320	5	14,900	-	-	3	3	8	1,027	1	75	16	18,097
충북	351	12,815	86	1,767	239	3,399	3	302	1	1	10	1,172	1	10	11	6,164
충남	2,211	292,485	105	7,082	851	12,544	1	4	3	4	1,040	40,615	66	148	145	232,088
전북	10,255	11,220	460	905	12	652	2	-	1	1	1,480	1,396	449	410	7,848	7,856
전남	29	6,279	1	100	-	-	2	5	2	4	4	82	2	2	18	6,086
경북	513	125,023	53	67,984	56	13,364	-	-	1	1	59	6,274	20	831	322	36,569
경남	606	83,821	12	6,622	17	13,258	3	7	7	36	426	2,397	16	271	125	61,230
제주	6	126	-	-	-	-	-	-	-	-	-	-	-	-	6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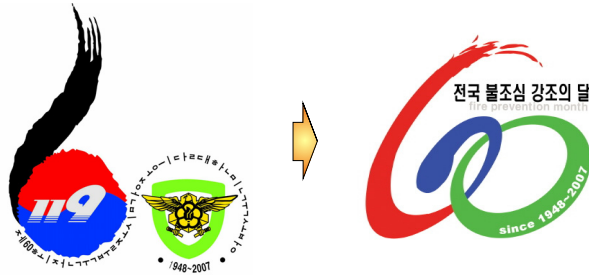
• 기획홍보실적(홍보물 제작)

구분	총계		대 상											
			표어		포스터		리플릿		브로셔		책자		기타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총계	621	2,006,086	14	357,261	13	115,966	103	923,875	3	2,755	29	44,276	459	561,953
서울	178	643,168	-	-	7	115,330	31	432,500	1	2,500	11	9,225	128	83,613
부산	13	16,020	6	142	1	2	2	11,500	-	-	-	-	4	4,376
대구	8	112,538	-	-	-	-	1	100,000	-	-	-	-	7	12,538
인천	7	3,123	1	118	-	-	-	-	-	-	-	-	6	3,005
광주	70	66,847	1	700	2	309	26	28,820	1	250	5	4,500	35	32,268
대전	1	120	-	-	-	-	-	-	-	-	-	-	1	120
울산	3	75	-	-	-	-	-	-	-	-	-	-	3	75
경기	48	26,206	1	300	3	325	3	13,055	-	-	1	4,000	40	8,526
강원	15	77,533	-	-	-	-	2	51,000	-	-	2	10,080	11	16,453
충북	-	-	-	-	-	-	-	-	-	-	-	-	-	-
충남	121	205,505	1	1,000	-	-	17	72,000	1	5	2	1,001	100	131,499
전북	39	280,196	1	1	-	-	2	150,000	-	-	1	10,000	35	120,195
전남	21	372,043	2	350,000	-	-	2	9,000	-	-	1	4,000	16	9,043
경북	36	93,368	1	5,000	-	-	3	1,300	-	-	6	1,470	26	85,598
경남	60	103,344	-	-	-	-	13	48,700	-	-	-	-	47	54,644
제주	1	6,000	-	-	-	-	1	6,000	-	-	-	-	-	-

구분	총계		대 상					
			머그컵		열쇠고리		기타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총계	897	1,378,197	2	10,500	4	2,900	891	1,364,797
서울	146	169,082	-	-	2	2,000	144	167,082
부산	36	73,088	-	-	-	-	36	73,088
대구	36	52,719	1	500	-	-	35	52,219
인천	59	16,292	-	-	-	-	59	16,292
광주	47	38,350	-	-	-	-	47	38,350
대전	28	34,141	-	-	-	-	28	34,141
울산	16	22,080	-	-	-	-	16	22,080
경기	103	232,486	-	-	-	-	103	232,486
강원	37	125,721	-	-	-	-	37	125,721
충북	35	71,745	1	10,000	-	-	34	61,745
충남	129	210,969	-	-	2	900	127	210,069
전북	32	27,619	-	-	-	-	32	27,619
전남	19	16,055	-	-	-	-	19	16,055
경북	63	86,466	-	-	-	-	63	86,466
경남	108	198,384	-	-	-	-	108	198,384
제주	3	3,000	-	-	-	-	3	3,000

• 기획홍보실적(작품공모)

구 분	대 상 건 수						
	소계	사생대회	응변대회	동요대회	사진	영상물	기타
총계	509	123	143	28	14	51	-
서울	27	3	1	5	7	5	-
부산	27	15	6	-	1	1	-
대구	8	5	-	1	-	-	-
인천	155	21	115	2	1	8	-
광주	35	3	6	4	-	6	-
대전	9	-	-	1	1	-	-
울산	13	1	-	3	-	5	-
경기	46	27	4	-	1	3	-
강원	28	5	-	2	-	4	-
충북	13	7	3	1	-	-	-
충남	72	11	6	1	1	2	-
전북	11	2	-	-	-	4	-
전남	9	5	2	-	1	-	-
경북	16	10	-	1	-	1	-
경남	39	7	-	7	1	12	-
제주	1	1	-	-	-	-	-



*** 제60회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의미***

나. 2007.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FIRE PREVENTION MONTH)



범국민적 화재예방태세를 확립하고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월동기를 대비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전국적인 방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수립 이후 11월중의 일정기간을 불조심강조기간으로 설정 각종 행사를 비롯한 화재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해 오던 것을 1980년부터 11월 한달 간을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전국적인 화재예방홍보활동을 전개

□ 제60회 불조심강조의 달 명칭 및 상징표지 등 공모추진

- 기간/대상 : '07. 12. 17 ~ '08. 1. 16(1개월간)/명칭, 상징표지, CM송
- 접수결과 : 457건(명칭391, 상징표지48, CM송18)
- 심사결과 : 3개부문 9점 선정
 - 명 칭 : 김용석 화재없는 웃음의 달, 정형섭 화재예방 생활의 달, 박진완 국민소방안전 강조기간
 - 상 징 : 김지희, 방재숙, 허광운
 - CM송 : 김준영, 고종의, 강가미

〈 불조심 강조기간의 변천과정 〉

년 도 별	행 사 기 간	행 사 명 칭
1948~1964	11. 1~11. 7	불조심 강조주간
1965~1971	11. 1~11. 30	불조심 강조기간
1972~1974	11. 1~11. 15	화재예방 강조기간
1975~1979	11. 1~11. 15	불조심 강조기간
1980~2007	11. 1~11. 30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1) 불조심가두캠페인 전개

횟 수	참 여 기 관	참 여 인 원
4,971회	11,734기관	266,325명

2) 119소방시범훈련 및 체험훈련

개 최 기 관	횟 수	관람(참여)인원	동 원 장 비
7,026	1,710	303,391	5,541

3) 언론매체이용 홍보활동 강화

(단위 : 회)

TV	CATV	라디오	신문	잡지	유선	기타
7,826	13,788	1,660	20,514	835	6,701	49,255

4) 방화환경조성

(단위 : 개소)

표어	포스터	현판	플래카드	입간판	기타
787	1,331	347	3,989	2,778	10,055

5) 다중이용장소 광고물활용 홍보

(단위 : 개소)

계	멀티비전	전광판	안내판	기타
33,667	118	31,451	107	1,991

6)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단위 : 명)

어린이	중고생	직장인	주부	노인	기타
5,472,348	2,043,733	1,162,439	92,529	97,436	47,114

7) 불조심 작품공모 및 발표대회

(단위 : 회/참가인원)

사생대회	응변대회	글짓기	포스터	표어	동요대회 등
848/328,178	221/121,717	52/1,219	105/12,315	113/54,823	198/49,657

8) 한국소방방송 활용도

(단위 : 건)

계		단순자료		영상자료		사진자료	
교육	활동	교육	활동	교육	활동	교육	활동
7,622	11,637	6,472	6,903	170	262	1,934	3,106

◀ 주요 기획이벤트 ▶

- ◆ 소방방재활동 사진 작품 등 공모 및 전시
- ◆ 동절기 화재예방 연찬 및 심포지움 개최, 불조심 캠페인 및 소화기점검의 날 운영
- ◆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집화재 대피도 그리기
- ◆ 119기마순찰대 및 소방차 퍼레이드 실시
- ◆ 주부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안전기원 풍선날리기 대회
- ◆ 소방사랑 영화제, 동호회모임 활성화를 통한 예방홍보실시
- ◆ 소방정 해상 퍼레이드 소방안전 홍보,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떡 나누기행사 추진
- ◆ 도전 119소방 퀴즈왕선발대회
- ◆ 시·도민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제 “119대축제”실시

다. 제9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99년도부터 시작된 소방동요대회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동요경연대회로 자리 매김

- 1) 주 관 : 소방방재청·한국소방안전협회
- 2)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목포MBC, 한국소방검정공사
- 3) 일시/장소 : 2007.10.17(목) 13:00~17:00/전남 목포실내체육관
※ 목포MBC-TV 녹화방영
- 4) 출 전 팀 : 32개팀(유치부 16, 초등부 16개팀)
* 가수 『소녀시대』 특별출연
- 5) 참가인원 : 출전어린이,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관람객 등 2,500여명
- 6) 수 상 팀
 - 대 상 (2팀)
 - 초등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서울 은천초등학교(지도 정순자)
 - 유치부(행정안전부장관상) : 전남 순천도레미어린이집(지도 박선영)

- 최우수상 (4팀)
 - － 초등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울산 동백초등학교, 경기 저동초등학교
 - － 유치부(행정안전부장관상) : 대구 반디유치원, 광주 아이미소유치원
- 우수상(6팀, 소방방재청장상)
 - － 초등부 : 인천 화전초등학교, 제주 중문초등학교, 전북 익산어양초등학교
 - － 유치부 : 경북 신비유치원, 부산 괴정중앙유치원, 경남 진주혜림유치원
- 금 상(10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상)
 - － 초등부 : 경북 상산초등학교, 충북 풍광초등학교, 부산 남문초등학교,
전남 신안지도초등학교, 대구 진월초등학교
 - － 유치부 : 제주 남원유치원, 울산 꿈사랑유치원, 경기 구리건영유치원,
인천 꿈나라어린이집, 서울 중앙어린이집
- 은 상(10팀, 한국소방검정공사장상)
 - － 초등부 : 광주 불로초등학교, 강원 홍천남산초등학교, 대전 집잠초등학교,
경남 동마산호계초등학교, 충남 태안초등학교
 - － 유치부 : 충북 공립홍광유치원, 대전 EBS하늘어린이집, 강원 봉의초교병설
유치원, 충남 서머힐어린이집, 전북 해바라기어린이집
- 지도상(12명)
 - － 장관상 : 서울 은천초교 정순자, 울산 동백초교 임성순, 경기 저동초교
임정균, 전남 도래미어린이집 임애경, 대구 반디유치원, 광주
아이미소유치원 최은진
 - － 청장상 : 인천 화전초교 정은영, 제주 중문초교 고명자, 전북 익산어양초교
남유심, 경북 신비유치원 안현정, 부산 괴정중앙유치원 임영애,
경남 진주혜림어린이집 허은경

7) 역대 동요경연대회 추진현황

- 제1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1999. 11.7(일) 13:30~17:30/과천 서울랜드 삼천리극장
 - 참 가 팀 : 33개팀(시·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000여명
 - ※ 인천방송 i-TV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대전또래친구 합창단,
유치부대상 - 경남김해 전원유치원
- 제2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0. 11.10(금) 13:00~16:30/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 참 가 팀 : 33개팀(시·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800여명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울산 삼일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울산 해바라기 유치원
- 제3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1. 10. 31(수) 13:30~16:30/서울 여의도 KBS홀
 - 참 가 팀 : 32개팀(시·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500여명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경남창원 동산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강원원주 진영유치원
- 제4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2. 10. 31(금) 13:30~16:30/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참 가 팀 : 33개팀(시·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300여명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울산 옥동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대구 일성유치원
- 제5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3. 10. 22(금) 13:30~17:30/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참 가 팀 : 32개팀(시·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500여명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경기 서당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경기생각을 키우는 유치원
- 제6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4. 10.20(수) 13:30~17:30/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 참 가 팀 : 32개팀(시·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500여명
※ KBS-1TV 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경기 민락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울산 노벨유치원
- 제7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5. 10. 21(금) 13:00~17:00/울산 KBS홀
 - 참 가 팀 : 32개팀(시·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3,000여명
※ 울산방송UBC-TV 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서울 구암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부산 숲속은성유치원
- 제8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6. 10. 12(목) 13:00~17:00/전북 삼성문화회관
 - 참 가 팀 : 32개팀(시·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000여명
※ 전주방송 J-TV 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서울 봉현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인천 노벨유치원

8) 그동안 운영추진실적

- 소방동요음반 제작·보급 : 5집 113곡(안전돌보기, 숫자에게 물어봐, 소방차 댄스 등)
- 소방동요 공모 : 1회 10곡(얇긋은 날, 꼭꼭 약속해요, 모래바람 등)
- 교과서 수록 : '03년 초등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 『친구만들기』
- 한국 119소년소녀합창단 운영(35명)

라. 제2회 어린이119안전뉴스경진대회 개최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성을 어린이 스스로 방송기자 또는 아나운서가 되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동영상 (User Created Contents)으로 제작하여 제시하는 뉴스프로그램

- 1) 주 관 : 소방방재청
- 2) 후 원 : 행정안전부,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주)63시티
- 3) 일시/장소 : 2007.11.8(목) 14:00 ~ 16:30/정부중앙청사 별관
- 4) 출전팀 : 18개팀 230여명(학생124, 교사 및 학부모등 106)
- 5) 방 법 : 팀(5명 내외)을 구성하여 5분내외 직접발표
(내용전달을 위한 소도구 및 장비활용)
※ 사회 : KBS-TV 도전 골든벨 아나운서 김현욱

6) 수상팀

구 분	내 역
최우수상(행자부장관상)	인천 연수초등학교
우수상(소방방재청장상)	제주 남광초교, 전북 진안초교, 대전 노은초교
미래 아나운서상(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상)	경기 통진초교, 경기 안동서부초교, 광주 장산초교
미래 프로듀서상(한국소방안전협회사장상)	충북 부용초교, 강원 사북초교, 전남 해룡초교
미래 보도기자상(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상)	서울 수송초교, 대구 범물초교, 부산 중앙초교
미래 시나리오작가상(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경기 장곡초교, 충남 강경황산초교, 서울계성초교
특별상(주식회사 63시티사장상)	경남 상남중, 울산 덕신초교
지도상(소방방재청장상)	인천 연수초교 홍지은, 제주 남광초교 부용호 전북 진안초교 장보미, 대전 노은초교 최방글

7) 운영성과

- 최근 유행하는 동영상(UCC)제작과 더불어 어린이 스스로 영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학교장 및 교사, 학부모, 어린이가 혼연일체가 되어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새로운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

8) 역대 어린이 119안전뉴스경진대회 추진현황

- 제1회 어린이119안전뉴스경진대회
 - 일시/장소 : 2006. 11.10(금) 14:00~16:00/서울 63빌딩 이벤트홀
 - 참 가 팀 : 12개팀 120여명
 - 시상내역 : 최우수상 - 강원 단관초등학교
우 수 상 - 인천 공향초등학교, 울산 수암초등학교

마. 소방방재청 후원 주요행사

구 분	전국119소방 동요경연대회	불 조 심 어린이마당	불조심포스터, 화재사진 공모 등	전국119안전 미술대회
주 관	· 소방방재청 · 한국소방안전협회	· 소방방재청 ·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최초실시 (시행주기)	1999년(매년)	1995년(격년) 2008년(매년)	표어·포스터(75) (격년) 화재사진(97)	2002년(격년)
부 분	119소방동요합창	화재예방수칙 학습 평가	포스터, 사진 등	화재 등 안전관련
대 상	유치원생, 초등학교	초등학교대상 학급단위	제한없음	유치원생, 초등학교
시 상	대 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	대 상 (행정안전부장관)	대 상 (행정안전부장관)
특기사항	TV녹화방송 및 영상물제작 배포	청와대 방문 행사 (영부인 참석 격려)	우수작은 작품으로 제작 전국에 배포	12,000점 접수에 1,155점 시상

행 사 명	주 관	개최시기
어린이 119안전뉴스경진대회	소방방재청	12월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방재청	11월
119가족안전체험 캠프	소방방재청	5월
내나라여행 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4월
행복한 미래 우리가 만들어요	보건복지가족부	5월

※ 2002년 초등학교 6학년 미술교과서 불조심포스터 수록 「불조심 가족」
2004년 초등학교 4, 5, 6학년 체육교과서 소방관련 내용 및 사진자료 수록

바. 화재예방 표어의 변천 현황

연도별	당선구분	내 용
60~70년대		• 작은불 조심하여 눈물없이 살아보자 • 아빠는 담배불조심 엄마는 아궁이 불조심
1985년	당 선	마음으로 불조심 행동으로 불조심, 불씨살핀 밝은마음 불행막는 복된생활 화재는 불행이며 예방은 번영이다
1986년	당 선	나라위해 불조심 우리위해 불조심, 불날자리 표시없고 불날시간 예고없다 잘못다룬 작은불씨 이웃불행 나도불행
1987년	당 선	잘다루면 고마운불 못다루면 무서운불, 확인점검 떠나없고 화재예방 휴일없다 안전하다 방심 말고 다시한번 소방점검
1988년	우수작	하나같이 불조심 한결같이 화재예방
	가 작	실마라고 마음놓다 나도몰래 큰불낸다
	〃	화재예방 따로없다 불조심이 제일이다
	〃	서로믿고 방심 말고 서로먼저 화재예방
1989년	우수작	조심하면 고마운불 방심하면 무서운불
	가 작	타는불 지켜보고 꺼진불 확인하자
	〃	불내고 울지 말고 웃으면서 불조심
	〃	화재위험 밤낮없고 화재예방 떠나없다
1990년	우수작	화재사고 예고없고 불조심 휴일없다.
	가 작	아빠엄마 불조심 아들딸이 본받는다
	〃	실마속에 숨은불씨 방심속에 큰불된다
	〃	매년있는 대형화재 알고보면 작은소홀
1992년	우수작	무관심이 부른불씨 평생두고 후회한다
	가 작	행복한 우리가정 알고보니 불조심
	〃	우리가족 소방교육 안전한 우리생명
	〃	숨은불씨 불행되고 살핀불씨 행복된다
1994년	우수작	화재예방 따로없다 눈길한번 손길한번
	가 작	화재예방 하는오늘 화재사고 없는내일
	〃	불나는곳 따로없고 불조심에 떠나없다
	〃	남도하는 불조심 나라고 못할소나
1996년	우수작	불나는곳 따로없다 내집부터 살펴보자
	가 작	내가버린 작은불씨 큰불되어 돌아온다
	〃	함께지킨 화재예방 함께웃는 밝은내일
	〃	크고작은 화재사고 알고보니 순간방심
1998년	우수작	미워버린 화재점검 불씨되어 내게온다
	가 작	살핀만큼 안전할뿐 잊은만큼 위험한불
	〃	바로쓰면 웃는불씨 잘못쓰면 성난불길
	〃	실마한날 화재있고 조심한날 화재없다
2000년	최우수작	이게실마 큰불될까 그계정말 큰불된다
	우 수 작	지켜보면 꺼질불도 돌아서면 살아난다
	가 작	화재발생 무시위요 화재예방 참좋아요 / 버릴것은 실마의식 가꿀것은 소방의식
2001년	최우수작	화재경소 따로없고 화재시간 예고없다
	우 수 작	남의일로 여긴화재 방심하면 내일된다 / 작은불씨 방심하면 재난되어 돌아온다
	가 작	살피봐요 숨은불씨 다시봐요 꺼진불씨 / 먼저살핀 작은관심 미리막는 재난재해
2002년	대 상	방심속에 화재있고 관심속에 예방있다
	금 상	살피려면 큰일날 불 조심하면 안전한불
	은 상	소화전은 어디에? 소화기는 어떻게?
2004년	최우수작	불낼사람 따로없고 불날장소 따로없다
	우 수 작	작은불씨 약보다가 큰불되고 후회한다
	장 려 작	실마하며 버린불씨 평생후회 불씨된다 / 한사람의 화재방심 백사람의 불행된다
2006년	최우수작	잠깐 방심 작은 불씨 평생 후회 깨난 된다
	우 수 작	한순간의 불씨 방심 화재 나면 평생 상심
	장 려 작	괜찮겠지 미룬 점검 큰 불 되어 돌아온다 / 생활 속의 화재예방 가족행복 지켜준다

사. 한국119소년단 조직·운영

〈KOREA YOUTH 119 CORPS : KYC〉

- 1963년 창단하여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
- 119소년단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로 구성되며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범 우주적인 청소년단체

- 설치년도 : 1963년(어린이소방대) - (<http://www.young119.or.kr>)
 - 근 거 : 소방방재청과 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3조 제5항
 - 대 상 :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 활동내용 : 소방안전교육·훈련 및 봉사활동 등
 - 설치목적
 - － 조기에 안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느끼고 경험하여, 학교와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몫을 다하도록 자질의 개발과 지원
 - － 소방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선도조직으로서 생활주변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들을 호기심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육성하고 지적잠재력의 개발
 - 활 동
 - － 119소년단 활동은 봉사·친선·보건·소방방재의 궁극적인 목적과 활동목표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
 - － 119소년단 활동은 크게 학교내의 활동과 지역사회활동, 시·도소방본부에서 개최하는 활동과 소방방재청에서 개최하는 활동 등이 있으며 먼저 학교내의 119소년단 활동이 중심
- ▶ 주요활동
- ① 입단선서식, ② 소방안전 배우기, ③ 지역사회 활동, ④ 친선활동 등

소방관서에서 하는 사업

어린이 소방안전체험교실,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불조심 표어·포스터 그리기대회, 소방방재안전글짓기, 불조심 영어웅변대회, 화재 및 불조심 사진공모전, 119대축제, 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14대), 응급처치교육, 어린이 안전뉴스경진대회 등

1) 대원 현황 (3,397개대, 120,326명)

구분	유치원생 (어린이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 수	대 원 수	지도 교사 수	대 수	대 원 수	지도 교사 수	대 수	대 원 수	지도 교사 수	대 수	대 원 수	지도 교사 수	대 수	대 원 수	지도 교사 수
계	475	20,696	564	2,637	90,639	2,684	260	8,042	280	16	503	18	9	446	10
서울	203	8,948	225	559	19,490	567	24	833	24	2	62	2	-	-	-
부산	2	121	4	114	3,764	115	8	230	8	1	15	1	-	-	-
대구	25	943	30	177	6,783	183	37	1,474	40	-	-	-	-	-	-
인천	1	51	1	52	2,388	53	3	88	3	1	29	1	-	-	-
광주	7	253	7	113	3,650	113	8	180	9	-	-	-	-	-	-
대전	-	-	-	106	4,127	107	1	31	1	1	39	1	-	-	-
울산	2	69	2	61	1,640	61	-	-	-	-	-	-	1	69	1
경기	21	1,109	23	182	5,930	183	20	655	22	2	59	3	-	-	-
강원	19	376	20	259	7,500	263	20	486	22	3	79	4	4	144	4
충북	2	84	2	101	3,854	101	4	135	6	-	-	-	-	-	-
충남	3	130	3	42	1,549	42	1	37	1	-	-	-	1	47	2
전북	90	4,156	115	206	6,544	208	43	1,224	43	1	37	1	1	46	1
전남	13	690	25	86	3,330	89	5	148	6	-	-	-	2	140	2
경북	47	2,127	58	310	10,804	325	51	1,608	60	3	136	3	-	-	-
경남	24	1,201	30	164	5,130	164	22	528	22	2	47	2	-	-	-
제주	16	438	19	105	4,156	110	13	385	13	-	-	-	-	-	-

2) 활동실적

구 분	총계		대 상			
			교내활동		교외활동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총 계	7,807	686,273	6,063	531,565	1,743	154,708
서울	582	84,681	450	72,219	132	12,462
부산	219	25,743	120	16,618	99	9,125
대구	1,078	87,068	949	71,077	129	15,991
인천	191	18,319	123	9,009	67	9,310
광주	430	39,362	382	32,526	48	6,836
대전	106	4,822	96	4,286	10	536
울산	199	23,805	153	20,693	46	3,112
경기	229	28,264	168	25,011	61	3,253
강원	2,837	107,914	2,290	74,347	547	33,567
충북	137	12,627	80	10,059	57	2,568
충남	275	23,814	195	16,770	80	7,044
전북	388	22,848	239	15,614	149	7,234
전남	171	9,856	111	6,093	60	3,763
경북	724	156,756	535	125,007	189	31,749
경남	206	27,546	146	24,160	60	3,386
제주	35	12,848	26	8,076	9	4,772

3) 전국 지도교사협의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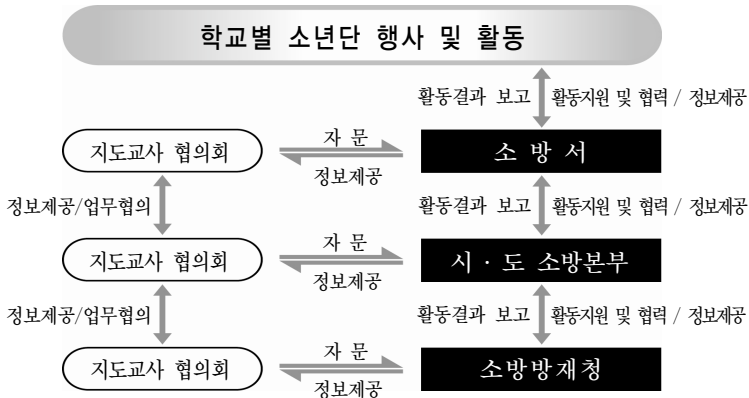
○ 임원현황

구 분	시·도	성명	학교명	연락처
회 장	경북	황재일	영주영광중학교	054) 631-3126
부회장	울산	고영희	울산 양정초등학교	052) 289-3170
부회장	경기	이현숙	군포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031) 458-2327
총 무	전북	김범주	순창제일고등학교	063) 653-1992
서 기	충북	김영옥	옥천삼영초등학교 삼영유치원	043) 731-7809
회 계	충북	정동재	제천 남천초등학교	043) 644-2331

○ 주요활동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정기회의 개최
 - 기간/장소 : 2007. 7.20~7.21(1박2일간)/서울유스호스텔(서울남산소계)
 - 대 상 : 36명(시·도별 지도교사 대표)
 - 내 용 : 중앙협의회 회칙제정 및 임원구성, 상호의견교환, 장기발전과제협의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연수회 개최
 - 기간/장소 : 2007. 7. 31~8. 3(3박4일간)/중앙119구조대
 - 대 상 : 44명(유치10, 초등25, 중등9)
 - 내 용 : 소방안전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습체험 실시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 임원 국외연수
 - 기간/장소 : 2007. 10. 3~10. 6(3박4일간)/일본 동경
 - 대 상 : 7명(교사5, 화보1, 우리청1)
 - 내 용 : 일본의 안전교육 시스템 및 안전교육 매뉴얼 실태 파악 학교안전교육 추진사항 및 안전체험·훈련실태 비교 혼 조안전체험관 등 체험시설 견학 등 안전체험 사례 참관

4) 활동체계



아. 시·도별 소방캐릭터 현황

연번	구분	명칭	형태	명칭의미
1	대한민국 소방	파이어스 (FIRES)	전통적인 한국소방의 상징인 해태를 의인화	화재(FI), 구조(R), 구급(E) 봉사(S)를 의미
2	중앙구조대	행복지킴이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우리에게 친근한 진돗개를 의인화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119구조대를 의미
3	서울소방	화동이	용감한 소방관을 고유업무별로 구성하여 상징적으로 표현	화재·재난·방재·온화·화합·안전을 상징
4	부산소방	스피	물방울을 의인화	빠르고 신속하다는 뜻의 speed를 의미
5	대구소방	다키 (DaKee)	대구를 상징하는 팔공산의 형상과 물을 의인화 하고 소방마크 및 119를 통해 소방이미지 표시	다지킴이(DaKeeper)의 합성어로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의 안전과 대구의 안전을 지킨다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적 의미 내포
6	인천소방	돌보미	봉사의 의미로 수화를 하고 있는 모습	부모형제를 돌보듯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
7	대전소방	지미와 도미	시민들이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맑은 눈동자를 의인화함	시민의 곁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안전사고 예방의 지킴이와 도움이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8	울산소방	돌볼이	울산의 상징인 돌고래를 의인화	시민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는 사람을 의미
9	경기소방	민음이	소방복장을 한 귀여운 얼굴의 어린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을 의미
10	강원소방	센곰이와 쟈곰이	강원도 마스크트(달곰이)를 소방관화	센곰이 : 힘이센 달곰이 쟁곰이 : 재빠른 달곰이
11	경북소방	코리와 코미	소방상징동물인 암수코끼리를 의인화	코끼리를 부드럽고 귀여운 어감으로 응용해 표현
12	제주소방	규리	제주도민의 근면, 소박, 인내심의 결실인 제주감귤을 의인화	제주도 감귤의 “귤”이라는 낱말에서 착안
13	119소년단	꾸미와 랑이	경광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남녀어린이	꾸미(남) : 꿈꾸는 아이 랑이(여) : 사랑스러운 아이

사. 한국소방방송의 운영 (119 Fire Broadcasting Network)

인터넷 활용인구의 증가와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을 통해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국민과의 다양한 대화의 장으로서 여론을 수렴하고 소방행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이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간 및 산하단체와의 정보교류 마당을 만들어 다가오는 소방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개설

1) 주요현황

- 명 칭 : “한국소방방송”(약칭 : 119FBN)
- 도 메 인 : <http://119fbn.fire.go.kr> (<http://fire.go.kr>, <http://fire.kr>)
- 개국경과 : 2001. 11. 1 : 개국(시험방송) : 2001. 8. 20)
 - 2001. 7. 9~7. 14 : 기본계획 구성
 - 2001. 7. 16~7. 21 : 개발일정 및 동영상 제작계획 수립
 - 2001. 7. 23~8. 18 : 1차 사이트 구축 및 영상물제작
 - 2001. 8. 20 14:00 : 소방방송국 시험방송(공개)
 - 2001. 8. 20~10. 30 : 2차 사이트구축 및 영상물 제작
 - 2001. 11. 1 14:00 : 한국소방방송 개국
 - 2002. 3. 12 : 행자부 홈페이지 내 하위 메뉴개설, 정부공통 및 소속기관 사이트 링크
 - 2002. 12. 31 : '02년 254,015명 접속 및 79,327명 이용
 - 2003. 12. 31 : '03년 654,643명 접속 및 579,577명 이용
 - 2004. 3. 1 : 소방안전 교육·홍보 통계프로그램 구축
 - 2004. 6. 1 : 소방방재청 개청으로 일부 개편(업무용 웹하드 개설, 175GB)
 - 2004. 11. 10 : 인터넷 「두산세계대백과」 사진 등록
 - 2004. 12. 31 : '04년 236,133명 접속 및 190,296명 이용(회원수 2,000명)
 - 2005. 12. 31 : '05년 177,740명 접속 및 141,575명 이용(회원수 4,028명)
 - 2006. 12. 31 : '06년 236,893명 접속 및 182,870명 이용(회원수 9,038명)
 - 2007. 12. 31 : '07년 267,251명 접속 및 199,324명 이용(회원수 13,046명)

2) 사이트 구성

- 119알림마당 : 인사말, 방송국 소개, 공지사항, 신규채용
- 119뉴스데스크 : 출동14,5초, 그때 그사고, 유형별사건사고, 보도자료
- 119마을 :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
- 119아카데미 : 소방상징, 소방상식, 소방강좌, 소방박물관
- 119시네마 : 소방영화관, 소방다큐관, 소방어린이관
- 119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제안·제보, 자료실

3) 이용현황

구 분	페이지부수	총방문수	신규방문수	이용자수	회원수
'01.11.1 ~ 12.31	-	18,876	-	-	-
'02. 1.1 ~ 12.31	791,280	254,015	66,461	79,327	-
'03. 1.1 ~ 12.31	5,660,499	654,643	462,256	579,547	-
'04. 1.1 ~ 12.31	4,413,231	236,133	97,069	190,296	2,000
'05. 1.1 ~ 12.31	5,017,309	177,740	76,359	141,575	4,028
'06. 1.1 ~ 12.31	10,322,962	236,893	84,389	182,870	9,038
'07. 1.1 ~ 12.31	14,877,006	267,251	106,600	199,324	13,046

※ 본 통계는 CCMedia,Inc의 eBrother를 사용하여 집계함

4) 자료게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알림마당	뉴스데스크	마을과마을	아카데미	시네마	열린마당	인트라넷	자료실
2001	182	35	29	1	26	26	65	-	-
2002	3,475	1,564	483	30	38	13	405	903	39
2003	2,656	761	502	3	15	38	982	296	59
2004	3,954	785	1,057	8	12	21	931	895	245
2005	6,412	1,104	3,408	9	31	13	868	912	67
2006	11,700	577	7,800	4	20	246	2,467	556	30
2007	14,840	812	9,646	9	2	273	1,740	2,317	41

5) 운영성과

- 소방조직내 인터넷 유용성과 영상물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기여
- 고품질 자료의 제공 및 국민참여 유도로 열린 소방행정의 모델로 부상
- 지속적인 접속인지도 향상, 학교교사 및 건물안전관리자 회원의 증가 등으로 소방방재 행정의 대표적 소방사이트로 발전
- 소방방재관련 DB의 표준화 및 정형화, 교육·홍보 통계프로그램 운영으로 업무간소화

6) 향후 발전방향

-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련 지식정보교류 기능 수행
-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보급으로 사이버 안전정보센터 역할 수행
- 동영상 및 사진자료의 실시간 제공으로 안전의 뉴스채널역할 수행

자. 119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119 Mobile fire safety house>

학교나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임

※ 이동안전체험차량 : 화재, 교통, 전기·가스 등의 기자재를 갖춘 이동안전체험차량

1) 사업내용

- '03년도 특별교부세지원 ⇒ 5대(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
- '03년도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지원 ⇒ 8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순회교육 실시('04. 10월) ⇒ 유치원, 초등학교 등(시·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 수립)

○ '07년도 지방자체예산 ⇒ 1대(경기)

※ 9개 시·도 14대 운영 : 서울, 부산(2), 대구(2), 인천(2), 광주, 대전, 울산, 경기(3), 충남

2) 그 간 운영실적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실적

- 2004. 3. ~ 12. 31 : 1,728개소 242,475명 실시
- 2005. 1. 1 ~ 12. 31 : 1,219개소 499,280명 실시
- 2006. 1. 1 ~ 12. 31 : 2,035개소 781,468명 실시
- 2007. 1. 1 ~ 12. 31 : 2,099개소 335,129명 실시

구 분	계	서울	부산(2)	대구(2)	인천(2)	광주	대전	울산	경기(3)	충남	
대상 수	2,099	55	44	110	254	552	90	218	381	395	
교육 실적 (인원)	계	335,129	34,475	10,602	13,259	41,955	57,932	7,403	25,092	87,407	57,004
	유치원	162,204	12,629	3,156	10,993	21,104	31,863	3,608	17,827	33,063	27,961
	초등학교	137,982	21,596	6,914	2,125	19,112	10,403	3,745	3,647	45,995	24,445
	기타	34,943	250	532	141	1,739	15,666	50	3,618	8,349	4,598

3) 향후계획

- '08년도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표준매뉴얼 개발 보급
- '09년도 미배치 시·도 추가배치(8개 시·도)

카. 소방안전체험관 운영 <Fire Safety learning center>

화성씨랜드·인천호프집 화재 등 대형참사 현장에서 안전대처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희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가상재난(화재, 풍수해, 지진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

1) 사업내용

- '03. 3. 6 서울시민안전체험관(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입구)
 - 대지 1,740평 연면적 1,856평 (지하1층 지상3층)

- '05. 11.7 충북 도민안전체험관(청주 흥덕구 가경동 1075)
 - 연면적 170평 (지상2층)
-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대구 동구 용수동 89-13) - 건립중('08년 완공예정)
 - 대지 4,377평 연면적 1,764평 (지하1층 지상2층)
- 태백 국민안전테마파크(태백 장성동~동구지 일원) - 건립중('10년 완공예정)
 - 대지 289,000평/주요시설 : 교육시설(17종), 엔터테인먼트 시설(12종), 부대시설(8종)
- 서울 제2체험관건립(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내)
 - 부지 4,753㎡, 연면적 7,920㎡(1/3층)
- 부산소방학교 시민안전체험관(부산 연제구 연산9동) - 연면적 1,211㎡(8/2층)
- '01.5 경남소방교육훈련장 운영(경남 진주시 집현면 소재)
 - 폐교활용(대암초등학교) - 대지 9,557㎡ ⇒ (2008년 진주국제대학교로 이전)

2) 그 간 운영현황

- 2004년도 : 148,373명(일평균 476명, 월평균 12,365명)
- 2005년도 : 156,292명(일평균 428명, 월평균 13,024명)
- 2006년도 : 192,572명(일평균 527명, 월평균 16,047명)
- 2007년도 : 223,813명(일평균 703명, 월평균 17,482명)

구 분	계	서 울	충 북	부 산	경 남
인원(명)	223,813	162,115	21,051	24,832	15,815
일평균	703	517	58	68	60
월평균	17,482	13,509	1,754	2,069	1,50

3) 향후계획

- 전국 5개권역에 지속적인 건립 추진(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제주권)

타 소방서 119안전체험교실 운영

소방이 갖는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소방서 내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 및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함.

1) 사업내용

- 소방서 내 일정규모 이상의 상설안전체험교실 전용공간 설치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사용법, 화재안전 등 생활안전 프로그램 운영
- 소방차량 견학 등 소방이 갖는 물적·인적자원 활용프로그램 운영

2) 그 간 운영실적

- 소방서 119안전교실 운영추진실적

시·도	설치개소		운영실적(2007년도)	
	2006까지	2007년	횟수	인원
계	103	66	45,752	5,626,803
서울	12	1	2,986	206,710
부산	1	-	91	5,496
대구	6	1	493	44,832
인천	3	1	328	19,586
광주	5	5	2,745	404,717
대전	5	-	280	18,212
울산	5	5	6,423	305,661
경기1	-	3	306	11,640
경기2	-	-	-	-
강원	11	11	18,012	2,048,295
충북	9	9	3,360	245,332
충남	10	10	418	85,759
전북	10	10	6,059	1,039,053
전남	9	9	2,167	993,925
경북	14	1	1,498	75,429
경남	-	-	586	63,422
제주	3	-	811	58,734

3) 향후계획

- 관서 신설 및 리모델링시 의무설치 유도

4

구조·구급업무

4-1 119 구조·구급대 운영 현황

가. 기본현황

1) 설치근거

- 119구조대 : 소방기본법 제34조(구, 소방법 제94조 : '89. 12. 30)
- 119구급대 : 소방기본법 제35조(구, 소방법 제93조 : '83. 12. 31)

□ 구조업무

- 1988. 4.30 119구조대원복제규정 제정(내무부훈령 제938호)
- 1988. 8. 1(구조대 발족)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 7개시 9개대
(서울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 1989.12.30(소방법 개정) 소방기본업무로 법제화
- 1995.12.27 중앙119구조대 발대(6팀 68명)
- 1997.12.20(내무부령 제747호 제정)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 2005. 8.22(행자부령 제296호 개정)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구급업무

- 1970년대 미 잉여 앰블런스를 인수받아 화재현장 응급환자 이송
- 야간구급환자신고센터 운영지침(내무부훈령 제595호; '79. 9. 3)
- 1980. 10. 2 대전소방서(구급차 1대) 구급업무 수행
- 1981. 6 ~ 부산시 4개 소방서(구급차 4대) 구급업무 수행
- 1982. 3. 1 서울시 8개 소방서(구급차 8대) 구급업무 수행
- 1982. 6. 9(내무부 제716호, 보사부 제447호 공동훈령제정)
- 1983. 12.31(소방법 개정) 소방기본업무로 법제화(30개 소방서)

- 1989. 8.18(내무부예규 제정) 소방구급활동 요강
- 1992. 8.31(내무부예규 제742호 제정) 구급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정
- 2005.8.22(행자부령 제296호 개정)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구조구급업무 확충

- 1994. 11. 8 소방긴급구조체계 확충계획 수립
- 1994. 12. 31 전국 시·도 소방관서 구조구급과 설치승인
- 1995. 6. 14 내무부(행정안전부) 소방국 구조구급과 신설
- 2004. 6. 1 소방방재청 출범(대응관리국 구조구급과)
- 2005. 9. 1 직제개편(소방대응본부 구조구급팀)
- 2006. 7. 1 직제개편(소방정책본부 U119팀)

2) 설치현황

- 119구조대 : 200개대 2,475명
 - 일반구조대 : 181개대 2,245명
 - 특수구조대 : 16개대 177명(수난 7, 산악 5, 화학 4)
 - 직할구조대 : 3개대 134명(중앙 1, 서울 1, 부산 1)
- 소방항공대 : 15개대 헬기 25대 보유
- 119구급대 : 1,301대대, 5,556명(고속도로구급대 33개대 120명)

3) 보유기준

구 분	인 력	장 비
1 1 9 구 조 대	대·중·소 : 15, 13, 11	구조공작차 외 180종
1 1 9 구 급 대	6	구급차 외 68종
고속도로구급대	6	구급차 외 68종
소 방 항 공 대	8	헬기 2대
수 난 구 조 대	21	수난구조정 외 111종
화 학 구 조 대	21	화학구조차 외 107종
산 악 구 조 대	21	산악형썰프차 외 93종

나. 119구조·구급대 현황

1) 일반구조대

시·도	구조대	구조대현원(명)
계	181	2,164
서울	22	453
부산	10	143
대구	7	97
인천	8	131
광주	5	65
대전	5	80
울산	4	42
경기	31	343
강원	11	107
충북	12	108
충남	11	99
전북	10	86
전남	10	90
경북	16	113
경남	15	159
제주	4	48

2) 직할 및 특수구조대

시·도	직할구조대		특수구조대			장 비		대 원
	중 앙	시·도	수 난	산 약	화 학			
계	1	2	7	5	4	1,680종	13,019점	307
소 방 방재청	1	-	-	-	-	415	4,085	91
서 울	-	1	-	-	-	368	2,848	27
	-	-	2(한강)	-	-	94	1,436	36
부 산	-	1	-	-	-	110	565	16
인 천	-	-	-	-	1	29	194	17
울 산	-	-	-	-	2	41	249	20
경 기	-	-	2(청평호, 팔당호)	-	-	78	529	23
강 원	-	-	1(소양호)	1(설악산)	-	68	292	15
충 북	-	-	1(충주호)	-	-	24	148	9
전 북	-	-	-	1(지리산)	-	101	656	7
전 남	-	-	-	1(지리산)	-	100	587	9
	-	-	-	-	1(여수)	76	684	16
경 북	-	-	1(안동호)	-	-	88	373	5
경 남	-	-	-	2(지리산)	-	88	373	16

3) 119구급대(차량·대원)

시·도	구급차	구급대원						대당인원	유자격자비율(%)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계	1,301	5,556	3,406	1,325	2,081	121	2,029	4.27	63.48
중앙 구조대	1	5	3	-	3	-	2	5.00	60.0
서울	116	732	498	228	270	2	232	6.59	68.31
부산	59	290	155	57	98	17	118	4.92	59.31
대구	48	203	160	34	126	1	42	4.23	78.82
인천	45	232	168	77	91	2	62	5.15	73.27
광주	30	130	100	35	65	5	25	4.33	80.77
대전	31	152	105	51	54	5	42	4.90	72.37
울산	27	130	78	36	42	4	48	4.96	62.70
경기	219	882	542	381	161	5	335	4.03	62.02
강원	108	434	286	10	276	1	147	4.02	66.13
충북	83	222	147	49	98	4	71	2.84	68.00
충남	96	315	192	73	119	7	116	3.28	63.17
전북	73	337	189	62	127	16	132	4.61	60.83
전남	86	330	216	98	118	18	96	3.84	70.90
경북	120	476	276	60	216	10	190	3.96	60.08
경남	128	490	228	46	182	6	256	3.83	47.76
제주	31	196	63	28	35	18	115	6.33	41.33

※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미국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동시자격자는 1급 응급구조사로 분류

다. 소방항공대 현황

1) 헬기보유 : 15개대 25대(중앙구조대 2대, 시·도소방항공대 14개대 23대)

번호	보유기관	기종	탑승인원	엔진출력	구입년도	제조사
1	중앙	AS365-N2	14	763×2	'97. 1	프랑스 유로콥터
2		AS365-N2	14	763×2	'99.12	프랑스 유로콥터
3	서울	BELL 206L3	7	650	'90. 4	미국 벨헬리콥터
4		AS365-N2	14	763×2	'97. 9	프랑스 유로콥터
5		AS365-N2	14	763×2	'99.11	프랑스 유로콥터
6	부산	BK117-B	10	550×2	'91. 1	일본 가와사키
7		BK117-B2	10	550×2	'97. 7	일본 가와사키
8	대구	AS350-B2	6	732	'95.12	프랑스 유로콥터
9		KA-32T	18	2,200×2	'05.12	러시아 쿠메르타우
10	인천	BELL 230	10	700×2	'95.10	미국 벨헬리콥터
11	광주	BK117-B2	10	550×2	'97. 5	일본 가와사키
12	울산	KA-32T	18	2,200×2	'00.12	러시아 쿠메르타우
13	경기	BELL 206L3	7	650	'91. 5	미국 벨헬리콥터
14		KA-32T	18	2,200×2	'01. 2	러시아 쿠메르타우
15		AS365-N3	14	851×2	'01.12	프랑스 유로콥터
16	강원	BK117-B2	10	550×2	'97.10	일본 가와사키
17		AS365-N3	14	851×2	'01. 8	프랑스 유로콥터
18	충북	BK117-C2	10	740×2	'05. 4	일본 가와사키
19	충남	W-3A SOKOL	14	900×2	'99.12	폴란드 스위드닉
20	전북	BK117-B2	10	550×2	'97. 4	일본 가와사키
21	전남	BK117-B2	10	550×2	'98.12	일본 가와사키
22		BELL 430	10	808×2	'06. 1	미국 벨헬리콥터
23	경북	KA-32T	18	2,200×2	'95. 6	러시아 쿠메르타우
24		AS365-N3	14	851×2	'06. 2	프랑스 유로콥터
25	경남	AS365-N3	14	851×2	'07. 2	프랑스 유로콥터

※ '08년(12월) 도입예정 : 1대(중구대)

2) 헬기 운영인력 및 구조대원

시·도	장비보유			운용요원						
	헬기	급유차	토우카	계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	기타
					소방직	계약직	소방직	계약직		
계	25	16	19	217	35	29	28	21	85	19
중앙구조대	2	1	1	19	-	8	-	4	7	-
서울	3	1	1	25	-	6	-	6	9	4
부산	2	1	2	18	5	-	4	-	5	4
대구	2	1	1	16	5	-	4	-	6	1
인천	1	1	1	13	3	-	3	-	6	1
광주	1	1	1	7	2	-	2	-	3	-
울산	1	1	1	10	3	-	2	-	3	2
경기	3	1	2	22	7	1	5	1	8	-
강원	2	2	2	19	6	-	4	-	8	1
충북	1	1	1	9	2	-	2	-	4	1
충남	1	1	1	8	-	2	-	2	4	-
전북	1	1	1	9	-	2	-	2	4	1
전남	2	1	2	14	2	2	2	2	5	1
경북	2	1	1	14	-	4	-	2	7	1
경남	1	1	1	14	-	4	-	2	6	2

4-2 2007년도 구조·구급활동 현황

가. 2007년도 구조활동

1) 총괄

구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미처리건수	1일 평균	
					구조건수	구조인원
2007년	233,470	146,019	77,538	87,451	400	212
2006년	202,389	113,433	72,169	88,956	311	198
증감(%)	15.4	28.7	7.4	-1.7	28.7	7.4

2) 사고종별 구조인원

구분	계	화재	교통사고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07	구조인원	77,538	3,474	22,506	2,647	65	1234	5,421	136	42,055
	비율(%)	100	4.5	29	3.4	0.1	1.6	7.0	0.2	54.2
'06	구조인원	72,169	3,840	21,120	2,341	50	1,103	5,019	1,886	36,810
	비율(%)	100	5.3	29.3	3.2	0.1	1.5	7.0	2.6	51
증감(%)	7.4	-10	6.5	13	30	12	8	-93	14.2	

3) 사고장소별 구조인원

구분	계	주택 APT	작업장 공장	차량 도로상	사무실	하천 바다	산	기타	
'07	구조인원	126,004	54,519	4,257	26,515	7,924	4,182	7,681	20,926
	비율(%)	100	43	3.4	21	6.2	3.3	6.1	17
'06	구조인원	72,169	20,810	1,141	21,561	6,476	3,315	6,354	12,512
	비율(%)	100	28.8	1.6	29.9	9.0	4.6	8.8	17.3
증감(%)	11.7	4.7	3.7	11.5	36.1	11.7	23.4	9.3	

4) 사고종별 구조건수

구분		계	화재	교통사고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07	구조건수	146,019	22,745	19,129	3,056	117	1,450	5,096	612	93,814
	비율 (%)	100	15.6	13.1	2.1	0.1	1	3.5	0.4	64.2
'06	구조건수	113,433	19,237	16,631	2,889	128	1,256	4,590	906	67,796
	비율 (%)	100	17	14.7	2.5	0.1	1.1	4.0	0.8	59.8
증감(%)		28.7	18.2	15	5.8	-0.9	15.4	11	-32.5	38.3

5) 시·도별 구조건수 및 구조인원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조건수	146,019	166	37,972	9,710	4,217	4,484	4,049	3,503	3,895	25,180	4,052	7,369	6,215	6,877	6,906	5,200	13,081	3,193
구조인원	77,538	125	14,716	6,008	2,016	3,923	2,410	1,508	1,838	15,005	4,194	2,824	3,518	4,021	3,703	3,404	6,685	1,640

6) 연도별 구조활동 (1998 ~ 2007)

구분 \ 연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조건수	64,606	83,694	86,929	87,914	85,402	88,054	97,881	105,382	113,433	146,019
증가율(%)	46.8	29.5	3.8	1.1	-2.8	3.1	11.2	7.7	7.6	28.7
구조인원	75,924	82,487	78,590	72,841	75,275	72,680	61,338	64,633	72,169	77,538
증가율(%)	50.0	8.6	-4.7	-7.3	3.3	-3.4	-15.6	5.4	11.7	7.4

7) 시·도별 구조활동 현황

시·도	출 건 수	구 조 (처 리) 수	구 조 인 원	미처리 건수				
				계	자체 처리	오인	허위 신고	타기관 처리
계	233,470	146,019	77,538	87,451	68,325	13,735	536	4,855
중앙	207	166	125	41	33	2	-	6
서울	53,089	37,972	14,716	15,117	8,099	5,175	230	1,613
부산	15,268	9,710	6,008	5,558	3,726	375	-	1,457
대구	7,127	4,217	2,016	2,910	2,558	247	15	90
인천	9,829	4,484	3,923	5,345	3,908	1,264	28	145
광주	6,625	4,049	2,410	2,576	2,328	173	6	69
대전	6,564	3,503	1,508	3,061	2,846	191	13	11
울산	6,021	3,895	1,838	2,126	1,874	186	9	57
경기	46,157	25,180	15,005	20,977	17,556	2,739	87	595
강원	6,416	4,052	4,194	2,364	1,812	416	12	124
충북	9,118	7,369	2,824	1,749	1,344	261	15	129
충남	10,719	6,215	3,518	4,504	3,667	746	26	65
전북	10,173	6,877	4,021	3,296	2,949	302	11	34
전남	11,289	6,906	3,703	4,383	3,915	266	15	187
경북	11,094	5,200	3,404	5,894	5,413	404	19	58
경남	18,602	13,031	6,685	5,571	4,785	573	46	167
제주	5,172	3,193	1,640	1,979	1,512	415	4	48

8) 소방항공대 활동

구분 시·도	연도	운항 회수	운항 시간	구조 인원	활 동 회 수										
					인명구조			응급 환자	화재 출동	산불 진화	홍보 활동	교육 훈련	항공 촬영	시험 비행	기타
					산악	수난	기타								
계	'07	3,241	220,032	1,239	1,120	18	31	155	15	431	201	570	133	248	319
	'06	3,201	221,532	1,129	965	12	101	137	25	294	298	646	79	216	428
증 감 (%)		1.3	-0.7	9.7	16.1	50	-69.3	13.1	-40	46.6	-32.6	-11.8	68.4	14.8	-25.5
증 양		244	31,836	43	37	7	20	15	-	11	1	99	1	7	46
서 울		601	22,260	296	302	-	4	-	-	147	-	63	2	16	67
부 산		178	10,360	28	28	3	-	-	2	48	27	54	2	7	7
대 구		174	13,005	29	43	1	-	2	2	44	7	31	1	13	30
인 천		152	9,000	60	30	-	-	30	-	9	12	50	2	7	12
광 주		125	8,810	12	12	-	-	6	-	29	12	43	11	8	4
울 산		129	8,940	32	32	-	-	4	-	18	7	31	11	17	9
경 기		522	35,290	257	248	1	-	4	4	76	-	21	36	44	88
강 원		297	19,870	175	152	6	2	12	-	6	20	51	14	13	21
충 북		125	191	71	68	-	-	2	-	1	17	27	-	10	-
충 남		82	6,104	19	17	-	-	4	-	4	9	7	10	31	-
전 북		121	9,075	43	40	-	4	5	-	1	33	20	7	7	4
전 남		213	17,716	95	29	-	-	68	1	-	36	17	18	44	-
경 북		171	17,930	33	36	-	1	1	5	33	11	41	6	16	22
경 남		107	9,645	46	46	-	-	2	1	4	9	15	12	8	9

나. 2007년도 구급활동

1) 총 괄

구 분	구급대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1일평균 이송인원	구급대당 이송환자
2007년도	1,301	1,686,138	1,189,122	1,235,609	3,385	950
2006년도	1,255	1,566,010	1,111,171	1,153,553	3,160	919
증감(%)	3.7%	7.6%	7.0%	7.1%	7.1%	3.4%

2) 진료과목별 이송현황 (2006년 구급일지 개정)

구 분	계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기 타	
'06	이송인원	1,235,609	449,580	150,054	156,455	72,829	17,622	53,254	335,815
	비율(%)	100	36.4	12.1	12.7	5.9	1.4	4.3	27.2

3) 직업별 이송현황

구 분	계	주부	학생	상업	회사	농업	무직	기타	
'06	이송인원	1,235,609	142,045	80,692	14,745	67,034	34,301	376,402	520,390
	비율(%)	100	11.5	6.5	1.2	5.4	2.8	30.5	42.1

4) 연령별 이송현황

구 분	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65	65세 이상	
'06	이송인원	1,235,609	55,332	72,684	122,430	156,686	218,395	179,365	82,888	347,829
	비율(%)	100	4.5	5.9	9.9	12.7	17.7	14.5	6.7	28.1

5) 장소별 이송현황

구 분	계	가정	숙박 시설	일반 도로	고속 도로	산	공공 장소	주택가	기타
'07 이송인원	1,235,609	599,959	15,302	195,913	14,448	4,059	64,896	98,286	242,746
비율(%)	100	48.6	1.2	15.9	1.2	0.3	5.63	8.0	19.17

6) 장애요인별 이송현황

구 분	계	비응급 이송	장거리 이송	만취자	과체중	언어 폭력	장애 없음	기타
'07 이송인원	1,235,609	121,110	60,535	27,859	9,873	1,535	831,464	183,233
비율(%)	100	9.8	4.9	2.3	0.8	0.1	67.3	14.8

7) 응급처치 현황

구 분	계	기도 확보	보온	산소 공급	경추 및 척추 고정	CPR	ECG	지혈	드레싱	기타
'07 처치 건수	2,171,545	96,098	331,976	216,694	190,948	15,410	20,587	137,409	103,147	1,059,276
비율 (%)	100	4.4	15.3	13.1	8.8	0.7	0.9	6.3	4.7	45.8

8) 시·도별 구급활동

구분 시·도	구급대	출동 건수	이송 건수	이 송 환자수	구급대당 이송건수	구급대당이 송환자	1일 이송건수	1일 이송인원
계	1,301	1,686,138	1,189,122	1,235,609	885	919	3,258	3,385
중 앙	1	121	62	81	62	81	0,2	0,2
서 울	116	365,578	235,889	240,404	2,034	2072	646	659
부 산	59	125,093	87,401	89,606	1,481	1519	239	245
대 구	48	67,605	46,363	47,572	966	991	127	130
인 천	45	86,424	60,046	62,519	1,334	1389	165	171
광 주	30	45,729	34,514	35,871	1,150	1196	95	98
대 전	31	52,057	37,750	38,923	1,218	1256	103	107
울 산	27	29,887	23,349	24,422	865	905	64	67
경 기	219	333,902	237,196	245,037	1,083	1119	650	671
강 원	108	69,327	53,287	57,294	493	531	146	157
충 북	83	58,326	41,898	43,812	505	528	115	120
충 남	96	79,320	58,683	62,780	611	654	161	172
전 북	73	66,280	50,458	52,844	691	724	138	145
전 남	86	72,242	51,127	54,422	595	633	140	149
경 북	120	92,901	68,463	72,180	571	602	188	198
경 남	128	111,080	78,504	82,507	613	645	215	226
제 주	31	30,266	24,132	25,335	778	817	66	69

※ 2007년 26.5초당 1건(1분당 2,26건), 25.5초당 1명(1분당 2,35명)
이송1시간당 192건(132명), 135건(141명) 이송, 20초당 1회 출동

9) 연도별 구급활동

구분 연도	구급 대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 송 환자수	1일 평균		구급대당 건/환자
					건	환자	
2007	1,301	1,686,138	1,189,122	1,235,609	3,257	3,385	914/950
2006	1,255	1,566,010	1,111,171	1,153,553	3,044	3,160	876/910
2005	1,209	1,493,416	1,058,996	1,100,737	2,901	3,016	876/910
2004	1,181	1,452,366	1,035,139	1,076,932	2,836	2,950	876/912
2003	1,154	1,373,141	973,475	1,013,874	2,667	2,778	844/879
2002	1,107	1,290,332	944,775	982,697	2,588	2,692	853/888
2001	1,095	1,280,144	944,435	985,618	2,587	2,700	862/900
2000	1,083	1,211,810	899,004	945,834	2,463	2,591	830/873
1999	1,071	1,186,627	896,298	951,867	2,456	2,608	837/889
1998	1,031	911,318	672,778	709,184	1,843	1,943	653/688
1997	967	722,054	539,261	567,750	1,477	1,555	558/587
1996	857	592,267	440,752	463,884	1,208	1,271	514/541
1995	619	425,017	322,051	335,086	882	918	520/541
1994	505	210,692	163,164	167,252	447	458	323/331
1993	406	153,606	122,717	125,202	336	343	302/308
1992	353	116,560	93,287	95,491	256	262	264/271
1991	281	106,508	85,467	87,657	234	240	304/312
1990	207	85,657	68,096	70,247	187	192	329/339
1989	151	69,962	55,408	57,444	152	157	367/380
1988	128	54,081	47,744	49,493	131	136	373/387
1987	117	45,068	36,863	39,027	101	107	315/334
1986	94	37,557	29,813	31,632	80	87	317/336
1985	78	31,298	24,291	25,880	67	71	311/332

10) 2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구분 시·도	연도별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총계	'07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96
계	4,313	416	330	301	386	336	425	510	465	318	280	260	286
중앙	28	2	4	-	3	1	1	4	1	1	3	7	1
서울	1,214	94	73	82	73	37	65	127	134	154	119	117	139
부산	194	17	14	17	19	23	27	15	15	14	10	12	11
대구	126	13	7	11	10	5	14	9	25	15	5	6	6
인천	148	10	16	15	6	8	12	6	10	16	33	10	6
광주	105	9	4	5	14	16	20	14	7	2	2	6	6
대전	94	10	1	5	3	3	1	7	10	13	11	15	15
울산	71	7	5	4	7	2	2	8	20	6	6	2	2
경기	830	122	102	57	85	129	88	83	81	18	16	23	26
강원	388	33	44	28	51	1	47	54	80	18	13	11	8
충북	126	13	9	6	8	8	9	7	12	12	12	16	14
충남	171	2	5	13	34	28	32	34	6	5	3	3	6
전북	160	10	4	7	17	21	23	31	16	13	4	6	8
전남	114	7	9	11	8	12	14	21	6	1	6	6	13
경북	220	42	18	11	20	11	17	21	23	14	25	9	9
경남	260	16	12	23	23	24	46	63	9	13	12	9	10
제주	64	9	3	6	5	7	7	6	10	3	-	2	6

11)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양 성 기 관	정원(명)	주 소	대 상
중앙소방학교	250	충남 천안시 유량동 36	소방관
서울소방학교	1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3	소방관
경기소방학교	150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646-2	소방관
경북소방학교	150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960	소방관
영진전문대학	150	대구시 북구 복현2동 218	일반인
국군공의학교	80	대전시 유성구추목동 사서함 78-501	군 인

다. 2007년도 긴급구조훈련

1) 총괄

실시횟수	훈련 참여 기관·단체	동원인원	동원장비	비고
414	5,098	83,150	10,584	-

2) 참여기관·단체

구분	계	소방	시·도 (시·군·구)	경찰	군부대	보건소	병원	적십자사	공공단체	민간단체	기타
기관·단체	5,098	790	320	306	364	278	665	175	857	610	733
동원인원	83,150	31,426	5,695	4,131	4,269	1,599	3,274	2,425	4,616	10,432	15,283
동원장비	10,584	5,423	824	583	529	442	608	178	829	585	583

3) 실시기관별

구분	계	긴급구조기관	
		소방본부	소방서
실시횟수	414	33	381
참여기관	5,098	664	4,434
동원사항	인원	83,150	72,599
	장비	10,584	9,391

4) 시·도별 훈련현황

시·도	일 자	훈 련 대 상	훈 련 유 형
서 울	10.16	타워호텔	테러(생화학)
부 산	10.19	SK 인천정유	화재(위험물)
대 구	7.13	수성못유원지	선박사고(화재)
인 천	10.24	인천화력본부	지진
광 주	10.26	기아자동차	테러(화학)
대 전	10.25	대한송유관공사	대형화재(위험물)
울 산	11.22	울산화력본부	화재(폭발)
경 기	10.30	성남교육청	대형화재(방화)
경기2	7.11	화정역사(지하철 3호선)	풍수해
강 원	11.2	한림성심대학	화재(폭발)
충 북	10.31	부영아파트	테러(화학)
충 남	10.10	삼성전자(주) 천안사업장	테러(폭발)
전 북	10.18	한국노스케스코그(주)	테러
전 남	11.1	현대하이스코(주) 순천공장	대형화재(유독물)
경 북	10.11	영천 이마트	테러(화재)
경 남	9.13	구조라리 유람선 선착장	선박 화재
제 주	11.29	제주 국제공항	항공기 화재

가. 기본현황

- 1) 목 적 : 해외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3개팀 31명으로 발대
- 2) 주요임무
 -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탐색·긴급구조 및 응급처치
 - 기타 재난현장 구호활동
- 3) 조 직 : 6개반 41명
(공보연락반, 구조반, 탐색반, 의료반, 시설관리반, 안전평가반)
- 4) 장 비 : 인명탐색 및 첨단구조장비 등 42종 142점

나. 출동체계 : 재난발생 ⇒ 비상대기 ⇒ 출동명령 ⇒ 구조출동

다. 활동실적

- 1) 제1차 파견 — '97. 9. 4 ~ 9. 8 / 캄보디아 프놈펜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 등 5명, 유압스프레다 등 17종 45점
 - 활동실적 : 유품수거 27점, 사체 입관 및 유해 운구 작업(20구)
- 2) 제2차 파견 — '99. 8. 20 ~ 30 / 터키 이즈밀
 - 인원장비 : 구조구급과장 등 17명, 매몰자탐지기 등 36종 93점
 - 활동실적 : 사체 154구 발굴
- 3) 제3차 파견 — '99. 9. 22 ~ 27 / 대만 난터우현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16명, 지중음향탐지기 등 40종 97점,
구조견 2두

- 활동실적 : 인명구조조건,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작업
생존자 1명(장칭홍-남, 6세) 구조, 사체 21구 발굴

4) 제4차 파견 — '03. 5. 23 ~ 31 / 알제리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외 21명, 매몰자탐지기 등 41종 185점
- 활동실적 : 사체발굴 및 수습(22구), 응급의료서비스제공

5) 제5차 파견 — '03. 12. 27 ~ '04. 1. 3 / 이란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24명(세계 54개국 1,618명 구조대원
현지지원), 지중음향탐지기 등 42종 68점(인명구조조건 2두 포함)
- 활동실적 : 사상자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활동 → 사체발굴(수습) 57구

6) 제6차 파견 — '04. 12. 29 ~ '05. 1. 7 / 태국

-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 등 15명, 매몰자탐지기 등 42종 202점
- 활동실적 : 사체발굴·수습(14구) 및 유류품(145점) 수거

4-4 소방기술경연대회

가. 대회연혁

- 1983년 “전국소방왕선발대회” 개최(내무부장관 방침)
- 1989년 대회명칭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로 변경
- 1996년 경연종목에 응급처치분야(3종목) 신설
- 2000년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방침변경
- 2001년 경연종목을 소방여건에 맞도록 개선
- 2004년 친선경기 추가, 특별승진 확대(최강소방관경기 2위)

- 2005년 의용소방대경기 추가, 특별승진 확대(응급처치 2위, 최강소방관 3위)
- 2006년 대학생경연 추가(기도삼관법), 사랑의 119바자회 개최
- 2007년 출전횟수 1회제한 적용, 시상훈격 격상(종합1위 : 대통령상)

나. 제19회 소방기술경연대회

1) 대회개요

- 일 시 : 2007. 9. 6~7(2일간)
- 장 소 : 중앙소방학교
- 참석인원 : 약 2,000여명(선수 855, 부대행사 400여명, 참관인 등 745명)

2) 경연종목 : 5개 분야 8종목 268명

- 인명구조분야 : 구조물인명구조, 수중인명구조
- 화재진압분야 : 고층건물화재진압, 속도방수
- 응급처치분야 : 심폐소생술, 환자구출법
- 시범경연 : 「U-119」 상황처리 시범경연
- 개인분야 : 최강소방관경기

※ 대학부 : 기도삼관법
 의용소방대 : 단체줄넘기 등 4개 종목

3) 경기결과

구분	종합성적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최강소방관	「U-119」 상황처리
1위	경남본부	전남본부	충북본부	부산본부	충북 소방사 구분선	제주 소방사 김민정
2위	전남본부	경기본부	전북본부	서울본부	경기 소방사 김이건	대전 소방교 이상용
3위	경기·부산·전북	경남본부	전남본부	경남본부	충북 소방사 김방식	경기 소방교 김명진

5

긴급구조통제단업무

5-1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법적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3조, 제64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7장

나. 내 용

국가긴급구조대응계획

▶ 재난발생시 대응 및 긴급복구활동조직이 신속, 효과적인 대응과 긴급복구활동 수행을 위해 계획가동 권한과 책임, 자원동원체계, 현장지휘체계, 표준작전절차(SOP) 등을 정하여 놓은 체계 기술서로 국가·시·도, 시·군·구단위의 수준별 계획으로 구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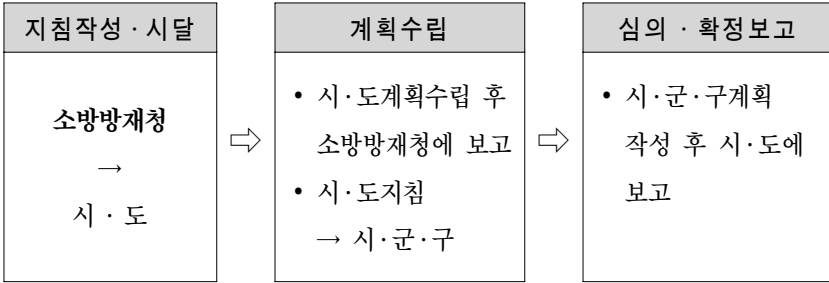
▶ 최상위수준에서 지역별 대응계획의 집행을 총괄·조정차원에서 운영하고 ① 기본계획, ②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③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3조

▶ 기능별대응계획은 11개의 기능으로 나뉘어, 해당기능마다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민간협정자원이 통제단의 조정을 통하여 협력

※ 내용 : ① 지휘통제 ② 비상경고 ③ 대중정보 ④ 상황분석 ⑤ 구조진입 ⑥ 응급의료
⑦ 오염통제 ⑧ 현장통제 ⑨ 긴급복구 ⑩ 긴급구호 ⑪ 재난통신

다. 수립절차



라. 작성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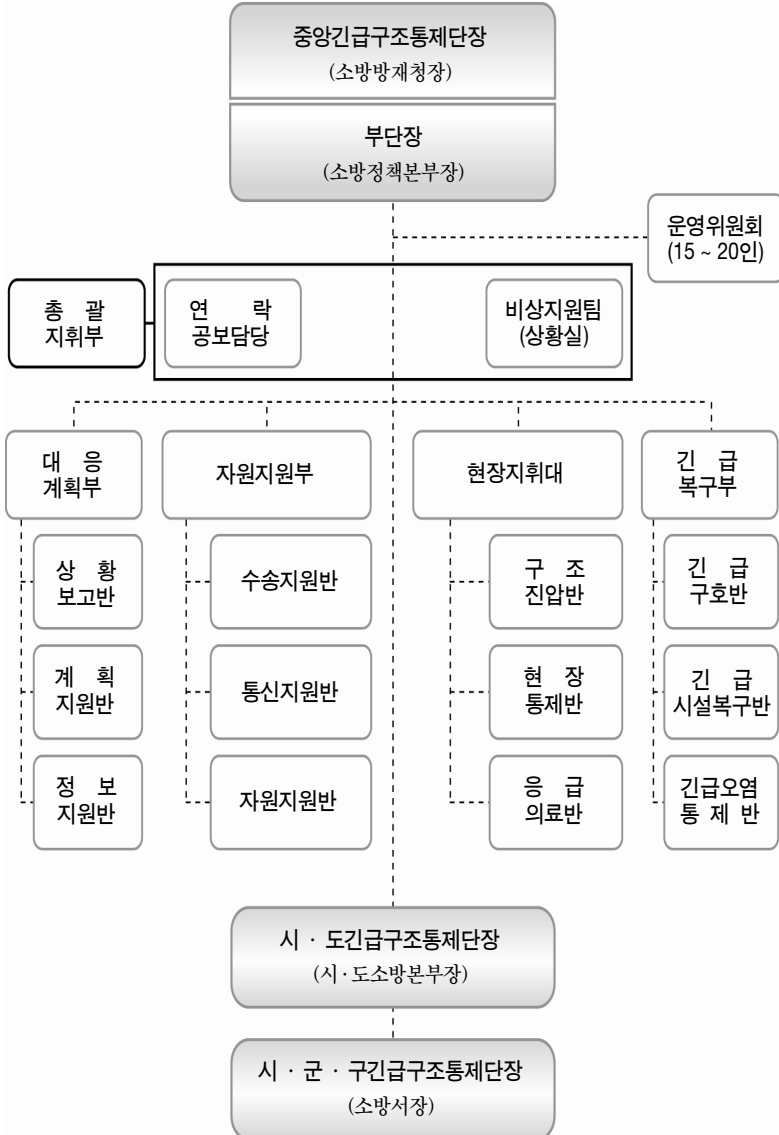
※ 기능별계획(시행령 제63조의 바목 내지 카목)을 책임지원기관과 공동작성

5-2 현장지휘체계

-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내지제52조
- **조 직**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기 능** : 국가 긴급구조대책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집행 등

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1) 기 구



2) 기 능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중앙통제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총괄지휘부	연락공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정보계획 가동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가동 - 국회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비상지원팀 (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제단 지원기능 수행 - 긴급구조대응계획중 각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 각 소속 기관·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
대응계획부	상황보고반	- 재난상황정보를 종합 분석·정리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보고
	계획지원반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대응계획부의 작전계획 수립지원
	정보지원반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
자원지원부	수송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수송 지원 -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통신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의 중앙통제단과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과의 통신지원 -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자원지원반	- 소방방재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도 통제단 자원 요구사항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차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 시·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현장지휘대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현장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지원 지원활동 -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 시·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조반	- 정부긴급구조활동 지원 - 긴급구조
	긴급시설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 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나. 중앙긴급구조 지원기관

1) 임무분담

기능별 기관별	지휘 통제	비상 경고	대중 정보	상황 분석	구조 진입	응급 의료	오염 통제	현장 통제	긴급 복구	긴급 구호	재난 통신	비고
소방방재청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국 방 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과학기술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산업자원부				지원			지원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환 경 부						지원	책임		지원		지원	
건설교통부	지원		지원				지원		책임			
정보통신부			지원						지원		지원	
경 찰 청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지원	
해양경찰청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기 상 청			지원									
산 립 청					지원						지원	
대한적십자사						지원	지원		지원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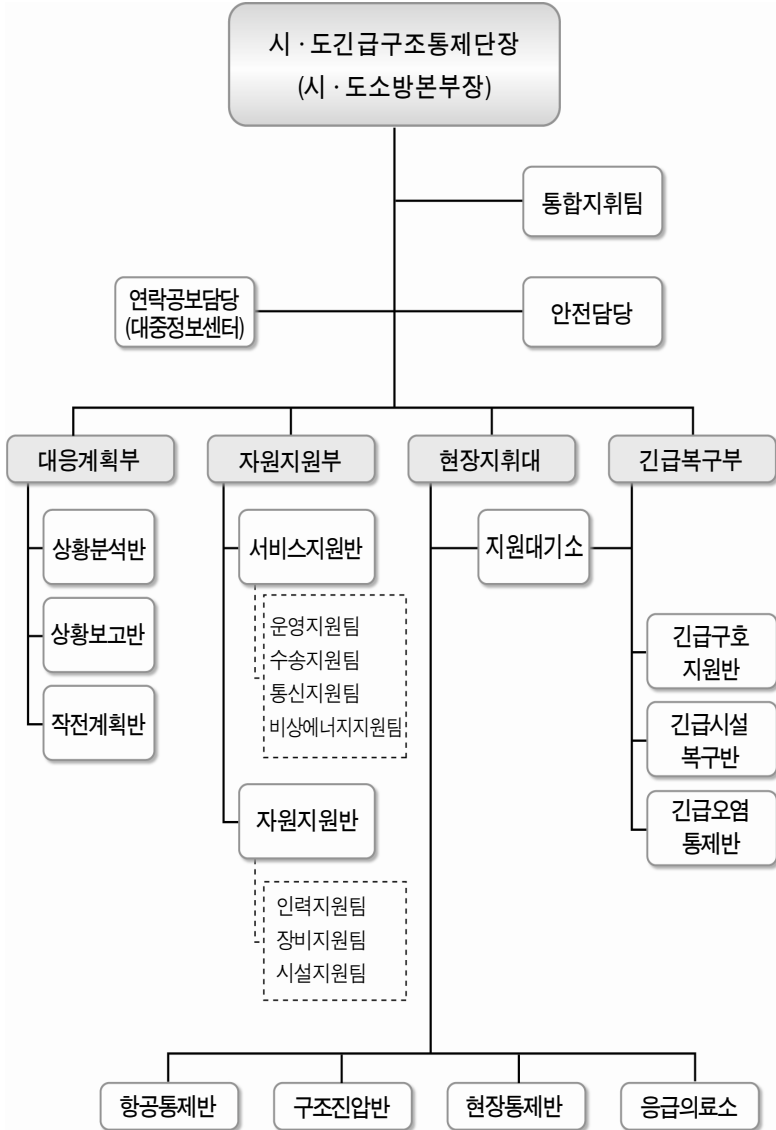
- 책임 : 책임지정기관
- 지원 : 책임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기관

2) 지원기관 임무

- 연락관 파견의무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지원의무
- 지휘통제 복종의무 및 문책요구시 조치 및 통보의무

다.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1) 기 구



2) 기 능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시·도 통제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연락공보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대중매체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 국회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전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 재난상황예측 -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상황보고반	- 대책본부장 및 중앙 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전계획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자원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 기타 각 시·군·구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 자원대기소 운영
	현장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대피계획 지원 -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사상자 분산이송 통제 -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항공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급시설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 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 시·군·구 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라. 현장지휘체계

1)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

- 지역통제단장에게 1·2차 지휘권 부여
(1차 :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 / 2차 : 시·도 긴급구조 통제단장)
 - －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지역통제단장에게 1·2차적 지휘 권한·임무 및 통제권 부여
- 위의 지휘 규정 불구하고 필요시 중앙통제단장이 지휘권 행사

2) 중앙통제단장의 현장지휘 대상

- 대규모로 재난 발생시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득이한 경우 부단장 지휘

3)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현장지휘 사항
 -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의 탐색·구조
 -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배치와 운용
 - － 추가재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 긴급구조의 필요한 물자의 관리
 -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효율적인 긴급 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관련업무 실무책임자

5-3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가. 법적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나. 정 의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다. 긴급구조지원기관

1) 시행령 제4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국방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2) 시행규칙 제2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항공청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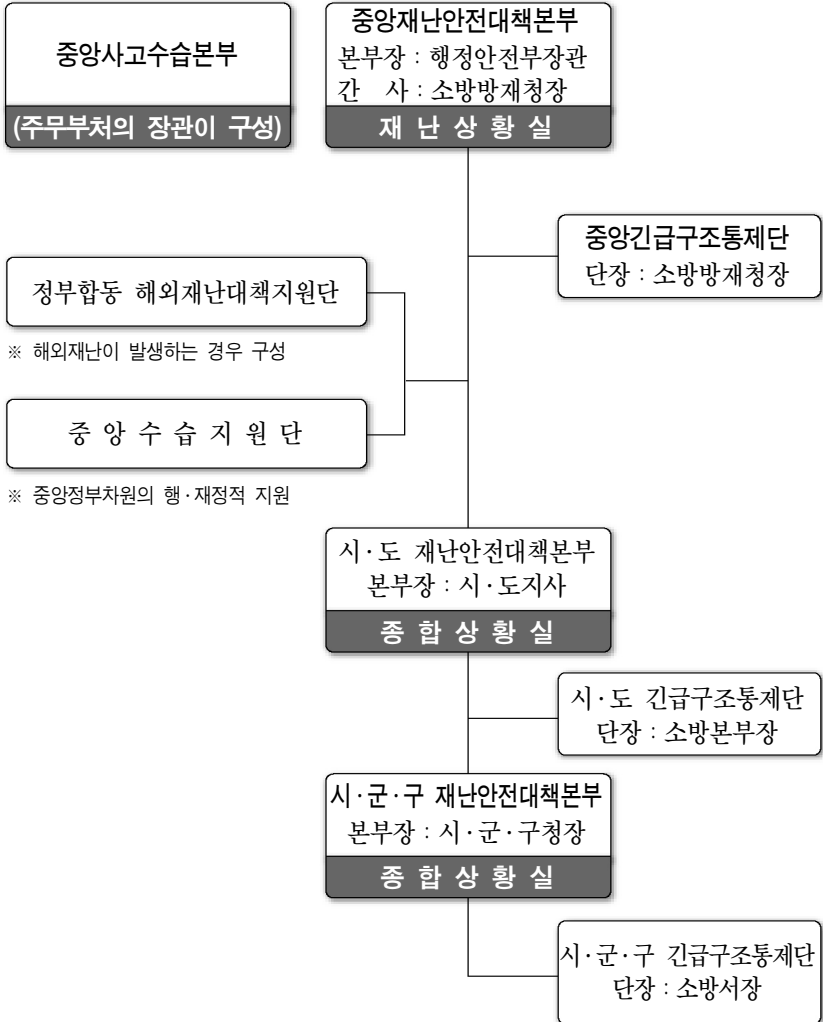


방재관리 분야

1. 재난대책기구	289
2. 자연재난 예방대책	292
3. 자연재난 복구지원	302
4. 풍·수해 피해 및 복구	307
5.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320

1 재난대책기구

1-1 방재조직 체계도



1-2 자연재난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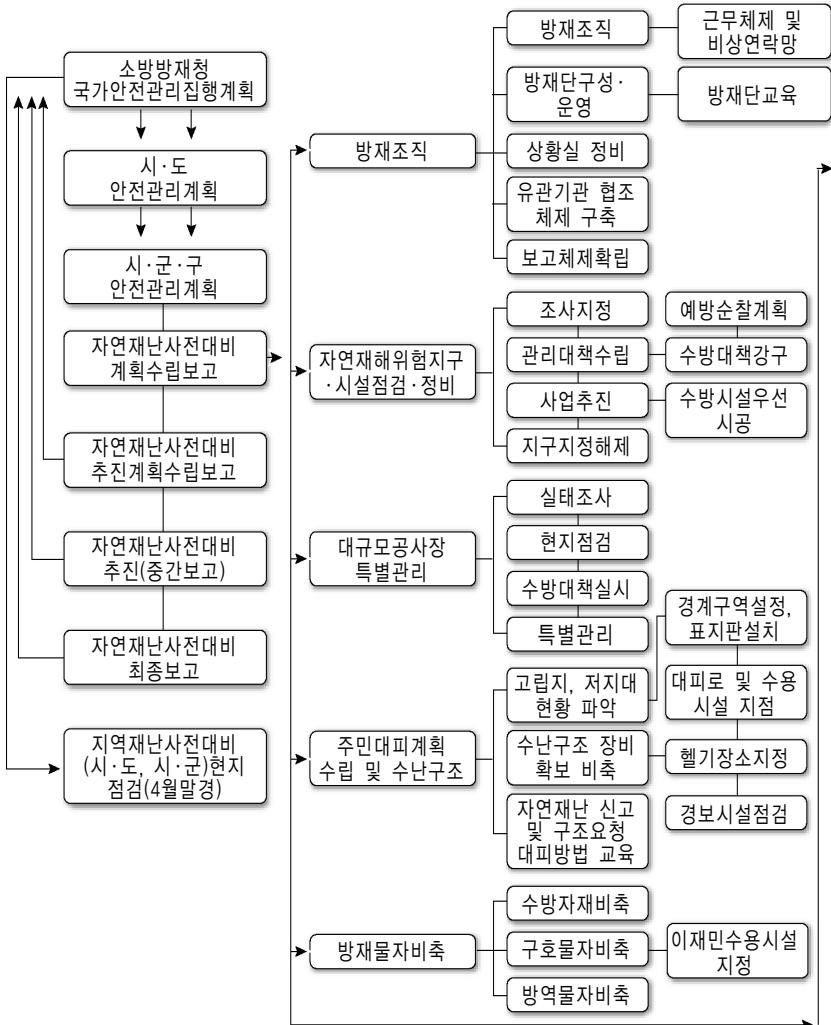
구 분	자연재난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인적재난)
근거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04. 3. 11 제정)
수 습 대책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자치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도, 시·군·구)</p>
복 구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 : 방재책임자 — 국가시설 : 국가 — 지방시설 : 지방자치단체 — 개인시설 : 개인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 국가일부 보조 및 지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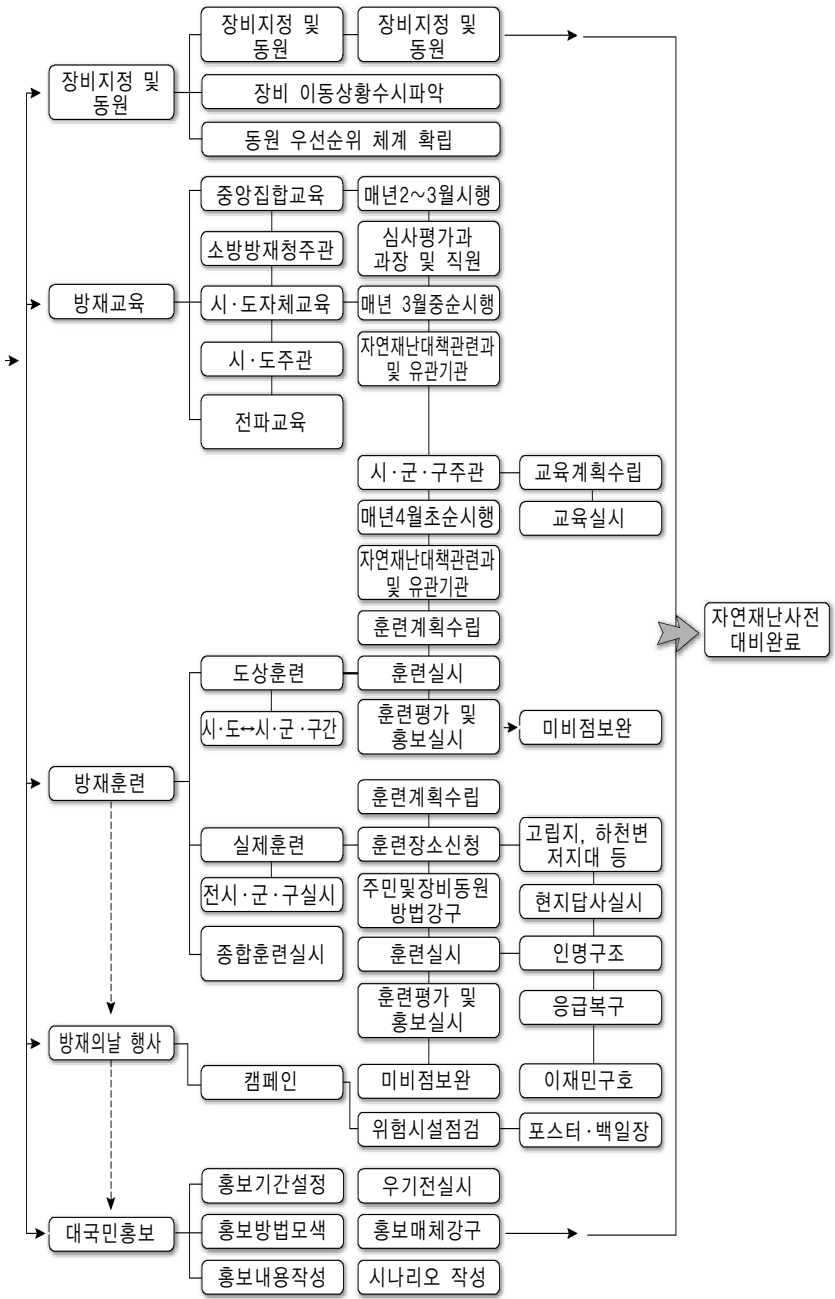
구 분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p>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p> <p>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p>

2

자연재난 예방대책

2-1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추진 흐름도





2-2 수방자재 비축 현황 (2008. 5.31일 기준)

구 분	포대류 (매)	묶음줄 (타래)	말목 (본)	비닐 덮개 (롤)	작업 공구 (점)	재난 안전선 (롤)	비축 장소 (개소)
계	5,845,707	25,355	96,861	49,949	28,203	20,064	2,753
서울	406,840	376	260	572	815	126	394
부산	65,439	93	1,197	194	2,233	136	24
대구	48,546	298	565	24	615	74	51
인천	117,583	16	5,880	902	-	2	117
광주	46,329	441	1,908	63	329	-	66
대전	93,982	2,218	3,006	228	2,323	112	84
울산	42,501	2,961	3,700	19	632	13,650	24
경기	1,969,054	2,975	8,369	8,947	3,271	1,015	428
강원	981,359	2,600	5,157	1,564	3,228	464	163
충북	372,954	2,087	8,259	9,559	2,164	363	125
충남	172,950	900	12,072	577	703	33	196
전북	283,553	2,530	22,710	770	1,647	333	159
전남	130,835	379	5,809	223	1,352	221	280
경북	493,502	3,061	7,593	10,236	3,795	1,871	327
경남	601,690	4,395	10,376	16,055	4,154	1,630	282
제주	18,590	25	-	16	942	34	33

2-3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현황 (2008. 5.31일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불도저	페이로더	크레인	그레이더	굴삭기	청소차	기타
계	37,786	563	1,069	916	112	12,343	5,345	17,438
서울	8,192	63	172	127	19	468	1,418	5,925
부산	2,050	58	17	55	-	548	463	909
대구	1,129	11	42	26	4	663	115	268
인천	3,771	20	137	36	1	921	66	2,590
광주	981	48	11	44	2	508	37	331
대전	413	25	7	31	2	88	60	200
울산	441	6	3	12	-	118	133	169
경기	7,100	92	260	202	9	2,452	1,207	2,878
강원	2,549	15	122	37	29	1,316	186	844
충북	1,481	32	81	63	6	448	204	647
충남	1,865	62	28	38	1	930	253	553
전북	1,349	28	44	27	1	614	256	379
전남	1,101	17	5	14	3	609	308	145
경북	2,499	29	79	127	4	1,352	302	606
경남	2,590	55	52	71	22	1,232	223	935
제주	275	2	9	6	9	76	114	59

2-4 구호물자 비축 현황 (2008. 5.31일 기준)

구 분	비축창고		일시 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개소	면적(㎡)		소 계	기존1종	기본용	개인용
계	546	222,164	45,633	104,723	10,611	32,621	61,491
서울	68	18,880	17,280	25,459	3,331	7,688	14,440
부산	29	33,102	1,344	3,274	105	1,058	2,111
대구	21	27,281	520	553	103	160	290
인천	12	2,645	1,500	1,585	69	622	894
광주	9	286	65	601	289	104	208
대전	6	361	350	479	-	160	319
울산	10	282	300	386	93	103	190
경기	52	26,395	5,883	28,010	4,653	8,284	15,073
강원	36	3,395	3,677	8,252	240	2,325	5,687
충북	28	17,563	1,081	3,104	258	979	1,867
충남	52	4,377	1,938	3,341	136	1,296	1,909
전북	58	2,233	961	2,813	101	948	1,764
전남	42	27,545	4,519	8,240	150	3,077	5,013
경북	71	19,895	2,214	4,936	759	1,362	2,815
경남	47	37,663	3,441	10,531	321	3,821	6,389
제주	5	261	560	3,159	3	634	2,522

구 분	재 가 구 호 세 트		
	소 계	기존2종	개 선 용
계	32,389	10,423	21,966
서울	6,675	2,794	3,881
부산	888	3	885
대구	256	-	256
인천	381	66	315
광주	174	120	54
대전	160	-	160
울산	242	93	149
경기	12,680	6,333	6,347
강원	1,384	65	1,319
충북	1,072	245	827
충남	699	85	614
전북	983	73	910
전남	1,773	-	1,773
경북	1,295	67	1,228
경남	3,162	479	2,683
제주	565	-	565

2-5 방역물자 비축 현황 (2008. 5.31일 기준)

구 분	살충제 (ℓ)	살균제 (ℓ)	우 물 소독약 (kg)	예 방 주사약 (천명)	비축장소 (개소)
계	81,796	31,847	33,189	79,046	434
서울	8,361	4,781	5,660	1,495	31
부산	6,498	1,609	1,397	2,716	21
대구	3,320	820	348	60	11
인천	628	292	220	-	13
광주	1,612	525	995	141	6
대전	799	294	152	1	10
울산	11,622	5,986	4,970	50,123	20
경기	2,211	778	1,952	4,172	58
강원	3,307	1,100	2,880	295	21
충북	9,861	2,876	1,403	15,895	18
충남	4,182	903	1,558	175	19
전북	8,586	4,254	1,697	322	15
전남	2,230	976	450	426	44
경북	9,514	4,485	7,692	2,511	98
경남	7,869	1,762	1,685	708	40
제주	1,196	406	130	6	9

2-6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계	11,489	4,881	3,631	1,525	523	929
	17,078,035	14,662,880	591,158	255,932	544,713	1,023,354
서울	810	476		205	15	114
	2,881,526	2,653,896		37,041	26,688	163,901
부산	307	193	70	13	6	25
	743,821	688,191	20,184	2,469	4,406	28,572
대구	94	60	25		5	4
	232,428	194,622	4,379		2,360	31,067
인천	396	216	70	24	31	55
	647,971	600,563	11,257	4,231	11,970	19,949
광주	119	106	2	2	2	7
	220,913	212,901	1,026	125	711	6,151
대전	131	64	13	39	1	14
	171,884	135,272	2,274	10,243	6,797	17,298
울산	253	162	43	14	17	17
	543,791	496,150	8,147	2,753	13,008	23,733
경기	2,063	833	690	323	72	145
	2,156,533	1,841,911	94,414	41,566	85,371	93,271
강원	958	414	246	166	47	85
	1,580,132	1,229,236	45,344	25,152	48,679	231,721
충북	388	218	94	33	24	19
	441,989	378,159	18,720	3,315	16,436	25,359
충남	1,829	445	867	353	50	114
	1,428,371	1,080,550	129,692	83,572	81,980	52,577
전북	488	242	128	53	38	27
	527,699	445,650	19,757	6,668	30,277	25,346
전남	776	403	235	7	64	67
	1,305,610	1,046,173	58,075	1,526	117,950	81,886
경북	1,589	546	603	233	73	134
	1,786,662	1,569,289	82,054	23,914	46,005	65,400
경남	1,182	487	504	51	74	66
	2,277,730	2,053,635	79,675	10,693	40,040	93,687
제주	106	16	41	9	4	36
	130,977	36,682	16,160	2,664	12,035	63,436

2-7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침 수	유 실	고 립	붕 괴	취약방재	해 일
계	619	370	92	16	90	43	8
서울	2	2	-	-	-	-	-
부산	12	6	-	-	1	3	2
대구	8	5	-	1	2	-	-
인천	9	6	1	-	1	1	-
광주	8	5	-	-	1	2	-
울산	12	3	1	-	-	8	-
경기	44	16	27	1	-	-	-
강원	56	26	-	2	24	3	1
충북	42	31	6	4	1	-	-
충남	54	47	7	-	-	-	-
전북	80	36	14	4	25	1	-
전남	96	58	20	-	10	7	1
경북	84	50	13	-	10	11	-
경남	86	55	3	4	13	7	4
제주	26	24	-	-	2	-	-

2-8 소하천 정비 현황

(단위 : km)

구 분	개소수 (개)	총연장	기정비	정비율 (%)	미정비 연 장
합계	22,664	35,815	13,647.7	37.0	22,167.3
서울	13	14.8	1.6	10.8	13.2
부산	37	46.6	21.0	45.1	25.6
대구	135	208.6	176.1	84.4	32.5
인천	118	178.3	98.8	55.4	79.5
광주	25	49.1	27.4	55.8	21.7
대전	78	119.2	77.6	65.1	41.6
울산	140	160.7	90.6	56.4	70.1
경기	2,224	3,245.8	1,297.2	40.0	1,948.6
강원	2,427	5,652.8	1,593.1	28.2	4,059.7
충북	2,188	3,569.8	1,589.6	44.5	1,980.2
충남	2,455	3,409.3	1,191.2	34.9	2,218.1
전북	2,475	3,298.3	757.1	23.0	2,541.2
전남	3,496	5,324.8	1,709	32.1	3,615.8
경북	3,821	6,851.0	3,594.8	52.5	3,256.2
경남	2,949	3,463.0	1,387	40.1	2,076
제주	83	222.9	35.6	16.0	187.3

3

자연재난 복구지원

3-1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항에서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6억원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32억원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 38억원

○ 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

-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비우심)에 대하여는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 또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3-2 특별재난지역

○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68조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 규모에 따라 지정

시·군·구 재정규모별	선 정 기 준
100억원 미만 시·군·구	피해액이 35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피해액이 65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피해액이 80억원 이상
850억원 이상 시·군·구	피해액이 95억원 이상

○ 선포절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 대통령에게 건의 → 선포 및 공고(대통령공고)

○ 특별지원 내용

- 지방비 부담총액이 국고지원 피해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

-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기준

구 분	국 고 의 추 가 지 원 액
1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 지원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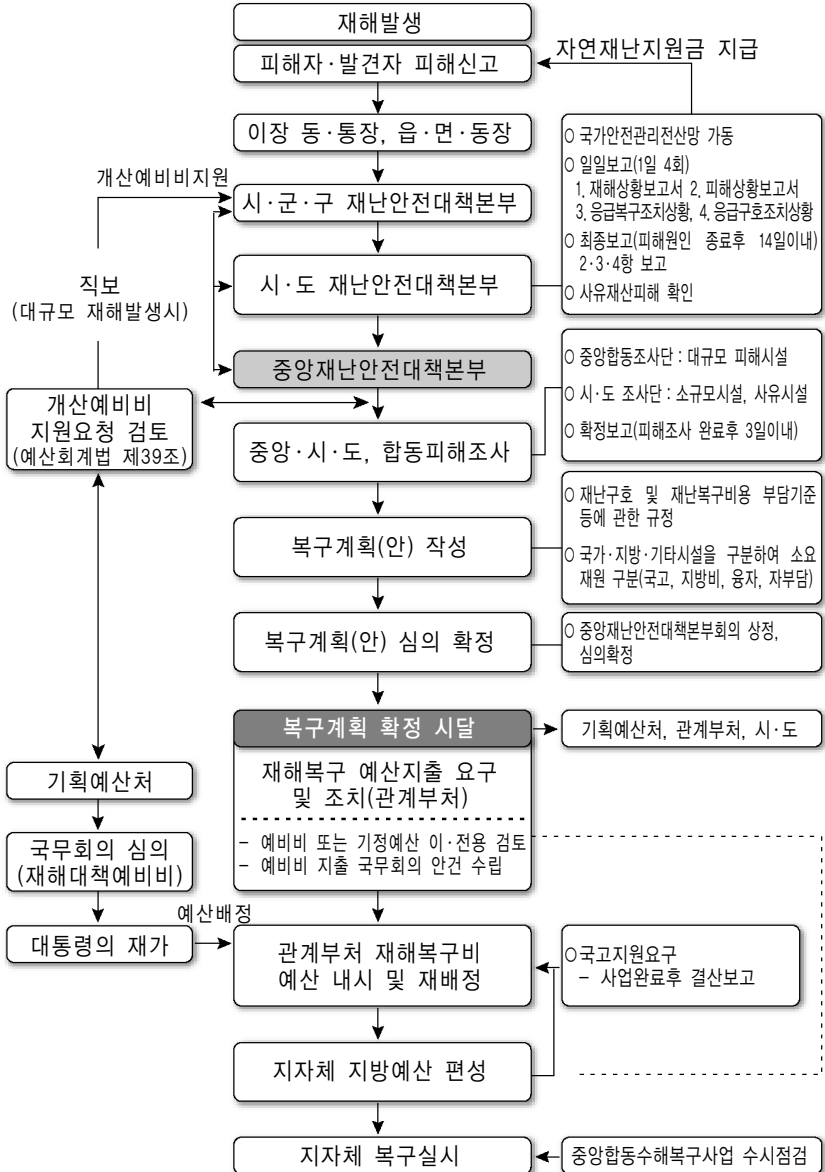
- 재정력지수와 재해예방능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하여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함.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가산점(α)을 부여할 수 있음

- 국고추가 지원율 =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times 0.9
+ (재해예방능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times 0.1 + α)

◎ 특별재난지역 선포사례

-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2002.8.30 ~ 9.1)으로 피해가 발생된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2.8.4 ~ 8.11 호우피해지역중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일원
-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2003.9.12 ~ 9.13)으로 피해가 발생된 14개 시·도,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4.3.4 ~ 3.5기간 중 폭설피해가 발생한 10개시·도, 82개 시·군·구, 647개 읍·면·동(전국일원)
- 2005.12.3 ~ 12.24 대설 및 풍랑·강풍피해가 발생한 8개시·도 57개 시·군·구(전국일원)
- 2006.7.9 ~ 29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가 발생한 7개 시·도, 39개 시·군
- 2006.10.22 ~ 24 호우 및 강풍·풍랑피해가 발생한 1개 시·도, 6개 시·군
- 2007.08.04 ~ 15 호우피해가 발생한 1개 군(양구)
- 2007.09.13 ~ 19 태풍 『나리』 피해 발생한 2개 시·도, 2개 자치도·시·군 4

3-3 훈련 개요



4

중·수해 피해 및 복구

4-1 대규모 자연재난 현황

재 해 명	발생년월일	우심피해 지역
1. 을축년 대홍수	'25. 7.18~ 9. 7	중부
2. 태풍 「사라」	'59. 9.15~ 9.17	영동, 영남, 호남
3. 안양, 시흥지구 수해	'72. 8.19~ 8.20	서울, 경기, 강원, 충북
4. 태풍 「쥬디」	'79. 8.25~ 8.26	제주
5. 호우	'80. 7.21~ 7.23	충북, 충남, 경기, 강원
6. '84 대홍수	'84. 8.31~ 9. 4	서울, 경기, 강원
7. 태풍 「셀마」	'87. 7.15~ 7.16	남해, 동해
8. 중부지방 호우	'87. 7.21~ 7.23	중부
9. 영·호남 호우	'89. 7.25~ 7.27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10. 태풍 「쥬디」	'89. 7.28~ 7.29	서울 외 전지역
11. 한강 대홍수	'90. 9. 9~ 9.12	서울, 경기, 강원, 충북
12. 중부 호우	'91. 7.20~ 7.26	경기, 강원, 충북
13. 태풍 「글래디스」	'91. 8.22~ 8.26	부산, 강원, 경북, 경남
14. 태풍 「재니스」 및 호우	'95. 8.19~ 8.30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15. 경기·강원 북부 호우	'96. 7.26~ 7.28	경기, 강원
16. '98 대홍수	'98. 7.31~ 8.18	전국(제주제외)
17. 태풍 「예니」	'98. 9.29~10.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8. 집중호우·태풍 「올가」	'99. 7.23~ 8. 4	전국
19. 집중호우·태풍 「프라피룬」	'00. 8.23~ 9. 1	전국(대구, 울산 제외)
20. '01 폭풍설	'01. 1. 7~ 1. 9	전국
21. 8.4~8.11호우	'02. 8. 4~ 8.11	경기, 강원, 충북, 경남·북 등
22. 태풍 「루사」	'02. 8.30~ 9. 1	전국
23. 태풍 「매미」	'03. 9.12~ 9.13	전국(서울, 인천제외)
24. 대설	'04. 3. 4~ 3. 5	충남, 충북, 대전, 경북 등
25. 대설	'05.12. 3~12.24	광주, 충남, 전북, 전남
26.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06. 7.11~ 7.20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단위 : 명, 억원)

재 해 명	기상상황(단위 : mm)	피해내용	
		인명	재산
1. 을축년 대홍수	-	517	0.89
2. 태풍 「사라」	최대일강우량 : 168.1(제주)	849	662
3. 안양, 시흥지구 수해	최대일강우량 : 313.6(수원)	550	265
4. 태풍 「쥬디」	최대일강우량 : 260.6(서귀포)	136	502
5. 호우	최대일강우량 : 217.0(제주)	160	1,255
6. '84 대홍수	최대일강우량 : 314(속초)	189	1,643
7. 태풍 「셀마」	최대일강우량 : 216.8(고흥)	345	3,913
8. 중부지방 호우	최대일강우량 : 517.6(부여)	167	3,295
9. 영·호남 호우	최대일강우량 : 335.6(광주)	128	2,943
10. 태풍 「쥬디」	최대일강우량 : 221(거제)	20	1,192
11. 한강 대홍수	최대일강우량 : 330.8(대관령)	163	5,203
12. 중부 호우	최대일강우량 : 308.5(춘천)	70	1,132
13. 태풍 「글래디스」	최대일강우량 : 439(부산)	103	2,357
14. 태풍 「재니스」 및 호우	최대일강우량 : 361.5(보령)	65	4,562
15. 경기·강원 북부 호우	최대일강우량 : 268(철원)	29	4,275
16. '98 대홍수	최대일강우량 : 481(강화)	324	12,478
17. 태풍 「에니」	최대일강우량 : 516.4(포항)	57	2,749
18. 집중호우·태풍 「올가」	최대일강우량 : 280.3(철원)	67	10,490
19. 집중호우·태풍 「프라피룬」	최대일강우량 : 310(군산)	28	2,521
20. '01폭풍설	최대적설량 : 98.2cm(대관령)	4	6,590
21. 8.4~8.11호우	최대일강우량 : 571(양평)	23	9,181
22. 태풍 「루사」	최대일강우량 : 897(강릉)	246	51,479
23. 태풍 「매미」	최대일강우량 : 453(남해)	131	42,225
24. 대설	최대적설량 : 49cm(대전, 문경)	-	6,734
25. 대설	최대적설량 : 59cm(정읍)	14	5,206
26.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최대일강우량 : 921.0mm(횡성)	62	18,344

※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 기준임

4-2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98~'0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적용	이재민(인)	사망(인)	침수면적(ha)	건 물
10년 합계	2007환산 당해년도	243,754	1,168	477,207	417,969 367,184
10년 평균	2007환산 당해년도	24,375	117	47,721	41,797 36,718
'98	2007환산 당해년도	30,308	384	91,629	44,521 38,618
'99	2007환산 당해년도	26,656	89	76,128	47,761 40,559
'00	2007환산 당해년도	3,665	49	53,092	13,131 11,378
'01	2007환산 당해년도	4,165	82	20,012	12,541 10,813
'02	2007환산 당해년도	71,204	270	61,579	134,700 115,791
'03	2007환산 당해년도	63,133	148	51,411	109,697 96,389
'04	2007환산 당해년도	30,446	14	56,903	8,593 8,012
'05	2007환산 당해년도	10,619	52	26,835	15,381 14,648
'06	2007환산 당해년도	2,883	63	34,759	25,734 25,065
'07	2007환산 당해년도	675	17	4,859	5,910 5,910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적용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 타	합 계
10년 합계	2007환산	63,172	1,017,981	15,751,902	5,011,195	22,262,218
	당해년도	55,776	900,791	13,917,209	4,461,747	19,702,707
10년 평균	2007환산	6,317	101,798	1,575,190	501,120	2,226,222
	당해년도	5,578	90,079	1,391,721	446,175	1,970,271
'98	2007환산	1,518	121,385	1,414,965	242,350	1,824,739
	당해년도	1,316	105,291	1,227,366	210,219	1,582,811
'99	2007환산	2,612	28,491	1,113,326	244,047	1,436,237
	당해년도	2,218	24,195	945,459	207,250	1,219,681
'00	2007환산	9,345	7,427	612,142	102,806	744,851
	당해년도	8,098	6,436	530,452	89,087	645,451
'01	2007환산	1,158	12,017	443,737	987,449	1,456,902
	당해년도	999	10,361	382,598	851,397	1,256,168
'02	2007환산	5,562	508,217	5,724,545	740,936	7,113,959
	당해년도	4,781	436,873	4,920,926	636,922	6,115,293
'03	2007환산	36,860	133,084	3,526,384	1,210,849	5,016,874
	당해년도	32,388	116,938	3,098,573	1,063,952	4,408,241
'04	2007환산	507	22,134	554,294	734,103	1,319,631
	당해년도	473	20,638	516,829	684,484	1,230,436
'05	2007환산	1,350	29,433	468,261	587,953	1,102,379
	당해년도	1,286	28,030	445,944	559,931	1,049,839
'06	2007환산	1,648	144,831	1,738,133	84,497	1,994,843
	당해년도	1,605	141,066	1,692,948	82,301	1,942,984
'07	2007환산	2,612	10,963	156,114	76,205	251,804
	당해년도	2,612	10,963	156,114	76,205	251,804

4-3 시설별·시·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0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피 해	총 피해액	백만원	251,804	-	1,790	79		
	이 재 민	세 대	295	-	-	3		
		명	675	-	-	11		
	사 망·실 종	명	17	-	-	-		
	침 수 면 적	ha	4,859	-	-	-		
	주 택	전 파·반 파	동	311	-	-	3	
		피 해 액	백만원	5,910	-	-	75	
	선 박	전 파·반 파	척	241	-	1	-	
		피 해 액	백만원	2,612	-	5	-	
	농 경 지	유 실·매 물	ha	740	-	-	-	
		피 해 액	백만원	10,963	-	-	-	
	공 공 시 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409	-	-	-	
			피해액	백만원	21,472	-	-	
		하천	물 량 개 소	356	-	-	-	
			피해액	백만원	26,435	-	-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266	-	-	-	
			피해액	백만원	9,679	-	-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1,234	-	-	-	
			피해액	백만원	18,109	-	-	
기타 피해액		백만원	80,420	-	11	-		
소 계	백만원	156,114	-	11	-			
기 타 피 해	백만원	76,205	-	1,775	4			
복 구 비	총 복구액	백만원	489,796	15	834	33		
	지 원 복 구	소 계	백만원	417,056	9	824	33	
		중 앙 지 원	소 계	백만원	302,346	6	576	23
			국 고	백만원	302,346	6	576	23
			의 연 금	백만원	-	-	-	-
		지 방 비	백만원	114,710	3	247	10	
		응 자	백만원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72,740	6	11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피 해	총 피 해 액	백만원	1,530	594	360	364	1,856		
	이 재 민	세 대	3	4	1	-	5		
		명	6	9	3	-	12		
	사 망·실 종	명	-	-	-	-	-		
	침 수 면 적	ha	-	-	-	-	325		
	주 택	전 파·반 파	동	3	4	2	-	5	
		피 해 액	백만원	45	75	30	-	90	
	선 박	전 파·반 파	척	11	-	-	-	3	
		피 해 액	백만원	224	-	-	-	6	
	농 경 지	유 실·매 물	ha	-	-	-	-	2	
		피 해 액	백만원	-	-	2	-	16	
	공 공 시 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	-	1	-	4	
			피해액	백만원	-	-	4	-	67
		하천	물 량 개 소	-	1	1	-	14	
			피해액	백만원	-	29	52	-	190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	-	-	-	3	
			피해액	백만원	-	-	-	70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	-	-	-	36		
		피해액	백만원	-	-	-	260		
기타 피해액		백만원	982	40	34	-	580		
소 계		백만원	982	69	90	-	1,166		
기 타 피 해	백만원	279	450	238	364	578			
복 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2,160	92	191	1,409	3,675		
	지 원 복 구	소 계	백만원	316	82	85	-	320	
		중앙 지원	소 계	백만원	221	57	60	-	224
			국 고	백만원	221	57	60	-	224
			의연금	백만원	-	-	-	-	-
	지 방 비	백만원	95	25	26	-	96		
	응 자	백만원	-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1,844	10	106	1,409	3,355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강 원	총 북	총 남	전 북	전 남	
피 해	총 피해액		백만원	16,920	7,773	27,400	6,205	73,442
	이 재 민	세 대		8	9	12	7	111
		명		23	27	30	15	243
	사 망·실 증		명	-	-	-	-	3
	침 수 면 적		ha	-	-	-	-	919
	주 택	전 파·반 파	동	8	9	13	8	114
		피 해 액	백만원	135	150	240	150	2,190
	선 박	전 파·반 파	척	-	-	21	97	51
		피 해 액	백만원	-	-	302	853	335
	농 경 지	유 실·매 물	ha	45	13	9	2	271
		피 해 액	백만원	664	142	92	24	2,819
	공 공 시 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71	6	16	1	133
			피해액	백만원	4,251	288	320	177
		하천	물 량 개 소	16	10	24	-	125
			피해액	백만원	622	948	685	-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21	12	38	1	102
			피해액	백만원	511	454	311	28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88	37	77	-	370
			피해액	백만원	1,893	1,270	932	-
기타 피해액		백만원	8,604	2,605	2,088	4	30,145	
소 계		백만원	15,880	5,566	4,336	209	53,469	
기 타 피 해		백만원	240	1,915	22,431	4,969	14,629	
복 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55,242	20,511	14,539	2,992	165,772
	소 계		백만원	48,962	16,538	10,492	2,412	143,913
	중 앙 지 원	소 계	백만원	34,165	7,818	7,351	1,688	107,481
		국 고	백만원	34,165	7,818	7,351	1,688	107,481
		의 연 금	백만원	-	-	-	-	-
	지 방 비		백만원	14,797	8,720	3,141	723	36,432
	응 자		백만원	-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6,281	3,973	4,047	580	21,858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경 북	경 남	제 주		
피 해	총 피해액	백만원	10,768	22,823	79,899		
	이 재 민	세 대	44	11	77		
		명	68	23	205		
	사 망·실 종	명	1	-	13		
	침 수 면 적	ha	60	1	3,555		
	주 택	전 파·반 파	동	44	12	86	
		피 해 액	백만원	780	210	1,740	
	선 박	전 파·반 파	척	1	25	31	
		피 해 액	백만원	38	163	686	
	농 경 지	유 실·매 물	ha	7	10	381	
		피 해 액	백만원	59	99	7,046	
	공 공 시 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42	35	100	
			피해액	백만원	741	4,922	5,892
		하천	물 량 개 소	29	78	58	
			피해액	백만원	927	3,177	12,443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28	46	15	
			피해액	백만원	555	2,098	2,131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131	69	426	
			피해액	백만원	1,704	2,597	1,822
기타 피해액		백만원	2,119	8,895	24,314		
소 계		백만원	6,045	21,689	46,602		
기 타 피 해	백만원	3,846	661	23,825			
복 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12,696	46,179	163,458		
	지 원 복 구	소 계	백만원	392	36,070	156,611	
		중 앙 지 원	소 계	백만원	274	16,744	125,658
			국 고	백만원	274	16,744	125,658
			의 연 금	백만원	-	-	-
	지 방 비	백만원	118	19,326	30,952		
	융 자	백만원	-	-	-		
	자 부 담	백만원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12,305	10,109	6,847			

4-4 시설별·기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0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합 계	1.5	3.4	3.28	3.30			
			~9	~8	~29	~4.1			
			풍랑	풍랑	강풍	강풍			
피해	총 피해액	백만원	251,804	10,087	23,041	6,676	2,511		
	이 재 민	세 대	295	-	14	34	1		
		명	675	-	29	59	3		
	사 망·실 종	명	17	-	-	1	-		
	침 수 면 적	ha	4,859	-	-	-	-		
	주 택	전 파·반 파	동	311	-	15	35	1	
		피 해 액	백만원	5,910	-	255	540	15	
	선 박	전 파·반 파	척	241	4	64	-	115	
		피 해 액	백만원	2,612	56	721	-	927	
	농 경 지	유 실·매 물	ha	740	-	-	-	-	
		피 해 액	백만원	10,963	-	-	-	-	
	공 공 시설	도 로 교 량	물 량 개 소	409	-	-	-	1	
			피해액	백만원	21,472	-	-	-	177
		하 천	물 량 개 소	356	-	-	-	-	
			피해액	백만원	26,435	-	-	-	-
		수 리 시 설	물 량 개 소	266	-	-	1	-	
			피해액	백만원	9,679	-	-	20	-
		소 규 모 시 설	물 량 개 소	1,234	-	7	-	-	
			피해액	백만원	18,109	-	394	-	-
		기 타 피 해 액	백만원	80,420	-	2,585	105	-	
소 계		백만원	156,114	-	2,979	125	177		
기 타 피 해	백만원	76,205	10,031	19,087	6,011	1,391			
복 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489,796	3,975	14,949	2,667	1,235		
	지 원 복 구	소 계	백만원	417,056	3,953	13,181	-	-	
		중 앙 지 원	소 계	백만원	302,346	2,767	8,758	-	-
			국 고	백만원	302,346	2,767	8,758	-	-
			의 연 금	백만원	-	-	-	-	-
	지 방 비	백만원	114,710	1,186	4,423	-	-		
	융 자	백만원	-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72,740	22	1,768	2,667	1,235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5.11 ~14	7.1 ~2	7.13 ~16	7.29	8.4 ~15			
		강풍	호우	태풍 「마니」	호우	호우			
피 해	총 피해액	백만원	204	3,996	1,694	400	32,238		
	복 구 비	세 대	-	1	-	6	18		
		명	-	1	-	13	46		
	사 망·실 종	명	-	-	-	-	-		
	침 수 면 적	ha	-	-	-	-	326		
	주 택	전파·반파	동	-	1	-	6	19	
		피 해 액	백만원	-	15	-	120	390	
	선 박	전파·반파	척	-	-	-	-	13	
		피 해 액	백만원	-	-	-	-	73	
	농 경 지	유실·매몰	ha	-	-	-	-	70	
		피 해 액	백만원	-	-	-	-	911	
	공 공 시 설	도로 교량	물 량 개 소	-	3	-	-	105	
			피해액	백만원	-	1,251	-	-	5,404
		하천	물 량 개 소	-	-	-	-	-	90
			피해액	백만원	-	-	-	-	3,062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	-	-	-	72	
		소규모 시설	피해액	백만원	-	-	-	1,747	
		기타 시설	물 량 개 소	-	-	-	-	237	
		기타 시설	피해액	백만원	-	-	-	4,624	
기타 피해액		백만원	-	2,730	1,330	79	14,905		
소 계		백만원	-	3,981	1,330	79	29,742		
기 타 피 해	백만원	204	-	364	201	1,122			
복 구 비	총 복 구 액	백만원	76	3,996	2,739	197	89,252		
	지 원 복 구	소 계	백만원	-	-	-	-	70,135	
		중앙 지원	소 계	백만원	-	-	-	-	44,334
			국 고	백만원	-	-	-	-	44,334
			의연금	백만원	-	-	-	-	-
	지 방 비	백만원	-	-	-	-	25,802		
	융 자	백만원	-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76	3,996	2,739	197	19,117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 위	8.27	8.31	9.4	9.13	12.29			
		~30	~9.3	~9.9	~9.18	~1.1			
		호우	호우	호우	태풍 「나리」	대설			
피해	총 피해액	백만원	646	1,358	2,344	159,167	7,442		
	복구비	세 대	2	12	5	201	1		
		명	5	29	11	478	1		
	사망·실종	명	-	-	-	16	-		
	침수면적	ha	-	-	1,850	2,683	-		
	주택	전파·반파	동	2	14	5	212	1	
		피해액	백만원	30	300	120	4,095	30	
	선박	전파·반파	척	-	-	-	45	-	
		피해액	백만원	-	-	-	835	-	
	농경지	유실·매몰	ha	3	-	-	667	-	
		피해액	백만원	31	2	1	10,018	-	
	공공시설	도로	물 량 개 소	2	27	10	261	-	
			피해액	백만원	63	398	361	13,818	-
		하천	물 량 개 소	3	2	5	256	-	
			피해액	백만원	18	89	312	22,954	-
		수리 시설	물 량 개 소	20	1	3	169	-	
			피해액	백만원	106	12	442	7,353	-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19	22	6	943	-	
			피해액	백만원	108	351	171	12,461	-
기타 피해액		백만원	291	207	934	57,253	-		
소 계		백만원	586	1,056	2,220	113,839	-		
기 타 피 해	백만원	-	-	2	30,380	7,412			
복구비	총 복구액	백만원	810	1,159	2,430	363,568	2,743		
	중앙지원	소 계	백만원	185	-	-	326,879	2,723	
		소 계	백만원	130	-	-	244,452	1,906	
			국 고	백만원	130	-	-	244,452	1,906
			의연금	백만원	-	-	-	-	-
	지방비	백만원	56	-	-	82,427	817		
	융 자	백만원	-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624	1,159	2,430	36,689	20			

4-5 기간별·시·도별 피해내역 ('07년)

(단위 : 백만원)

순번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합 계	251,804	-	1,790	79	1,530	594	360
1	1.5 ~ 1.9 강풍·풍랑	10,087	-	-	-	23	-	-
2	3.4 ~ 3.8 강풍·풍랑·호우	23,041	-	1,790	-	1,273	-	-
3	3.28 ~ 3.29 강풍, 풍랑	6,676	-	-	-	-	-	71
4	3.30 ~ 4.1 강풍·풍랑·호우	2,511	-	-	-	-	-	-
5	5.11 ~ 5.14 강풍·풍랑	204	-	-	-	-	-	-
6	7.1 ~ 7.2 강풍·호우	3,996	-	-	-	-	15	-
7	7.13 ~ 7.16 태풍 『마니』	1,694	-	-	-	-	-	-
8	7.29 호우	400	-	-	-	-	-	-
9	8.4 ~ 15 강풍·풍랑·호우	32,238	-	-	-	234	-	182
10	8.27 ~ 8.30 호우	646	-	-	-	-	-	7
11	8.31 ~ 9.3 호우	1,358	-	-	-	-	15	84
12	9.4 ~ 9.9 호우	2,344	-	-	-	-	15	15
13	9.13 ~ 9.18 태풍 『나리』	159,167	-	-	79	-	69	-
14	12.29 ~ 1.1 대설	7,442	-	-	-	-	480	-

(단위 : 백만원)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4	1,856	16,920	7,773	27,400	6,205	73,442	10,768	22,823	79,899
-	290	-	-	9,706	49	19	-	-	-
-	19	177	40	12,712	1,825	4,188	246	761	10
-	-	-	1,829	701	16	7	4,053	-	-
-	-	-	-	269	915	1,327	-	-	-
-	204	-	-	-	-	-	-	-	-
-	-	-	-	-	-	-	-	3,981	-
364	-	-	-	-	-	-	-	-	1,330
-	145	15	129	-	-	-	111	-	-
-	1,139	16,640	5,756	3,374	-	1,849	45	3,019	-
-	59	17	2	478	43	-	40	-	-
-	-	-	-	16	75	82	1,086	-	-
-	-	-	-	66	-	211	474	-	1,563
-	-	71	17	79	72	62,007	4,714	15,063	76,995
-	-	-	-	-	3,210	3,752	-	-	-

5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5-1 세계의 주요지진

(사망자 : 만명 이상)

발생년월일	지역	사망자 수(명)	규모(M)
1908. 12. 28	이태리, Messina	120,000	7.5
1915. 1. 13	이태리, Avezzano	30,000	7.0
1920. 12. 16	중국, Kansu	180,000	8.5
1923. 9. 1	일본, Kwanto	143,000	8.2
1932. 12. 26	중국, Kansu	70,000	7.6
1935. 5. 31	파키스탄, Quetta	60,000	7.5
1939. 1. 24	칠레, Chillan	30,000	7.8
1939. 12. 27	터키, Erzincan	23,000	8.0
1960. 2. 29	모로코, Agadir	14,000	5.9
1962. 9. 1	이란북서부	14,000	7.3
1968. 8. 31	이란	11,600	7.4
1970. 5. 31	페루	66,000	7.8
1976. 2. 4	과테말라	22,000	7.9
1976. 7. 27	중국, Tangshan	242,000	7.6
1978. 9. 16	이란, Tabas	15,000	7.7
1988. 12. 7	아르메니아(구소련)	25,000	6.8
1990. 6. 20	이란, Rasht	45,000	7.7
1999. 8. 17	터키, Izmit	15,657	7.4
2001. 1. 26	인도, Gujarat	20,000	7.7
2003. 12. 26	이란, 남동부	26,200	6.6
2004. 12. 26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83,100	9.0
2005. 10. 8	파키스탄, 무차파라바드	86,000	7.6

※ 역사적 최대피해 : 1556년 1월 23일 중국 Shensi 지진으로 830,000명 사망

◇ 최근의 세계주요지진

발생년월일	지 역	사망자 수 (명)	규모 (M)
1995. 1.17	일본, 고베	6,432	7.2
1995. 5.27	러시아, 사할린	1,989	7.5
1996. 2. 3	중국, 운남성	3,400	7.0
1997. 2.28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국경	965	6.1
1997. 5.10	이란 - 아프가니스탄 국경	1,567	7.3
1998. 2. 4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 국경	2,323	6.1
1998. 5.30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 국경	4,000	6.9
1998. 7.17	파푸아뉴기아	2,183	7.1
1999. 1.26	콜롬비아, 서부	1,170	5.8
1999. 8.17	터키, 이즈미트	15,657	7.4
1999. 9.21	대만, 타이중	2,400	7.6
1999.11.12	터키, 두즈체	834	6.3
2001. 1.14	엘살바드로, 산살바드로 남동해역	844	7.6
2001. 1.26	인도, 구자라트	20,085	7.7
2001. 2.23	엘살바드로, 산살바드로 남동해역	315	6.6
2002. 3. 3	아프카니스탄	150	7.4
2002. 3.25	아프카니스탄	1,000	6.1
2003. 2.24	중국, 북서부(자스현 자스시)	263	6.4
2003. 5.21	알제리, 북부지역	2,266	6.8
2003.12.26	이란, 남동부 지진	26,200	6.5
2004. 2.24	모로코, 북부해안	628	6.4
2004.12.26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83,100	9.0
2005.10. 8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	86,000	7.6

5-2 우리나라 주요지진

발생년월일	규모(M)	진앙지
'78. 9. 16	5.2	충북 속리산부근지역
'78. 10. 7	5.0	충남 홍성군 홍성읍지역
<p>— 홍성피해 : 인명 → 부상 2명, 재산 → 3억원(당해년도 산정금액) ※ 건물파손 118동, 성곽 25m 파손, 학교 9개교 149개 교실 파손</p>		
'80. 1. 8	5.3	평북 서부 의주, 삭주-귀성지역
'82. 2. 14	4.5	황해도 사리원 남서부지역
'03. 3. 30	5.0	인천광역시 백령도 서남서쪽
'04. 5. 29	5.2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 최근의 지진발생현황 - 규모(M) 4.0 이상

(단위 : 회)

발생년월일	규모(M)	진 양 지
'82. 2. 14	4.5	황해도 사리원 남서부지역
'82. 3. 1	4.7	경북 울진 북동쪽 약 45km 해역
'82. 8. 29	4.0	서해중부 덕적군도 서쪽 해역
'83. 9. 17	4.2	황해도 밀악산 북서 지역
'85. 1. 14	4.2	부산 남동쪽 약 90km 해역
'85. 6. 25	4.0	서해중부 영흥도부근 해역
'87. 3. 6	4.0	평남 대동강하구 남포부근 지역
'92. 1. 21	4.0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50km 해역
'92. 11. 4	4.4	전남 서쪽 약 320km 해역
'92. 12. 13	4.0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70km 해역
'93. 3. 28	4.5	제주도 서쪽 약 230km 해역
'94. 4. 22	4.6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94. 4. 23	4.5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94. 4. 23	4.1	울산광역시 동쪽 약 150km 해역
'94. 7. 26	4.9	전남 홍도 서북서쪽 약 100km 해역
'95. 7. 24	4.2	서해 백령도 북서쪽 약 30km 해역
'96. 1. 24	4.2	강원도 양양 동쪽 약 80km 해역
'96. 12. 13	4.5	강원도 영월 동쪽 약 20km 지역
'97. 6. 26	4.2	경북 경주 남동쪽 약 9km 지역
'98. 2. 10	4.1	서해 백령도 서남서쪽 약 90km해역
'99. 1. 11	4.2	강원도 속초 북동쪽 약 15km 해역
'01. 11. 24	4.1	경북 울진 동남동쪽 약 50km 해역
'02. 8. 10	4.0	전남 흑산도 서북서쪽 약 195km해역
'03. 3. 23	4.0	전남 홍도 북서쪽 약 50km 해역
'03. 3. 30	5.0	인천광역시 백령도 남서쪽 약 80km 해역
'03. 6. 9	4.0	전북 군산시 서쪽 약 280km 해역
'04. 5. 29	5.2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05. 6. 29	4.0	경남 거제 동남동쪽 약 54km 해역

5-3 규모별 지진발생 빈도 ('78~'06년)

(단위 : 회)

발생년월일	규모(M)	진앙지
'82. 2. 14	4.5	황해도 사리원 남서부지역
'82. 3. 1	4.7	경북 울진 북동쪽 약 45km 해역
'82. 8. 29	4.0	서해중부 덕적군도 서쪽 해역
'83. 9. 17	4.2	황해도 멸악산 북서 지역
'85. 1. 14	4.2	부산 남동쪽 약 90km 해역
'85. 6. 25	4.0	서해중부 영흥도부근 해역
'87. 3. 6	4.0	평남 대동강하구 남포부근 지역
'92. 1. 21	4.0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50km 해역
'92. 11. 4	4.4	전남 서쪽 약 320km 해역
'92. 12. 13	4.0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70km 해역
'93. 3. 28	4.5	제주도 서쪽 약 230km 해역
'94. 4. 22	4.6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94. 4. 23	4.5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94. 4. 23	4.1	울산광역시 동쪽 약 150km 해역
'94. 7. 26	4.9	전남 홍도 서북서쪽 약 100km 해역
'95. 7. 24	4.2	서해 백령도 북서쪽 약 30km 해역
'96. 1. 24	4.2	강원도 양양 동쪽 약 80km 해역
'96. 12. 13	4.5	강원도 영월 동쪽 약 20km 지역
'97. 6. 26	4.2	경북 경주 남동쪽 약 9km 지역
'98. 2. 10	4.1	서해 백령도 서남서쪽 약 90km해역
'99. 1. 11	4.2	강원도 속초 북동쪽 약 15km 해역
'01. 11. 24	4.1	경북 울진 동남동쪽 약 50km 해역
'02. 8. 10	4.0	전남 흑산도 서북서쪽 약 195km해역
'03. 3. 23	4.0	전남 홍도 북서쪽 약 50km 해역
'03. 3. 30	5.0	인천광역시 백령도 남서쪽 약 80km 해역
'03. 6. 9	4.0	전북 군산시 서쪽 약 280km 해역
'04. 5. 29	5.2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05. 6. 29	4.0	경남 거제 동남동쪽 약 54km 해역

규모 년도별	계	$2 \leq M < 3$	$3 \leq M < 4$	$4 \leq M < 5$	$5 \leq M < 6$
총 계	728	464	229	30	5
1978	6	1	1	2	2
1979	22	5	16	1	-
1980	16	10	5	-	1
1981	15	5	9	1	-
1982	13	2	8	3	-
1983	20	10	9	1	-
1984	19	12	7	-	-
1985	26	15	9	2	-
1986	15	3	12	-	-
1987	11	7	3	1	-
1988	6	2	4	-	-
1989	16	3	13	-	-
1990	15	12	3	-	-
1991	19	12	7	-	-
1992	15	8	4	3	-
1993	23	16	6	1	-
1994	25	14	7	4	-
1995	29	18	10	1	-
1996	39	25	12	2	-
1997	21	13	7	1	-
1998	32	25	6	1	-
1999	37	21	15	1	-
2000	29	21	8	-	-
2001	43	36	6	1	-
2002	49	38	10	1	-
2003	38	29	6	2	1
2004	42	36	5	-	1
2005	37	22	14	1	-
2006	50	43	7	-	-

5-4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 ('94~'06년)

(단위 : 회)

규모별 연도별	계	$2 \leq M < 3$	$3 \leq M < 4$	$4 \leq M < 5$	$5 \leq M < 6$
계	471	298	106	15	2
1994	25	14	7	4	-
1995	29	18	10	1	-
1996	39	25	12	2	-
1997	21	13	7	1	-
1998	32	25	6	1	-
1999	37	21	15	1	-
2000	29	21	8	-	-
2001	43	36	6	1	-
2002	49	38	10	1	-
2003	38	29	6	2	1
2004	42	36	5	-	1
2005	37	22	14	1	-
2006	50	43	7	-	-

5-5 시·도별 지진발생 현황 (북한지역 포함)

(단위 : 회)

시·도별 년도별	계	남	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계	471	409	62	-	1	5	1	1	7	3	32
1994	25	20	5	-	-	-	-	1	-	-	1
1995	29	19	10	-	-	-	-	-	-	-	-
1996	39	31	8	-	1	-	-	-	-	-	6
1997	21	19	2	-	-	1	-	-	-	1	3
1998	32	28	4	-	-	-	-	-	1	-	2
1999	37	35	2	-	-	1	-	-	-	-	8
2000	29	22	7	-	-	-	-	-	1	-	1
2001	43	42	1	-	-	-	-	-	-	1	2
2002	49	43	6	-	-	-	-	-	-	1	2
2003	38	38	-	-	-	1	-	-	1	-	-
2004	42	36	6	-	-	2	1	-	1	-	2
2005	37	30	7	-	-	-	-	-	-	-	1
2006	50	46	4	-	-	-	-	-	3	-	4

시·도 별 년도 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역	북한	
									지역	해역
계	16	27	15	16	59	20	2	202	49	13
1994	-	1	-	-	4	1	-	13	5	-
1995	-	1	-	1	6	-	-	11	6	4
1996	2	2	2	1	5	2	-	10	8	-
1997	1	-	1	-	2	2	-	8	2	-
1998	1	-	2	-	7	1	-	14	3	1
1999	2	3	1	-	4	-	1	15	2	-
2000	-	3	1	2	4	2	-	8	6	1
2001	2	4	5	3	8	2	-	15	1	-
2002	2	5	1	5	4	5	-	18	5	1
2003	1	4	-	1	8	-	-	22	-	-
2004	-	1	1	-	2	1	1	21	4	2
2005	2	1	-	3	4	-	-	19	3	4
2006	3	2	1	-	1	4	-	28	4	-

5-6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규모	진도 (MM)	인체,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2.9 미만	I	특별히 좋은 상태에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느낄 수 없다.
3.0 ~ 3.9	II	소수의 사람들,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느낀다. 섬세하게 매달린 물체가 흔들린다.
	III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끼게 되는데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지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정지하고 있는 차는 약간 흔들린다.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 지속시간이 산출된다.
4.0 ~ 4.9	IV	낮에는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나 옥외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다. 밤에는 일부 사람들이 잠을 깬다. 그릇, 창문, 문 등이 소란하며 벽이 갈라지는 소리를 낸다. 대형트럭이 벽을 받는 느낌을 준다.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뚜렷하게 움직인다.
	V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깬다.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고 어떤 곳에서는 석고(plaster)에 금이 간다.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 나무, 전신주 등 높은 물체의 교란이 심하다. 추시계가 멈춘다.
5.0 ~ 5.9	VI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간다. 무거운 가구가 움직인다. 떨어진 석고와 피해를 입은 굴뚝이 일부 있다.
	VII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 나온다. 설계 및 건축이 잘된 건물에서는 피해가 무시될 수 있고, 보통 건축물에서는 약간의 피해가 있으며, 열등한 건축물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굴뚝이 무너지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

규모	진도 (MM)	인체,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6.0 ~ 6.9	VIII	<p>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고, 일반 건축물은 부분적인 붕괴(崩壞)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며, 열등한 건축물에서는 아주 심하게 피해를 준다. 창틀로부터 창문이 떨어져 나간다. 굴뚝, 공장 재고품, 기둥, 기념비, 벽들이 무너진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진다. 모래와 진흙이 소량 쏟아져 나온다. 우물물의 변화가 있고, 운전자가 방해를 받는다.</p>
	IX	<p>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도 상당한 피해를 준다.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진다.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주며, 부분적으로 붕괴한다. 일반건물은 기초에서 벗어난다. 땅에는 금이 명백하게 간다. 지하 파이프도 부러진다.</p>
7.0 이상	X	<p>잘 지어진 목조 구조물이 파괴된다. 대개의 석조 건물과 그 구조물이 기초와 함께 무너진다. 땅에 심한 금이 간다. 철도가 휘어진다. 산사태가 강둑이나 가파른 경사면에서 생기며 모래와 진흙이 이동된다. 물이 튀어나오며, 독을 넘어 쏟아진다.</p>
	XI	<p>남아 있는 석조 구조물은 거의 없다. 다리가 부서지고 땅에 넓은 균열이 간다. 지하 파이프가 완전히 파괴된다. 연약한 땅이 푹 꺼지고 지층이 어긋난다. 기차선로가 심하게 휘어진다.</p>
	XII	<p>전면적 피해 발생. 지표면에 파동이 보인다. 시야와 수평면이 뒤틀린다. 물체가 하늘로 던져진다.</p>



부 록

1. 소방방재청 공무원 정원표 333
2. 소방방재청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339
3. 소방방재청 위원회 현황 347
4. 소방방재청 비영리법인 현황 348

1 소방방재청 공무원 정원표

○ 본청 정원표

[07. 12. 31 현재]

구 분	계
총 계	349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또는 소방총감)	1
별정직 계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소방정감(차장)	1
화생방담당(5급상당)	1
비상계획담당(5급상당)	1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
자료요원(6급상당)	1
화생방요원(6급상당)	1
위성중계요원(6급상당)	1
비서(7급상당)	1
일반직 계	225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소방감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부이사관·소방준감·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기술서기관	3

구 분	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서기관·소방정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2
기술서기관 또는 통신사무관	2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사무관	20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1
전산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통신사무관	6
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시설사무관	17
시설사무관·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2
행정주사	2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4
행정주사 또는 농업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소방경	1
전산주사	8
통신주사	11
통신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해양수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1
공업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시설주사	23
시설주사 또는 소방경	1

구 분	계
행정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전산주사보	4
통신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시설주사보	14
기록연구사	1
시설연구사	1
소방직 계	80
소방감	1
소방준감	4
소방준감·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소방준감 또는 기술서기관	1
소방정	9
소방정·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소방정 또는 시설사무관	1
소방령	11
소방경	22
소방위	20
소방장	6
소방교	2
기능직 계	35
기능7급 통신장	4
기능8급 통신원	2
기능8급 운전원	1
기능9급 통신원	1
기능9급 사무원	5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18
기능10급 운전원	3

○ 중앙소방학교 정원표

구 분	계
총 계	64
일반직 계	9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주사	1
공업주사 또는 통신주사	1
간호주사	1
공업연구관	3
공업연구사	2
소방직 계	53
소방감	1
소방정	3
소방령	7
소방경	10
소방위	11
소방장	5
소방교	8
소방사	8
기능직 계	2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10급 사무원	1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정원표

구 분	계
총 계	59
별정직 계	9
교수요원(4급상당)	1
교수요원(5급상당)	4
교수요원(6급상당)	2
교수요원(7급상당)	2
일반직 계	4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시설사무관·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주사	3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2

구 분	계
시설연구관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1
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4
시설연구사	5
시설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3
시설연구사 또는 기상연구사	1
기능직 계	7
기능8급 운전원	2
기능8급 사무원	1
기능9급 사무원	3
기능10급 사무원	1

○ 중앙119구조대 정원표

구 분	계
총 계	79
소방직 계	79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7
소방위	17
소방장	23
소방교	25

2 소방방재청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 총 괄

[07. 12. 31 현재]

부 서 명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계		171	18	26	24	74	29
안전서비스혁신단		-	-	-	-	-	-
재난전략상황실		2	-	-	-	2	-
법무감사팀		5	-	-	-	4	1
행정지원팀		8	-	-	-	6	2
정책 홍보 본부	혁신기획관실	10	-	1	1	7	1
	정책홍보팀	3	-	-	-	3	-
	재정기획팀	1	-	-	-	1	-
	정보화기획관실	4	-	-	-	3	1
	통합망사업단	1	-	-	-	-	1
예방 안전 본부	예방전략팀	3	1	1	1	-	-
	과학방재팀	2	-	-	-	2	-
	민방위팀	7	1	1	1	3	1
	안전문화팀	-	-	-	-	-	-
	인적재난팀	7	1	1	1	3	1
	위험물안전팀	5	1	1	1	2	-
소방 정책 본부	소방기획팀	46	4	10	6	13	13
	소방제도팀	9	2	3	2	2	-
	대응전략팀	7	-	-	-	5	2
	화재조사팀	2	-	-	-	2	-
	U119팀	4	-	-	2	1	1
	과학화기반팀	7	1	1	3	2	-
방재 관리 본부	방재대책팀	5	1	1	1	1	1
	복구지원팀	13	1	2	2	7	1
	재해경감팀	4	2	1	1	-	-
	평가관리팀	9	2	2	1	1	3
	재해보험팀	3	1	1	1	-	-
소속 기관	중앙소방학교	2	-	-	-	2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	-	-	-	-
	중앙119구조대	2	-	-	-	2	-

○ 법 령

구 분	법 령 명	소관부서	
법 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제도팀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기획팀	
	민방위기본법	민방위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획팀	
	소방기본법	소방기획팀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학화기반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제도팀	
	소하천정비법	재해경감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인적재난팀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기획팀	
	자연재해대책법	방재대책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예방전략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평가관리팀	
	재해구호법	복구지원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평가관리팀	
	풍수해보험법	재해보험팀	
	시행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제도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제도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징계령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소방기획팀	

구분	법령명	소관부서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획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혁신기획관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과학화기반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제도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재해경감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인적재난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소방기획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방재대책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예방전략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복구지원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관리팀
	재해구호법 시행령	복구지원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관리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기획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재해보험팀	
시행규칙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U119팀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U119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제도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기획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획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기획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혁신기획관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화기반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제도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과학화기반팀	

구분	법령명	소관부서
시행 규칙	소방장비관리규칙	과학화기반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재해경감팀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소방기획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인적재난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방재대책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예방전략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평가관리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복구지원팀
	재해구호법시행규칙	복구지원팀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재해보험팀

○ 훈 령

일련 번호	훈령명	제정일	소관부서
1	소방혁신위원회등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04. 6. 1	소방기획팀
2	소방공무원증규정	'04. 6. 1	소방기획팀
3	소방공무원근무규정	'04. 6. 1	소방기획팀
4	소방표지규정	'04. 6. 1	소방기획팀
5	소방공무원예절규정	'04. 6. 1	소방기획팀
6	소방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04. 6. 1	소방기획팀
7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등에관한규정	'04. 6. 1	소방기획팀
8	소방공무원복제세칙	'04. 6. 1	소방기획팀
9	의무소방대관리규칙	'04. 6.17	소방기획팀
10	화재조사및보고규정	'04. 6.17	화재조사팀

일련 번호	훈 령 명	제정일	소관부서
11	소방공무원체력관리규칙	'04. 6.17	대응전략팀
12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	'04. 6.17	대응전략팀
13	중앙소방학교사무분장규정	'04. 6.17	중앙소방학교
14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운영규정	'04. 6.23	민방위팀
15	민방위업무용차량의표지및장치규정	'04. 6.28	민방위팀
16	민방위대검열규정	'04. 6.28	민방위팀
17	소방방재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04. 7.14	행정지원팀
18	소방방재청종합상황실운영규정	'04. 7.15	재난전략상황실
19	중앙119구조대운영규정	'04. 7.20	중앙119구조대
20	중앙119구조대항공기운영에관한규정	'04. 7.20	중앙119구조대
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04. 7.22	복구지원팀
22	자연재난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	'04. 7.22	복구지원팀
23	소방방재청정보공개운영규정	'04. 7.27	행정지원팀
24	소방방재청업무등의평가위원회규정	'04. 8. 3	재정기획팀
25	소방방재청표창규정	'04. 8. 9	혁신기획관실
26	소방방재청정보안업무시행세칙	'04. 9. 6	행정지원팀
27	소방방재청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	'04. 9. 6	정보화기획관실
28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04.10. 1	소방제도팀
29	중앙긴급안전점검운영규정	'04.10.14	인적재난팀
30	소방방재청민간공보전담위원운영규정	'04.10.19	정책홍보팀
31	중앙소방학교시설물사용허가운영규정	'04.11.15	중앙소방학교
32	의연금품관리·운영규정	'05. 1. 3	복구지원팀
33	소방방재청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05. 1. 6	혁신기획관실

일련 번호	훈 령 명	제정일	소관부서
34	소방감찰규정	'05. 2. 3	소방기획팀
35	소방방재청감사규정	'05. 3. 7	법무감사팀
36	재해복구기금자문위원회운영규정	'05. 3.22	복구지원팀
37	복권기금관리·운영규정	'05. 4. 6	복구지원팀
38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05. 4.25	과학방재팀
39	특정관리대상시설보고등에관한규정	'05. 5.20	인적재난팀
40	소방방재청정책자문위원회규정	'05. 7.12	혁신기획관실
41	소방장비검사전담반운영규정	'05. 7.13	과학화기반팀
42	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운영규정	'05. 7.18	과학화기반팀
43	국제구조대의편성·운영에관한규정	'05. 8. 9	U119팀
44	소방방재청인사관리규정	'05. 9. 1	혁신기획관실
45	소방방재청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규정	'05. 9.15	행정지원팀
46	소방방재청당직및비상근무규정	'05.10.11	행정지원팀
47	소방방재청성희룡예방지침	'05.10.12	행정지원팀
48	소방방재청고문변호사운용규정	'05.11. 1	법무감사팀
49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관한규정	'05.11. 7	화재조사팀
50	소방방재청차체제안제도운영규정	'05.11.10	혁신기획관실
51	소방방재청위임·전결규정	'05.11.10	혁신기획관실
52	소방방재청공무원행동강령	'05.12.27	법무감사팀
53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05.12.30	위험물안전팀
54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규정	'06. 3. 8	복구지원팀
55	소방방재청과지방자치단체간재해경감 대책협의회운영에관한규정	'06. 3. 8	복구지원팀
56	국민생활주변안전사고예보제운영에관한규정	'06. 4. 5	재난전략상황실
57	국민안전방송(NEMA TV) 운영규정	'06.10. 2	정책홍보팀

일련 번호	훈 령 명	제정일	소관부서
58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관한규정	'06.11. 3	대응전략팀
59	소방방재청인터넷홈페이지구축·운영규정	'06.12.29	정보화기획관실
60	명예소방관 위촉규정	'07. 1.15	소방기획팀
61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규정	'07. 1.31	정책홍보팀
62	재난관리 책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요구 등에 관한 규정	'07. 2. 9	법무감사팀
63	국가재난관리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07. 6.13	정보화기획관실
64	중앙상설안전점검단 설치·운영규정	'07. 6.22	인적재난팀
65	소방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칙	'07. 7.19	중앙소방학교
66	안전기술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07. 9.10	과학방재팀
67	기업 재난관리정책 추진기획단 설치·운영 규정	'07. 9.28	평가관리팀
68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07.10.16	대응전략팀
69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07.10.18	소방제도팀
70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07. 12.4	대응전략팀
71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07. 12.5	소방기획팀
72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 규정	'07.12.17	U119팀
7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07.12.17	혁신기획관실
74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규정	'07.12.27	정보화기획관실

○ 예 규

연도 번호	예 규 명	개정일	소관부서
1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운영요강	'04. 6. 1	소방기획팀
2	소방공무원징계기록말소제시행지침	'04. 6. 1	소방기획팀
3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요강	'04. 6. 1	소방기획팀
4	소방공무원신규채용및소방간부후보생선발 시험의실기시험시행기준	'04. 6. 1	소방기획팀
5	소방관서도급경비사무처리요강	'04. 6. 1	소방기획팀
6	소방장비조작및훈련기준	'04. 6.17	대응전략팀
7	화재방어검토회의운영규정	'04. 6.17	대응전략팀
8	소방구조장비조작및훈련기준	'04. 6.19	U119팀
9	재해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 처리규정	'04. 6.22	평가관리팀
10	소방통신운영관리규정	'04. 6.22	통합망사업단
11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공동예규)	'04. 7.27	민방위팀
12	재해영향평가대행자관리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04.12.30	평가관리팀
13	이동전화위치지정보관리지침	'05. 4. 1	정보화기획관실
14	방재교육전문가선발및양성지침	'05. 5.24	방재대책팀
15	소방공무원승진심사기준	'05. 9. 6	소방기획팀
16	소방공무원근속승진제운영지침	'05. 9. 6	소방기획팀
17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05. 9. 6	소방기획팀
18	소방공무원승진시험시행요강	'05. 9. 6	소방기획팀
19	소방공무원직장훈련성적평정규정	'05. 9. 6	소방기획팀
20	소방공무원특수지근무경력가점평정에관한규정	'05. 9. 6	소방기획팀
21	소방방재청법제사무처리규칙	'05. 9.15	법무감사팀
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규정	'05.10. 6	평가관리팀
23	소방방재청특별승급제운영지침	'05.10.26	혁신기획관실
24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	'05.12.29	복구지원팀
25	산불진화기관의임무와역할에관한규정 (공동예규)	'06.11.17	인적재난팀
26	소방공무원사이버교육운영지침	'07. 2. 5	소방기획팀
27	소방방재청휴양시설이용규정	'07. 7. 2	행정지원팀
28	소방방재청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지침	'07. 7.11	행정지원팀
29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세부기준	'07.12.17	소방기획팀

3 소방방재청 위원회 현황

[07. 12. 31 현재]

연번	위 원 회 명	설치근거	소관부서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운영위원회	법령	U-119팀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법령	과학화기반팀
3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법령	평가관리팀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법령	평가관리팀
5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법령	재해보험팀
6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법령	평가관리팀
7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법령	평가관리팀
8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법령	안전서비스혁신단
9	행정서비스현장심사위원회	법령	안전서비스혁신단
10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법률	법무감사팀
11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법령	행정지원팀
12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법령	행정지원팀
13	정책자문위원회	법령	혁신기획관실
14	혁신도약추진협의회	자체계획	혁신기획관실
15	정책품질관리운영위원회	훈령	재정기획팀
16	자체평가위원회	법령	재정기획팀
17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법령	재정기획팀
18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훈령	재정기획팀
19	통합지휘무선통신망기술자문위원회	자체계획	통합망사업단
20	연구개발사업심의회	훈령	과학방재팀
21	안전기술심의위원회	법령	과학방재팀
22	소방혁신위원회	훈령	소방기획팀
23	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	법령	과학화기반팀
24	재난관리선진화위원회	법령	방재기준팀
25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	법령	복구지원팀
26	풍수해저감종합계획검토위원회	법령	재해경감팀
27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연구자문위원회	훈령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8	국립방재교육연구원정기간행물편집위원회	훈령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9	방재민방위표준교재편찬위원회	예규	국립방재교육연구원

4 소방방재청 비영리법인 현황

□ 총 41개 (사단 32, 재단 4, 특수 5)

[07. 12. 31 현재]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근거법	법인가일	소관과실	법인성격
1	한국화재소방학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 906호	이수경	민법 제32조	87-8-13	소방제도팀	사단
2	한국소방동우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7-4	신주영	민법 제32조	88-3-30	소방기획팀	사단
3	대한소방공제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8-3	천광철	대한소방공제회법	87-12-7	소방기획팀	특수
4	한국재난연구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벽산디지털밸리 5차 1501호	윤영조	민법 제32조	95-12-4	안전문화팀	재단
5	한국소방검정공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138	남상호	소방기본법 제45조	97-7-1	과학화기반팀	특수
6	한국소방공사협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3-23	박양원	민법 제32조	00-11-29	소방제도팀	사단
7	한국수난안전협회	경기도 평택시 칠곡동 588	유상철	민법 제32조	99-2-9	U119팀	사단
8	한국방재협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박경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99-2-18	재해경감팀	특수
9	한국인명구조견협회	서울 중구 필동1가 51 매일경제신문사 401호	신귀철	민법 제32조	99-9-9	U119팀	사단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근거법	법인가일	소관과실	법인성격
10	한국소방기술사회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70-5 우림 e-Biz센터 407호	김광휴	민법 제32조	00-6-13	소방제도팀	사단
11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서울 송파구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내	고석	민법 제32조	00-7-7	안전문화팀	재단
12	한국112무선봉사단	서울 송파구 문정동 2-5	김명배	민법 제32조	00-9-1	안전문화팀	사단
13	한국방재학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송재우	민법 제32조	00-11-27	재해경감팀	사단
14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 영등포구(동) 8가 87-4	김명현	소방기본법 제40조	01-5-9	소방기획팀	특수
15	한국안전인증원	서울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사 빌딩	구은희	민법 제32조	02-2-8	소방제도팀	사단
16	한국재해정보협회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1, 세계일사 2층	정홍수	민법 제32조	02-12-18	재해경감팀	사단
17	세이프키즈코리아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21 눈높이보라매센터 5층	송자외3	민법 제32조	03-1-27	안전문화팀	사단
18	한국안전시민연합	서울 송파구 문정동 2-5	김명배 외2	민법 제32조	03-5-3	안전문화팀	사단
19	한국생활안전연합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4-14	윤명오 김태운 윤선화	민법 제32조	03-6-25	소방제도팀	사단
20	한국구조연합회	서울 마포구 아현동 373-3 4층	정동남	민법 제32조	03-8-14	안전문화팀	사단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근거법	법인가일	소관과	법인성격
21	어린이 통학 차량안전 협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A	신나날	민법 제32조	03-12-5	안전 문화팀	사단
22	재해극복 범시민 연합	서울 종로구 창신동 243	육광남	민법 제32조	04-1-26	재해 경감팀	사단
23	한국재난 구조단	서울 송파구 가락동 481	이정구	민법 제32조	04-2-23	안전 문화팀	사단
24	한국 비시피 협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38	이영재	민법 제32조	04-12-28	재해 경감팀	사단
25	보구구조 봉사단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7-2	최상만	민법 제32조	05-2-18	U119팀	사단
26	전국재해 구조협회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19	최학래	재해 구조법 제10조	05-10-10	복구 지원팀	특수
27	한국방재 정보학회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470 단호관 523호	임학규	민법 제32조	05-10-25	인적 재난팀	사단
28	안전문화 홍보시민 모임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한수빌딩 232호	이승국 허선자	민법 제32조	06-02-03	안전 문화팀	사단
29	지구촌 재난구조단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1-6 (자유센터내)	김종한	민법 제32조	06-08-24	U119팀	사단
30	해병대 전우회 안전, 봉사문화 단체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3 재향군인회 별관 4층	김명환	민법 제32조	06-09-07	안전 문화팀	사단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근거 법률	법 인 허가일	소 관 과 실	법 인 성 격
31	빗물학회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서울대학교 39동 217호	박주석	민법 제32조	06-09-27	재해 경감팀	사단
32	한국재난 안전 네트워크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22-3 K타워 5층	김준목	민법 제32조	06-12-05	안 전 문화팀	사단
33	서울산악 조난구조대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서울시시설 관리공단 307호	김남일	민법 제32조	07-01-17	U119팀	사단
34	한국 재난관리 표준학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38 신문로빌딩 1008호	조원철	민법 제32조	07-03-13	재해 경감팀	사단
35	사회안전 연구원	서울 송파구 선촌동 292-18	백봉현	민법 제32조	07-04-23	인 적 재난팀	재단
36	서울 내러티브 연구소	서울 종로구 돈의동 39-2	최남희	민법 제32조	07-05-22	예 방 전략팀	사단
37	한국등산 안전문화 연구원	서울 강북구 우이동 157-3	이종팔	민법 제32조	07-05-25	인 적 재난팀	사단
38	해병재난 안전교육단	대구 달서구 용산동 215-33	박수부	민법 제32조	07-07-13	안 전 문화팀	사단
39	사면재해 경감협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38	김상규	민법 제32조	07-08-17	재해 경감팀	사단
40	한국자연 재해저감 산업협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윤용남	민법 제32조	07-11-23	재해 경감팀	사단
41	U119 안전재단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85-78	최운	민법 제32조	07-12-31	U119팀	재단

▾ 자료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자료모으미

위 원	소 속 팀	비 고
이상택	재난상황실	위원장
황하룡	재난상황실	위 원
김기석	재난상황실	위 원
김부생	재난상황실	위 원
정희돈	재난상황실	위 원
지경용	재난상황실	위 원
강병희	재난상황실	위 원
오영남	재난상황실	위 원
정민규	운영지원과	위 원
우명제	기획재정담당관실	위 원
박기영	예방전략과	위 원
김성철	소방행정과	위 원
나경연	방재대책과	위 원
안새롬	재난상황실	-



2008년도 주요통계 및 자료

인 쇄 : 2008년 6월 30일

발 행 : 2008년 6월 30일

발행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TEL (02) 2100-5034

FAX (02) 2100-5039

인 쇄 처 : 파피루스 신청인쇄 TEL (02) 2273-6384

〈비매품〉